RISE KOHYANG HIGH SCHOOL

A BRIGHT STAR SCHOOL

2022-2023
학생 및 가족 핸드북

2023년 **1**월 **31**일에 업데이트됨

이 핸드북의 일부 섹션은 COVID-19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든 업데이트는 ParentSquare에 게시됩니다.

환영합니다!

친애하는 가족 여러분

의 학년도의 시작을 환영합니다! 여기 라이즈 고향 학교에서 학생들은 학업 성취뿐만 아니라 상호 존중하며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 핸드북은 이 목표를 염두에 두고 작성되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직원, 학부모 / 보호자 및 지역 사회 구성원이 이 핸드북에 있는 행동 규칙 및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학생들이 준수하도록 요청하는 정책과 절차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을 성공적인 성인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기술과 자질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학생들을 매우 높은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학생들이 성공할 수 있는 도구와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 및 가족과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교육자로서의 우리의 임무입니다.

잠시 시간을내어이 핸드북을 검토하고 자녀와 논의하십시오. 자녀와 학교 시스템을 위해 해주신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Cynthia Juarez-Trigueros
교장
Rise Kohyang High School

목차

교직원 **9**

일반 정보 **11**
- 학교 정보 11
- 전화 시간 11
- 학생 하교 픽업 / 하교 절차 11
- 학교 급식 프로그램 11
- 크롬북 **11**
- 학업 용품 12
- 교과서 12
- 소설 12
- 닫혀있는 캠퍼스 12
- 학부모 기술 지원 12
- 사진 / 비디오 촬영 12
- 학교 일정 **12**

가족 커뮤니케이션 **13**
- 캠퍼스 방문 13
- 가족 커뮤니케이션 13
- Aeries 학부모 포털 14
- 학생 기록 요청 14
- 학교 약속 14

학업 정책 **15**
- 졸업 요건 15
- 학업 부정직 16
- 과정 추가 / 드랍 정책 16
- 일정 변경 요청 절차 16
- AP / Honors 이의 제기 절차 16
- Advanced Placement Classes(AP 과목) 17
- 과외 적격성 17
- 불완전한 성적 17
- 중간 학기 편입 학점 18
- 결석으로 인한 과제 미제출 18
- 편입생 18
- 클래스 입학 18

운동 경기 **19**
- **CIF Sports** **19**
- 학업 적격성 20
- 게임 자격 20

일관성 및 헌신 20

교복 정책 **20**
복장 규정 준수 20
옷 코드 21

휴대폰 정책 **21**

동문 지원 및 대학 성공 팀 **21**

전체 **Bright Star Schools** 대상 정책 **22**

거버넌스 **22**
Bright Star Schools 위원회 회의 **22**
학교 위원회 **23**

방문자 및 자원봉사자 정책 **23**
학부모 참여 비전 **23**
방문자 및 자원봉사자 행동 기준 **23**
방문자 정책 **23**
자원봉사 정책 **24**
알림 게재 **27**

출석 정책 **27**
무단결석 정책 **28**
출석 정책 **28**
결석 처리 면제 **28**
무단 결석 **29**
결석의 확인 방법 **29**
출석 패널 **29**
과도한 무단 결석의 결과 **30**

무료 및 할인 가격 식사 정책 **30**

특수 교육 정책 **33**
특수 교육을 위한 식별, 위임 및 평가 **33**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 팀 회의 **33**
절차상 보호 **33**
비공립, 비종파 서비스 **34**
자원 전문가 프로그램 또는 통합교육 프로그램 **34**
교통 **35**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개인의 수에 대한 정보 **35**
독립 교육 평가**(IEE)** **35**

학생 약물 정책 **37**
정의 **37**

Charter School 지원을 동반한 약물 투여 **38**
직원 교육 및 비상 대응 **38**
저장 및 기록 보관 **39**

인신매매 방지 정책 **40**
학생 지침 **40**
학부모/보호자에 전송되는 정보 **40**
직원 교육 **40**

학생 교통 정책 **40**
정의 **40**
학생에게 에스코트가 필요한지의 여부 결정 **41**
버스 절차 및 지침 **41**

인터넷 안전 및 기술 사용 정책 **45**
정의 **45**
허용 가능한 사용 정책 **45**
승인 및 금지된 활동 **46**
오용의 결과 **47**
개인 정보 보호 및 모니터링 **47**
개인 소유 기기 **48**
인터넷 안전 **48**
올바른 온라인 행동 교육 **48**
크롬북 정책 및 절차 **49**
학생 인터넷 사용 동의서 **52**

공통 고발 정책 및 해결 프로세스 **56**
이 정책에서 다루는 우려사항 유형 **56**
가족 우려사항의 비공식적 해결 **56**
가족 우려사항의 공식적 해결 **56**

IX편, 괴롭힘, 위협, 차별 및 따돌림 정책 **58**
IX편, 괴롭힘, 위협, 차별 및 따돌림 조정담당자 **58**
금지된 따돌림 및 괴롭힘의 정의 **59**
따돌림 및 사이버 괴롭힘 예방 절차 **61**
고충 처리 절차 **63**
IX편, 괴롭힘, 위협, 차별 및 따돌림 고발 양식 **67**

징계 **68**
징계 기반 정책 **68**
금지된 활동 또는 행동 **70**
금지 물품 소지 **71**
학문적 정직성 및 무결성 **71**
학교 부지 무단 침입 **72**

교내 정학 **72**

정학 및 퇴학 정책과 절차 **73**
위반사항 열거 **73**
정학 절차 **76**
퇴학시킬 권한 **78**
퇴학 절차 **78**

공통 고발 처리 정책 **82**
준수 담당자 **84**
알림 **84**
절차 **85**
CDE에 항소 **87**
민법 구제책 **88**
공통 고발 처리 절차 양식 **88**

교육 기록 및 학생 정보 정책 **89**
정의 **90**
인명록 정보 공개 **91**
학부모 및 적격한 학생 대상 연례 통지 **92**
교육 기록과 관련된 학부모 및 적격한 학생의 권리 **92**
교육 기록 및 인명록 정보의 공개 **94**
이민 목적을 위한 학생 정보의 요청 및 공개 **95**
학생 기록의 디지털 저장, 관리 및 검색에 대한 계약 **96**
기록 보관 요건 **96**
고발 **96**
기록 보유 **97**

표현 정책 **98**
정의 **98**
캠퍼스 내 표현 **99**
회람, 비공식 신문 및 기타 인쇄물의 배포 **99**
공식 학교 출판물 **100**
단추, 배지 및 기타 상징적 표현의 휘장 **100**
캠퍼스 외 표현 **101**
집행 **101**
고발 및 항소 **101**

직원/학생 상호작용 정책 **102**
체벌 **102**
경계선의 정의 **102**
허용 불가한 행동 및 허용 가능한 행동 **102**
위반 보고 **104**
조사 **105**

결과 **105**

차별 금지 성명 **105**

노숙 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 정책 **106**
노숙 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에 대한 정의 **106**
Charter School 연락 담당자 **106**
등록 **107**
거주지 설문지 **108**
동등한 서비스 **108**
교통편 **108**
과외 활동 자격 **108**
방과후 프로그램 비용의 면제 **108**
전문성 개발 **108**
고등학교 졸업 요건 **109**
교과 과정 수용 **109**
통지 **110**
연간 정책 검토 **110**
학교 웹사이트 게시 **110**

위탁 및 이동 청소년 교육 정책 **110**
정의 **110**
위탁 및 이동 청소년 연락 담당자 **112**
학교 안정성 및 등록 **113**
교통편 **113**
결석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 **114**
교과 과정 및 학점 양도 **114**
졸업 요건의 적용 가능성 **114**
과외 활동 자격 **115**
방과후 프로그램 비용의 면제 **116**
학생 기록 **116**
비준수에 대한 고발 **116**

504항 정책**,** 절차 및 부모의 권리 **116**
A. 504항(Section 504) 정책 116
B. 정의 117
C. 회부, 평가 및 평가 절차 119
D. 504 계획 120
E. 학생의 진도 검토 121
F. 절차상 보호 121
F. 정학 및 퇴학, 장애가 있는 학생의 특별 절차 123
G. 식별, 평가, 조정 및 배치에 대한 학부모/학생의 권리 125

청소년 자살 예방 정책 **127**

자살 예방을 위한 종합 전략 계획 128
예방책 128
개입 및 비상 절차 131
자원 134

캠퍼스 수색 및 압수 정책 **136**
발견에 대한 성명 136
정의 136
통지 137
학생에 대한 수색 137
비디오 감시 및 기타 녹화 장치 138
체온 검사 139

학생 건강 정책 **139**
시행, 모니터링, 책임 및 지역 사회 참여 140
정책에 대한 연례 통지 140
3년 단위 진행 상황 평가 140
정책 수정 및 업데이트 141
지역 사회 참여, 봉사 및 소통 141
영양 141
신체 활동 143
학생의 건강을 증진하는 기타 활동 143
지역 사회 제휴 143

학부모 및 가족 참여 정책 **143**
Charter School의 기대와 목표 143
I편 프로그램에 대한 학부모 참여 144
학교-학부모 협약 145
참여 역량 구축 145
접근성 146

선물 정책 **146**

학생 비용 정책 **146**

담배 없는 학교 정책 **148**

근무 허가 **149**

수학 배치 정책 **149**

연례 통지 **150**
504항 150
영어 학습자 151
영양학적으로 적절한 무료 또는 할인 가격 급식 151
차별 금지 성명 153

스쿨버스 및 승객 안전 154
동물 해부 154
학교 안내서의 이용 가능 여부 154
Cal Grant 프로그램 공지 154
뇌진탕/두부 부상 154
인신매매 방지 155
구강 건강 평가 155
성 건강 교육 155
교사 자격 정보 156
특수 교육/장애 학생 156
기록 이의 신청 및 인명록 정보를 포함한 학생 기록 156
급성 심정지 예방 및 자동제세동기 159
주 시험 159
약품 투여 159
위탁 및 이동 청소년 교육 159
노숙 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 163
예방접종 165
정신 건강 서비스 166
임신 및 육아 중인 학생 167
학부모 및 가족 참여 정책 168
Cal Grant 프로그램 공지 168
캠퍼스 수색 및 압수 168
당뇨병 168
재정 지원에 관한 정보 169
비자발적 퇴학 절차 169
학교 자산의 분실 또는 파손 169
학교 안전 계획 169
개인 신념에 대한 설문 조사 170
담배 없는 학교 170
공통 고발 처리 절차(“UCP”) 170
소셜 미디어에서 학습한 학생 정보의 사용 172
사고 172
학교 안전 계획 173
아동학대 신고 174
자살 예방 정책 174
발열/질병 175

교직원

라이즈고향 하이리더십팀			
교장 Cynthia Trigueros ctrigueros@brightstarschools.org 	지도 교감 Allen Andrews aandrews@brightstarschools.org 	문화 교감 Stephanie Kozofsky skozofsky@brightstarschools.org 	상담실장 Sue Chae schae@brightstarschools.org
학업 프로그램 학장 Molly Bryan mbryan@brightstarschools.org 	회복 관행 학장 Johanna Rivas jrivas@brightstarschools.org 	학생 활동 학장 Yolanda Galeazzi ygaleazzi@brightstarschools.org 	운영 책임자 Gaby Monje gmonje@brightstarschools.org
회복 관행 학장 보조 Roberto Franco IMAGE COMING SOON	사무 담당 관리자 Claudia Gardner cgardner@brightstarschools.org 	학교 접수처 담당 Maru Kim mskim@brightstarschools.org 	

브라이트스타스쿨 지원팀		
홍보 및 참여 담당 선임 이사 Angelina Calderón acalderon@brightstarschools.org 	학생 및 가족 서비스 담당 부사장 Marni Parsons mparsons@brightstarschools.org 	동문 지원 및 대학 성공 책임자 Genoveva Cortes gcortes@brightstarschools.org
등록 관리자 Karlyn Yngve kyngve@brightstarschools.org 	아웃 리치(한국어 담당) Maggie Kwon hkwon@brightstarschools.org 	아웃 리치 코디네이터r Roxanne Romero rromero@brightstarschools.org
“Head of Schools” Eliza Kim ekim@brightstarschools.org 	가족 참여 코디네이터 Adonahi Ascencio aascencio@brightstarschools.org 	통합 교육 책임자 Matt Williams mpwilliams@brightstarschools.org

일반 정보

학교 정보

라이즈 고향 고등학교
9-12 학년
전화 번호: (323)284-2553
600 S Lafayette Park Place, Los Angeles, CA 90057

전화 시간

전화 시간은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업무 외 시간에 전화를 하실 경우 녹음 된 지시에 따라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업무시간에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을 준수하여 직원을 존중해 주십시오. 또한 일반정보는 웹 사이트를 확인 www.brightstarschools.org 하십시오.

- 오전 8시 – 오전 11시 30 분 과 오후 12시 - 3시 45분
- 여름 시간: 월요일-목요일 오전 9:00 - 오후 2:00

학생 하교 픽업 / 하교 절차

승인된 성인(18 세 이상)은 학생의 비상 카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 양식에 나열된 모든 성인의 이름, 학생과의 관계 및 주소가 필요합니다. 학생을 픽업하는 모든 성인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소지하고 요청 시 학교에 보여줄 준비를 해야 합니다. 픽업 권한에 사람을 추가하라는 구두 요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요청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교는 학생의 안전과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언제든지 이러한 절차를 업데이트할 권리가 있습니다.

학교 급식 프로그램

학교 급식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본 핸드북 끝쪽의 조직 전체 정책에 나와 있습니다. 학교 음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음식을 충분히 섭취 할 수 있도록 점심 시간의 첫 15 분 동안 줄을 서야 합니다. 15 분 후에는 점심 줄이 종료되고 다른 학생들은 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학생이 음식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집에서 건강한 아침/점심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칩, 사탕, 소다 또는 물 이외의 음료수를 가져 오도록 권장하지 않습니다.

크롬북

학년 동안 크롬북이 발행되며 학교 자산인 채로 유지될 것입니다. 학생이 크롬북을 분실할 경우, 학생은 해당 기기의 전체 교체 비용을 청구받습니다. 크롬북에 물리적인 손상이 발생할 경우(즉, 화면 파손) 수리 비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크롬북 및 충전기를 적절하게 보관 및 취급할 책임을 집니다. 모든 학생들은 학년 종료 시 구동 가능한 상태로 기기를 반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매일 지급받은 크롬북을 학교에 가져와야 합니다. 크롬북은 전체 학교 일정에 필요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완충된 상태여야 합니다. 학생에게 크롬북에 대한 기술적 지원이 필요할 경우, studentsupport@brightstarschools.org로 이메일을 보내 문제를 보고할 수 있습니다.

학업 용품

학교에서 잘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도구를 준비해야합니다. 책을 가지고 등교 할 때 배낭이나 책가방을 권장합니다. 또한 모든 개인 물품 (배낭, 스웨트 셔츠, 재킷, 연필 상자 등...)에는 학생의 이름과 학년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학교는 잘못 둔 물품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교과서

교과서는 학년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발행되며 학교의 자산으로 유지됩니다. 학생이 책을 잃어버린 경우 책의 전체 대체 비용이 청구됩니다. 모든 학생들은 학년 말에 교과서를 반환 할 책임이 있습니다.

소설

Bright Star Schools는 각 학생에게 필요한 모든 독서의 사본을 제공합니다. 학생들이 Bright Star에서 발행한 텍스트를 사용하기로 선택하면 해당 텍스트를 표시하거나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해당 소설이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교체 수수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닫혀있는 캠퍼스

모든 Bright Star 학교는 폐쇄된 캠퍼스이며 학생들은 성인 없이는 절대로 캠퍼스를 떠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수업 사이와 같은 전환 기간 동안 특히 중요합니다. 허가없이 캠퍼스를 떠나는 것은 도랑으로 간주되며 그러한 선택에 따라 징계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만 18세인 학생들은 직접 서명 후 성인 없이 캠퍼스를 떠날 수 있습니다.

학부모 기술 지원

Bright Star 학생의 부모는 가정에서 모든 유형의 기술 사용을 감독해야합니다. 컴퓨터 및 / 또는 기타 통신 수단의 부정적 또는 유해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부모의 도움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사진 / 비디오 촬영

학교 관리자가 서면으로 명시 적으로 사전 승인하지 않는 한 캠퍼스에서 사진 또는 비디오를 촬영하거나 캠퍼스에서 발생하는 이벤트 또는 활동을 게시하는 것은 항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학생은 적절한 징계 조치를 받습니다. 이 규범을 위반하는 부모는 공식적으로 경고를 받게 되며, 행동이 계속될 경우 일체의 학교 감독 또는 후원 행사에서 금지될 수 있습니다.

학교 일정

가족 커뮤니케이션

캠퍼스 방문

우리는 RKMS 캠퍼스를 방문하고자하는 현재 등록한 학생의 모든 학부모 / 보호자를 위한 "개방"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가 받고있는 교육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의 수업을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부모는 최소 24 시간 전에 본교 사무실에서 관찰 일정을 잡으셔야 합니다. 일정을 잡을 때 학부모는 교실 관찰 중에 따라야 할 프로토콜 사본을 받게 됩니다.

모든 방문객은 로그인하고 신분증을 착용해야 합니다. 방문자 패스는 학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는 입장을 거부 할 권리가 있습니다.

가족 커뮤니케이션

RKHS는 학교의 모든 행사와 문제에 대한 정기 업데이트를 제공하는 학부모 뉴스 레터를 발행합니다. 뉴스 레터는 온라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 커뮤니케이션 포털 ParentSquare를 통해 각 학교에 대한 링크가 있습니다.

Aeries 학부모 포털

학부모는 Aeries를 통해 온라인으로 학생의 학업 정보에 액세스 할 수 있는 학생 및 학부모 포털이 있습니다. 각 가족은 액세스 권한을 얻기 위해 학교로부터 로그인 정보를 받게 됩니다. 학생이 학부모 포털 로그인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 경우 언제든지 프론트 오피스로 와서 직접 정보를 요청하십시오. 학부모에게 제공되는 정보에는 현재 수업 일정, 과제, 시험 점수 및 성적이 포함됩니다. 학부모가 학생의 진행 상황과 성공을 모니터링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른 유용한 도구와 기능이 있습니다.

학생 기록 요청

학생 기록에 대한 모든 요청은 학교 본부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록은 요청 시 사무실에서 검토 할 수 있습니다. 학업 성취도 기록 사본은 연중 내내 집으로 보내질 것입니다. 누적 기록 및 / 또는 성적 증명서 사본 요청은 영업일 기준 5 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학교 약속

관리자를 만나기 위해 학부모는 위의 시간 동안 학교 사무실에 전화하여 준비를 해야 합니다. 관리자가 24 시간 이내에 전화를 걸어 약속을 잡을 것입니다.
교수진과의 약속은 교사와 직접 해야 합니다. 선생님과 함께 양질의 시간을 예약하려면 최소 72 시간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약속을 위해 선생님에게 메모를 보내거나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서면 또는 전화 회신을 위해 음성 메시지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교사의 계획 시간 동안 메시지가 반환됩니다.

샘플 양식

관리자와의 만남 요청 양식

본인 이름 _____ 학생의 이름 :_____

학생의 상담 교사: _____ 학생의 학년 :_____

다음과 같은 이유로 관리자와의 면담을 요청합니다. :

_____

_____

_____

본인이 만나고 싶은 대상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만남을 원하는 관리자의 이름을 강조 표시하고 굵게 표시하십시오):

- Cynthia Trigueros - 교장
- Stephanie Kozofsky - 문화 교감
- Allen Andrews - 지도 교감
- Johanna Rivas - 회복 관행 학장

특정 관리자와 만나고 싶은 경우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_____

_____

_____ _____

연락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휴대폰 번호 _____ 이메일 주소: _____

라이즈 고향 고등학교는 우리 가족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리자가 24시간 이내에 제공한 연락처 정보를 사용하여 이메일이나 전화를 걸고 48시간 이내에 만날 약속을 잡을 것입니다.

학업 정책

졸업 요건

라이즈 고향 고등학교를 졸업하려면 모든 학생들이 220 학점을 성공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220 학점 이내에서 학생들은 모든 A-G 요구 사항과 하나의 PE 과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RKHS에서 수강하는 대부분의 학기 과정은 5 학점을, 대부분의 1 년 과정은 10 학점을 받습니다. 라이즈 고향 고등학교에서 제공되는 모든 핵심 수업과 대부분의 선택 과목은 캘리포니아 주 내의 공인 된 공립학교에서 학점 이전이 승인됩니다.

필수 교과 과정

모든 학생들은 PE 과정 1 개 및 최소 70 학점의 선택 과목과 함께 A-G 필수 교과 과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귀하의 카운슬러는 귀하와 협력하여 RKHS 및 / 또는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택한 선택 과목이 귀하의 고등 교육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장 적합한지 결정합니다.

과정 요구 사항

세계사 또는 사회 과학, 미국 역사를 포함한 역사 (A)	20 학점
영어 (B)	40 학점
수학 대수 I, 기하학 및 대수 II를 포함 (C)	30 학점
실험실 과학, 실험실 과학 2 년 (D)	20 학점
외국어, 2 년 동일 언어 (E)	20 학점
시각 및 공연 예술, 1 년 (F)	10 학점
대학 준비 선택 과목, 추가 과정 1 개 A-F (G)	10 학점
체육	10 학점
선택 과목	60 학점

2020-2024년에 졸업하는 학생들은 졸업에 총 200학점, 선택 과목에 40학점만 필요합니다. 기재된 기타 모든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 업데이트로 인한 졸업 학점

The Bright Star 이사회에서는 2020년에서 2024년까지의 수업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전체 수를 일시적으로 줄이는 것을 승인하였습니다. 해당 연도에 졸업하는 학생들은 학위 취득에 200 학점만 필요합니다. 그러나 A-G 학점의 100%는 여전히 완료해야 합니다. 2025년 및 2026년(그리고 그 이후)의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위에 기재된 원래의 졸업 요건(220학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학교 일정

12학년 필수: 다음과 같은 교육법 46145에 따라 매 학기 최소 5 개 학기 수업 :“12 학년 학생은 매 학기 최소 5 개 과정에 등록해야 합니다. . .” RKHS는 이 코드를 엄격하게 시행합니다. 또한 졸업식에 참석하려면 졸업생이 최소 210.0 학점을 이수하거나 2 개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졸업생이 졸업장을 받으려면 모든 졸업 요건을 문서화하고 완료해야 합니다.

학업 부정직

최초의 학업 부정직 위반에 대한 표준화 된 영향은 없지만, 과제에서 0 점을 받거나 학생에게 대학 학업 정책 / 명예 규정에 대해 교육하기 위해 할당 된 추가 프로젝트를 포함 할 수 있습니다. 표절 또는 기타 중대한 학문적 부정직의 패턴의 경우, 가능한 영향에는 해당 과정에 대한 학점을 받지 못하거나 학생 성적표에 "F"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과정 추가 / 드랍 정책

학생들은 회의 일정을 잡거나 학년 수준의 카운슬러에게 직접 이야기하여 일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정 변경 요청은 첫 학기 세 번째 주까지 해야합니다. 일정 요청을 제출한다고 해서 일정 변경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사 선호 또는 기타 개인적 선호도에 대한 일정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 학생은 연중 다른 시간에 일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학생들은 수업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담임에게 먼저 논의하고 나서 상담 교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 자문 담당 변경 요청은 고려 대상이 아니며 거절될 것입니다.

일정 변경 요청 절차

- 학생들은 학기의 세 번째 주가 끝나기 전에 학년 수준 카운슬러에게 일정 변경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담교사는 전제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와 공간 가용성에 따라 요청을 고려합니다.
- 결정은 카운슬러를 통해 전달됩니다.
- 단일 수업 시간에만 영향을 미치는 일정 변경은 수용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 5 주 채점 기간이 지나면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요청이 고려되지 않습니다.
- 어떤 시점에서도 권고 변경 요청은 수락되지 않습니다.
- 5 주차 후에 학생들은 이전 과정에서 “W”(취소 표시)를 받게 됩니다.

AP / Honors 이의 제기 절차

- 일정에있는 AP / Honors 과정 배치에 관한 정보에 대해 학년 수준 카운슬러에게 먼저 문의하십시오
- 학생이 카운슬러와 상의 한 후 AP 또는 Honors에 대한 과정 배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이메일을 통해 Bryan에게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 정보에 입각 한 결정에 도달하기 위해 이의 제기 프로세스 (교사 추천, 작문 샘플, 입학 시험 등)에서 추가 정성 및 정량적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복 수업**:** 학생은 과정에 대한 학점을 얻기 위해 통과하지 못한 과정을 반복합니다. 학점 회복을 위한 옵션에는 공인된 온라인 프로그램, Bright Star 또는 LAUSD에서 제공하는 여름 학교 또는 향후 RKHS 일정의 일부로 과정 재수강이 포함됩니다.

Advanced Placement Classes(AP 과목)

- AP 학생들에 대한 기대치가 훨씬 더 높습니다. AP 학생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이러한 과정의 성적에 가중치가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이 코스의 "A"는 5.0 등급 포인트로 계산됩니다. "B"는 4.0이고 "C"는 3.0입니다.
- 이 과정과 함께 제공되는 요구 사항 및 전제 조건을 숙지하십시오. 학생들이 코스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기본 기술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AP 과정에 등록한 모든 학생은 5 월에 AP 시험을 치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 현재 AP 시험은 과목당 $ 96입니다. 라이즈 고향 고등학교는 모든 학생의 AP 시험 비용을 지불합니다. 대부분의 대학은 3, 4 또는 5 점 (대학에 따라 다름)에 대학 학점을 부여하여 대학에서 수강해야하는 과목 수를 줄입니다.

AP 코스 최대치

9학년 - 1 년에 최대 한 개 AP 코스
10학년 - 2 년에 최대 두 개 AP 코스
11학년 - 3 년에 최대 세 개 AP 코스 *
12학년- 4 년에 최대 네 개 AP 코스

* 네 번째 AP 코스는 주니어로 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학업 프로그램 학장의 허가, 부모 / 보호자의 동의 및 이전 AP 과정에서 입증된 실적이 필요합니다.

AP 시험 성적 조정

학생이 전체 AP 시험에서 자신의 S1 또는 S2 수업 성적보다 더 높은 수준의 성취를 나타내는 점수를 받을 경우, 성적 조정을 반영하기 위해 성적증명서가 조정됩니다.

5 - A
4 - B
3 - C
2 - D

연말에 AP 시험이 표준 길이보다 짧을 경우, 1학기 성적은 변경되지 않고 유지됩니다. 단, 성적과 시험 점수의 차이가 2 문자 등급 이상이거나, 학생이 시험에는 통과했으나 1학기 과정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과외 적격성

RKHS는 모든 학생들이 과외 관심사를 탐구 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합니다. 따라서 클럽에 참여하기 위한 최소 GPA 요건은 없습니다. 그러나 학생이 수업을 통과하지 못하고 배정된 과외 블록에 참석하지 않으면 충분한 학업 진척이 이루어질 때까지 클럽 또는 활동 명단에서 제외되고, 학습실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불완전한 성적

학생이 과목을 통과했지만 해당 학기 총 평가 (단위 시험, 프로젝트, 공연, 에세이, 중간 고사 등)의 70 % 이상을 시도하지 않은 경우 임시 성적 "I"가 됩니다. 할당. 그런 다음 학생은 교사와 학생의 학년 수준 카운슬러가 조정 한 학습 계획을 완료하기위한 추가 기간 (일반적으로 4 주 이하)을 갖습니다. 불완전한 성적은 제공된 작업의 질에 따라 변경됩니다. 이 정책은 10 주차 (S1) 또는 25 주차 (S2)가 시작된 후 전학하는 학생에게도 적용됩니다.

중대한 건강 또는 개인적인 이유로 (숙소 상실, 만성 질환 등) 과정을 통과하지 못한 학생은 과정의 상태 / 학점에 관계 없이 “I”등급과 비상 계획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중간 학기 편입 학점

10 주 (S1) 또는 25 주 (S2)가 시작된 후 편입하는 학생은 편입 성적을 과정 성적의 50 %로 계산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백분율은 다음과 같이 지정/계산됩니다 :

A-95 %
B-85 %
C-75 %
D-65 %
F-N / A

학생이 학점 이전을 거부하거나 학점을 이전 할 동등한 과정이없는 경우, 각 AG 수업 (단위 테스트, 프로젝트, 성과, 성적표)에 대한 성적표의 합계 평가의 70 % 이상을 시도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에세이, 중간 고사 등)학기 말까지. 학기 성적은 완료된 과제 및 평가의 숙달에 따라 배정됩니다. 과제의 70 %가 시도되지 않았지만 학생이 완료 한 과제를 기준으로 통과하는 경우 성적은 "미완료"로 간주되며 학생은 추가 과정을 완료하기 위해 짧은 연장을 받게됩니다. 불완전한 성적에 대한 지침은이 문서의 별도 섹션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결석으로 인한 과제 미제출

학생은 사유 및 무단 결석 모두에 대해 주요 과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학부모와 학생은 과제를 위해 학교 사무실에 전화해서는 안됩니다. 학생이 결석한 경우 교사로부터 과제물을 수집하고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해 자신의 숙제에 접근하는 것은 학생의 책임입니다. 이 보충 작업에 대한 합리적인 기한이 주어질 것입니다. 교사는 결석 사유에 관계없이 이러한 기회가 학생들과 조정되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누락된 과제 및 시험은 완료 될 때까지 50 %에 입력됩니다. 채점 기간이 끝나면 전체 성적이 배정되고 그에 따라 게시됩니다. 불완전한 성적(“I”)은 중대한 정상 참작 상황이 있거나 학생이 과정을 통과했지만 대부분의 과정을 시도하지 않은 경우 학기 말에 할당되지 않습니다.

편입생

라이즈 고향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편입생의 경우 공인 된 고등학교의 학점이 성적표에 입력되고 졸업 학점에 적용됩니다.

클래스 입학

학년을 진행하기 위해 학생들은 다음 학년 수준에 대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 적절하게 발전해야합니다. 학생들은10학년으로 간주하려면 50 학점을, 11학년으로 간주하려면 100 학점을, 12학년으로 간주하려면 150 학점을 이수해야합니다.

샘플 프로그램

9th Grade	10th Grade	11th Grade	12th Grade
English 9	English 10	English 11 or AP English	English 12 or AP Literature
Civics or AP Geography	World History	US History or AP US History	AP Government or Ethnic Studies
Biology	Engineering	Chemistry	Environmental Science or AP Psychology
Spanish or PE	Spanish II or III	Spanish III or AP Spanish	4th Year Core Subject
Music I or Art I	Elective	Elective or AP Elective	College Prep
Algebra or Geometry	Geometry or Alg II	Algebra 2 or Pre-Cal	Pre-Calculus or Calculus

특수 교육

적극적인 개별 교육 계획Individualized Education Plans (IEP) 또는 504 계획을 보유한 장애 학생을 위한 진급은 학생의 필요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프로모션 기준은 학부모와 교직원이 공동으로 작성하며 매년 학생의 IEP 또는 504 계획에 기록됩니다.

학생 지원 및 진행팀(SSPT)

학년 수준을 반복 할 위험이 있는 각 학생을 위해 SSPT (학생 성공 진행 팀)가 자동으로 구성됩니다. SSPT는 학생에게 필요할 수 있는 적절한 교육 지원을 지속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일년 내내 개최됩니다. SSPT는 한 명의 관리자, 최소한 한 명의 교사 및 한 명의 부모 / 보호자로 구성됩니다. 초기 SSPT 회의 후 팀원은 주기적으로 재소집하여 진행 상황을 논의합니다. 어떤 지원이 가장 잘 작동하는지 결정하기 위해 SSPT의 지속적인 수정이 수행됩니다. 학생이 다양한 편의 및 지원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려움을 겪는 경우 학교 및 또는 학부모는 특수 교육 자격 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운동 경기

우리는 라이즈 고향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California Interscholastic Federation(CIF) 육상 프로그램을 대신하여 학생 운동 선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2020-2021 학년도에 제공될 CIF 스포츠 목록입니다.

가을
- 여자 배구
- 크로스 컨트리
- 치어리딩

겨울
- 여자 농구
- 남자 농구
- 여자 축구
- 남자 축구
- 치어리딩

봄
- 야구
- 남자 배구
- 소프트볼
- 여자 플래그 풋볼
- 치어리딩

라이즈 고향 고등학교에서는 풀 타임 학생과 풀 타임 운동 선수의 역할을 균형 있게 조정해야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스포츠 참여를 적극 권장합니다. 우리는 학생 운동 선수가 되는 것이 학생들이 여러 측면에 적용될 수 있는 생활 기술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라이즈 고향 고등학교 운동부는 강한 동료 관계와 팀워크, 규율, 자기 책임감, 자신감 향상 등을 장려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RKHS 학생 운동 선수가 스스로 규제하는 독립적인 개인이 되는 것입니다.

CIF Sports

라이즈 고향 고등학교는 정회원으로 CIF 스포츠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CIF 이사회의 업데이트된 지침이 있을 때까지 연중 내내 플레이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학업 적격성

모든 학생은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최소 **2.5** 가중치 **GPA**를 가져야합니다. 매 스포츠 시즌마다 주간 등급 확인이 실시됩니다. 학생 운동 선수는 RKHS 팀에 참여, 연습 또는 대표하기 위해 어떤 코스도 실패 할 수 없습니다.

게임 자격

학생들은 게임에 참여하기 위해 모든 관행에 참여해야 합니다. 변명은 없습니다. 각 학생은 시즌 당 한 (1) 개의 사유 결석 패스가 허용됩니다. 이 1 회 패스를 사용한 후에는 추가 예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습 없음 = 플레이 없음

일관성 및 헌신

학생이 스포츠 팀의 직책을 수락하면 팀이 모든 연습과 게임에 참여하고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학생들은 학생 및 코치와 여러 차례 미팅을 갖지 않고는 어떤 이유로 든 영구적으로 팀에서 퇴장당하지 않습니다. 학부모/보호자는 시즌이 시작될 때 코치와 모든 갈등을 전달해야 합니다.

교복 정책

Bright Star Schools는 선택의 학교입니다. 효과적이고 건강하며 안전한 학습 환경을 촉진하고 유지하기 위해 Bright Star Schools의 교장, 교직원 및 학부모는 이 통일 복장 규정 정책을 개발했습니다. 이 복장 규정 정책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깨끗하고 전문적인 복장을 가르치고, 수업과 캠퍼스에서 산만 함을 방지하고, 학생들 간의 경쟁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교육함으로써 비즈니스 세계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모든 학생들은 이 교복 복장 규정을 준수하는 옷을 매일 학교에, 그리고 견학 중에 입어야 합니다.

이 균일 한 복장 규정 정책은 캘리포니아 헌법 제 9 조, 섹션 5 및 의회 법안 1575 (2013 년 1 월 1 일 발효)의 조항에 따라 Bright Star Schools 이사회에서 채택했습니다. 공립학교의 교육 활동 참여에 대한 모든 학생 비용.

학생복은 잘 관리되고 적절한 크기여야 합니다. 옷은 지나치게 크거나 꽉 끼지 않아야 합니다. 의복에는 방해가되거나 부적절하거나 저속하거나 폭력적이거나 차별적인 패턴, 디자인 또는 로고가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학생들은 학습 환경에 적합하고 안전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종교적 또는 기타 이유로 본 교복 복장 규정 정책의 면제를 요청하는 학생 또는 부모는 Bright Star Schools 사무실에 직접 연락해야 합니다.

복장 규정 준수

어떤 학생도 교복 복장 규정 위반으로 학교에서 집으로 보내지거나 학교 출석이 거부되거나 학업 적으로 처벌을 받거나 차별을받을 수 없습니다. 학생이 매일 캠퍼스에 도착하기 전에 학부모 님 께서 저희 정책을 확인하도록 도와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학생이나 가족이 교복과 관련하여 특별한 필요 나 상황이있는 경우 학년 수준의 카운슬러 나 학교 교장에게 문의하십시오.
복장 준수 비용과 관련된 모든 불만은 이사회가 승인하고 학생 및 가족 핸드북에 게시 된 균일 불만 절차 정책에 명시된 학교의 균일 불만 절차를 통해 학교 교장에게 전달되어야합니다.

옷 코드

- 학생들은 셔츠와 하의, 또는 롬퍼/드레스와 신발을 착용해야 합니다.
- 셔츠는 상체 전체를 덮어야 하고 스트랩 너비는 2인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 학생들은 신발을 신고 달릴 수 있어야 하고 신발은 발가락과 발꿈치를 가려야 하며 바퀴가 있거나 일체의 방해가 되는 기능이 있는 신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하의, 롬퍼, 드레스는 허벅지 중간 길이를 넘어야 합니다모든 의복은 불투명한 재료로 만들어야 합니다.
- 속옷과 사적인 부분은 완전히 가려야 합니다.
- 학생들은 불법적인 물건이나 활동, 증오심 표현, 마약, 과도한 노출, 차별적, 폭력적인 언어, 부적절한 언어, 욕설에 대한 이미지 및/또는 언급을 착용할 수 없습니다.
- 종교적 또는 문화적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에서 모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휴대폰 정책

연령에 적합한 매체 접근을 모니터링하고, 학습 및 사회적 발달에 대한 집중을 유지하기 위하여, 학생들은 학교에 휴대폰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응급 상황의 경우 학교 전화를 사용하게 됩니다. 학생이 학교에 전화를 가져올 경우, 교직원은 재량하에 학생의 전화를 압수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압수되었다면 학교에서 학생의 학부모/보호자에게 압수 사실을 알리고, 반드시 학부모/보호자가 당일 프론트 오피스가 마감하기 전에 휴대전화를 가지러 와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가지러 오지 않을 경우 학교에서는 분실 또는 도난된 전화에 대한 일체의 클레임에 책임을 지거나 조사하지 않습니다.

동문 지원 및 대학 성공 팀

Bright Star Schools의 동문 지원 및 대학 성공(ASCS) 프로그램은 학생이 성공적으로 대학을 탐색하고 졸업 후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총체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 시 자동으로 ASCS 프로그램에 등록됩니다. ASCS 팀은 다음을 제공하기 위해 모든 단계에서 옆에 있을 것입니다.

- 학업 상담
- 사회 정서적 지원
-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편입 지원
- 대학 및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접근 및 옹호
- 재정 지원 신청 지원
- 직업, 인턴십 및 장학금 기회
- 진로 상담

고도로 훈련된 ASCS 코디네이터는 6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부터 최대 6년 동안 무료로 학생의 여정을 지원할 것입니다. 학생의 ASCS 코디네이터의 연락처 정보에 액세스하려면 "학교 연락처 정보"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전체 **Bright Star Schools** 대상 정책

BRIGHTSTAR
SCHOOLS

Stella Elementary Charter Academy, Stella Middle Charter Academy, Stella High Charter Academy, Valor Academy Elementary, Valor Academy Middle, Valor Academy High, Rise Kohyang Elementary, Rise Kohyang Middle, Rise Kohyang High

2023년 1월 31일 업데이트됨

거버넌스 **6**
Bright Star Schools 위원회 회의 6
학교 위원회 7

방문자 및 자원봉사자 정책 **7**
학부모 참여 비전 7
방문자 및 자원봉사자 행동 기준 7
방문자 정책 8
자원봉사 정책 8
알림 게재 11

출석 정책 **12**
무단결석 정책 12
출석 정책 12
결석 처리 면제 12
무단 결석 13
결석의 확인 방법 13
출석 패널 13
과도한 무단 결석의 결과 14

무료 및 할인 가격 식사 정책 **14**

특수 교육 정책 **17**
특수 교육을 위한 식별, 위임 및 평가 17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 팀 회의 17
절차상 보호 17
비공립, 비종파 서비스 17
자원 전문가 프로그램 또는 통합교육 프로그램 18
교통 18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개인의 수에 대한 정보 19
독립 교육 평가(IEE) 19

학생 약물 정책 **21**
정의 21
Charter School 지원을 동반한 약물 투여 22
직원 교육 및 비상 대응 22
저장 및 기록 보관 23

인신매매 방지 정책 **23**
학생 지침 23
학부모/보호자에 전송되는 정보 24

직원 교육 24

학생 교통 정책 24

정의 24
학생에게 에스코트가 필요한지의 여부 결정 24
버스 절차 및 지침 25

인터넷 안전 및 기술 사용 정책 28

정의 28
허용 가능한 사용 정책 29
승인 및 금지된 활동 29
오용의 결과 30
개인 정보 보호 및 모니터링 30
개인 소유 기기 31
인터넷 안전 31
올바른 온라인 행동 교육 32
크롬북 정책 및 절차 32
학생 인터넷 사용 동의서 36

공통 고발 정책 및 해결 프로세스 38

이 정책에서 다루는 우려사항 유형 39
가족 우려사항의 비공식적 해결 39
가족 우려사항의 공식적 해결 39

IX편, 괴롭힘, 위협, 차별 및 따돌림 정책 40

IX편, 괴롭힘, 위협, 차별 및 따돌림 조정담당자 41
금지된 따돌림 및 괴롭힘의 정의 41
따돌림 및 사이버 괴롭힘 예방 절차 44
고충 처리 절차 45
IX편, 괴롭힘, 위협, 차별 및 따돌림 고발 양식 50

징계 51

징계 기반 정책 51
금지된 활동 또는 행동 52
금지 물품 소지 53
학문적 정직성 및 무결성 53
학교 부지 무단 침입 54
교내 정학 54

정학 및 퇴학 정책과 절차 55

위반사항 열거 55
정학 절차 58
퇴학시킬 권한 60
퇴학 절차 60

공통 고발 처리 정책 **63**
범위 63
준수 담당자 65
알림 65
절차 66
CDE에 항소 68
민법 구제책 69
공통 고발 처리 절차 양식 69

교육 기록 및 학생 정보 정책 **71**
정의 71
인명록 정보 공개 73
학부모 및 적격한 학생 대상 연례 통지 73
교육 기록과 관련된 학부모 및 적격한 학생의 권리 73
교육 기록 및 인명록 정보의 공개 75
이민 목적을 위한 학생 정보의 요청 및 공개 76
학생 기록의 디지털 저장, 관리 및 검색에 대한 계약 77
기록 보관 요건 77
고발 78
기록 보유 78

표현 정책 **80**
정의 80
캠퍼스 내 표현 81
회람, 비공식 신문 및 기타 인쇄물의 배포 81
공식 학교 출판물 81
단추, 배지 및 기타 상징적 표현의 휘장 82
캠퍼스 외 표현 82
집행 83
고발 및 항소 83

직원/학생 상호작용 정책 **84**
체벌 84
경계선의 정의 84
허용 불가한 행동 및 허용 가능한 행동 84
위반 보고 86
조사 86
결과 87

차별 금지 성명 **87**

노숙 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 정책 **88**
노숙 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에 대한 정의 88

Charter School 연락 담당자 88
등록 89
거주지 설문지 89
동등한 서비스 90
교통편 90
과외 활동 자격 90
방과후 프로그램 비용의 면제 90
전문성 개발 90
고등학교 졸업 요건 91
교과 과정 수용 92
통지 92
연간 정책 검토 92
학교 웹사이트 게시 92

위탁 및 이동 청소년 교육 정책 92
정의 92
위탁 및 이동 청소년 연락 담당자 94
학교 안정성 및 등록 95
교통편 96
결석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 96
교과 과정 및 학점 양도 96
졸업 요건의 적용 가능성 97
과외 활동 자격 98
방과후 프로그램 비용의 면제 98
학생 기록 98
비준수에 대한 고발 98

504항 정책, 절차 및 부모의 권리 98
A. 504항(Section 504) 정책 98
B. 정의 99
C. 회부, 평가 및 평가 절차 102
D. 504 계획 103
E. 학생의 진도 검토 103
F. 절차상 보호 103
F. 정학 및 퇴학, 장애가 있는 학생의 특별 절차 106
G. 식별, 평가, 조정 및 배치에 대한 학부모/학생의 권리 108

청소년 자살 예방 정책 110
자살 예방을 위한 종합 전략 계획 111
예방책 111
개입 및 비상 절차 114
자원 117

캠퍼스 수색 및 압수 정책 **119**
발견에 대한 성명 119
정의 119
통지 120
학생에 대한 수색 120
비디오 감시 및 기타 녹화 장치 122
체온 검사 122

학생 건강 정책 **123**
시행, 모니터링, 책임 및 지역 사회 참여 123
정책에 대한 연례 통지 124
3년 단위 진행 상황 평가 124
정책 수정 및 업데이트 124
지역 사회 참여, 봉사 및 소통 124
영양 125
신체 활동 126
학생의 건강을 증진하는 기타 활동 127
지역 사회 제휴 127

학부모 및 가족 참여 정책 **127**
Charter School의 기대와 목표 127
I편 프로그램에 대한 학부모 참여 128
학교-학부모 협약 128
참여 역량 구축 129
접근성 130

선물 정책 **130**

학생 비용 정책 **131**

담배 없는 학교 정책 **132**

근무 허가 **133**

수학 배치 정책 **133**

연례 통지 **135**
504항 135
영어 학습자 135
영양학적으로 적절한 무료 또는 할인 가격 급식 135
차별 금지 성명 137
스쿨버스 및 승객 안전 138
동물 해부 138
학교 안내서의 이용 가능 여부 139
Cal Grant 프로그램 공지 139

뇌진탕/두부 부상 139
인신매매 방지 139
구강 건강 평가 139
성 건강 교육 139
교사 자격 정보 140
특수 교육/장애 학생 140
기록 이의 신청 및 인명록 정보를 포함한 학생 기록 141
급성 심정지 예방 및 자동제세동기 143
주 시험 143
약품 투여 143
위탁 및 이동 청소년 교육 144
노숙 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 148
예방접종 150
정신 건강 서비스 151
임신 및 육아 중인 학생 152
학부모 및 가족 참여 정책 153
Cal Grant 프로그램 공지 153
캠퍼스 수색 및 압수 153
당뇨병 153
재정 지원에 관한 정보 154
비자발적 퇴학 절차 154
학교 자산의 분실 또는 파손 155
학교 안전 계획 155
개인 신념에 대한 설문 조사 155
담배 없는 학교 155
공통 고발 처리 절차(“UCP”) 155
소셜 미디어에서 학습한 학생 정보의 사용 158
사고 158
학교 안전 계획 159
아동학대 신고 159
자살 예방 정책 160
발열/질병 160

거버넌스

Bright Star Schools 위원회 회의

Bright Star Schools 위원회는 다양한 기술, 경험 및 배경을 대표하는 구성원으로 이루어집니다. 위원회에는 법률, 건설, 교육, 금융, 소통 및 기술 전문가가 포함됩니다.

위원회는 보통 격월로 만나 대규모의 조직적 토론을 검토 및 논의하고 통상 모든 학교나 주요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에 투표합니다. 모든 회의는 일반에 공개됩니다. 이러한 회의들의 날짜와 시간,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의 웹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모든 회의는 원격 회의도 진행되며 각 의제에서 전화 접속이 가능합니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장애 관련 조정이나 수정을 원하시는 경우, 소속 학교의 메인 사무실이나 board@brightstarschools.org로 연락하여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언하고 싶은 의제 또는 비의제 항목이 있는 경우 각 회의가 시작될 때 공개 의견을 위한 시간이 있습니다. 발언자에게는 3분(번역이 필요한 경우 6분)이 주어집니다. 저희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환영하며 권장합니다. 주 규정 준수 법률로 인하여, 위원회에서는 발언자에게 직접 응답할 수 없습니다.
발언에 관심이 있거나 발언 과정에 대해 질문이 있는 경우, board@brightstarschools.org로 이메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교 위원회

SSC(학교 위원회)는 학교 개선 계획을 개발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 협력하는 교사, 학부모, 행정관 및 관심을 가진 지역 사회 구성원 단체입니다. 연방 기금을 받는 모든 학교에 법적으로 요구되는 의사 결정 기관입니다.
각 Bright Star School에서는 학교 행정관, 학부모, 학생 및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SSC를 유지합니다. 학교 위원회 회의 날짜와 시간은 각 개별 위원회에서 정합니다.

선거는 매 학년도 가을에 실시됩니다. 소속 학교의 학교 위원회에서 봉사하는 데 관심이 있으실 경우, 소속 학교의 메인 사무실로 연락하여 자세한 정보를 알아 보십시오.

방문자 및 자원봉사자 정책

학부모 참여 비전

Bright Star Schools는 학부모와 가족의 참여를 소중히 여기며, 학생의 학업 성공에 있어 가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더 중요하게는, 학생의 학습 성공을 예측하는 가장 큰 요인은 부모의 참여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학교 지역 사회 내에서 일어나는 연속적인 활동과 더 훌륭한 Bright Star School 조직을 위한 공헌에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방문자 및 자원봉사자 행동 기준

Bright Star Schools는 모든 학부모가 자원봉사, 캠퍼스 방문 및/또는 학교 행사에 참여하는 동안 전문적이고 예의를 갖춘 방식으로 행동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기대합니다.

- 프론트 오피스에서 서명을 한 후, 방문자 패스를 받아 착용하십시오.
- 다른 개인의 신체적 및 정서적 안전, 건강이나 안녕을 보장합니다.
- 적절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 다른 모든 개인에 대한 존중심을 갖습니다.
- 알코올 또는 불법 약물 및 규제 약물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무기나 위험한 물건이 없는 캠퍼스 유지
- 학교 및 개인 재산을 보호하고 유지합니다.
- 발가락이 보이지 않는 신발로 깔끔하고 정숙한 외관을 유지합니다.

방문자 정책

"*방문자*"는 Charter School의 직원이나 재학생이 아닌, 학교 건물에 들어가려는 모든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학생의 부모나 보호자가 아닌 모든 방문자는 방문에 대해 반드시 구체적이고 교육적으로 적절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1. 학교 운영 시간 중의 방문은 먼저 교사 및 교장이나 그 피지명인과 최소 24시간 이전에 일정을 조정해야 합니다. 회의가 필요할 경우, 최소 24시간 전에 수업 시간 외에 교사와 약속을 정해야 합니다. 수업 시간에 교실을 방문하고자 하는 학부모/보호자는 반드시 먼저 담임교사 및 교장이나 피지명인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2. 모든 방문자(자원봉사자 포함)는 정규 학교 운영 시간 중의 일체의 학교 건물이나 부지에 들어오는 즉시 방문자 로그북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시, 방문자는 성명, 주소, 나이(만 21세 미만인 경우), 학교 부지 입장 목적 및 신분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3. 학교 안전 및 보안 목적으로, 교장 또는 피지명인이 학교 구내에 있는 동안 방문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가시적인 수단을 고안할 수 있습니다.
4. 모든 방문자는 현 시점에서 의무화되고 권장되는 건강 및 안전 프로토콜을 준수해야 합니다. 전염병(예: 발열, 기침) 징후를 보이는 방문객(자원봉사자 포함)은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보건부의 권고 또는 요청이 있는 경우, 방문객은 마스크와 같은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Charter School은 학교 지역 사회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를 시행할 권리를 보유하며, 여기에는 학생 및 직원에게 동일한 정도로 입학 전에 이마 온도를 확인하도록 요구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5. 방문자가 정부 관료/공무원(현지 법 집행관, 이민 집행관, 사회복지사, 지방검사 또는 미국 변호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일 경우, 해당 관료/공무원은 학교 접근을 승인하는 모든 문서 또한 제출해야 합니다. Charter School은 법 및/또는 일체의 법원 명령, 영장 또는 관료/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학생의 인터뷰 또는 수색을 허용하기 전에,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알리기 위해 합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관료가 제공한 문서의 사본과 만남 시에 나온 메모들은 법에 따라 Charter School에서 유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무부 Charter School 위원회 및 아동 법무국(BCJ@doj.ca.gov)에서는 법 집행관이 법무장관의 권고에 따라 이민 집행 목적으로 학교 또는 학생에게 접근하려는 시도에 대해 적시에 통보받을 것입니다.
6.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교장의 승인하에, Charter School은 학기당 2회를 초과할 경우 교장이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7. 캠퍼스에 있는 동안, 방문자는 가능한 한 조용히 교실에 들어가고 나와야 하며 허용되지 않는 한 학생, 교사 또는 기타 교육 보조자와 대화하거나 일체의 학교 활동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교사 및 교장의 서면 허가 없이는 교실에서 전자 청취 장치 또는 녹음 장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8. 방문자는 캠퍼스를 떠나기 전에 메인 사무실의 방문자 로그북에 서명해야 합니다.

자원봉사 정책

Bright Star Schools에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될 기술, 재능 또는 자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소속 캠퍼스의 구체적인 요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거나 저희와 기술 및 자원을 공유하고자 하실 경우, 소속 학생 캠퍼스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아이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원봉사자*"란 보상을 받지 않고 Charter School의 승인하에 자발적으로 Charter School에 서비스를 제안 및 제공하는 모든 자로 규정됩니다.

교실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데 관심이 있는 학부모 또는 보호자는 다음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1. 자격을 갖춘 직원의 직접적인 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자원봉사를 하게 될 자원봉사자는 (1) 자격을 갖춘 직원의 직접적인 감독 없이 자원봉사 전에 지문을 채취하고 (2) 신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자원봉사자는 또한 초기 자원봉사자 배정 시에 결핵 위험 평가를 제출한 자이며 결핵 위험 요소가 밝혀졌을 경우, 검사를 받았으며 감염성 결핵이 없다고 판명되었음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Charter School에서 파일로 보관합니다. 위험 요소가 확인되지 않으면 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Charter School 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이 단락은 학생과 빈번히 또는 장기간 접촉할 필요가 없는 직무의 자원봉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자원봉사는 교장의 승인이 있지 않은 한, 최소 24시간 전에 미리, 반드시 담임교사 및 교장 또는 피지명인과 협의해야 합니다.
4. 교실에서 자원봉사를 하기 전, 자원봉사자는 교사와 소통하여 자원봉사 필요에 대한 기대치를 논의해야 합니다. 학급 자원봉사자는 학급 전체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자신의 자녀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학급 자원봉사자는 반드시 담임 교사 또는 보조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교실 규칙은 교사의 집중을 최소한으로 소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자원봉사자가 교사 또는 보조자의 지시에 따르기가 불편할 경우, 자원봉사자는 해당일의 자원봉사자 자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5. 자원봉사자가 학생에 대해 얻은 정보(예: 학업 성과 또는 행동)는 엄격한 기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자원봉사자는 가족 교육 권리 및 개인 정보 보호법("FERPA") 정책을 읽고 이해했으며 준수하는 데 반드시 동의해야 합니다.
6. 자원봉사자는 이 정책의 다른 부분에 나와 있는 기타 모든 지침에 따르고 그 적용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아래 기재된 대로 메인 사무실에서의 등록 및 캠퍼스를 떠날 시의 보고 절차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7. 학부모의 자원봉사는 권장되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모든 자원봉사 시간은 학교에서의 학부모 참여에 대한 데이터를 유지 관리할 목적으로 추적됩니다.

자원봉사 기회 및 일정

자원봉사 기회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캠퍼스 안전 감독하기(예: 도착 및 하차 교통, 점심 놀이 시간)
- 사무실 직원을 보조하기
- 현장학습 감독하기(mini-LEL)
- 학교 행사 활성화
- 모금 활동
- 초청 연설자로 봉사하기
- 게시판 및 캠퍼스 꾸밈 개선하기
- 학부모 리더로 봉사하기(학교 위원회, 학부모 대사 등)

"자원봉사 단계"가 완료되면, 자원봉사자는 사무실 직원을 통해 봉사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취소해야 할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사무실에 알려 주십시오. 최대한 많은 인원을 포함시키기 위해, 자원봉사 시간은 현장 행정 담당자의 재량하에 1인당 주당 5-7시간으로 제한됩니다.

자원봉사 단계

학생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 다음 단계가 시행됩니다. 심사 과정의 특성상, 완료까지 2-4주 소요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십시오. 이 과정은 매 학년도에 반드시 완료되어야 합니다.

1. 자원봉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귀하에게 한 곳이 넘는 Bright Star Schools에 학생이 있을 경우, 반드시 각 사무실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운전면허증/신분증을 학교 사무실로 가져가 사진 복사합니다. (원본만 가능, 사진 복사본은 불가)
3. 자원봉사자 및 현장학습에 대한 지구 정책을 검토합니다. 자원봉사 지원서에 서명함으로써 귀하는 이러한 정책을 유지하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자가 캠퍼스 또는 현장학습 감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단계도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4. 항목 (1) 및 (2)를 완료하면 Bright Star Schools에서는 완료할 결핵 위험 평가 검사 및 배경 조사를 준비합니다. (Bright Star Schools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5. 결핵 진단서를 학교에 가져가서 사진 복사하십시오. (사진 복사한 사본이 허용됩니다.
6. 신원 확인 결과가 접수되면,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를 시작할 수 있는 공식 허가를 받게 됩니다.

자원봉사 지원 및 현장학습 관련 정책

자원봉사자는 학교 캠퍼스와 현장학습에서 학교 규칙 및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현장학습의 인솔자 역할을 하는 학부모 또는 보호자는 활동에 다른 어린이를 동반할 수 없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책임은 그들에게 배정된 학생들을 모니터링하고 감독하는 것입니다. 학교 및 해당 수업에 등록된 학생만 현장학습에 허용됩니다.

활동 감독관은 보호자가 자신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해 잘 알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인솔자로서 성인과 교직원의 첫 번째 임무는 참여 학생들의 안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교육구 직원이나 현장학습 참여 학생의 부모가 아닌 경우, 인솔자는 반드시 만 2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비상 상황은 가능한 한 빨리 행정실과 직원에게 보고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상황에는 심각한 부상, 질병 또는 사망, 마약/알코올 중독 또는 소지, 경찰에 체포됨 및/또는 학생들이나 타인의 안전과 안녕에 위협이 되는 극단적인 반항, 호전성 또는 불복종 사례가 포함됩니다.

행동 강령

Bright Star Schools는 모든 학부모가 캠퍼스 방문 또는 학교 행사에 참여하는 동안 전문적이고 예의를 갖춘 방식으로 행동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행위는 금지됩니다.

- 다른 개인의 안전, 건강 또는 안녕을 위협하는 고의적인 행위.
- 학생, 다른 교직원과의 떠들썩한 장난.
- 상스럽거나 모욕적이거나 기타 허용되지 않는 언어의 사용.
- 고함이나 욕설을 포함할 수 있는 명백히 적대적인 행동.
- 알코올이나 불법 약물 및 규제 약물을 소지하거나 영향 하에 있음.
- 총기 또는 기타 위험한 무기 소지.

- 학교 자산의 도난 또는 오용.
- 어떠한 경우에도 학부모는 학생이나 교직원을 언어적 또는 신체적으로 위협할 수 없습니다.

지원에 대한 대가로 학부모는 존중어린 대우를 받고, 적시에 소통을 하며, 해당 학부모의 학생의 교육 파트너로 대우받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치를 준수하지 않으면 구두 경고 및/또는 캠퍼스에서 추방될 수 있습니다.

이 지침을 위반하면 해당 행동을 중단하라는 구두 경고 및 서면 경고가 발생합니다. 해당 행동이 계속될 경우,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학부모를 캠퍼스에서 금지하는 또 다른 서면 경고가 발행됩니다.

자원봉사 또는 방문의 제한

1. 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본 정책을 위반하는 방문자 또는 자원봉사자를 관리하거나 신고하는 데 경찰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방문자 또는 자원봉사자의 존재가 교사, 다른 직원 또는 학생에게 혼란이나 신체적 상해의 위협이 될 것이라고 생각될 경우, 방문자 또는 자원봉사자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교장은 방문자의 존재 또는 행위가 학교 활동의 평화로운 수행을 방해하거나, 학교나 학생 또는 학교 활동을 방해할 경우, 캠퍼스에서 적법한 업무가 없는 방문자에게 캠퍼스를 떠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교장 또는 피지명인에게 추방 지시를 받은 모든 방문객은 달력일 기준으로 최소 7일 동안 Charter School 캠퍼스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4. 교장 또는 피지명자는 방문자가 캠퍼스에 있을 권리가 있더라도 해당 인물이 고의로 Charter School의 질서 잡힌 운영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을 때마다 최대 14일 동안 캠퍼스에 있는 것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교장이 해당 인물의 존재가 학교 캠퍼스의 질서 잡힌 운영에 대한 실질적이고 물질적인 위협을 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을 때마다 동의는 회복됩니다. 동의가 철회된 자는 2주 이내에 철회에 대한 청문회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 요청에는 청문회 통지가 발송될 주소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교장은 그러한 청문회를, 요청 접수일로부터 달력일 기준 7일 이내에 승인하고 즉시 해당 인물에 대한 해당 청문회 시간, 장소 및 날짜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청문회는 교장, 그리고 학교장, 교육감 또는 학생 및 가족 서비스 담당 교감 등의 Bright Star Schools 행정 담당자와의 회의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5. 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등록하지 못했거나 등록 권리가 거부 또는 철회된 방문자에게 즉시 학교 부지를 떠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자가 추방 지시를 받았을 때, 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방문자가 게재된 요건에 따르지 않고 학교에 다시 들어올 경우 해당 방문자가 경범죄 처리될 것임을 방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6. 이 정책은 학부모/보호자가 유효한 접근 금지 명령, 보호 명령 또는 관할 법원에서 발행한 양육권 또는 방문 명령과 충돌할 경우 학부모/보호자가 캠퍼스에서 자원봉사하거나 방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알림 게재

각 캠퍼스 입구에는 등록이 필요한 시간대, 교장 또는 피지명인의 사무실 위치, 해당 사무실까지 가는 경로, 이 정책을 위반할 경우의 불이익을 명시한 표시를 게재해야 합니다.

불이익

1. 캘리포니아 형법에 따라, 방문자가 떠나라는 요청을 받은 후 떠나지 않거나 방문자가 추방 지시를 받은 후에도 게재된 요건에 따르지 않고 돌아올 경우, 해당 방문자는 최대 $500.00(500달러) 또는 최대 6개월 동안 카운티 감옥에 수감되거나, 또는 둘 다에 해당되는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2. 캘리포니아 교육법 44811항에 따라, 수업이나 과외 활동을 실질적으로 방해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수반하는 방문자는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며, 첫 번째 유죄 판결 시 $500.00(500달러) 이상 $1,000.00(천 달러) 이하에 해당되는 벌금이 부과되거나, 1년 이하의 카운티 감옥 구금, 또는 벌금과 구금 둘 다에 해당됩니다.
3. 방해 행위는 Charter School이 방문자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추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방문자는 최대 3년 동안 어떤 목적으로든 학교 부지에 오거나 학교 활동에 참석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문제 또는 우려사항

학부모에게 문제나 우려사항이 있는 경우 먼저 담당 상담사에게 연락하여 문제를 논의해야 합니다. 상담사에게는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는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실, 교사 및 가족과 협력할 것입니다.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행정관은 캠퍼스에 누가 허용되는지 결정할 최종 재량권을 갖습니다.

출석 정책

Bright Star Schools("Bright Star" 또는 "학교")는 현재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 9개의 공립 Charter School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보호자는 자녀가 정기적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Bright Star Schools는 모든 학생들에게 학교가 열리는 매일마다 출석을 기대합니다. 출석률이 높은 학생은 출석률이 불량한 또래에 비해 학업, 사회적, 정서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냅니다. 출석률이 우수할 경우 축하를 받을 것입니다. 다음은 학생이 책임을 져야 하는 출석 정책 및 절차입니다.

무단결석 정책

학년 초에 학생이 학부모의 연락 없이 한 해의 첫 주 전체에 결석하는 경우, 해당 학생은 무단결석으로 표시됩니다. 사무실에서는 학생을 퇴학시키기 전에 학생의 등록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시도를 여러 번 실시합니다. 그러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학생은 학교 명단으로부터 제외되고 대기자 명단의 다른 학생이 입학될 것입니다.

출석 정책

이 무단 결석 정책("정책")의 목적은 교직원, 학부모, 보호자 및 학생에게 학교 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고 모든 학생이 캘리포니아의 의무 교육법에 따라 학교에 참석하며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 기회를 완전히 누리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 정책은 Bright Star의 모든 학교에 적용됩니다.

결석 처리 면제

학생의 결석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면제됨"으로 간주됩니다.

1. 학생의 정신적 또는 행동적 건강을 위한 결석을 포함한 개인적 질병(연속 2일을 초과할 경우, 반드시 의사의 인증이 동반되어야 함)
2. 카운티 또는 시의 보건 담당관의 지시에 따른 격리
3. 의료, 치과, 검안사 또는 기타 유사한 건강 관련 예약. 그러나, 가족들은 학교 수업 시간 외에 그러한 예약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a. 7-12학년 학생은 학생의 학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밀 의료 서비스를 받을 목적으로 학교에서 결석할 수 있습니다.
4. 학생의 직계 가족을 위한 장례식 참석. 장례식이 캘리포니아에서 열릴 경우 해당 결석이 1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캘리포니아 외부에서 열릴 경우 3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5. 학생의 교장 또는 피지명인이 결정한 구체적인 일수 동안, 전투 지역 또는 전투 지원

위치로의 배치로 임무를 명받거나, 해당 지역에서 휴가를 왔거나, 막 돌아온 현역 복무 중인 학생의 직계 가족 구성원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6. 미국 시민이 되기 위한 학생의 귀화식 참석.
7. 임신 중이거나 육아 중인 학생을 위한 승인되는 육아 휴가는 최대 8주이며, 학생의 주치의가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연장될 수 있습니다.
8. 중학생 및 고등학생은 시민 행사 또는 정치 행사에 참가한 이유로 학년당 1일의 장기 결석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투표, 여론 조사, 파업, 공개 논평, 후보자 연설, 정치 또는 시민 포럼, 시청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9.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정당한 개인적 사유로 학부모 또는 보호자의 사전 서면 요청이 있었고 학생의 교장 또는 피지명인이 승인할 경우.
    a. 법정 출두,
    b. 위에 명시된 내용 이외의 장례식 참석,
    c. 휴일 또는 학생 종교 의식 준수, 또는
    d. 종교 수련회 참석.

위에서 설명한 결석의 목적상, "직계 가족"은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 형제자매(생물학적, 입양 또는 의붓형제자매), 조부모, 또는 학생의 가정에 살고 있는 기타 친척을 의미합니다.
면제된 결석으로 인해 결석한 학생은 합리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면제된 결석 기간 동안 놓친 모든 과제와 시험을 완료할 허가를 받으며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만족스럽게 완료하면 전체 학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이 결석한 수업의 교사는 어떤 시험 및 과제가 정당한 결석 기간 동안 학생이 놓친 시험 및 과제와 합리적으로 동등한지(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음) 결정해야 합니다.

학교 시간 외에 약속 및 가족 휴가 일정을 잡으십시오. 학생의 비상 연락망 정보에 기재된 학부모 또는 지정된 보호자가 직접 프론트 오피스에 와서 학생을 데려가는 경우 학생은 부분 결석으로만 학교를 떠날 수 있습니다. 학생이 떠나기 전에 데려가는 자의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학생의 비상 연락망에 기재되지 않은 보호자가 학생을 데려가야 하는 경우, 행정실 직원이나 학생의 상담사를 통해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모든 학생들은 일정이 끝난 후 합리적인 시간 내에 학교로 돌아와야 하며, 캠퍼스로 돌아오면 반드시 프론트 오피스에서 다시 서명해야 합니다.

무단 결석

위의 면제된 결석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결석은 "무단" 결석으로 간주됩니다. 무단 결석의 예로는 가족 여행이나 휴가, 형제자매 돌보기, 통학 교통편의 부족으로 인한 수업이나 기타 의무적인 학교 활동 불참, 또는 그 이외의 수업 결석이 포함됩니다.

결석의 확인 방법

의무교육법의 시행 목적으로, 결석 확인이 필요합니다. 학부모 또는 보호자는 면제된 결석이든 무단 결석이든, 일체의 결석에 대한 사유를 반드시 24시간 이내에 학교에 알려야 합니다. 학생의 결석을 보고할 때, 학부모 또는 보호자는 반드시 학생이 결석한 날마다 학생의 해당 학교 캠퍼스 사무실에 전화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전화를 받지 못할 경우, 교직원은 결석을 확인하기 위해 학부모나 보호자에게 연락을 시도할 것입니다.

모든 결석에서, 학부모 또는 보호자는 결석 후 학생이 학교로 돌아올 때 결석 사유를 확인하는 만족스러운 서면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정책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다음 형식의 문서로 결석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서면 메모 또는 이메일.
- 개인적 진료 예약 또는 질병으로 인한 결석 사유를 확인하는 의사의 소견서.

결석 확인에는 반드시 결석 날짜, 결석 사유(들)가 포함되어야 하며, 학부모, 보호자 또는 해당 시 의사의 서명이 꼭 있어야 합니다. 이메일 확인은 학부모 또는 보호자와의 전화 확인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질병으로 인한 만성 결석 패턴을 보일 경우, 교직원은 일체의 추가 결석에 대해 의사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결석은 무단 결석으로 간주됩니다. 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자신의 재량하에, 결석이 면제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석 패널

정규 학교 출석은 학습의 기본입니다. 이 정책의 목표를 실행하기 위하여, Bright Star는 출석 패널("패널")을 활용합니다. 패널의 주요 목표는 학교 출석을 보장하고 출석 관련 학부모 회의 및 청문회에서 결정을 내리기 위해 가족과 협력하는 것을 돕기 위함입니다. 패널은 학생의 무단 결석이 학교로부터의 자발적인 자퇴를 구성하는지의 여부를 고려 및 결정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패널의 결정에 대한 항소는 없습니다.

패널은 최소 3명의 학교 행정 위원으로 구성되며, 여기에는 총괄 책임자가 선택한 학교 행정관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모든 특정 학생의 교장은 해당 학생 관련 회의 및 결정을 위한 패널 멤버로서 참여해서는 안 되나, 비심판적 역할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무단 결석의 결과

학교는 한 학년도에 발생하는 무단 결석과 관련하여 다음의 절차 및 중재를 시행합니다.

- **무단결석 2회:** 학교 사무실 관리자가 결석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집으로 전화할 것입니다.
- **무단결석 4회:** 학교 상담사가 집에 전화를 걸어 출석에 대한 장벽을 결정하고 자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학생의 학교 행정관이 집으로 전화할 수도 있습니다.
- **5차 무단결석 시:** 학생의 상담사와 다른 교직원 한 명이 가정 방문을 실시하여, 학생의 학교 출석 개선을 보장하는 데 어떤 자원이 필요한지 판단하고 학부모/보호자에게 학생의 결석 상태를 알리며, 학생의 기록을 검토하고 개입 계획을 세웁니다. 학부모 또한 이 출석 정책에 대해 재알림을 받을 것입니다.
- **6번째 무단 결석 이후:** 교장 또는 피지명인이 결석 사유(들)를 논의하기 위해 전화로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연락할 것입니다. 학교는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출석 경고 서신을 보내고 학교가 학생의 출석 개선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패널과의 의무 출석 회의 일정을 잡을 것입니다. 학생이 학년도 중에 일체의 추가 무단 결석을 하는 경우, 학교는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자발적으로 학생을 학교에서 퇴학시키려는 의도 및 희망의 표현으로서 그러한 무단 결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7번째 무단 결석 이후:** 학교는 이를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자발적으로 자녀를 학교에서 자퇴시키려는 의도 및 희망의 표현으로 해석합니다. 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전화로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자발적으로 학생을 학교에서 자퇴시키려는 희망을 확인하는 최종 출석 편지를 보낼 것입니다. 해당 서신은 학부모, 보호자 또는 교육적 권리 보유자가 아동의 무단 결석 및 자발적인 학교 자퇴에 관해 패널이 판결할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청문회는 철회 효력 발생일로부터 수업일 기준 5일 이전에 개최되어야 합니다. 학부모 또는 보호자는 증언과 증거를 제시할 기회가 있습니다.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이 청문회를 요청하거나 출석하지 않는 경우, 학교는 이 요청 또는 출석 실패를 아동의 자발적인 학교 자퇴로 인정하고, 자퇴는 청문회와 같은 날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퇴 발효일에 학교는 학생의 마지막 거주 지역을 교육감에게 통지합니다.

무료 및 할인 가격 식사 정책

Bright Star Schools("Charter School") 운영 위원회("위원회")는 적절한 영양이 모든 학생의 발달, 건강 및 학습에 필수적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Charter School의 급식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저소득 가정 학생의 참여를 용이케 하고 장려해야 합니다.

각 Bright Star 학교 현장에서는 가족이 연방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을 위해 매 등교일에 최소 1회의 영양학적으로 적절한 식사(아침 또는 점심)를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무료 및 할인 가격 급식 신청과 알림

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무료 및 할인 가격 급식 신청서 및 관련 자료에 다음 내용이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

1. 무료 및 할인 가격 급식 신청서는 수업일 중 언제든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연방 국립 학교 급식 프로그램(National School Lunch Program)에 참여하는 아동은 특별 토큰, 특별 티켓, 특별 서빙 라인, 별도의 입구, 별도의 식사 공간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 공공연하게 신원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신청서 패킷에는 간단하고 문화적으로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여 다음의 알림 및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아동이 무료 학교 급식 자격이 되는 경우, 해당 아동은 무료 또는 할인 비용의 건강 보험 자격이 될 수 있다는 알림.
2. 무료 학교 급식 자격이 되는 경우, 자녀가 Medi-Cal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신속한 결정을 내리도록 학교 급식 신청서에 대한 정보를 주 보건부에서 지정한 기관과 공유, 그리고 Medi-Cal 프로그램에 따라 적격성을 결정하는 지역 기관과 공유하도록 하는 신청자의 동의 요청.
3. Charter School은 아동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학교 급식 신청서를 신속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주 보건부에서 지정한 기관과 Medi-Cal 프로그램에 따라 적격성을 결정하는 지역 기관에 전달하지 않을 것이라는 알림.
4. 학교 급식 신청서는 기밀이며, 아동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에 따라 건강 프로그램 등록에 사용하기 위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제외하고, Charter School은 정보를 연방 국토안보부 및 사회보장국을 포함한 기타 일체의 정부 기관과 공유하지 않을 것이라는 알림.
5. 학교 급식 신청서 정보는 신속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주 보건부에서 지정한 기관 및 Medi-Cal 프로그램의 관리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목적으로 Medi-Cal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주 및 지역 기관에 의해서만 사용되며, Medi-Cal 프로그램 관리 이외의 목적으로 연방 국토안보부 및 사회보장국을 포함한 기타 정부 기관과 공유되지 않습니다.
6. 사용 가능한 서비스, 프로그램 요건, 권리와 책임, 개인 정보 보호 및 기밀 유지 요건을 포함한 Medi-Cal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

Bright Star가 무료 및 할인 가격 급식 신청서를 온라인에 게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1. 신청자에게 신청서 제출 방법을 알려주는 해당 언어로 된 지침과 더불어, 미 농무부에서 번역된 신청서를 게시한 인터넷 웹사이트 링크를 포함합니다.
2. 적격성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질문만 완료하도록 요구합니다.
3. 노숙자 또는 이민자 가족을 위한 명확한 지침을 포함합니다.
4. 공공법 113-79 및 105-277에 의해 설정된 개인 정보 보호권 및 공개 보호를 준수합니다.
5. 다음 모든 항목에 대한 링크를 포함합니다.
   i. CalFresh에 대한 온라인 신청서.
   ii. 건강 관리를 위한 온라인 단일 주 신청서.
   iii. "WIC 정보 및 신청 방법"이라는 제목의 주 보건부가 관리하는 인터넷 웹페이지 또는 여성, 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특별 영양 보충 프로그램(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에 가족을 연결하는 주 보건부가 식별한 다른 인터넷 웹페이지.

iv. 시 또는 교육구 내에서 참여가 승인된 여름 점심 프로그램의 인터넷 웹사이트.

무료 및 할인 가격 급식 프로그램에 대한 적격성 및 지속적인 적격성은 캘리포니아 교육부가 제공한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직접 인증

모든 가정에서 무료 또는 할인 가격 급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 특정 상황에서 Bright Star는 추가 신청 없이 학생의 적격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Bright Star는 다음과 같은 학생을 적격자로 직접 인증합니다.

1.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 구성원인 모든 아동은 1966년 아동 영양법하에서 무료 점심 및/또는 무료 아침식사 자격이 됩니다.
2. CalWORKs(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위한 임시 지원 또는 "TANF"라고도 함) 또는 CalFresh 지원을 받는 가구 구성원인 모든 아동.
3. 인디언 보호구역에 대한 식품 배급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는 가구 구성원인 모든 아동.
4. 캘리포니아 교육법에 정의된 위탁, 이민자, 노숙 또는 가출 청소년으로 식별된 모든 아동.

학비를 지불하지 않는 학생이 수치를 당하거나, 다른 대우를 받거나, 학비를 지불하는 학생의 식사와 다른 식사를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위원회의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Charter School이 학생을 징계하여 해당 학생에게 영양학적으로 적절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을 금지합니다.

급식비 미납의 경우

Bright Star는 계정이 마이너스 잔액에 도달한 후 10일 이내에 학생의 학교 급식 계정의 마이너스 잔액을 학부모/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통지를 학부모/보호자에게 보내기 전, Bright Star는 무료 또는 할인 가격 급식에 대해 학생을 직접 인증할 수 있는 모든 선택지와 방법을 모두 사용할 것입니다. Bright Star는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학교 급식비를 미납한, 환급 가능 식사에 적격한 학생이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식사비를 미납했다는 사실로 인해 학생이 선택한 환급 가능 식사를 거부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Bright Star가 마이너스 잔액이 발생한 학생이 무료 또는 할인 가격 학교 급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Charter School은 이 정책에 따라 해당 잔액을 크레딧으로 간주합니다. Bright Star는 이후에 학생이 무료 또는 할인 가격 급식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결정되는 경우, 학생의 부모/보호자가 납부한 학교 급식비를 상환합니다. Bright Star가 학생을 직접 인증할 수 없는 경우, Bright Star는 통지가 포함된 신청서의 종이 사본 또는 전자 링크를 학부모나 보호자에게 제공하고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신청서 제출을 독려합니다.

Bright Star는 상환되지 않거나 연체된 채무가 있는 학생의 신원을 공공연하게 식별하지 않습니다. Bright Star가 미납된 급식비를 회수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 Bright Star는 직접적으로 학생에게 미납된 학교 급식비를 징수하도록 지시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으며 그러한 채무를 회수하는 비용은 채무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Bright Star는 연방 소비자 신용 보호법(15 USC Sec. 1692a)의 80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학부모 또는 보호자로부터 미납된 학교 급식비를 회수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Bright Star는 2 C.F.R.의 200.426항 및 관련 법률에 명시된 비용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미납 급식비에 대한 Bright Star의 회수 정책은 모든 부채에 대한 Bright Star의 회수 절차와 정책, 그리고 주 기관 지침과 일치합니다.

기밀 유지/기록 공개

무료 및 할인 가격 급식 프로그램의 자격과 관련된 모든 신청서 및 기록은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법률에 의해 제공되고 위원회에서 승인하거나 법원 명령에 따라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될 수 없습니다. 위원회는 지정된 직원이 다음의 목적으로 무료 및 할인 가격 급식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 자격에 관한 개인 기록을 사용하도록 승인합니다.

1. 학업 성취도 데이터 세분화
2. 타이틀 1 프로그램 향상 학교로 확인된 일체의 학교에서 대안 지원에 적격한 학생의 식별

학생이 Charter School에서 다른 Charter School, 교육구, 카운티 교육청 프로그램 또는 사립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 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해당 학생의 급식 혜택이 계속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학생의 급식 자격 정보를 다른 교육 기관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프로그램 적격성 및 지역 관리 기금 공식 계산에 사용되는 데이터와 관련된 목적으로 무료 또는 할인 가격 급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의 이름과 자격 상태를 등록된 학생과 같은 가구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Charter School, 교육구 또는 카운티 교육청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지역 관리 기금 공식에 따라 기금 할당을 결정하고 해당 기금의 회계 책임을 평가하기 위해 무료 또는 할인 가격 급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의 이름과 자격 상태를 교육감에게 공개할 수 있습니다.

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학생이 무료 급식에 대해 승인을 받고 신청자가 이 정보의 공유에 동의하는 경우 Medi-Cal 프로그램 참여 적격성을 결정하는 지역 기관에 학교 급식 프로그램 신청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또한 학생이 무료 또는 할인가 급식에 대한 승인을 받았고 신청자가 이 정보의 공유에 동의할 경우, CalFresh에 대한 적격성을 결정하는 지역 기관 또는 영양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적격성을 결정하는 기관에 학교 급식 프로그램 신청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이 정보는 다음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1. 무료 또는 할인 가격 급식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개별 지표는 법률에 의해 달리 승인되지 않는 한, 학생의 영구 기록에 유지되지 않습니다.
2. 무료 또는 할인 가격 급식 프로그램에 개별 학생 참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해 부과된 기타 모든 기밀 유지 요건이 충족됩니다.

특수 교육 정책

Bright Star Schools("Bright Star" 또는 "Charter School") 위원회는 가장 제한이 적은 환경에서 장애 학생에게 적절한 무료 공교육("FAPE")을 제공하기 위해 장애 학생을 식별, 평가 및 서비스할 필요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책은 교육법 56195.8항에 따라 채택되었습니다.

특수 교육을 위한 식별, 위임 및 평가

Charter School은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학생의 식별, 위임 및 평가와 관련하여 해당 주 및 연방법과 규정, LAUSD SELPA 정책을 따라야 합니다.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 팀 회의

Bright Star는 주 및 연방법과 규정, SELPA 정책에 따라 법적으로 적용 가능한 모든 일정 내에서 법적으로 요구되는 구성으로 IEP 팀 회의를 소집합니다.

Charter School은 또한 학생의 일반이나 특수 교육 교사의 요청 시 학생의 수업 배정을 검토합니다. 검토 결과 학생의 배치, 강의, 관련 서비스 또는 이들의 조합에 대한 변경이 필요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경우, 필수 IEP 회의가 소집됩니다. 통합교육(Inclusive Education)의 부회장은 교사의 요청 후 수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검토를 완료할 책임이 있습니다.

절차상 보호

학부모/보호자는 주 및 연방법과 규정, SELPA 정책에 따라 자신의 권리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게 됩니다. 귀하의 절차상 보호에 대한 사본이 필요하실 경우 https://www.brightstarschools.org의 통합교육(Inclusive Education) 페이지에 방문하십시오.

비공립, 비종파 서비스

Bright Star는 교육법 56366항 및 캘리포니아 규정집 5편의 3062항에 따라 Bright Star의 적절한 공립 교육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특수 교육 서비스 또는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주에서 인증한 비공립, 비종파 학교 또는 기관과 계약할 수 있습니다. 비공립, 비종파 학교("NPS") 또는 기관("NPA")과 계약을 체결할 때, Bright Star는 개별 학생의 필요 및 IEP 팀의 권장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IEP 팀은 각 학생의 IEP에서 식별된 목표에 대해 비공립, 비종파 프로그램에 배정된 학생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육법 56366.1항에 따라 Bright Star가 이전에 학생을 배치한 적이 없는 NPS와 마스터 계약을 체결할 때, Charter School은 배치 시점에 NPS로 현장 방문을 실시해야 합니다. Bright Star는 또한 마스터 계약에 따라 Charter School에 학생이 다니는 매 학년도 동안 NPA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 방문을 한 번 이상 수행해야 합니다. 모니터링 방문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Bright Star와 NPS 간의 개별 서비스 계약을 통해 학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검토,
- 학생의 IEP 목표에 대한 학생의 진척도 검토,
- 학생의 행동 중재 계획에 명시된 목표에 대한 학생의 진척도 검토,
- 해당되는 경우 수업 중 학생 관찰,
- 시설 둘러보기, 그리고
- Bright Star가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기타 일체의 검토 및/또는 관찰.

Bright Star는 비공립, 비종파 학교 또는 기관과 계약할 때 주 및 연방법과 규정, SELPA 정책을 따릅니다.

자원 전문가 프로그램 또는 통합교육 프로그램

Bright Star는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장애 학생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인 자원 전문가를 고용하거나 계약합니다.

1. IEP 팀이 개발한 IEP에서 필요사항이 확인되고 수업일의 대부분을 일반 담임교사에게 배정된 학생에게 강의 및 서비스 제공. 학생들은 IEP 팀의 승인 없이 수업일의 대부분을 자원 전문가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2. 장애 학생과 학부모/보호자에게 정보와 지원을 제공합니다.
3. 장애 학생에 관한 상담, 자원 정보 및 자료를 학부모/보호자 및 정규 교육 직원에게 제공합니다.

4. 자원 전문가 프로그램에 등록된 각 장애 학생을 위하여 정규 학교 프로그램에 맞게 특수 교육 서비스를 조정합니다.
5. 정기적으로 학생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IEP 검토 및 수정에 적절하게 참여하고, 적절한 진행 상황을 입증하지 않는 학생을 IEP 팀에 위임합니다.
6. 중등학교 수준에서는 학업 성취, 경력 및 직업 개발, 성인 생활을 위한 준비를 강조합니다.
7. 자원 전문가는 자원 전문가와 정규 수업을 동시에 담당할 수 없습니다.

Bright Star의 자원 전문가 프로그램은 다음을 보유한 자원 전문가의 지시 하에 진행됩니다.

1. 특수 학급 인증을 받은 특수 교육 자격 또는 임상 서비스 자격.
2. 교사 자격 인증 위원회(Commission on Teacher Credentialing)의 규칙 및 규정에 정의된 정규 교육 및 특수 교육 교습 경험을 모두 포함하여 3년 이상의 교육 경력.
3. 교사 자격 인증 위원회(Commission on Teacher Credentialing)에서 수립한 자원 전문가에게 필요한 역량 입증.

교장은 특수 교육 교사의 담당 건수가 법률, 단체 교섭 협약 및/또는 SELPA 정책에 의해 설정된 최대 담당 건수 이내일 것을 보장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규정집 5편, 3100항에 따라 주 교육 위원회를 통해 유효한 면제를 받지 않는 한, 자원 전문가는 학생 수가 28명을 초과하는 담당 건수를 맡지 않습니다.

교통

Charter School은 필요할 때 관련 서비스로서 IEP에 명시된 대로 장애 학생에게 적절한 무료 교통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IEP 팀이 학생의 교통편 필요를 판단할 때 학생의 특정 필요사항을 주로 고려해야 합니다. 고려사항에는 학생의 건강상의 필요, 이동 거리, 물리적 접근성 및 거리와 인도의 안전, 대중 교통 시스템의 접근성, 한낮 또는 기타 교통 필요, 장기 서비스 및 필요한 경우 행동 중재 계획의 실시가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교통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장애 학생이 다른 학생에 비해 버스에서 과도한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교통 일정을 조정해야 합니다. 도착 및 출발은 개별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러한 학생들의 수업 시간 길이를 단축하지 않습니다.

특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비공립, 비종파 학교 또는 기관과 계약할 때, 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학생의 IEP에 명시된 경우 해당 계약에 교통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일반 행정 및 재정적 계약이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

장애인을 돕기 위해 훈련된 안내견, 신호견, 도우미견은 장애 학생, 장애 교사 또는 개 훈련사와 동반하는 경우 스쿨버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Charter School은 모든 스쿨버스, 학교 학생 활동 버스, 청소년 버스 및 보육 차량이 사용될 수 있을 때마다, 운영 중인 아동 안전 경고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Charter School은 모든 버스에 승객 보호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 좌석 장치를 사용 시, 연방 자동차 안전 표준(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 222번(49 C.F.R. § 571.222)에서 요구하는 고정 시스템과 호환되어야 합니다. Bright Star는 스쿨버스 운전자가 고정 시스템에 차량 좌석 장치를 올바르게 설치하도록 교육을 받게 보장해야 합니다.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개인의 수에 대한 정보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개인의 수에 관한 정보는 주 및 연방법과 규정, SELPA 정책에 따라 제공되어야 합니다.

독립 교육 평가(IEE)

학부모 자비 부담 IEE

Charter School은 학부모/보호자가 언제든지 자비로 독립 교육 평가("IEE")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학생을 위한 FAPE 제안을 결정할 때 학생의 IEP 팀이 IEE의 결과를 고려하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IEE의 결과가 IEP 팀의 결정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학부모/보호자가 자비로 획득한 IEE 평가에 대한 상환을 요청하는 경우, 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일방적으로 취득한 IEE가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학부모가 Charter School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았고 Charter School은 평가 결과를 받은 후 합리적인 시간 내에 요청을 받았습니다.
2. 학부모는 요청에 따라 적시에 Charter School에 시험관과의 정보 교환에 대한 서면 동의를 제공했습니다.
3. 민간 평가는 이 정책에 포함된 모든 기준을 충족합니다.
4. 학부모는 서면 평가 보고서 및 보고서와 관련된 기타 모든 문서/시험의 사본을 적시에 제공했습니다.
5. 시험관은 전화 또는 대면으로 관련 IEP 팀 회의에 참석하여 조사 결과를 논의하고 모든 평가 프로토콜을 Charter School에 제공합니다.

상환액은 학부모가 부담한 실제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입니다. 학부모는 동의하지 않는 각 평가 영역 또는 수업에 대해 하나의 IEE에 대해서만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서, Charter School이 Charter School의 평가가 적절함을 보이기 위해 정당한 과정 청문회를 시작하면, 청문회 담당자가 명령하지 않는 한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공공 비용 부담 IEE

Charter School은 지난 2년 동안 Charter School에서 실시한 평가에 학부모/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을 시, 연방법 및 주법이 장애 학생의 부모/보호자에게 공공 비용으로 IEE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학부모는 동의하지 않는 각 평가 영역 또는 수업에 대해 하나의 IEE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학부모/보호자가 공공 비용 부담으로 IEE를 요청할 때 Charter School이 학부모/보호자에게 절차상 보호 조치 사본을 제공하도록 보장하며, *그리고* 불필요한 지체 없이 다음 중 하나를 실시합니다.

6. Charter School이 완료한 평가가 적절함을 보이기 위해 정당한 과정 청문회를 시작합니다, 또는
7. IEE를 획득할 수 있는 곳, IEE에 적용되는 Charter School의 기준에 대한 정보를 학부모/보호자에게 제공하고, IEE가 공공 비용 부담으로 제공되도록 합니다.

Charter School이 IEE에 대한 학부모의 요청을 승인하는 경우, 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다음을

보장해야 합니다.

1. 평가 장소 및 심사관의 자격을 포함하여, 공공 비용 부담으로 IEE를 획득하는 기준은 반드시 Charter School이 평가를 시작할 때 사용하는 기준과 같아야 합니다.
2. Charter School은 공공 비용 부담으로 IEE를 획득하는 것과 관련된 조건이나 일정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3. 모든 평가는 Charter School에서 결정한 대로 평가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자가 완료해야 합니다. 학부모는 심사관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4. Charter School이 완료한 원래 평가에 학생의 수업 중 관찰이 포함된 경우, 학생의 현재 교육 배치 및 환경에서 학생에 대한 독립 교육 평가에 동등한 기회가 적용됩니다.
5. 학부모/보호자는 Charter School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상기 나열된 기준을 포기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고유한 상황을 입증할 기회를 보유해야 합니다.
6. 평가자는 반드시 다음을 포함하는 전체 평가 보고서를 준비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a. 검토된 모든 정보/자료 목록.
    b. 시험 및 평가 결과에 대한 명확한 설명.
    c. 시행된 모든 표준화된 시험에 대해 적용 가능한 모든 전체 척도 또는 배터리 점수, 도메인 또는 종합 점수, 그리고 표준이나 척도, T-점수 형식으로 보고된 하위 시험 점수를 비롯한 모든 시험 점수의 완전한 요약.
    d. 평가자가 수행한 테스트 이외의 출처에서 획득 또는 검토한 모든 정보의 완전한 요약.
    e. 교육 프로그램 및 해당되는 경우 공립 교육 환경 내에서 교육적으로 관련되고 현실적인 배치에 대한 IEP 팀 고려사항에 대한 권장사항.

IEE에 대한 비용 결정은 Charter School이 평가를 완료하기 위해 자체 직원 또는 계약자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과 유사해야 하며, 가능한 한 지역 내 해당 서비스에 대한 합리적이고 관례적인 요율을 반영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학부모/보호자에게 권장 비용 한도를 제공해야 합니다. 비용 한도는 업데이트되며(*3년에 1번*) 다음 세 가지 요소의 비용을 평균내어 결정합니다.

1. Charter School 직원이 제공한 평가 비용.
2. 인근 지역 교육 기관에서 제공한 평가 비용.
3. Charter School에서 40마일 이내에 있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민간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한 평가 비용.

교장 또는 피지명인(들)은 학부모/보호자가 학생의 교육적 필요(들)와 관련된 고유한 상황이, Charter School에서 규정한 일체의 비용에 대한 재정적 면제를 정당화할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장 또는 피지명인(들)은 학부모/보호자가 학부모/보호자의 보험으로 보장되는 경우 민간 건강 보험에서 IEE 비용을 자발적으로 지불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Charter School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절차로 인해 학부모/보호자에게 재정적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연방법 및 주법에 학부모/보호자가 민간 보험에 IEE 비용을 충당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1. 이용 가능한 평생 보장 또는 보험 정책에 따른 기타 일체의 혜택의 감소
2. 보험료 인상 또는 정책 중단
3. 클레임 제기 시 발생한 공제 금액 지불과 같은 본인 부담 비용

학생 약물 정책

Bright Star Public Schools("Charter School") 직원은 정규 수업일 동안 Charter School에 다니는 학생들의 약물 투여를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학생의 안전과 직원의 법적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약물 투여 시 따르는 관행을 주의 깊게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정의

정식 의료 서비스 제공자
이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약을 처방할 수 있는 면허를 받은 개인을 의미합니다.

의사 및 외과의 자격 부여
여기에는 지역 교육 기관, 지역 보건부의 의료 책임자 또는 지역 응급 의료 서비스 책임자에 의해 고용되거나 이들과 계약한 의사 및 외과의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학교 간호사
이는 현재 Charter School에 고용된, 자격과 면허를 갖춘 간호사인 개인을 의미합니다.

기타 지정된 Charter School 직원
이는 Charter School에 고용된 개인으로서 (1) 학생들에게 약물을 지원/투여하는 데 동의했으며 (2) 학생에게 약물을 법적으로 지원/투여할 수 있는 자입니다.

약물
여기에는 처방약, 비처방약, 영양 보조제 및 약초 요법이 포함됩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약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정규 등교일
여기에는 학교 수업 시간 중, 방과 전 또는 방과 후 프로그램, 현장학습, 과외 또는 정규 과목 병행 활동, 캠프 또는 일반적으로 집에서 떠나 최소 1박 이상 머무르는 기타 활동이 포함됩니다.

Charter School 지원을 동반한 약물 투여

정규 수업일 동안 정식 의료 제공자가 학생을 위해 처방하거나 주문한 처방약을 복용해야 하거나 복용해야 하는 학생은 지정된 Charter School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이 약품 투여에 있어 학교 간호사 또는 기타 지정된 Charter School 직원의 도움을 받기 위해, Charter School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획득해야 합니다.

1. 약품명, 복용법, 양/복용량, 약을 복용해야 하는 시간 일정을 상세 기록한, 학생의 공인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서면 진술서, 그리고
2. 승인된 의료 제공자의 진술서에 명시된 문제에서 Charter School가 학생을 지원하기를 원하는 학생의 부모, 위탁부모 또는 보호자의 서면 진술서.

명시된 이러한 서면 진술은 약물, 투여량/용량, 투여 빈도 또는 투여 사유가 변경된 경우 최소 매년, 그리고 보다 자주 제공되어야 합니다. 약물 투여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학부모/보호자, 학생 및 의료 전문가에게 있습니다.

직원 교육 및 비상 대응
직원에 대한 추가 정보 훈련 긴급 상황에 대한 Charter School의 대응은 학교 안전 계획 내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아나필락시스 반응에 대한 반응

훈련을 받은 자원한 직원은 에피펜(EpiPen)을 사용하여 아나필락시스 반응으로 고통받거나 고통받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생각되는 자에게 응급 의료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Charter School은 학생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현장에 적절한 유형의 에피펜(즉, 일반 또는 아동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Charter School은 직원들이 필요에 따라 에피펜을 적절하게 보관, 유지 및 재입고하도록 할 것입니다.

Charter School은 자원하는 모든 Charter School 직원이 에피펜의 보관 및 비상 사용과 관련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적절한 교육에는 다음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아나필락시스의 증상을 인지하는 기술.
2. 에피펜의 보관, 재입고, 비상 사용에 대한 표준 및 절차.
3. 긴급 911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고 가능한 경우 학생의 학부모(들)/보호자(들) 및 의사에게 연락하는 것을 포함한 긴급 후속 조치.
4. 심폐소생술 교육 및 자격의 필요성에 대한 권고.
5. 성인용 에피펜을 사용할지 일반 에피펜을 사용할지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 여기에는 적절한 학생 체중 판단에 대한 동등 기준으로 학생의 학년 수준 또는 연령 고려가 포함됩니다.
6. 교육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다루는 서면 자료.

Charter School은 아나필락시스로 고통받거나 아나필락시스로 고통받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믿어지는 자에게 에피펜을 투여하도록 훈련될 자원봉사자에 대한 요청을 설명하는 모든 직원에게 연례 통지를 배포할 것입니다. 연례 통지는 자원봉사자가 받게 될 교육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합니다.

당뇨병 또는 저혈당 응급 상황에 대한 대응

Charter School은 심각한 저혈당증으로 고통받는 당뇨병 학생에게 응급 의료 지원을 제공하는 방법에 대한 자발적 응급 의료 교육을 Charter School 직원에게 제공합니다. 자원봉사자는 여기에 구축된 표준과 면허를 소지한 학생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제시한 수행 지침에 따라 이 응급 치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자원봉사를 하지 않거나 이 정책에 따라 교육을 받지 않은 Charter School 직원은 응급 의료 지원을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항에 준한 구축된 기준에 따라 의사, 자격을 갖춘 학교 간호사, 공식 간호사 또는 공식 공중보건 간호사에 의한 교육은 적절한 교육으로 간주됩니다. 구축된 교육에는 다음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저혈당의 인지와 치료.
2. 글루카곤 투여.
3. 긴급 911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고 가능한 경우 학생의 학부모(들)/보호자(들) 및 면허를 갖춘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연락하는 것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기본 긴급 후속 조치.

Charter School 직원은 이 정책에 따라 글루카곤을 투여할 경우 교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글루카곤 투여에 필요한 모든 자료는 학생의 학부모(들)/보호자(들)가 제공해야 합니다.

자가 혈당 수치 검사 및 모니터링이 가능한 학생의 경우, 학부모 또는 보호자의 서면 요청이 있고 면허를 갖춘 학생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승인이 있을 시, 당뇨병이 있는 학생은 일체의 Charter School과 관련된 활동 중 교실, Charter School 또는 Charter School 부지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고 학부모 또는 보호자의 구체적인 요청 시, 사적인 장소에서 자신의 혈당 수치를 검사하고 기타 다른 당뇨병 자가 관리를 실시하도록 허가됩니다. 지정된 직원은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특정 의학적 상태(예: 알레르기, 천식, 당뇨병)에 대한 비상 절차를 구축해야 합니다.

저장 및 기록 보관

1. 모든 약품은 안전하고 적절한 보관 장소에 보관되며 승인된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하게 지정된 직원이 관리합니다.
2. 지정된 직원은 Charter School에서 투여한 약물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약물 기록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학생의 이름
    b. 학생이 복용해야 하는 약의 이름.
    c. 약물의 복용량.
    d. 학생이 약을 복용해야 하는 방법.
    e. 정규 등교일 중 약을 복용해야 하는 시간.
    f. 학생이 약을 복용해야 하는 날짜(들).
    g. 정식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이름 및 연락처 정보.
    h. 날짜, 시간, 양 및 약물을 투여하거나 약물 투여를 보조하는 개인의 서명 등 학생에 대한 약물 투여 일지를 작성한, 또는 약물 투여에 있어 학생을 지원한 공간.
3. 지정된 직원은 모든 잔여, 중단된 또는 기한이 지난 약물을 요법 완료 시 또는 연장된 휴가 전에 학부모/보호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약을 반환할 수 없을 경우 학년말에 폐기됩니다.

인신매매 방지 정책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인신매매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며, 모든 학생이 취약할 수 있습니다. Bright Star Schools("Bright Star" 또는 "Charter School")은 상업적 노동 또는 성 착취 사건에 대한 캘리포니아 내 모든 아동의 취약성을 줄이는 데 헌신하고 있습니다.

학생 지침

캘리포니아 건강한 청소년법에 따라 Charter School은 성적 학대, 폭행 및 괴롭힘을 포함한 인신매매 예방에 대해 연령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할 것입니다. (1) 인신매매의 횡행, 특성 및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전략, 건강한 경계를 정하는 기술, 안전하게 도움을 구하는 방법, (2) 소셜 미디어 및 모바일 장치 애플리케이션이 인신매매에 사용되는 방식에 대한 정보를 학생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학부모는 자녀를 인신매매 예방에 대한 모든 지침 또는 일부 지침에서 제외시킬 권한을 보유합니다. 이 지침에 대한 학부모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학생을 제외해 달라는 서면 요청을 Charter School이 받지 못한 경우, 해당 학생은 교육 내용에 포함될 것입니다.

학부모/보호자에 전송되는 정보

성적 학대, 폭행 및 희롱을 포함한 인신매매 및 학대 예방 관련 커리큘럼 및 리소스에 대한 학부모/보호자용 정보 및 자료는 Charter School 웹사이트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직원 교육

Bright Star 직원들이 성적 학대 및 인신매매를 비롯한 학대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최신 예방 활동 및 방법에 대한 지침을 받도록 하기 위해 교육이 주기적으로 실시됩니다. Charter School에는 성적 학대, 학생 및 기타 미성년자 인신매매를 포함한 학대의 조기 식별 관련 교육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학생 교통 정책

Bright Star Schools(“Bright Star” 또는 “Charter School”)에서 Bright Star 학교 활동에 오가는 교통편을 제공하기에, Bright Star 위원회("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교통 안전 계획을 승인했으며, 여기에는 Bright Star 직원들이 학생들의 안전한 교통을 보장하기 위해 따라야 할 절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의 사본은 각 Bright Star School에 보관되며,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청(Department of the California Highway Patrol) 담당자에게 요청 시 제공될 것입니다. 학생들은 스쿨버스 또는 학교 활동 버스에 대한 안전 절차 위반을 포함하여 Bright Star 정책 및 절차의 일체의 위반이 있을 시 Bright Star 징계 정책에 따른 징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정의

스쿨버스

12학년 이하 Bright Star 또는 Bright Star 활동에 오가는 Bright Star 학생의 교통을 위해 설계되거나 이용, 유지되는 일체의 차량을 의미합니다. "스쿨버스"에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2명 이상의 학생을 운송하는 일체의 차량이나 트럭을 제외하고, 운전자를 포함하여 실제로 10명 이하를 태울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학교 활동 버스

스쿨버스가 아닌 일반 운송업체가 운영하거나, 공공 소유 또는 운영되는 교통 시스템의 독점적 관할권으로, 또는 여객 전세 운송업체가 운영하는 일체의 차량으로, 12학년 이하의 Bright Star 학생이 Bright Star 활동에 오갈 수 있게 운송하도록 하는 Bright Star와 운송업체 간의 계약적 합의하에 사용되거나, 또는 학생을 수용하거나 버스에 태우기 위해 학부모 또는 학부모가 지정한 성인이 있는 비포장도로 위치에서 학생을 수용 및 하차시키는 경우 기숙 학교에서 학생을 운송하는 데 사용됩니다.

학생에게 에스코트가 필요한지의 여부 결정

학교 부지 또는 학교 활동 목적지가 실제 버스 정류장의 반대 방향에 있는 경우, Bright Star 및 캘리포니아 차량법 22112(d)항은 학생이 버스 운전사의 지시와 감독하에 해당 길을 가로질러 버스 운전사의 물리적 에스코트를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버스 운전사는 스쿨버스의 빨간색 깜빡이는 가로등을 켠 채, 장착된 경우 승하차 보호기를 켠 채, 학생들이 길을 안전하게 건너도록 돕기 위해 물리적으로 버스에서 내려야 합니다. Bright Star에서는 길을 건너는 모든 학생이, 교차 표시등과 표지판이 켜진 상태에서 버스 운전사의 에스코트를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버스 절차 및 지침

유치원에서 8학년까지의 버스 탑승 및 하차 절차

Bright Star에서는 유치원부터 8학년까지의 학생들이 스쿨버스에 안전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Bright Star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운전자 외에 온보드 스쿨버스 모니터의 서비스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탑승

1. 학생들은 지정된 버스 정류장 또는 학교 활동 목적지에서만 스쿨버스에 탑승하거나 하차해야 합니다.
2. 학생들은 질서 있게 탑승하고, 물건을 싣고 내릴 때 안전을 위해 난간을 이용해야 합니다.
3. 학생들은 최대한 빨리 자리를 찾아 버스 앞을 바라보고 앉습니다.
4. 학생들은 버스가 움직이는 동안 항상 자리에 앉아있어야 합니다.
5. 학생들은 버스 운전사가 접근 중인 차량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음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6. 학생들은 버스에 탑승한 동안 버스 운전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7. 학생들은 모든 규칙 및 규정을 따를 책임이 있습니다.

하차

1. 학생들은 버스가 완전히 멈출 때까지 자리에 앉아있어야 합니다.
2. 운전사가 버스를 완전히 정차하고 문을 열면, 학생들은 버스 앞부분부터 시작하여 한 좌석씩 하차하고, 버스가 빌 때까지 계속 한 좌석씩 이동하는 방침을 유지해야 합니다.
3. 버스에 남아 있는 학생들은 버스가 지정된 버스 정류장이나 학교 활동 목적지에 정차할 때까지 자리에 앉아있어야 합니다.
4. 학생들은 난간을 사용하여 질서 있게 짐을 내릴 것입니다.
5. 학생들은 지정된 버스 정류장 또는 학교 활동 목적지에서만 버스에서 내려야 합니다. 예외는 학생의 부모가 서명하고 교장이 승인한 메모를 학생이 버스 운전사에게 제시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6. 학생들은 버스에서 내릴 때 버스에서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학생들은 책, 종이 또는 기타 물건을 찾기 위해 버스 아래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학생은 항상 버스 운전사에게 말하여 버스 운전사가 물건을 가져오도록 해야 합니다.
7. 학생들은 가능한 경우 항상 횡단보도와 통제된 교차로를 이용해야 하며 블록 중앙에서 횡단해서는 안 됩니다.
8. 학생들은 절대로 타인의 소유지에 무단침입하지 않아야 하며, 가능한 한 인도에 머물러야 합니다.

Bright Star 또는 기타 학교 활동 장소에서 스쿨버스에 탑승하거나 내릴 때 모든 학생이 따라야 하는 절차

Bright Star에서는 Bright Star 또는 기타 학교 활동 장소에서 모든 학생의 안전한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다음의 절차를 만들었습니다.

학교 현장 또는 학교 활동 장소에서 버스 탑승하기

1. 스쿨버스 운전사는 어떤 학교에서도 깜빡이는 황색 경고등 시스템, 깜빡이는 적색등 신호 시스템 및 승하차 보호기를 작동시킬 수 없습니다.
2. 운전사는 모든 학생들이 질서 있고 안전하게 버스에 탑승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버스 탑승을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3. 학생 무리는 교사(들) 및 학교 활동에 참석하는 기타 성인 직원과 함께, 스쿨버스에서 떨어진 지역에 모여 기다려야 합니다. 학생들이 탑승할 준비가 되면, Bright Star 직원이 운전사에게 알리고, 운전사가 탑승 과정을 시작합니다.
4. 탑승 과정이 완료되면, 운전사는 아래에 설명된 버스 대피 및 안전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합니다. 여기에는 모든 비상구, 구급상자, 소화기 등에 대한 설명과 시연이 포함됩니다.

5. 프레젠테이션이 끝나면, 운전사는 Bright Star 교사 또는 책임 인솔자가 여행지에 서명하게 하여 프레젠테이션이 제공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운전자는 안전할 때 출발합니다.

학교 현장 또는 학교 활동 장소에서 버스 하차하기

1. Bright Star에 도착 시, 운전사는 지정된 학생 하차 장소까지 버스를 타야 합니다.
2. 지정된 장소에 도착 시, 운전사는 버스를 주차한 후 주변에 위험 요소가 없고 안전할 때 문을 엽니다. 깜빡이는 빨간색 신호등을 활성화하지 않습니다.
3. 학교 또는 학교 활동 목적지에 도착 시, 운전사는 버스가 합법적으로 주차할 수 있고 학생의 탑승/하차를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합니다.
    a. 단체가 다시 버스에 탑승하기 위해 모일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Bright Star 교사/책임 인솔자와 협의합니다.
    b. 주변에 위험 요소가 없고 하차하기 안전할 때, 운전사는 학생들에게 버스에서 내리게 할 것입니다. 깜빡이는 빨간색 신호등은 켜지 않습니다.
    c. Bright Star 교사/책임 인솔자가 모든 학생이 있음을 확인했을 시, 단체는 여행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4. Bright Star 또는 학교 활동 장소 중 하나에서 버스 하차하는 학생들은 질서 있고 예의바르며 적절한 방식으로 하차하며, Bright Star 직원 및 버스 운전사의 모든 지시에 따릅니다.

학생이 스쿨버스 또는 학교 활동 버스에 방치되지 않도록 교직원이 확인하는 절차

Bright Star 교직원은 학생이 스쿨버스나 학교 활동 버스에 방치되어 있지 않도록 항상 Bright Star에서 및 활동 여행에서 학생이 짐을 싣고 내리는 것을 감독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Bright Star 교직원은 다음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1. 학교 활동을 위해 학교 부지를 떠나기 전, 여행을 위한 Bright Star 교사/책임 인솔자는 모든 학생의 이름이 적힌 학급 명부의 사본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2. 버스가 목적지에 도착하면, Bright Star 교사/책임 인솔자는 버스에서 가장 먼저 내려서, 내리고 있는 학생을 학급 명단과 비교하여 버스에서 하차하는 각 학생을 기록합니다.
3. Bright Star 교직원/인솔자는 남아있는 학생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 정류장에서 버스에서 마지막으로 내려야 합니다. 버스에서 내리기 전, 교직원/인솔자가 버스 통로를 따라 걸어 올라가며 각 좌석 및 바닥 공간을 확인하여 학생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4. 모든 학생과 교직원/인솔자가 버스에서 하차했고 지정된 활동을 위해 출발하기 전, Bright Star 교사/책임 인솔자는 각 학생의 이름을 부르고 학생이 있음을 언어 및 시각적으로 확인할 때까지 기다림으로써 출결 조사를 한 번 더 실시합니다.
5. Bright Star 교사/책임 인솔자는 추후 학생이 아직도 버스에 있는 것이 발견될 경우 서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버스 운전사와 논의합니다.

학교 활동 버스에 학생을 동행시킬, 버스 운전사 외의 성인 인솔자 지정 절차 및 기준

Bright Star는 스쿨버스 운전사 이외의 성인 인솔자를 지정하여 버스 또는 학교 활동 버스에 학생을 동반하기 위해 방문자 및 자원봉사자 정책을 비롯한 해당 정책 및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인솔자가 수학여행이나 학교 활동 버스에 동반하기 전에 모든 인솔자에 대해 모든 적절한 배경 조사가 수행됩니다.

스쿨버스 또는 학교 활동 버스 비상 절차 및 승객 안전

Bright Star는 스쿨버스 또는 학교 학생 활동 버스로 이동하는 모든 학생이 스쿨버스 비상 절차 및 승객 안전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보장합니다.

이전에 스쿨버스로 이동한 적이 없는 학생을 위한 지침

등록 시, 이전에 스쿨버스 또는 학교 활동 버스로 이동한 적이 없고 유치원에서 6학년까지인 학생의 부모/보호자에게는 스쿨버스 안전에 대한 서면 정보가 제공됩니다. 이 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1. 학생의 집 근처 스쿨버스 정류장 목록.
2. 다음과 같은, 스쿨버스 탑승 지역에서의 일반적인 행동 규칙:
    a. 스쿨버스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학생들은 질서 있고 예의바르게 한 줄로 서야 합니다.
    b. 학생들은 길거리나 사유지에서 놀거나 거기에 있을 수 없습니다
    c. 학생들은 버스가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기 전에 거리의 적절한 쪽에 있어야 합니다.
    d. 학생들은 예정된 출발 시간 5분 전에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야 합니다.
    e. 학생이 지각하여 버스가 정차한 길을 건너야 하는 경우, 학생은 버스 운전사가 학생을 길 건너편으로 에스코트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f. 학생들은 정류장에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버스에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g. 학생들은 밀지 않고 질서 있게 버스에 탑승하고 하차해야 합니다.
    h. 학생들은 버스 운전사가 항상 담당자임을 이해하고, 버스 운전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i. 장착된 경우, 운전자는 즉시 빨간색으로 깜박이는 교차 표시등과 승하차 보호기를 활성화합니다.
    j. 동물, 새, 파충류, 물고기, 곤충, 깨지기 쉬운 용기, 무기 또는 위험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이나 물질은 버스로 운송하지 않습니다.
3. 이 계획과 일치하는 빨간 신호등 횡단 지침.
4. 스쿨버스 위험 구역(들).
5. 스쿨버스 정류장에 오갈 때는 도보로 이동합니다.

수학여행 출발 전 모든 학생을 위한 안내

마지막으로, 수학여행을 떠나기 전, Bright Star는 스쿨버스 또는 학교 활동 버스에 탑승하는 모든 학생에게 안전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침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1. 비상구 위치, 그리고
2. 응급 장비 사용법.
    a. 지침에는 비상구 옆에 앉은 탑승객의 의무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탑승객 안전벨트 시스템 사용 방법에 대한 지침:
    a. 승객 안전벨트 시스템의 적절한 고정 및 해제,
    b. 학생에 대한 탑승객 안전벨트 시스템의 허용되는 배치,
    c. 탑승객 안전벨트 시스템을 고정 및 해제해야 하는 시간, 그리고
    d. 미사용 시 탑승객 안전벨트 시스템의 허용되는 배치.

가시거리가 200피트 이하로 감소한 경우 스쿨버스 또는 학교 활동 버스 운행

차량법(Vehicle Code) 34501.6항에 따라, Bright Star는 일반 가정에서 학교까지 운행하는 정기 교통편 서비스 중에 대기 조건으로 인해 도로의 가시성이 200피트 이하로 감소되는 경우

스쿨버스 및 학교 활동 버스의 운행을 제한하는 절차를 채택해야 합니다. 학교 활동 버스의 버스 운전사는 감소된 가시성으로 인해 운행을 계속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 활동 버스 운행을 중단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 계획의 목적에서, 스쿨버스 운전사를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스쿨버스 운전사는 대기 상태로 인해 가시성이 200피트 이하로 감소했음을 교장에게 알립니다.
2. 교장은 필요에 따라 법률 고문과 상담할 수 있습니다.
3. 교장은 조건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 무기한 중단 또는 지연을 통해 스쿨버스 활동이 최소 1시간 동안 중단 또는 지연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스쿨버스 서비스의 중단 또는 지연 기간은 교장의 재량에 따릅니다.

인터넷 안전 및 기술 사용 정책

Bright Star Schools의 컴퓨팅 자원은 학교의 학업 및 행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따라서, 모든 컴퓨터 사용자는 반드시 책임감 있고 윤리적이며 합법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이는 컴퓨팅 자원의 다른 사용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물리적 시설의 무결성을 유지하며, 모든 라이선스 및 계약적 합의를 준수함을 의미합니다. 다음 정책은 Bright Star Schools 컴퓨터 자원의 모든 학생 사용자, Bright Star Schools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모든 컴퓨팅 자원 및 Bright Star Schools 조직에 연결된 모든 컴퓨터 자원에 적용됩니다.

컴퓨터와 네트워크는 학교 안팎에서 자원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다른 사용자와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러한 액세스는 특권이며 개별 사용자가 책임감 있게 행동할 것을 요구합니다. 학교에는 부적절한 콘텐츠에 대한 학생의 액세스를 제한하기 위한 필터와 방화벽이 있습니다.

전자 정보는 휘발성이고 쉽게 복제되므로, 사용자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 및 저작권법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타인의 작업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미국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소프트웨어 및/또는 기타 지적 재산의 무단 복제는 벌금 및 구금을 포함한 민형사상의 처벌 대상이 되며, 이 정책에 따라 명시적으로 금지됩니다.

Bright Star Schools는 소프트웨어 및 지적재산권에 관한 EDUCOM의 정책을 지원합니다. "지적 노동과 창의성에 대한 존중은 학문적 담론과 기업에 필수적입니다. 이 원칙은 모든 매체의 모든 저자와 발행인의 작업에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인정에 대한 권리, 사생활에 대한 권리, 출판 및 배포의 형식과 방식, 조건을 결정할 권리가 포함됩니다."

정의

교육적 목적

이는 교실 활동, 학업 과목 연구, 경력 또는 전문성 개발 활동, Charter School에서 승인한 개인 연구 활동 또는 Charter School에서 때때로 정의하는 기타 목적을 의미합니다.

부적절한 사용

이는 교육적 목적과 일치하지 않거나 이 정책 및 허용되는 사용 계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사용을 의미합니다.

불법 행위

불법 행위에는 지역, 주, 연방법을 위반하는 일체의 활동 및/또는 범죄나 위험한 활동을 조장하기 위해 고안된 정보에 대한 접근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정보에는 실행에 옮길 시 Charter School, 다른 학생 또는 지역 사회에 피해를 입히거나 위험을 초래하거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교육구 기술

여기에는 컴퓨터, 서버와 무선 컴퓨터 네트워킹 기술(와이파이)을 포함한 BSS 및 학교 컴퓨터 네트워크, 인터넷, 이메일, USB 드라이브, 무선 액세스 포인트(라우터), 태블릿 컴퓨터, 스마트폰 및 스마트 장치, 전화, 휴대전화, 개인 디지털 단말기, 호출기, MP3 플레이어, 웨어러블 기술, 비상 라디오를 포함한 일체의 무선 통신 장치 및/또는 현장 안팎에서 또는 BSS 소유나 개인 소유 장비를 통해 접근하는 미래 기술 혁신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허용 가능한 사용 정책

Charter School 장비의 사용과 Charter School 장비 및 리소스 네트워크를 통한 인터넷 접속은 교육적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고 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의 인터넷 사용은 교육적 목적의 전달을 증진하거나 향상시키는 활동에만 제한됩니다. 학생과 교직원은 정책에 명시된 방식으로만 Charter School 자원을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Charter School은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에게 Charter School 컴퓨터의 승인된 사용, 사용자 의무 및 책임, 승인되지 않은 사용 및/또는 불법적인 활동의 결과에 대해 통지합니다.

학생이 Charter School의 기술 자원을 사용하도록 승인받기 전에, 학생과 학생의 학부모/보호자는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을 명시한 허용 가능한 사용 동의서에 서명하고 반환해야 합니다. 해당 동의서에서, 학생과 학생의 학부모/보호자는 기술 보호 조치의 실패, 저작권 제한 위반 또는 사용자 실수나 과실에 대해 Charter School 또는 모든 Charter School 직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학생과 학생의 학부모/보호자는 또한 발생한 일체의 손해나 비용에 대해 Charter School 및 Charter School 직원을 면책하고 피해가 없게 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Bright Star Schools(BSS) 및 그 학교들은 교육적 목적에 필요한 경우 교육구가 소유하거나 제공한 기술을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합니다. BSS는 연구 및 교육을 위한 도구로서 인터넷을 포함한 네트워크와 교육구 기술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모든 교육구 기술은 BSS의 자산입니다. 교육구/학교 기술의 사용은 교육구의 재량에 따라 허용되는 특권이며 해당 정책, 행정 규정 및 본 허용 가능한 사용 동의서에 명시된 조건 및 제한 사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교육구는 어떤 이유로든 통지 없이 언제든지 접속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다른 학교 자산과 마찬가지로 Bright Star Schools의 기술과 네트워크는 교육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 및 절차는 모든 교육구 및 학교 기술, BSS 학교 내에서 사용되는 기타 전자기기에 적용되며 행정실이 이 정책의 범위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기기를 포함합니다. 행정관 및 교사는 학교 현장이나 교실에서 컴퓨터 사용에 대한 추가 요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Bright Star Schools는 모든 학생들이 잠재적인 문제와 책임을 피하기 위해 책임감을 갖고 기술을 사용하기를 기대합니다. 교육구는 학생이 시스템을 통해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 자료 및/또는 정보에 대해 합당한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교육구 기술을 사용할 권한이 있는 각 학생과 그 학부모/보호자는 이 사용 동의서에 서명하여 자신들이 동의서를 읽고 이해했음을 표시해야 합니다.

승인 및 금지된 활동

학생들은 교육적 목적으로만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교육구 기술을 사용해야 합니다. 학교 기술이 발행된 이름의 학생은 항상 적절한 사용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할당된 온라인 서비스 계정 정보, 비밀번호 또는 식별 및 승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타 정보를 공유해서는 안

되며, 할당된 계정에서만 시스템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강령은 Bright Star Schools 컴퓨터 자원의 모든 활동 또는 사용에 적용됩니다.

승인 및 장려되는 활동

1. 학업 목적으로 필요하거나 원하는 정보를 네트워크에서 검색합니다.
2. 최신 정책을 준수하는 한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합니다. 주의: 이메일은 사적인 통신 형식이 아닙니다. 엽서나 게시판 공지와 유사한 것이며, 어떠한 통신도 기밀 및/또는 사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학교 네트워크상에서 수신 또는 발신된 모든 이메일은 Bright Star Schools의 자산입니다.
3. 네트워크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합니다. 사용량이 많은 시간에는 불필요한 활동을 삼가합니다.

학생에게 금지된 행위

1. 차별적, 비방적, 명예 훼손적, 외설적, 성적으로 노골적이거나 파괴적인 자료에 접근, 게시, 표시 또는 사용하는 행위.
2. 다른 학생, 교직원 또는 기타 개인을 따돌리거나 괴롭히거나 협박하거나 위협하는 행위("사이버 괴롭힘").
3. 해당 인물을 위협, 협박, 괴롭힘 또는 조롱할 의도로 다른 학생, 교직원 또는 기타 개인의 개인 식별 정보(예: 이름, 주소, 전화번호, 사회 보장 번호, 기타 개인 정보)를 공개, 사용 또는 유포하는 행위.
4. 저작권, 라이선스, 상표, 특허 또는 기타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5. 교육구 기술 또는 기타 교육구 운영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예: 교육구 장비 파괴, 교육구 컴퓨터에 바이러스 설치, 교사 또는 기타 BSS 직원의 허가 없이 컴퓨터 프로그램 추가 또는 제거, 공유 컴퓨터의 설정 변경).
6. 승인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행위.
7. 시스템에 "해킹"하여 교육구 또는 기타 사용자의 데이터를 조작하는 행위.
8. 비윤리적이거나 법률 또는 위원회 정책, 행정 규정 또는 교육구 관행을 위반하는 일체의 실천에 가담하거나 조장하는 행위.
9. 일체의 불법 행위를 하거나 타인의 불법 행위를 돕는 행위.
10. 의도적인 전자상 배포나 전자상 배포의 남용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나 기타 유해한 프로그램의 확산을 통해 컴퓨터, 컴퓨터 네트워크 또는 시스템을 손상, 취약하게 하거나 무력화시키는 행위.
11. 다른 컴퓨터에 대한 해킹을 통해 다른 컴퓨터에 일체의 무단 온라인 접속을 하는 행위, 제한을 피하기 위해 설계된 포트 스캐너 및 비밀번호 크래커 등의 해커 도구를 다운로드하는 행위.

학생이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해 Charter School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으나, 접속은 교육적 목적으로만 제한됩니다. 가능한 한 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Charter School 컴퓨터에서 이러한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해야 합니다.

오용의 결과

해당 정책의 경미한 위반은 우발적이거나 의도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Bright Star Schools의 IT 부서에서 비공식적으로 해결합니다. 반복적인 경미한 위반 또는 심각한 위법 행위는 일체의 적절한 징계 조치와 더불어 시스템 액세스를 상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체의 오용은 관련 법률에 따라 기소될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 및 모니터링

Bright Star Schools 컴퓨팅 자원에서의 모든 활동은 기밀이 아님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관리자 또는 다른 직원은 언제든지 사용자 파일에 액세스할 권한이 있으며 실제로 액세스할 것입니다. 사용자 파일은 법원 명령에 따라 법 집행 기관의 검색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메일, 워드 프로세싱 또는 인터넷 사용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컴퓨터 사용은 모니터링 및 녹화의 대상이 됩니다. Bright Star Schools 컴퓨터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로부터 접속된 일체의 웹사이트는 액세스한 사이트에 대한 기록을 생성합니다. Bright Star School 기술의 사용은 교육적 목적을 위한 것이므로, 학생들은 Bright Star School 및 포괄적인 학교 기술을 사용할 때 개인 정보 보호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Bright Star Schools는 인터넷 또는 소셜 미디어에 대한 접속, 교육구 기술에서 송수신되는 통신 또는 기타 사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교육구 기술의 모든 사용을 모니터링하고 기록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이러한 모니터링/녹화는 기록 보관과 배포 및/또는 부적절하거나 불법적이거나 금지된 활동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일체의 법적 목적을 위해 사전 통지 없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대부분의 경우 교육구 기술(예: 웹 검색 및 이메일) 사용을 지우거나 삭제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교육구 기술상 생성되거나 사용되는 모든 비밀번호는 Bright Star Schools의 독점적인 자산입니다. Bright Star School 기술상에서의 학생의 비밀번호 생성 또는 사용은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합당한 기대치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Bright Star Schools는 학교에 다니는 동안 학생들을 돕기 위한 컴퓨팅 자원을 제공합니다. 자원은 학업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Bright Star Schools는 시스템을 통해 전송된 모든 인터넷 사용 기록에 액세스하고 필요에 따라 공개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인터넷 사용은 사전 통지 없이 Bright Star Schools IT 직원에 의해 액세스될 수 있으므로, 공개를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상업적 벤처, 종교적 또는 개인적 목적, 외부 조직 또는 기타 유사한 비학문적 관련 권유를 위한 광고나 전도와 같은 목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Bright Star Schools에서 귀하가 네트워크를 오용하고 있음을 발견할 경우, 컴퓨터 권한 종료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징계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 소유 기기

학생이 교육구 기술에 접속하기 위해 개인 소유 기기를 사용할 경우, 해당 학생은 모든 해당 정책, 관리 규정 및 이 허용 가능한 사용 계약을 준수해야 합니다. 개인 소유의 기기를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면 합법적인 소환장이나 공개 기록 요청에 따라 해당 기기의 내용과 장치에서 주고받은 모든 통신 내용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Bright Star Schools는 현장에서 사용되는 개인 기기의 손상, 분실 또는 도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인터넷 안전

Charter School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모든 Charter School 컴퓨터에 교육적 목적이 없는 웹사이트 및/또는 외설적이거나 아동 포르노그라피를 구성하거나 미성년자에게 해로운 웹사이트에 대한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거나 필터링하는 기술 보호 조치가 있도록 보장합니다. Charter School은 Charter School에서 만들고 구매한 콘텐츠에 대해 합리적인 통제를 행사할 수 있으나, 인터넷을 통해 접속되는 콘텐츠에 대한 통제는 제한적이고 필터링 시스템은 100%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Charter School이나 그 교직원은 기술 보호 조치의 실패, 저작권 제한 위반 또는 사용자 실수, 오용 또는 과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인터넷상의 유해하거나 부적절한 사안에 대한 학생의 접속을 제한하고, 학생이 승인되지 않거나 불법적인 온라인 활동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안된 규칙 및 절차를 구현합니다. 교직원은 학생들이 Charter School 캠퍼스에서 인터넷이나 온라인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Charter School 컴퓨터, 노트북 또는 태블릿을 사용하는 동안 학생을 모니터링해야 하며, 교사 보조, 학생 보조 및 자원봉사자가 이러한

모니터링을 돕게 할 수 있습니다. 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또한 이메일, 대화방 및 기타 형태의 직접적인 전자 통신을 사용할 때 학생 및 학생 정보의 안전과 보안을 다루는 규정을 수립해야 합니다.

학부모/보호자는 이 정책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학교 시설 밖이나 학교 수업 시간 외에 자녀에 의한 일체의 Charter School 장비 사용 동안 내내, 항상 이러한 장비를 통한 자녀의 인터넷 접속 및 일체의 온라인 서비스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Charter School 장비 사용을 감독하고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학생이 보안 문제(예: 일체의 로그인 또는 계정 정보의 기밀성을 손상시키는 요소 등) 또는 교육구 기술의 오용을 인지할 경우, 해당 정보를 교사나 다른 BSS 직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올바른 온라인 행동 교육

Bright Star Schools는 소셜 네트워크 및 대화방에서 다른 개인과 상호작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할 것입니다. Bright Star Schools는 사이버 괴롭힘 문제와 이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인식을 고취할 것입니다.

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 대화방 및 기타 인터넷 서비스에서의 안전하고 적절한 행동에 관해 연령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에는 학생의 온라인 평판 유지 및 개인 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하여 개인 안전을 보장하기, 개인 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것의 위험, 온라인 포식자에 의한 사칭, 부적절하거나 공격적인 콘텐츠 또는 위협을 보고하는 방법, 사이버 괴롭힘을 구성하는 행동 및 사이버 괴롭힘 대상이 되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Charter School 기술을 사용할 때 안전한 관행을 따를 것이라는 기대를 받습니다.

Bright Star에서는 학생들에게...:

1. 절대로 암호, 개인 정보 또는 개인 사진을 온라인으로 공유하지 않도록 권고합니다.
2. 콘텐츠를 게시하기 전에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신중하게 생각하도록 권고하고, 한 번 게시된 댓글은 철회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3. 소셜 미디어에 공개된 개인 정보는 학부모, 교사, 관리자 및 잠재적 고용주를 포함한 모든 사람과 공유될 수 있음을 숙지시킵니다. 학생들은 전 세계가 액세스할 수 있다면 그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는 정보를 절대로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4.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 댓글을 달기 전에, 그러한 댓글을 받으면 어떤 기분이 들지 고려하도록 권고합니다.

크롬북 정책 및 절차

크롬북의 수령

크롬북은 매년 개학 전후 첫 주에 각 해당 학교 현장의 학생들에게 배포됩니다. 학기 중에 신입생이 1:1 프로그램에 등록할 시, 등록이 완료된 후 크롬북을 수령합니다. 각 학생은 크롬북, AC 충전기/전원 어댑터, 휴대용 케이스를 수령합니다. 크롬북은 교과서와 유사하게, 태그가 달리고 기록되며 각 학생에게 체크아웃됩니다. 학부모/보호자 및 학생은 자녀에게 크롬북이 발급되기 전에 반드시 AUP 동의서에 서명하고 반환해야 합니다. BSS는 추적 및 인벤토리 관리를 위해 일련번호에 연결된 각 크롬북에 인벤토리 라벨을 추가합니다. 이 라벨은 학생의 ID 번호에 연결됩니다. 크롬북이 훼손되거나 인벤토리 스티커가 알아볼 수 없게 되거나 훼손될 경우, 해당 학교 현장의 메인 사무실로 가져가야 합니다. 교직원은 크롬북을 체크인하고 크롬북이 수리될 때까지 학생에게 대여 크롬북을 체크아웃합니다. 분실/도난 또는 손상에 대한

비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크롬북 및 학교 사이트에서 발급한 이메일 계정은 Bright Star Schools의 자산이므로 언제든지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크롬북이나 학교에서 제공한 컴퓨터 계정에 있는 자료의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해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크롬북 반환

교육구 소유의 모든 크롬북은 반드시 기기를 수령한 학교로 반환해야 합니다. 크롬북은 각 학교가 끝날 때 다시 확인됩니다. 학년도가 끝나기 전에 Bright Star Schools 또는 학교 현장을 떠나는 학생은 BSS 소유 크롬북을 기기를 수령한 학교 현장에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Bright Star School에서 전학 또는 자퇴하는 학생은 학년말 또는 학생이 더 이상 등록하지 않을 때 반환되지 않은 모든 크롬북 또는 AC 전원 어댑터/충전기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분실/도난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행정실은 학생과 그 가족이 장비를 반환하도록 후속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관리자가 학생의 크롬북 및/또는 충전기를 획득할 수 없을 경우, 해당 학생의 성적표가 보류되고 수수료가 부과되며 법 집행 기관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크롬북 사용하기

크롬북은 매일 학교에서, 그리고 코로나19 유행병 기간 동안 자택에서 원격 학습을 위해 사용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크롬북 사용에 대한 교사의 기대치에 더해, 크롬북을 사용하여 학교 메시지, 공지사항, 캘린더 및 일정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교사나 관리자가 특별히 지시하지 않는 한 학생은 모든 수업에 크롬북을 가져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크롬북을 집에 두고 왔을 경우

학생이 크롬북을 집에 두고 왔다면, 학생은 가능한 경우 대여 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여 장치는 교실 밖으로 반출할 수 없으며 하루가 끝나면 반납해야 합니다. 모든 대여 기기가 사용 중일 경우, 학생은 학부모/보호자에게 전화하여 크롬북을 학교로 가지고 오도록 부탁해야 합니다.

크롬북 수리

크롬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파손되었을 경우, 크롬북을 자신이 소속된 학교 현장의 메인 사무실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BSS 직원이 크롬북을 즉시 수리할 수 있는지 또는 추가 수리를 받아야 하는지 결정할 것입니다. 광범위한 수리에는 며칠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크롬북 충전

크롬북은 매일 완전히 충전된 상태로 학교에 가져와야 합니다. 크롬북을 즉시 충전해야 하는 경우 대여 AC 전원 어댑터/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여 장치는 교실 또는 학교 현장 밖으로 반출할 수 없으며 하루가 끝나면 반드시 반환해야 합니다.

화면보호기 및 배경

개인화된 화면 보호기 또는 배경은 허용되지만 부적절하거나 도발적인 이미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포르노 이미지, 총기, 무기, 부적절한 언어, 위협적인 언어, 마약, 알코올, 갱 관련 이미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화면보호기 또는 사진은 허용되지 않고,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리, 음악, 비디오 및 앱

교육적 목적으로 교사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소리는 반드시 항상 음소거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헤드셋/이어폰을 가져오는 것이 좋습니다. 교사의 재량하에 크롬북에서 음악을 트는 것이 허용됩니다. 모든 구글(Google) 앱은 반드시 교육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크롬 웹 스토어에 대한 접속은 제한적입니다.

크롬북 관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발급받은 크롬북을 전반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파손, 훼손되었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크롬북은 반드시 가능한 한 빨리 학교 IT 부서에 제출하여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유형의 수리 또는 유지 관리를 이유로 교육구 소유의 크롬북을 외부 컴퓨터 서비스에 가져가지 마십시오. 또한 내부 전자 장치에 접근하거나 크롬북을 직접 수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행위가 있을 시 장치의 전체 교체 가치만큼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일반 규칙 및 예방 조치

- 크롬북을 사용하는 동안 음식이나 음료를 옆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 코드, 케이블 및 이동식 저장 장치는 크롬북에 조심스럽게 삽입해야 합니다.
- 절대 전원 코드가 연결된 상태로 크롬북을 운반하지 마십시오.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 크롬북을 휴대용 케이스나 가방에 보관하지 마십시오.
- 크롬북에는 반드시 글, 그림 또는 스티커가 없어야 합니다
- 크롬북을 극도의 열이나 추위에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크롬북은 실온에서 유지해야 합니다.
- 통풍구는 절대 덮지 마십시오.
- 크롬북을 자동차나 일체의 감독되지 않는 장소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 학생들은 등교일마다 완전히 충전된 크롬북을 가져올 책임이 있습니다.
- 크롬북은 조심해서 운반하십시오. 이동할 때는 항상 뚜껑을 닫고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케이스, 가방 또는 슬리브를 사용하여 크롬북을 운반하십시오.
- 크롬북에서 액체를 멀리 떨어뜨려 놓으십시오. 크롬북에 세제, 스프레이, 알코올, 암모니아 또는 연마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부드럽고 보푸라기가 없는 천으로 크롬북을 청소하십시오. 손가락은 키보드와 터치패드에 계속 두십시오.
- 기기의 의도된 용도에서 사용자가 벗어나도록 허용하는 기기의 수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일반적으로 장치의 "탈옥"이라고 합니다.
- 절대로 크롬북을 던지거나 밀지 마십시오.
- 크롬북에는 원격으로 위치를 찾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위치 추적 기능의 수정, 비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시도는 사용자 동의서의 위반이며 징계 조치의 근거가 됩니다.
- 크롬북에는 고유 식별 번호가 있으며 번호나 라벨을 수정, 훼손, 손상 또는 제거해서는 안 됩니다.
- 학생들은 크롬북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없습니다. 크롬북은 개별 학생에게 할당되며 학생은 해당 크롬북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 학생들은 AC 전원 어댑터/충전기를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크롬북은 적절하고 잘 기능하는 AC 전원 어댑터/충전기와 함께 반환되어야 합니다.

스크린 케어

크롬북의 스크린은 쉽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스크린은 스크린이나 하우징에 가해지는 과도한 압력으로 인한 손상에 특히 민감합니다.

- 크롬북이 닫혀있을 때 위쪽에 기대거나 힘을 가하지 마십시오.
- 스크린이 열린 상태로 크롬북을 보관하지 마십시오.
- 크롬북 근처에 화면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물건을 아무것도 두지 마십시오.
- 휴대용 케이스나 가방에 덮개를 누르는 물건을 아무것도 넣지 마십시오.
- 스크린 표면을 표시하거나 긁을 수 있는 물건으로 화면을 찌르지 마십시오.
- 덮개를 닫기 전에 키보드 위에 아무것도 올려놓지 마십시오(예: 펜, 연필 또는 디스크).
- 부드럽고 마른 극세사 천이나 정전기 방지 천으로 화면을 청소하십시오.

크롬북 FAQ

한 학생의 크롬북이 다른 학생의 것과 어떻게 구분되나요?

모든 크롬북은 동일하므로 모양이 매우 비슷합니다. 그러나 각 크롬북에는 학생의 이름과 학생 ID 번호가 적힌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또한, 바코드가 있는 교육구 자산 태그가 각 장치에 있으며 각 장치에는 일련번호가 있습니다. Bright Star Schools는 이 모든 정보를 인벤토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므로 크롬북이 잘못 배치된 경우 누구에게 할당된 것인지 확인하고 할당된 학생 사용자에게 돌려줄 수 있습니다. 발급 당시 크롬북에 있던 모든 신분증 스티커는 반드시 크롬북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크롬북에 스티커를 추가하거나 글을 쓸 수 있나요?
아니요, 스티커 또는 기타 일체의 영구적인 추가 표시(각인, 영구적인 잉크 펜, 테이프 등)는 크롬북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기는 학생에게 지급되지만 여전히 교육구 소유 재산입니다. 기기에 영구적인 추가 표시를 하면 기물 파손으로 간주됩니다. 학생들은 리본, 열쇠고리 또는 기타 분리 가능한 물품과 같은 영구적이지 않은 식별 품목을 케이스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스티커, 각인, 영구적인 잉크 펜, 테이프 등으로 인해 기기가 손상된 상태로 반환될 경우, 부품이 손상되었거나 교체가 필요할 시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잠재적으로 크롬북 상단 케이스 $45, LCD 플라스틱 베젤 커버 $40, 전체 키보드 $75 및/또는 하단 덮개 $40).

자녀가 등교 전에 크롬북 충전하기를 잊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학생은 매일 밤 집에서 크롬북을 충전하고 완전히 충전된 상태로 학교에 가져와야 합니다. 가능한 경우 충전된 크롬북을 학교에 가져오지 않은 학생에게 당일 대여 기기가 제공될 수 있으며 이 기기는 집으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대여는 이용 불가할 수 있으며, 자녀가 하루 동안 크롬북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학생이 크롬북을 다른 공간으로 가져가야만 한다면, 크롬북을 어떻게 옮겨야 합니까?**
크롬북은 가볍게 다루더라도 화면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절대 열린 상태로 운반해서는 안 됩니다. 크롬북은 교실에서 교실로, 또는 등하교 전에 안전하게 닫아야 합니다. 휴대용 케이스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건물의 무선 연결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어디에서 인터넷을 연결할 수 있습니까?
장치는 무선으로만 웹에 연결됩니다. 학교에서 교육구의 Wi-Fi 네트워크가 다운된다면 크롬북이 웹에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생의 구글 드라이브 접속과 같은 일부 기능은 여전히 제한적으로 작동합니다. 오프라인에서 수행한 작업은 무선 인터넷 연결이 복원될 때까지 백업되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기기 운영 체제에 들어가기 위해 어떤 로그인 계정을 사용합니까?
학생들은 각각 기본 로그인 및 사용자 이름을 제공할 Bright Star Schools 구글 도메인 내 계정을 갖게 됩니다. 교육구는 비밀번호를 복구할 수 있으나 시간이 걸리므로, 학생들은 성공적인 로그인을 위해 비밀번호를 기억해야 합니다.

크롬북을 다른 사용자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학생과 교직원은 교육구에서 할당한 구글 계정이 아닌 기타 일체의 로그인 계정으로 교육구 소유 크롬북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은 교육구에서 제공하는 크롬북에서 개인 지메일(Gmail) 계정에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

안전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웹사이트는 기기에서 필터링됩니까?
우리는 학생의 온라인 경험이 안전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CIPA 및 FERPA 준수). 자녀가 학교, 집 또는 공공 도서관에서 크롬북을 사용할 경우, 웹 콘텐츠를 보거나 접속하기 전에 항상 웹 필터링 및 네트워크 방화벽 시스템을 통과합니다. 웹 필터는 부적절한 콘텐츠를 최대한 차단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습니다. 방화벽과 필터링 시스템이 모든 부적절한 자료를 차단하지는 않으므로, 학부모는 항상 자녀의 인터넷 사용을 감독하여 적절한 사용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학생이 부적절한 웹사이트를 방문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부적절한 웹사이트와 콘텐츠를 경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일부 웹사이트는 제때 차단되지 않거나 필터를 우회할 수 있습니다. 직원은 Bright Star 학교 현장에서 Light Speed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모니터링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사와 학부모는 정기적으로 학생 크롬북의 검색 기록을 무작위로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검색 기록은 학생이 삭제할 수 없습니다. Bright Star Schools는 또한 학생의 검색 기록을 무작위로 확인합니다. 일체의 부적절한 웹 활동을 발견하면 자녀의 교사, 교장 또는 교감에게 연락하십시오. 부적절한 웹 브라우징은 교육구의 승인된 사용 정책을 위반하는 것이며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기가 손상되거나 분실되면 어떻게 됩니까?
학생과 학부모는 교과서, 계산기, 카메라, 운동 장비 또는 도서관 책과 같은 다른 Bright Star School 물품에 대해 책임이 있듯이, Bright Star School 소유 기술 자산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Bright Star에서 기기를 수리하거나 교체할 것이나, 학생과 학부모가 이러한 수리 또는 교체된 기기 비용을 부담합니다.

학생 인터넷 사용 동의서

Charter School은 기술에 대한 접근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학생이 Charter School 컴퓨터, 네트워크 및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모두의 경험이 성공적일 수 있도록, 학생들은 다음 이용약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1. 보안

학생들은 Charter School 기술 자원의 보안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학생들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a. 모든 개인 비밀번호를 보호하십시오. 학생들은 타인과 비밀번호를 공유해서는 안 되며 비밀번호를 자주 변경해야 합니다. 학생은 학생 계정이 손상되었다고 생각될 경우 즉시 행정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b. 교사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정 또는 공유 계정으로만 기술에 접속하고, 계정 소유자의 승인 여부에 관계없이 타인이 자신의 계정을 사용하거나 타인의 계정을 사용하도록 허용하지 마십시오.

2. 승인된 사용

학생들은 교사의 지시가 있을 때, 기술이 학생의 공개 사용을 위해 지정된 경우(예: 도서관의 컴퓨터) 및 기타적 교육 목적으로 Charter School 기술 자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보호 조치

Charter School은 Charter School이 만들고 구매한 콘텐츠에 대해 합리적인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인터넷을 통해 접속되는 콘텐츠에 대한 통제는 제한적이며 필터링 시스템은 100%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Charter School이나 그 교직원, 직원, 교원, 책임자 또는 자원봉사자는 일체의 기술 보호 조치의 실패, 저작권 제한 위반 또는 사용자 실수, 오용 또는 과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보호자는 기술 보호 조치의 실패, 저작권 제한 위반 또는 사용자 실수, 오용 또는 과실에 대해 Charter School 또는 모든 Charter School 교직원, 직원, 교원, 책임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학생과 학생의 학부모/보호자는 또한 발생한 일체의 손해나 비용에 대해 Charter School, Charter School 교직원, 직원, 교원, 책임자 및 자원봉사자를 면책하고 피해가 없게 하는 데 동의합니다. 학부모/보호자는 이 정책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학교 시설 밖이나 학교 수업 시간 외에 자녀에 의한 일체의 Charter School 장비 사용 동안 내내, 항상 이러한 장비를 통한 자녀의 인터넷 접속 및 일체의 온라인 서비스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Charter School 장비 사용을 감독하고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4. 부적절한 사용

Charter School의 기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대역폭은 공유되고 제한적인 리소스이며, 모든 사용자는 해당 리소스를 책임감 있게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주로 교육적 목적으로 Charter School 기술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Charter School의 기술이나 장비를 개인 활동이나 Charter School 정책이나 현지 법률을 위반하는 활동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a. 게임 또는 온라인 게임 플레이.
b. 라이선스 요건, 저작권 또는 기타 지적 재산권을 위반하여 소프트웨어, 음악, 영화 또는 기타 콘텐츠를 다운로드하는 행위.
c. 교사 또는 기타 승인된 Charter School 직원의 허가 없이 Charter School 장비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행위.
d. 음란물, 명예훼손 또는 기타 모욕적인 자료를 포함하여 부적절한 콘텐츠를 다운로드, 보기 또는 공유하는 행위.
e. Charter School 정책, 학생 행동 강령 또는 지역이나 주, 연방법을 위반하는 일체의 활동 수행.
f. 기술을 사용하여 괴롭힘, 협박, 따돌림 또는 교육 과정을 방해하는 것을 포함하여 다른 학생(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체의 활동에 참여.
g. 영리 사업 수행.
h. 네트워크상의 해킹 도구를 사용하거나 Charter School의 네트워크에 의도적으로 악성코드 또는 바이러스를 심는 행위.
i. 일체의 소프트웨어나 프록시 서비스를 사용하여 학생의 IP 주소나 학생이 방문하는 사이트를 모호하게 가리는 행위.
j. 시스템 모니터링, 필터링 또는 기타 보안 조치를 비활성화, 우회 또는 비활성화나 우회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k. 학생이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네트워크상의 자료 또는 시스템에 접속하거나 접속을 시도하는 행위.

5.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기대 없음

학생은 컴퓨터 장비, 인터넷 액세스 네트워크, 이메일 계정 및 기타 기술 자원이 Charter School의 소유이며 교육적 목적으로 학생에게 제공된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Charter School은 교직원이 컴퓨터 장비, 인터넷 접속 네트워크 및 이메일 계정에 대한 모든 접속을 모니터링하고 감독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활동 모니터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학생을 감독하는 교직원이 볼 수 있도록 컴퓨터 화면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Charter School은 Charter School 장비에 저장되거나 Charter School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된 저장된 컴퓨터 기록 및 통신, 파일 및 기타 데이터에 접속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이러한 통신, 파일 및 데이터는 비공개가 아니며 일상적인 시스템 유지 관리 중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학년도/학기 말 또는 동의한 사용 기간에 Charter School 장비를 검사하는 동안, 학생이 부적절한 사용을 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때 개별 파일을 검토하거나 개별 활동을 모니터링합니다.

6. 파괴적 활동

학생들은 Charter School 네트워크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Charter School 기술 자원을 의도적으로 손상시켜서는 안 됩니다.

7. 승인되지 않은 네트워크

학생들은 Charter School의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해 승인되지 않은 무선 네트워크를 만들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개인 장치에 무선 접속 포인트, 무선 라우터 및 개방형 네트워크 설정이 포함됩니다.

8. 부적절한 사용의 결과

법률, 위원회 정책 또는 이 동의서를 위반하면 학생의 교육구 기술에 대한 접근을 취소할 수 있음 및/또는 최대 정학 또는 퇴학을 포함하는 징계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 위원회 정책 또는 이 동의서의 위반은 적절하게 법 집행 기관에 보고될 수 있습니다.

9. 기술 시스템/장비 관리

학생들은 컴퓨터/기타 기술 근처에서 음식이나 음료를 마시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장비 및 할당된 장소를 기물 파손 행위가 없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학생의 기술 사용 정책 및 허용 가능한 사용 동의서를 읽은 후, 제공된 이용 약관에 동의함을 나타내기 위해 이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사용 가능한 기술에 대한 접속 권한이 부여되기 전에 학생과 학부모/보호자의 서명이 모두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사용 절차를 포함하는 이 문서는 모든 당사자의 완전한 동의와 이해를 반영합니다. Charter School은 학부모/보호자가 자녀와 이 정책에 대해 논의하여 자녀가 이 정책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게 하도록 권장합니다.

Charter School 기술의 사용자로서, 본인은 학생의 기술 사용 정책을 읽었으며 이에 따라 이 정책 및 허용 가능한 사용 동의서를 준수하는 데 동의합니다. 본인은 이 허용 가능한 사용 동의서 및 교육구 기술 사용에 적용되는 기타 해당 법률과 교육구 정책 및 규정을 받았고, 읽고, 이해했으며, 이를 준수하는 데 동의합니다. 본인은 교육구 기술을 사용할 때 개인 정보 보호를 기대할 수 없음을 이해합니다. 또한 본인은 일체의 위반이 있을 시 사용자 권한 상실, 징계 조치 및/또는 적절한 법적 조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본인은 컴퓨터 사용이 권리가 아닌, 특권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본인은 어떤 식으로든 이 정책을 위반하는 학생은 회부 및 잠재적인 정학 또는 퇴학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본인은 학생이 Charter School의 기술, 장비 및 네트워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Charter School의 재산을 고의로 손상시키거나 학생에게 대여한 Charter School의 재산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학생의 학부모/보호자가 최대 1만 달러($10,000, 매년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됨)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학생의 비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학생의 학부모나 보호자에게 학생의 비행 혐의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하고 학생에게 적법 절차를 제공한 후, Charter School은 손해가 배상되거나 재산이 반환될 때까지 학생의 성적, 성적표 및 졸업장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학생과 학생의 학부모/보호자가 손해를 배상하거나 재산을 반환할 수 없을 경우, Charter School은 금전적 손해배상 대신 미성년자를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입니다. 봉사활동이 완료되면 학생의 성적, 성적표, 졸업장이 제공됩니다. 성년인 학생은 동일한 책임을 집니다. (교육 조례 § 48904항).

학생의 이름(정자체로 기입): _____ 학년: _____

학생의 서명: _____ 날짜: _____

학생이 만 18세 미만일 경우, 학부모/보호자도 반드시 동의서를 읽고 서명해야 합니다.

위에 언급된 학생의 학부모/보호자로서, 본인은 허용 가능한 사용 동의서의 조항을 읽고 이해했으며, 본인의 자녀가 조항을 준수함에 동의합니다. 이 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본인은 자녀가 Bright Star 학교 기술을 사용하고/하거나 학교의 컴퓨터 네트워크 및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을 허가합니다. 본인은 BSS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모든 공격적이고 논쟁적인 자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본인은 자녀의 Bright Star 학교 기술 사용 또는 Bright Star Schools에서 사용한 일체의 기술 보호 조치의 실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청구, 손해 및 비용에 대해 학교, Bright Star Schools 및 BSS 직원에 대해 책임을 면제하고 면책하며 해가 없도록 하는 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은 접속이 학교 환경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녀의 접속 계정 사용에 대한 감독에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학부모/보호자의 이름(정자체로 기입):_____

학부모/보호자의 서명: _____ 날짜: _____

_____ 교직원 전용 _____

본인은 학생의 기술 사용 정책 및 허용 가능한 사용 동의서를 읽고 이해했으며 이를 준수하는 데 동의합니다. 본인은 Charter School의 기술 사용에 관한 모든 별도의 정책에 더해, 학생에게 적용되는 Charter School의 정책, 절차, 규칙 및 규정이, Charter School의 기술을 성인으로서 사용하는 본인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직원의 서명:_____ 직원의 이름(정자체로 기입): _____

가족 우려사항 해결 절차

이 정책에서 다루는 우려사항 유형

이 절차는 학부모 또는 학생이 학교 정책 또는 브라이트 스타 학교 교사나 기타 직원이 내린 결정에 대해 우려사항이 있는 경우 브라이트 스타 학교에서 따르게 됩니다.

실제 또는 인지된 특성에 근거한 불법적인 차별이나, 괴롭힘, 위협, 따돌림을 주장하는 불만사항, 또는 학교가 학생에게 교육 활동 참여에 대한 수수료, 보증금 또는 기타 비용을 요구하는 금지를 준수하지 않는다는 불만은 이 정책에 해당하지 않으며, 대신 학생 및 가족 핸드북에 기재된 브라이트 스타 학교의 공통 불만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가족 우려사항의 비공식적 해결

학부모 및 학생에게는 우려사항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요청하여, 학교 정책 및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교사, 직원 및 행정실이 내린 결정에 대한 우려사항 및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우려사항이 학부모나 학생에게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아래에 설명된 절차를 활성화하여 가족 우려사항을 공식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족 우려사항의 공식적 해결

가족 우려사항의 공식 해결 레벨 1

비공식 회의를 통해 우려사항이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않은 학부모 또는 학생은 브라이트 스타 학교의 가족 우려사항 양식에 서면 우려사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학생이나 부모가 문제를 야기한 결정이나 조치를 처음 알았거나 합리적인 근면성을 가지고 알았어야 하는 날짜로부터 15일 이내, 그리고
2. 학교 교장선생님과 함께.

해당 양식에서 다루는 문제의 유형에 따라 학교 교장이 양식에 적합한 관리자가 아니라고 브라이트 스타 학교가 결정할 경우, 학교 교장은 양식을 수신한 날짜와 시간을 기록하고 양식을 적절한 관리자에게 전달합니다. 주장된 문제를 해결할 권한이 있는 유일한 행정관이 교육감이라고 브라이트 스타 학교가 결정하는 경우, 해당 양식은 학교 교장이 수신하는 즉시 2단계로 올라가게 됩니다.

학교 교장 또는 기타 적절한 행정관은 필요에 따라 문제를 조사하고 해당 양식을 수신한 후 10일 이내에 또는 가능한 한 빨리 학생이나 학부모와의 회의를 개최합니다. 행정관은 회의에 합리적인 시간 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행정관은 회의 후 10일 이내에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서면 답변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우려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 교장이나 기타 적절한 행정관이 내린 결정의 근거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려사항을 해결하는 결정을 내림에 있어, 행정관은 레벨 1 회의에서 제공된 정보와 행정관이 우려사항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기타 관련 문서나 정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가족 우려사항의 공식 해결 레벨 2

학생이나 학부모가 1 단계에서 만족스러운 응답을 받지 못했거나 적절한 관리자의 응답 시간이 만료된 경우, 학생이나 학부모는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과의 회의를 요청하여 1 단계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 통지는 브라이트 스타 학교에서 제공한 양식으로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서면 1단계 응답 날짜로부터 10일 이내에, 또는 응답을 받지 못한 경우, 1 단계 회의일자로부터 20일 이내에 반드시 접수해야 합니다.

항소 통지를 수신한 후, 학교 교장 또는 기타 적절한 행정관은 1 단계 기록에 대한 기록을 준비하여 부교육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학생이나 학부모는 또한 1 단계 기록의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단계 기록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원본 양식 및 일체의 첨부파일.
2. 1 단계에서 학생이나 학부모가 제출한 기타 모든 문서.
3. 1 단계에서 발행된 일체의 서면 응답 및 첨부파일.
4. 1 단계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캠퍼스 교장 또는 기타 적절한 행정관이 의존하는 기타 모든 문서.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항소 통지가 접수된 후 10일 이내에 또는 그 후 가능한 한 빨리 학생 또는 학부모와의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회의는 1 단계에서 학생이나 학부모가 제시하고 2 단계 항소 통지에서 식별된 문제로 제한됩니다. 회의에서, 학생이나 학부모는 1 단계 결정을 위해 행정실이 의존한 일체의 문서나 정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회의에 합리적인 시간 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2 단계 회의 후 10일 이내에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서면 답변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우려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이 내린 결정의 근거가 설명될 수 있습니다. 결정을 내림에 있어,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1 단계 기록, 2 단계 회의에서 제공된 정보,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기타 관련 문서 또는

정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가족 우려사항의 공식 해결 레벨 3

학생이나 학부모가 2 단계에서 요청한 구제를 받지 못했거나,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의 응답 시간이 만료된 경우, 학생이나 학부모는 결정에 대해 총괄 책임자(Executive Director)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 통지는 서면으로 브라이트 스타 학교에서 제공한 양식에 따라, 서면 2 단계 응답 날짜로부터 10일 이내에, 또는 응답을 받지 못한 경우, 2 단계 회의 일자로부터 20일 이내에 반드시 접수해야 합니다.

3 단계 항소가 접수될 경우, 총괄 책임자는 해당 문제에 대해 판결을 내릴지 또는 해당 문제가 다음 정기 회의의 의제에 배치되도록 브라이트 스타 학교 이사회에 회부하기에 적절한지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총괄 책임자가 해당 문제에 대해 판결을 내리기로 한 경우, 총괄 책임자는 3 단계 항소 통지가 접수된 후 10일 이내에 또는 그 후 가능한 한 빨리 학생 또는 학부모와의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회의는 1 단계 및 2 단계에서 학생이나 학부모가 제시하고 3 단계 이의 제기 통지에서 식별된 문제로 제한됩니다. 회의에서, 학생이나 학부모는 1 단계 및 2 단계 결정을 위해 행정실이 의존한 일체의 문서나 정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총괄 책임자는 회의에 합리적인 시간 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총괄 책임자는 3 단계 회의 후 10일 이내에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서면 답변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우려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총괄 책임자가 내린 결정의 근거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려사항을 해결하는 결정을 내림에 있어, 총괄 책임자는 1 단계 및 2 단계 기록, 3 단계 회의에서 제공된 정보와 총괄 책임자가 우려사항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기타 관련 문서나 정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총괄 책임자가 다음 정기 회의의 의제에 배치하기 위해 해당 문제를 이사회에 회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총괄 책임자는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해당 우려사항이 이사회 제출 의제에 포함될 이사회 회의 날짜, 시간 및 장소를 고지할 것입니다. 이사회 의장은 브라운법(Brown Act)에 따라 공개 또는 비공개 회의에서 해당 우려사항을 제시할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이사회가 우려사항을 들을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 제한을 설정할 것입니다. 총괄 책임자는 2 단계 항소 기록을 이사회에 제공할 것입니다. 학생이나 학부모는 또한 2 단계 기록의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IX편, 괴롭힘, 위협, 차별 및 따돌림 정책

차별, 성희롱, 괴롭힘, 위협 및 따돌림은 모두 학생의 학습 능력을 방해하고 학생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학교 안전을 저해하고 적대적인 학교 환경으로 만드는 파괴적인 행동입니다. 따라서 Bright Star Schools(또는 "Charter School")는 일체의 차별, 성희롱, 희롱, 위협 및 따돌림 행위를 모두 금지합니다. 이 정책에는 학교 캠퍼스의 모든 지역, 위치에 무관하게 학교 후원 행사 및 활동에서, 학교 소유 기술 및 기타 전자 수단을 통해 발생하는 사례가 포함됩니다.

이 정책에서 사용되는 차별, 성희롱, 괴롭힘, 위협 및 따돌림은 언어적, 신체적, 서면 의사소통 또는 실제이거나 인지된 정신적이거나 신체적 장애에 기반된 특성, 성(임신 및 관련 상태, 부모님의 상태 포함), 성적 지향, 성별, 성별 정체성, 성별 표현, 이민 상태, 국적(국가적 출신, 출신 국가 및 시민권 포함), 인종 또는 민족성(혈통, 피부색, 민족 집단 동일시, 민족적 배경, 땋은 머리,

곱슬머리, 꼬임머리 등의 머리카락 구조와 보호적인 헤어스타일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역사적안 인종 관련 특성, 종교(불신론 및 무신론 포함), 종교 소속, 의학적 상태, 유전적 정보, 결혼 상태, 연령 또는 이러한 사실적 또는 인지된 특정을 하나 이상 지니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와의 관계, 또는 관련 주 또는 연방법이나 현지 법령하에 보호되는 일체의 기타 특성에 기반된 사이버 성적 괴롭힘 등의 사이버 괴롭힘을 포함한 의도적인 행위로 기술됩니다. 이하, 이러한 행위는 "본 정책에서 금지하는 불법 행위"로 칭합니다.
Bright Star Schools는 가능한 한 학생들이 차별, 괴롭힘, 위협 및/또는 따돌림을 당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이러한 행동을 시기적절한 방식으로 조사, 대응, 해결 및 보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본 정책에서 금지하는 불법 행위를 목격한 Bright Star Schools 직원은 개입해도 안전할 때 개입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또한, Bright Star Schools는 일체의 직원, 독립 계약업자 또는 Bright Star Schools와 사업을 하는 기타 인물 또는 기타 개인, 학생 또는 자원봉사자가 행하는 본 정책에서 금지하는 불법 행위를 용서하거나 용인하지 않습니다. 본 정책은 직위나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직원, 학생 또는 자원봉사자 행위 및 관계에 적용됩니다. Bright Star Schools는 고의적으로 무관심하지 않은 방식으로 본 정책에서 금지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고발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대응할 것이며, 정당한 경우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Bright Star Schools는 본 정책에서 금지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신고에 대한 대응에 있어 모든 관련 주 및 연방법 및 규정과 지역 조례를 준수합니다.

IX편, 괴롭힘, 위협, 차별 및 따돌림 조정담당자

(“조정담당자”)
Leeann Yu, Chief Operations Officer (최고 운영 책임자)
lyu@brightstarschools.org
Bright Star Schools
물리적 주소: 600 S. La Fayette Park Pl, Los Angeles, CA 90057
우편 주소: 5101 Santa Monica Blvd Ste 8, PMB 93, Los Angeles, CA 90029
(323) 954-9957 x1006

금지된 따돌림 및 괴롭힘의 정의

금지된 불법 괴롭힘

- 멸칭, 경멸적인 농담, 발언 또는 비방과 같은 언어적 행위.
- 성, 인종 또는 일체의 기타 보호되는 기본 특성을 이유로 폭행, 원치 않는 접촉, 정상적인 움직임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직장 또는 학교 활동에 지장을 주는 등의 신체적 행위.
- 괴롭힘을 신고, 또는 신고하겠다는 위협에 대한 보복.
- 위에 나열된 일체의 보호되는 특성에 기반된 우대 또는 특혜.

IX편에 따라 금지된 불법 괴롭힘

IX편 (20 U.S.C. § 1681 *et seq.*; 34 C.F.R. § 106.1 *et seq.*) 및 캘리포니아 주법은 성에 기반한 차별 및 괴롭힘을 금지합니다. 이러한 현행법에 따라, 교육기관의 입학 및 고용 관행을 포함하여, 교육기관에서는 성별에 기반한 차별 및 괴롭힘이 금지됩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Bright Star Schools에서 수행하는 교육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서 불법적인 차별과 괴롭힘에서 벗어나 평등한 권리, 기회와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Bright Star Schools는 성희롱이 없는 직장 및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러한 괴롭힘을 중범죄로 간주하여 징계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IX편 및 34 C.F.R 106부의

적용에 관한 문의는 조정담당자, 미국 교육부의 시민 권리 차관보 또는 둘 다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은 성적 욕망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원치 않는 성적 접근, 성적 호의 요청 및 기타 성에 기반한 언어적 또는 신체적 행위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성 기반 행위로 구성됩니다. (a) 해당 행위에 대한 복종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개인의 고용, 교육, 학업 상태 또는 진척 상황의 조건이 됩니다. (b) 개인의 행위에 대한 복종 또는 거부는 해당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고용, 교육 또는 학업 결정의 근거로 사용됩니다. (c) 해당 행위가 개인의 업무 또는 학업 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위협적이거나 적대적이거나 공격적인 업무 또는 교육 환경을 조성할 목적이 있거나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및/또는 (d) 개인의 행위에 대한 복종 또는 거부는 교육 기관에서 또는 교육 기관을 통해 제공되는 혜택 및 서비스, 명예, 프로그램 또는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결정의 근거로 사용됩니다.

자신이나 다른 개인에 대한 성희롱에 대해 선의의 우려를 표현한 개인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든 보복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성희롱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다음과 같은 성적인 신체적 공격:
  - 강간, 성적 침해, 성추행 또는 이러한 폭행을 저지르려는 시도.
  - 다른 사람의 몸을 만지기, 꼬집기, 더듬기, 움켜쥐기, 쓰다듬기 또는 다른 사람의 몸을 찌르기와 같이 본질적으로 성적인 의도적 신체적 행위.
- 다음과 같은 원치 않는 성적 접근, 제안 또는 기타 성적인 발언:
  - 개인의 성적 특질 또는 성적 경험에 대한 성적 의도가 있는 표현, 통지, 말, 농담 또는 발언.
  - 성적 행위 거부에 대한 보상 또는 우대 대우를 위해 일체의 개인에게 성적 활동에 참여하도록 권유하거나 시도하는 것을 포함하여, 성적 행위에 복종하는 개인에 대한 특혜 또는 특혜 약속.
  - 학생이나 직원의 성별을 이유로 원치 않는 성적 관심 또는 행위의 대상으로 삼거나 대상으로 삼겠다는 협박, 또는 학생이나 직원의 성과를 고의로 더 어렵게 만드는 행위.
- 다음과 같은, 업무나 교육 환경의 어느 곳에서든 성적이거나 차별적인 전시 또는 출간물의 존재:
  - 사진, 만화, 포스터, 달력, 낙서, 물건, 홍보 자료, 읽을거리 또는 성적 암시, 성적 비하 또는 외설적인 기타 자료를 업무 또는 교육 환경에서 읽거나 전시하거나 볼 수 있도록 내보이거나 가져오거나 소지하는 행위.
  - 어떤 식으로든 성적 노출, 성적 암시, 성적 비하 또는 외설적인 내용을 공개적으로 읽거나 업무 또는 교육 환경에서 공개하는 행위.
  - 업무 또는 교육 환경(화장실 또는 이와 유사한 공간 제외)의 영역에서 개인을 성별로 구분하는 표시 또는 기타 자료를 표시하는 행위.

위의 괴롭힘 및 성희롱의 삽화는 본 정책에서 금지하는 행위의 목록 전부가 아닙니다.

따돌림

서면 또는 전자적 행위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을 포함하여, 일체의 심각하거나 만연한 물리적 또는 언어적 행동이나 행위. 따돌림에는 성희롱, 혐오 폭력을 구성하거나 위협적인 및/또는 적대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학생 한 명 또는 학생 집단이 한 명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음과 같은 하나 이상의 영향을 실제로 미치거나 미친다고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행동이 포함됩니다.

1. 합리적인 학생 또는 학생들을 해당 학생 또는 해당 학생들의 신체나 재산에 해가 미칠까

봐 두려워하게 하는 행위.
2. 합리적인 학생이 자신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에 상당히 해로운 영향을 겪도록 초래함.
3. 합리적인 학생이 자신의 학업 수행에 상당한 방해를 겪도록 초래함.
4. 합리적인 학생이 Bright Star Schools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활동 또는 특권에 참여하거나 그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능력에 상당한 방해를 겪도록 초래함.

합리적인 학생

학생의 또래, 또는 특수한 요구가 있는 또래에 대한 행위에 있어 보살핌과 기술, 판단력을 행사하는, 특수한 요구가 있는 학생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학생.

사이버 괴롭힘

전화, 컴퓨터 또는 일체의 무선 통신 장치를 사용하여 인터넷, 소셜 미디어 또는 기타 기술상에서 괴로움을 가하는 의사소통, 직접적인 위협 또는 기타 유해한 텍스트나 소리, 이미지를 전송하는 것을 포함하는 전자적 행동. 사이버 괴롭힘에는 다른 사람의 전자 계정에 침입하여 그 사람의 평판을 손상시키기 위해 그 사람의 신원을 가장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사이버 성적 괴롭힘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a. 위의 “따돌림”의 정의에 설명된 영향 중 하나 이상을 미치거나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측될 수 있는 전자적 행동을 통해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에게 사진 또는 기타 시각적 녹화 자료를 유포하거나 유포하도록 권유 또는 선동. 위에 설명된 사진 또는 기타 시각적 녹화 자료에는 사진, 시각적 녹화 자료 또는 기타 전자적 행동에서 해당 미성년자를 식별할 수 있는 미성년자의 나체, 반나체 또는 성적으로 노골적인 사진이나 기타 시각적 녹화 장면이 포함됩니다.
b. 여기에는 일체의 진지한 문학적, 예술적, 교육적, 정치적 또는 과학적 가치가 있거나 운동경기 또는 학교에서 승인한 활동을 수반하는 서술, 묘사 또는 이미지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자적 행동

전화, 무선 전화 또는 기타 무선 통신 장치, 컴퓨터 또는 호출기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전자적 장치를 통해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다음 중 하나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의사소통의 생성 또는 전송을 의미함.

- 메시지, 텍스트, 사운드, 동영상 또는 이미지.
-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소셜 네트워크 인터넷 웹사이트의 게시물:
    a. 번 페이지에 콘텐츠 게시 또는 페이지 생성. "번 페이지(Burn Page)"는 위의 "따돌림"의 정의에 나열된 영향 중 하나 이상을 미칠 목적으로 생성된 인터넷 웹사이트를 의미합니다.
    b. 위의 "따돌림"의 정의에 나열된 영향 중 하나 이상을 미칠 목적으로 다른 실제 학생을 그럴 듯하게 사칭함. "그럴 듯한 사칭"은 어떤 학생을 괴롭힐 목적으로 고의로 동의 없이 학생을 사칭하여, 다른 학생이 사칭자가 사칭된 학생이었음을 또는 학생임을 합리적으로 믿거나 합리적으로 믿은 적이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c. 위의 "따돌림"의 정의에 나열된 영향 중 하나 이상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 프로필을 생성함. "허위 프로필"은 허구적인 학생 프로필, 또는 허위 프로필을 생성한 학생이 아닌 실제 학생의 사진이나 특성을 사용하는 프로필을 의미합니다.
- 다음을 포함하나 위 정의에 국한되지 않는, “사이버 성적 괴롭힘" 행위
- 위의 "따돌림" 및 "전자적 행동"의 정의에도 불구하고, 전자적 행동은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었거나 현재 인터넷에 게시되어 있다는 근거에만 기반하여 만연한 행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공식적인 성희롱 고발

Bright Star Schools의 교육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를 시도 중인 원고가 접수하고 서명한 서면 문서, 또는 피고에 대한 성희롱을 주장하고 Bright Star Schools에 성희롱 혐의를 조사하도록 요청하는 조정담당자가 서명한 서면 문서.

피고

성희롱을 구성할 수 있는 행위의 가해자로 신고된 개인.

따돌림 및 사이버 괴롭힘 예방 절차

Bright Star Schools는 사이버 따돌림을 포함한 따돌림 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르고 있습니다.

사이버 괴롭힘 예방 절차

Bright Star Schools에서는 학생들에게...:

a. 절대로 암호, 개인 정보 또는 개인 사진을 온라인으로 공유하지 않도록 권고합니다.
b. 콘텐츠를 게시하기 전에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신중하게 생각하도록 권고하고, 한 번 게시된 댓글은 철회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c. 소셜 미디어에 공개된 개인 정보는 학부모, 교사, 관리자 및 잠재적 고용주를 포함한 모든 사람과 공유될 수 있음을 숙지시킵니다. 학생들은 전 세계가 액세스할 수 있다면 그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는 정보를 절대로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d.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 댓글을 달기 전에, 그러한 댓글을 받으면 어떤 기분이 들지 고려하도록 권고합니다.

Bright Star Schools는 교실 안팎에서의 기술 사용에 관한 Bright Star Schools의 정책을 Charter School 직원,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에게 고지합니다. Bright Star Schools는 학부모/보호자가 자녀와 이러한 정책에 대해 논의하여 자녀가 이러한 정책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게 하도록 권장합니다.

교육

Bright Star Schools 직원이 따돌림 사건이 발생할 때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수는 없으므로, 학생들에게 따돌림에 대해 교육하는 것은 따돌림 발생을 제한시키는 핵심 예방 기술입니다. Bright Star Schools는 혐오적인 및/또는 비하하는 행동이 우리 사회와 Bright Star Schools에서 부적절하고 용납될 수 없음을 학생들에게 조언하고, 학생들이 연민을 실천하고 서로를 존중하도록 독려합니다.

Charter School은 보호받는 특성(실제 또는 인지된 성적 지향, 성별 동일시, 신체 또는 인지 장애, 인종, 민족, 종교 및 이민 상태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 동료를 수용하도록, 그리고 보호받는 특성에 기반하여 다른 학생들을 따돌리는 것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학생들을 교육합니다.

Bright Star Schools의 따돌림 예방 교육에서는 또한 적절한 행동과 부적절한 행동의 차이점에 대해 논의하고, 학생들이 적절한 행동을 배우고 실천하며 따돌림 유형의 행동에 비공격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는 기술과 전략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예시 상황을 포함시켜 교육합니다. 학생들은 또한 자신감을 키우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옹호하는 방법, 그리고 성인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 때를 배웁니다.

Bright Star Schools는 Bright Star Schools 직원,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에게 이 정책을 알리고 학부모/보호자가 자녀와 이 정책에 대해 논의하여 자녀가 이 정책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게 하도록 권장합니다.

전문성 개발

Bright Star Schools는 교육법 32283.5(a)항에 따라 캘리포니아 교육부가 개발한 온라인 교육 모듈을, 인증받은 직원 및 학생들과 정기적으로 교류하는 다른 모든 Bright Star Schools 직원에게 매년 제공합니다.

Bright Star Schools는 인증받은 직원에게 다음을 포함하여 학생이 괴롭힘의 대상이라는 일반적인 징후에 대해 알립니다.

- 물리적 절단 또는 부상
- 분실 또는 파손된 개인 물품
- 학교/연습/경기에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 학교, 활동 또는 친구에 대한 관심 상실
- 수면 또는 식사가 어려움
- 불안 초조/아픔/신경질적 행동 또는 겉보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함
- 자기 파괴 또는 이상한 행동을 보임
- 자존감 감소

Charter School은 또한 인증받은 직원들에게 따돌림의 위험이 높다고 Bright Star Schools에서 판단한 학생 단체, 그리고 이용 가능한 연구에 대해 알립니다. 이러한 그룹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또는 퀘스처너리 청소년("LGBTQ") 및 LGBTQ로 인식되는 청소년, 그리고
- 신체 또는 학습 장애가 있는 학생.

Bright Star Schools는 직원들이 Bright Star Schools의 학생들을 위해 효과적인 문제 해결법, 분노 관리 및 자신감 기술을 보여 주도록 독려합니다.

고충 처리 절차

1. 고충 처리의 범위

Bright Star Schools는 보호 대상 집단 또는 다음과 같이 UCP에 명시된 하나 이상의 보호받는 특성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불법적인 괴롭힘, 차별, 위협 또는 따돌림을 주장하는 고발을 조사하고 그에 대응 시 공통 고발 처리 절차("UCP") 정책을 준수합니다.

a. 작성 및 서명됨,
b. 개인이 불법적인 차별, 괴롭힘, 위협 또는 따돌림을 개인적으로 겪었다고 주장하는 개인, 또는 일체의 특정 개인 집단이 본 부에서 금지된 차별, 괴롭힘, 위협 또는 따돌림의 대상이 되어 왔다고 생각하는 개인, 또는 한 개별 학생이 차별, 괴롭힘, 위협 또는 따돌림의 대상이 되어 왔다고 주장하는 정당하게 승인된 대리인이 접수함, 그리고
c. 주장된 불법적인 차별, 괴롭힘, 위협 또는 따돌림이 발생한 날짜로부터, 또는 주장된 차별, 괴롭힘, 위협 또는 따돌림의 사실에 대해 원고가 처음 알게 된 날짜로부터 6개월 이내에 Bright Star Schools UCP 준수 담당자에게 제출됨.

신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고충 처리 절차를 활용합니다.

2. 신고

Bright Star Schools에서는 본 정책에서 금지하는 불법 행위를 공평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정책에서 금지하는 불법 행위를 경험한 경우, 다음 조치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따르십시오.

1. 해당 행동을 멈추기를 원한다고 가해자에게 알리십시오. 명확하고 직접적이어야 합니다.
2. 학교 상담사에게 알리거나, 불편한 경우 학교의 다른 성인에게 이야기하십시오.
3. 또한 언제든지 공식 서면 고발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해당 클레임에는 필요한 당사자만 참여하여 철저히 조사됩니다. 본 정책에 따라 기밀이 최대한 유지될 것입니다. 고발장 양식은 이 정책의 끝에 있습니다.

모든 직원은 행위 기준을 시행하는 데 적절한 감독을 제공해야 하며, 본 정책에서 금지하는 불법 행위를 관찰하거나 알게 된 경우, 개입해도 안전할 때 개입하고, 지원을 요청하며, 그러한 사건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직원이 본 정책에서 금지하는 불법 행위 주장을 신고하는 데 본 정책의 절차를 따를 것을 요구합니다.

본 정책에서 금지하는 불법 행위 대상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러한 금지 불법 행위를 목격한 모든 학생은 그러한 불법 행위를 조정담당자에게 즉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Leeann Yu, Chief Operations Officer (최고 운영 책임자)
lyu@brightstarschools.org
Bright Star Schools
물리적 주소: 600 S. La Fayette Park Pl, Los Angeles, CA 90057
우편 주소: 5101 Santa Monica Blvd Ste 8, PMB 93, Los Angeles, CA 90029
(323) 954-9957 x1006

그러한 불법 행위에 대한 고발장은 미국 교육부 시민 권리 담당부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금지 명령, 접근 금지 명령 또는 기타 구제책이나 명령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민사 구제책도 원고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면 보고서 제출이 요구되지는 않으나, 신고 당사자는 조정담당자에게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Bright Star Schools는 고의적으로 무관심하지 않은 방식으로 본 정책에서 금지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모든 구두 및 서면 신고를 조사하고 대응할 것입니다. 신고는 익명으로 할 수 있으나, 익명의 신고에만 기반해서는 공식적인 징계 조치가 내려질 수 없습니다.

학생들은 본 정책에서 금지하는 모든 불법 행위 사건 또는 기타 언어적, 신체적 학대를 신고해야 합니다. 자신이 그러한 행동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즉시 교사, 상담사, 교장, 조정담당자, 교직원 또는 가족에게 연락하여 학생이 본 정책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Bright Star Schools는 모든 개인의 개인 정보 보호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모든 신고 내역은 당사자의 기밀성과 프로세스의 무결성을 최대한 보호하는 방식으로 조사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법률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만큼을 제외하고는 적절한 만큼 신고자의 신원을 기밀로 유지하기, 조사 수행 및/또는 사건별로 조정담당자 또는 행정 담당 피지명인이 결정한 바에 따라 해당 문제 해결하기가 포함됩니다.

Bright Star Schools는 본 정책에서 금지하는 불법 행위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접수하거나, 해당 행위와 관련흰 일체의 조사 또는 절차에서 증언, 지원, 참여 또는 참여하기 거부하는 개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보복을 금지합니다. 그러한 참여 또는 참여 부족은 개인의

지위, 등급 또는 업무 할당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본 정책을 위반하는 보복을 주장하는 개인은 본 정책에 명시된 절차를 사용하여 고충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고충 처리 과정에서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하거나 고의로 허위 정보를 제출하는 것은 금지되며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 중 모든 관리자는 관리자에 취임한 후 6개월 이내에 성희롱 교육을 받고, 그 이후 2년마다 1회 추가 교육을 받습니다. 모든 직원 및 조정담당자, 조사관 또는 의사 결정자로 지정된 모든 개인은 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성희롱 교육 및/또는 성희롱에 관한 지침을 받습니다.

3. 지원 조치

비공식적 또는 공식적인 성희롱 고발이 접수될 시, 조정담당자는 즉시 원고에게 연락하여 지원 조치의 이용 가능성을 논의합니다. 조정담당자는 지원 조치에 대한 원고의 의사를 고려하고, 공식적인 성희롱 고발 접수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에게 지원 조치의 이용 가능성을 알리고, 공식적인 성희롱 고발 접수 절차에 대해 설명합니다.

지원 조치는 공식적인 성희롱 고발 접수 전이나 후에, 또는 공식적인 성희롱 고발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경우 수수료나 비용 없이 원고나 피고에게 제공되는 비징계적, 비징벌적 개별 맞춤 서비스입니다. 해당 조치는 모든 당사자의 안전 또는 Bright Star Schools의 교육 환경을 보호하거나 성희롱을 막기 위해 고안된 조치를 포함하여, 상대방에게 불합리하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Bright Star Schools의 교육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회복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원고 및 피고가 이용할 수 있는 지원 조치에는 상담, 마감일 연장 또는 기타 수업 관련 조정, 업무 또는 수업 일정 수정, 캠퍼스 에스코트 서비스, 당사자 간의 상호 접촉 제한, 업무 장소 변경, 휴가 또는 휴학, 캠퍼스의 특정 지역에 대한 보안 및 모니터링 강화, 그리고 기타 유사한 조치가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Bright Star Schools는 그러한 기밀 유지가 지원 조치를 제공하는 Bright Star Schools의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는 정도까지 원고 또는 피고에게 제공되는 일체의 지원 조치를 기밀로 유지할 것입니다.

4. 조사 및 대응

Bright Star Schools의 학생, 교직원, 학부모, 자원봉사자, 방문자 또는 Bright Star Schools 계열 소속인에게서 본 정책에서 금지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을 시, 조정담당자(또는 행정 담당 피지명인)가 즉시 조사를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철저한 조사는 수업일 기준 25일을 넘지 않습니다. 조정담당자(또는 행정 담당 피지명인)가 조사가 수업일 기준 25일 이상 소요되고 정당한 사유로 인해 지연 또는 연장되어야 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조정담당자(또는 행정 담당 피지명인)는 원고에게 지연 또는 연장 이유를 알리고 조사가 완료되는 대략적인 날짜를 제공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정담당자(또는 행정 담당 피지명인)는 원고를 만나, 기밀유지법과 관련하여 가능한 정도까지, 사건/상황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일체의 조치를 포함하여 조사에 대한 정보를 원고에게 제공합니다. 그러나, 조정담당자(또는 행정 담당 피지명인)는 다른 학생이나 직원과 관련된 기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희롱 공식 고발에 대한 조사 및 대응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고충 처리 절차가 적용됩니다.

혐의 통지

공식적인 성희롱 고발 접수 시, 조정담당자는 일체의 자발적인 비공식 해결 과정을 포함하여, 모든 알려진 당사자에게 고충 처리 과정에 대한 서면 통지를 전송합니다. 통지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문제의 성희롱 혐의 및 알려진 범위 내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된 당사자의 신원, 성희롱을 구성하는 것으로 주장되는 행위, 주장된 사건이 발생한 날짜 및 장소에 대한

설명,
- 피고는 최종 판결 때까지 주장된 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가정된다는 진술,
- 당사자들은 변호사를 비롯한 고문을 선택하여 증거를 조사 및 검토할 수 있다는 진술, 그리고
- Bright Star Schools는 개인이 고충 처리 과정에서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하거나 고의로 허위 정보를 제출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진술.

긴급 해임

- Bright Star Schools는 Bright Star Schools의 정책에 따라 공식적인 성희롱 고발의 고충 처리가 미결 상태인 동안 학생이 아닌 직원 피고를 행정상의 휴가 상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Bright Star Schools는 Bright Star Schools의 정책에 따라, 긴급 상황 시 Bright Star Schools의 교육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서 피고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단, Bright Star Schools가 개별 맞춤 안전 및 위험 분석을 수행하고, 성희롱 혐의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학생 또는 기타 개인의 신체적 건강 또는 안전에 즉각적인 위협으로 인하여 해임이 정당화될 경우에 그러하며, 피고에게 통보와 더불어 해임 직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 이 조항은 IDEA, 504항 또는 ADA에 따른 일체의 권리를 수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공식적 해결

공식적인 성희롱 고발이 접수될 경우, Bright Star Schools는 책임에 대한 결정에 도달하기 전에 언제든 당사자에게 중재 등의 자발적 비공식 해결 과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Bright Star Schools가 해당 과정을 제공하는 경우, 다음을 수행합니다.

- 당사자에게 다음 사항에 대한 사전 서면 통지를 제공합니다.
  - 혐의,
  - 동일한 혐의로 인한 공식적인 성희롱 고발을 당사자가 다시 시작할 수 없는 상황을 포함한 자발적 비공식 해결 과정의 요건,
  - 자발적 비공식 해결 과정에서 철회하고 해결에 동의하기 전에 언제든 고충 처리 과정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당사자의 권리, 그리고
  - 유지되거나 공유될 수 있는 기록을 포함하여 자발적 비공식 해결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결과, 그리고
- 비공식 해결 과정에 대한 당사자의 사전 자발적 서면 동의서를 획득합니다.

Bright Star Schools는 직원이 학생을 성희롱했다는 혐의를 해결하기 위해 비공식적 해결 과정을 제공하거나 조성하지 않습니다.

조사 과정

- 의사 결정자는 조정담당자 또는 조사관과 동일한 자가 아닙니다. Bright Star Schools는 모든 의사 결정자 및 조사관에게 원고 또는 피고에 대한 이해 상충이나 편견이 없게끔 보장해야 합니다.
- 대부분의 경우, 철저한 조사는 수업일 기준 25일을 넘지 않습니다. 조사관이 조사가 수업일 기준 25일 이상 소요되고 정당한 사유로 인해 지연 또는 연장되어야 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조사관은 원고 및 모든 피고에게 서면으로 지연 또는 연장 이유를 알리고 조사가 완료되는 대략적인 날짜를 제공합니다.
- 당사자는 증인을 제시하고, 제기된 혐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체의 증거를 조사 및 검토하며, 조사 회의 또는 질의 중에 고문을 참석시킬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얻습니다.
- 당사자는 조사 중인 혐의에 대해 논의하거나 관련 증거를 수집 및 제시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 조사 회의 또는 질의에 초대되거나 참석이 예상되는 당사자는 당사자가 참석 준비를

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날짜, 시간, 장소, 참석자, 회의 또는 질의 목적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게 됩니다.
- 조사 보고서가 완료되기 전에, Bright Star Schools는 각 당사자와 당사자의 고문(있을 경우)에게 조사 및 검토 대상 증거 사본을 송부하며, 당사자는 최소 10일 이내에 조사관의 고려사항에 대한 서면 응답을 조사 보고서가 완료되기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 조사관은 관련 증거를 공정하게 요약한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책임에 대한 결정으로부터 최소 10일 전에 보고서 사본을 각 당사자 및 당사자의 고문(있을 경우)에게 송부합니다.

공식적인 성희롱 고발의 기각

- 조사 결과 주장된 희롱이 미국 내 Bright Star Schools의 교육 프로그램에서 발생하지 않았거나 입증되었더라도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공식적인 고발은 기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각은 다른 관련 Bright Star Schools 정책에 따른 조치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 Bright Star Schools는 다음과 같은 경우 공식적인 성희롱 고발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 원고가 조정담당자에게 고발에 대한 서면 철회서를 제공합니다.
    - 피고가 더 이상 Bright Star Schools에 고용 또는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는,
    - 특정 상황으로 인해 Bright Star Schools에서 공식적인 고발 또는 그 안의 혐의에 대한 결정에 도달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 공식적인 성희롱 고발 또는 그 안의 주장 중 무엇이든 기각되는 경우, Bright Star Schools는 즉시 서면으로 기각 통지와 기각 사유(들)를 당사자에게 동시에 송부합니다.

책임에 대한 결정

- 책임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증거의 기준은 증거 기준의 우세입니다.
- 결정은 모든 관련 증거의 객관적인 평가를 기반으로 하며 신뢰성 결정은 원고, 피고 또는 증인으로서의 개인의 지위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 Bright Star Schools는 다음을 설명하는 공식 고발 관련 서면 결정을 원고와 피고에게 동시에 송부합니다.
    - 공식적인 성희롱 고발에서의 혐의,
    - 당사자에 대한 일체의 통지, 당사자 및 증인과의 질의, 현장 방문 및 기타 증거 수집에 사용된 방법을 포함하여, 취했던 모든 절차적 조치,
    - 결정을 뒷받침하는 사실의 발견,
    - Bright Star Schools의 행동 강령을 사실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결론,
    - 각 혐의에 대한 결정 및 근거,
    - 수령인이 피고에게 부과하는 일체의 징계 제재,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복구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고안된 구제책이 원고에게 제공되는지의 여부, 그리고
    - 항소 절차 및 허용 근거.

5. 결과

본 정책에서 금지하는 불법 행위에 가담하거나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하거나 고의로 허위 정보를 제출하는 학생 또는 직원은 최대 Bright Star Schools에서의 퇴학 또는 고용 종료를 포함한 징계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정담당자는 공식적인 성희롱 고발에 대한 응답으로 Bright Star Schools에서 명령한 일체의 구제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6. 항소권

신고자가 Bright Star Schools의 결의안이 불만족스럽다고 생각할 경우, 신고자는 Bright Star Schools의 결정 또는 결의의 통지일로부터 업무일 기준 5일 이내에 Bright Star Schools 이사회 회장에게 서면 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사회 회장은 해당 조사를 검토하고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다음 항소권 및 절차는 공식적인 성희롱 고발에도 적용됩니다.

- 원고와 피고는 동일한 항소권을 보유하며 Bright Star Schools는 양측 당사자에게 동등하게 항소 절차를 시행합니다.
- Bright Star Schools는 항소 접수 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항소에 대한 의사 결정자는 결과를 뒷받침하거나 반대되는 서면 진술을 제출할 합리적이고 동등한 기회를 양측 당사자에게 제공합니다. 항소 결과 및 결과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는 서면 결정문을 발행합니다. 그리고 서면 결정문을 양측 당사자에게 동시에 제공합니다.

7. 기록 보관

본 정책에 따른 고발의 조사와 관련된 모든 기록은 안전한 장소에 보관됩니다. Bright Star는 다음의 기록을 최소 7년 동안 유지합니다.

- 책임에 대한 일체의 결정을 포함한 각 성희롱 조사 기록, 일체의 오디오 또는 시청각 기록 또는 대본, 피고에게 부과된 일체의 징계 제재, 원고에게 제공된 일체의 구제책.
- 공식적인 성희롱 고발에 대한 일체의 항소 기록 및 해당 항소의 결과.
- 성희롱 고발에 대한 비공식적 해결 기록 및 해당 비공식적 해결의 결과.
- IX편 조정담당자, 조사관, 의사 결정자 및 비공식적 해결 과정을 조성하는 모든 자를 교육하는 데 사용된 모든 자료.
- 일체의 지원 조치를 포함하여, 성희롱에 대한 신고 또는 공식 고발에 대한 대응으로 취했던 일체의 조치 기록

IX편, 괴롭힘, 위협, 차별 및 따돌림 고발 양식

귀하의 성명:_____ 날짜: _____

주장 사건(들)의 날짜: _____

고발 대상자(들)의 성명: _____

당시 있었던 목격자들을 누구든 나열하십시오: _____

해당 사건(들)이 발생한 곳은 어디입니까? _____

가능한 한 많은 사실적 세부사항을 기입하여 귀하의 고발 근거가 되는 사건이나 행위를 설명하십시오(즉, 구체적인 진술 - 해당될 경우, 신체적 접촉이 수반되었는지, 일체의 구두 진술 - 해당 상황을 피하기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등)(필요 시, 추가 페이지를 첨부하십시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본 문서를 통하여 본인은 Bright Star Schools가 자체 조사를 진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여기는 경우 본인이 제공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본 문서를 통하여 본인은 본 고발장에서 제공한 정보가 사실이고 정확하며 본인이 아는 한도 내에서 완전함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이와 관련하여 허위 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대 퇴학/해고를 포함한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원고의 서명: _____ 날짜: _____

Charter School에서 작성할 항목:

수령자:_____ Date: _____

원고와의 후속 회의 개최일: _____

징계

징계 기반 정책

Charter School은 정학 및 퇴학을 학교 행동 또는 Charter School 규칙 및 정책 준수를 개선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상황에서는 필요할 수 있으나, Charter School의 징계 문제는 다양한 다른 전략을 통해 보다 자주 처리됩니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상담, 교직원 및 다른 학생과의 문제 논의, 학생 및 학생의 부모/보호자, 사회복지사 또는 보호감찰관과의 논의, 특정 특권에 대한 자격 박탈 등이 있습니다.

Charter School은 가치 기반 시스템을 사용하여 긍정적인 학생 행동과 지원을 개발하고 촉진합니다. 이러한 지원에는 학교 차원에서의 장려책 프로그램, 지역 사회 구축 활동 및 모든 학년 수준에서의 관계 구축 실천이 포함됩니다.

전문성 개발은 건강한 관계, 강력한 지역 사회 구축의 중요성 및 회복적 실천의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의 모든 수준에서 제공됩니다. 학년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직원에게 전문성 개발이 제공되며, 조직 차원에서의 전문성 개발 행사는 매년 5회 개최됩니다. 매년 모든 이해 관계자의 자료 및 설문 조사에서 얻은 피드백에 따라 전문성 개발 계획이 작성됩니다.

학생 핸드북의 내용은 이 청원서 내의 조항, 해당 교육구 정책(들), 학교 풍토 권리장전 및 모든 관련법과 일치합니다. 교장은 학생과 학부모/보호자에게 모든 징계 정책 및 절차를 등록 시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Charter School의 징계 근본 정책에 따라, Charter School의 학생 핸드북에 명시된 기대 행동에 따르지 않고 Charter School의 규칙을 위반하는 학생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에 직면할 것입니다.

결과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행동 상담
- 구두 및/또는 서면 경고
- 교사와의 개별 상담
- 특권 상실(예: 학교 행사 참석- 댄스, 게임 등)
- 개별적인 행동 계약
- 교장, 교감 또는 기타 학교 지원 직원에게 위탁

- 전화 또는 서신으로 학부모에게 통지
- 학교에서 또는 가정 방문 중 학부모 회의
- 공식적인 회복 회의
- 정학(아래 열거된 위반 행위 시)
- 퇴학(아래 열거된 위반 행위 시)

상담 및 기타 단계적 개입 전략을 통해 다룰 수 없는, Charter School의 행동 기대치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데 가담하는 모든 학생은 학장 및/또는 교장, 그리고 학생의 부모/보호자와의 회의에 참석해야 합니다. 행동에 대한 이러한 계층적 개입에는 Ripple Effects(사회 및 정서적 학습 및 행동 개입 온라인 플랫폼), 일대일 상담 또는 표적 행동 개입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학생 행동 학장은 아래에 정학 가능한 것으로 열거된 위반에 대한 정학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행동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래의 학생 행동 기대치, 일정, 지원 및 결과의 개요를 설명하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행동 계약을 준비할 것입니다. 행동 계약은 본 청원서의 조항, 해당 교육구 정책(들)/학교 풍토 권리장전 및 모든 관련법과 일치하며 실제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교직원은 모든 학생에게 징계 규칙과 절차를 공정하고 일관되게 시행해야 합니다. Charter School 직원은 Charter School의 학생들을 위한 단계적 축소 전략에 대해 교육을 받고 매년 검토합니다. 격주로 교직원은 Charter School의 관행이 일관되게끔 학교의 징계 정책을 교육하고, 소통하며, 실행하는 데 중점을 둔 전문성 개발에 참여합니다. 이러한 전략은 학생과의 관계 개발, 회복적 실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의 유발 요인 식별 및 방지(가능한 경우), 단계적 축소 기술을 통해 그러한 행동이 유발된 학생을 안전하게 안정화하는 데 집중합니다. 지역 사회 구축 및/또는 관계 회복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결과의 시행에 따른 회복 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인지된 결과 또는 실제 결과를 포함한 자신의 행동을 학생들이 되돌아 볼 기회를 제공함
- 나쁜 행실에 따른 논리적 결과
- 필요할 경우 훈련을 받은 전문가가 학생, 학부모 및 기타 주요 이해 관계자(행정실, 교사, 상담사 포함)와의 공식적인 회복 회의를 진행합니다
- 필요한 만큼의 자원 제공 또는 청소년 프로그램 또는 지원을 제공하는 지역 사회 기반 조직에의 위탁
- 지역 사회 기반 조직과의 제휴를 통한 학교 기반 상담 기회.

학교에서 학생 행동 자료는 행동 및 인성교육을 관리하기 위해 Charter School에서 맞춤화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통해 모니터링됩니다.

금지된 활동 또는 행동

다음은 임의적인 범죄 목록입니다. 학생이 해당 활동에 참여할 경우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 및 판매 정책

학교 후원 행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교장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모든 것을 구매 및 판매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금지됩니다. 학교와의 승인된 교환 외의 시간에는 언제든 캠퍼스에서 돈이 보여서는 안 됩니다. 학생들 간에 절대로 돈을 교환해서는 안 됩니다. 금전 교환(예: 승인되지 않은 간식/물품 판매)에 참여하는 학생은 문화팀에 회부됩니다. 첫 번째 위반 시 학부모/보호자(들)에게 학생의 행동에 대해 통지해야 하며, 해당 물품은 방과 후에 수거해야

합니다. 계속될 경우, 물품은 압수됩니다.

교실에서의 껌 또는 음식

껌은 캠퍼스에서 항상, 그리고 모든 학교 행사 시에 금지됩니다. 학생들은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서만 음식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공개적인 애정 표현

Bright Star Schools는 학생들 간의 건전한 우정이 우리 학교 전체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반적인 도덕적, 지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학생들 간의 관계를 독려합니다.

Bright Star Schools는 전문적인 작업 환경을 포함하여 실제 세상에서 성공하는 데 기여할 가치와 실천을 학생들에게 주입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학교 및 학교 후원 행사에서 지나치게 애정을 표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손을 잡는 것과 가벼운 포옹은 허용되는 애정 형태입니다. 낭만적이거나 외설적이거나 부적절한 애정(키스, 만짐, 애무, 오랜 포옹 또는 껴안기, 또는 모든 유형의 성적 활동)은 학교에서의 적절한 애정 형태가 아니며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행동은 학부모 통지 및 징계 조치로 이어집니다.

버스 오작동

버스를 타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따라서, 버스 탑승 시 지속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는 모든 학생은 학교를 오가는 버스에 탑승하는 특권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또한 지정된 버스와 일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학교에서는 서비스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버스 운전사를 방해하거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 버스 운전사 및/또는 학생에게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는 행위, 버스의 질서정연한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 버스 주변에서 운행하는 차량에 위험을 조성하는 행위(창문 밖으로 물건을 던지거나 반사 장치를 사용하여 운전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행위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는 즉각적인 정학 또는 퇴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물품은 스쿨버스 탑승 동안 **금지됩니다**.: 전자 장치(예: 전화, 스피커)에서 나는 청음 가능한 소리, 음식, 음료수, 사탕, 유리로 된 물건, 동물, 마약, 무기, 거울, 레이저, 플래시 카메라 또는 스쿨버스 운전자의 운행을 방해할 수 있는 기타 모든 장치. 학생들 간의 모든 형태의 신체 접촉도 버스 탑승 시(및 버스 바깥에서도) 금지됩니다.

스쿨버스 규칙을 따르지 않는 학생은 위반의 심각성에 따라, 버스에서 일시적으로 또는 일년 내내 이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위반은 버스 탑승 특권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버스 이용 정지 또는 퇴출에 대해서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금지 물품 소지

학교에서의 성공에 필요한 물품들만 학교에 가져와야 합니다. 여기에는 방과 후 스포츠 또는 음악 교육에 필요한 책, 용품 및 일체의 장비가 포함됩니다. 때때로, 교사가 학생들에게 추가 재료를 가져오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이러한 요청은 항상 교사가 서면으로 작성하거나 숙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기타 모든 물품 또는 개인 소지품은 항시 금지됩니다. **금지 물품의 예시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껌, 영구 마커, 가짜 무기, 후추 스프레이, 현금*, 사탕, 탄산음료, 칩 또는 건강에 해로운 음식*, 장난감, 레이저 포인터 및 모자.

금지 물품은 압수됩니다. 첫 번째 위반 시 학생은 학교 수업이 끝날 때 문화 및 회복적 실천 학장(Dean of Culture and Restorative Practices)에게 자신의 물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위반 후에는 학부모가 항목을 가지러 와서 서명해야 합니다. 세 번째 위반 시 해당 물품은 학년 말까지 보관됩니다.

건강에 해로운 음식

아침에 건강에 좋은 간식을 학교에 가져올 수 있으며, 학교 급식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건강에 좋은 점심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건강에 좋은 간식의 예로는 과일, 야채, 크래커, 샌드위치(칩, 쿠키, 사탕 금지)가 있습니다. **캠퍼스에 반입할 수 있는 유일한 음료는 물입니다.** 건강한 점심은 우리 학교의 급식에서 제공되는 메뉴를 가능한 한 많이 반영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1) 데울 필요 없이 먹을 수 있는 샌드위치나 기타 앙트레, 2) 과일, 3) 야채, 4) 건강에 좋은 간식(프레첼, 떡 등), 5) 생수병.

현금

현금은 지갑이나 주머니에 있을 수 있으나, 겉으로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학문적 정직성 및 무결성

부정행위

부정행위에는 다른 사람의 작업을 복사하는 행위, 다른 사람이 과제를 완료하게 하는 행위, 답변 키의 답변을 복사하는 행위, 지시에 어긋나는 외부 도움을 구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부정행위 시 과제에서 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표절

학생은 자신의 생각과 작업을 반영하는 과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타인의 아이디어 및/또는 작업을 사용하거나 참조하려면 반드시 적절한 수단을 사용해야 하며,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의 것인양 하는 것은 표절입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작업을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을 배웁니다(예: 요약하기, 바꾸어 표현하기, 인용하기). 타인의 작업을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학생은 또한 과제 제출 전에 TurnItIn 기능을 사용하여 타인의 작업에 대한 누락/불완전한 인용 또는 저작자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좋습니다.

타인이 표절한 작업물의 제출을 제출 및/또는 지지하는 학생은 아래에 요약된 결과의 대상이 됩니다.

- 첫 번째 위반
  - 교사는 문화 및 회복적 실천 학장에게 위탁서를 제출합니다.
  - 학생은 과제에서 0점을 받게 됩니다.
  - 평가(퀴즈 및 시험)는 보충 불가합니다.
  - 학부모/보호자는 전화를 통해 문화 학장으로부터 사건에 대한 통지를 받습니다.
  - 수업 과제는 학생이 Ripple Effects 표절 수업을 완료하고 교사와의 회복 회의에 참여한 후에만 완전한 학점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 두 번째 위반
  - 교사는 문화 및 회복적 실천 학장에게 위탁서를 제출합니다.
  - 학생은 과제에서 0점을 받게 되며, 과제는 보충 불가합니다.
  - 학생, 학부모/보호자, 문화 학장이 참석하는 회의가 개최됩니다.
- 세 번째 위반
  - 교사는 문화 및 회복적 실천 학장에게 위탁서를 제출합니다.
  - 학생은 과제에서 0점을 받게 되며, 과제는 보충 불가합니다.
  - 학생, 학부모/보호자, 상담사, 문화 학장, 문화 교감이 참석하는 회의가

개최됩니다.
- 가족과 학생은 이 이상 표절이 발생할 경우, 학생이 수업에 낙제할 것임을 이해한다는 동의서에 서명합니다.

허위 정보 제공

학교에 대한 허위 정보 제공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에 가담하는 학생은 즉각적인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한 위반에는 학교 기록 위조, 서명 위조, 허위 진술 전달 또는 제공, 뇌물, 미승인 사용자 ID 또는 비밀번호 사용과 같은 행위가 포함됩니다.

학교 부지 무단 침입

무단 침입에 가담한 학생은 정학 또는 퇴학을 당할 수 있습니다. 무단 침입에는 교직원을 동반하지 않은 채 교실에 있는 것과 부지를 떠나라는 지시를 받은 후 학교로 돌아오는 것(또는 그렇게 하도록 지시를 받았을 때 떠나기를 거부하는 것)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무단 침입 사건은 법률 집행 기관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정학 또는 퇴학 조치된 학생은 정학 또는 퇴학 기간 동안 언제든 학교 구내 출입이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교내 정학

Charter School은 행동 문제로 인하여 학습에서 놓친 시간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교내 정학을 제공합니다. 학교 상담사는 교내 정학 중인 학생 및 가족과 협력하여 학생이 교사가 배정한 맞춤형 학습을 통해 학생이 맞춤형 학습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하여, 필요한 경우 정학 기간 동안 학생이 학업을 따라갈 수 있게 합니다. 학생이 교내 정학 상태인 동안, Charter School 행정실에서 Charter School 교감의 감독을 받습니다. 일반 학생회, 교직원 및 학교 캠퍼스 방문자의 안전은 보장됩니다. 학생과 그 가족에게 제공되는 추가 지원은 상담, 그리고 배정 및 개별화된 사회-정서적 학습 범위와 순서입니다. 교내 정학의 최대 일수는 사건당 5일을 초과하거나 한 학년도에 2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족 통지를 포함하여 아래에 정의된 조항은 교내 정학 및 교외 정학에 적용됩니다.

Charter School은 학생들을 가능한 한 자주 캠퍼스에 머물게 하고 시행되는 정학 횟수를 제한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Charter School은 학생이 자기 자신이나 캠퍼스의 타인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 경우 교외 정학을 보류합니다.

정학 및 퇴학 정책과 절차

본 학생 정학 및 퇴학 정책은 Charter School의 모든 학생의 학습을 촉진하고 안전과 안녕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본 정책 작성 시, 정학 및 퇴학에 대한 위반과 절차 목록을 작성하기 위하여 Charter School은 교육법 48900항 및 이하를 검토했습니다. 다음의 언어는 교육법 48900항 및 이하의 언어를 밀접하게 반영합니다. Charter School은 정학 및 퇴학에 관한 정책과 절차의 연례 검토, 그리고 필요한 경우 학생이 정학 또는 퇴학 대상이 되는 사유인 위반 목록의 수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위반할 경우, 학생을 정규 수업에서 정학 또는 퇴학시킬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정책은 학생 정학 및 퇴학에 대한 Charter School의 정책과 절차로 사용되며 수정 사항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고 Charter School 디비전과 협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헌장을 수정할 필요 없이 이따금 수정될 수 있습니다. Charter School 교직원은 모든 학생에게 징계 규칙과 절차를 공정하고 일관되게 시행해야 합니다. 본 정책과 절차는 학생 핸드북의 일부로 인쇄 및 배포되며 징계 기대치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체벌은 어느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체벌에는 고의로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고의로 신체적 고통을 유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정책의 목적에서, 체벌에는 직원, 학생, 교직원 또는 기타 인물을 보호하거나 학교 자산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하고 합리적인 직원의 무력 사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Charter School 행정실은 학생과 학부모/보호자에게 모든 징계와 비자발적 퇴학 정책 및 절차를 등록 시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본 정책과 절차가 교장실에 요청 시 제공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정학 또는 퇴학된 학생은 정학 또는 퇴학 기간 동안 달리 합의되지 않은 한, 모든 학교 및 학교 관련 활동에서 제외됩니다.

장애가 있는 개인으로 확인되거나, 2004년 장애인 교육 개선법("IDEA")에 따라 의심되는 장애에 대한 지식의 근거를 Charter School에서 갖고 있거나, 1973년 재활법의 504항(“504항”)에 따라 서비스를 받을 적격한 학생은 정학 및 퇴학에 대해 동일한 사유를 가지며 연방법 및 주법이 추가 또는 다른 절차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교육 학생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적법 과정 절차를 따릅니다. Charter School은 장애가 있는 개인으로 확인되거나 Charter School이 의심되는 장애에 대한 지식의 근거를 갖고 있거나, 해당되는 학생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당 서비스 또는 보호를 받을 적격한 학생에게 모든 형태의 징계를 부과할 때, 캘리포니아 교육법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관련 연방법 및 주법에 따릅니다.

위반사항 열거

임의 정학 및 퇴학 범죄

만약 학생이 (a)에서 (r)까지의 일체의 하위 조항에 따라 정의된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될 경우, 학생은 정학 또는 퇴학 권고될 수 있습니다. 학생은 다음 항목 일체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이 항에 열거되고 학교 활동 또는 학교 출석과 관련하여 언제든 발생하는 행위에 대해 정학 또는 퇴학을 당할 수 있습니다. 1) 학교 부지에서. 2) 등하교 시. 3) 캠퍼스 안팎에서의 점심시간 동안. 4) 학교에서 후원하는 활동 중, 또는 해당 활동을 위한 이동 중.

a) (1) 타인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혔거나, 입히려고 시도했거나, 입히겠다고 위협함. (2) 정당방위를 제외하고 타인에게 고의로 무력이나 폭력을 사용함. (3) 형법 31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타인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거나 입히려고 시도하는 행위를 돕거나 교사한 학생은 정학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퇴학은 되지 않으나, 본 항에 따라 돕는 자 및 교사자로서 피해자가 큰 신체적 상해 또는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입은 신체적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고 소년 법원이 판단한 학생은 세부항 (a)에 따른 징계 대상이 됩니다.
b) 해당 유형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학생이 교장 또는 피지명인의 동의와 동시에 인증된 교직원으로부터 해당 물품을 소지할 수 있는 서면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일체의 화기, 칼, 폭발성 또는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 판매 또는 공급함
c) 건강 및 안전법 10편 2장(11053항으로 시작)에 나열된 규제 물질, 알콜 함유 음료 또는 모든 종류의 취하게 하는 물질을 불법적으로 소지, 사용, 판매 또는 제공하거나 그 영향을 받음.
d) 보건 및 안전법 10편 2장(11053항으로 시작)에 정의된 규제 물질, 알콜 함유 음료 또는 모든 종류의 취하게 하는 물질을 판매하기 위해 불법으로 제공, 주선 또는 협상하거나, 타인에게 다른 액체, 물질이나 성분을 판매, 전달 또는 공급 및 규제 물질, 알콜 함유 음료 또는 취하게 하는 물질로서의 액체, 물질이나 성분을 보임.
e) 강도 또는 착취를 저지르거나 시도함.
f) 학교 자산이나 사유 재산에 피해를 입히거나 일으키려고 시도함. 이 항에서 사용된 "학교 자산"에는 전자 파일 및 데이터베이스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g) 학교 자산 또는 사유 재산을 훔치거나 훔치려고 시도함. 이 항에서 사용된 "학교 자산"에는 전자 파일 및 데이터베이스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h) 담배, 시가, 소형 시가, 정향 담배, 무연 담배, 코담배, 씹는 패킷 및 씹는 담배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담배 또는 니코틴 함유 제품을 소지하거나 사용함. 그러나 이 항은 학생이 자신의 처방 제품을 사용하거나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i) 외설적인 행위를 저지르거나 습관적인 모독적 발언 또는 상스러운 언행에 가담함.
j) 보건 및 안전법 11014.5항에 정의된, 불법 소지하거나 불법으로 일체의 마약 도구 일습을 제공, 주선 또는 판매하려 협상함.
k) 학교 활동을 방해, 또는 감독관, 교사, 행정관, 학교 관계자 또는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타 학교 직원의 유효한 권한을 고의적으로 거역하는 행위.
l) 고의로 도난당한 학교 자산 또는 사유 재산을 받음. 이 항에서 사용된 "학교 자산"에는 전자 파일 및 데이터베이스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m) 모조 총기류를 보유함. 이 항에서 사용된 “모조 총기류”는 물리적 특성이 기존 화기와 매우 유사한 화기의 모조품이어서 합리적인 사람이 모조품이 총기류라고 여기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n) 형법 261, 266c, 286, 287, 288, 289항 또는 전 288a항에 정의된 성폭행을 저지르거나, 저지르려고 시도하거나, 형법 243.4항에 정의된 성추행을 저지름.
o) 학생이 증인이 되는 것을 막음 및/또는 증인인 학생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고발 중인 증인이나 학교 징계 절차의 증인인 학생을 괴롭힘, 협박 또는 위협함, 또는 둘 모두에 해당함.
p) 처방약 소마(Soma)를 불법으로 제안, 판매 주선, 판매 협상 또는 판매함.
q) 신고식에 가담했거나 가담하려 시도함. 이 세부 항목의 목적에서, "신고식"은 교육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조직 또는 단체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심각한 신체적 상해 또는 개인적 손상 또는 전, 현, 예비 학생에게 신체적이거나 정신적 피해를 초래하는 불명예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학생 조직 또는 단체에 들어오기 위한 의식 또는 사전 의식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 하위 구분의 목적상, "신고식"에는 운동 경기나 학교에서 승인한 행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r) 왕따 행위에 가담함. 이 하위 구분의 목적상, 다음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1) "따돌림"은 서면 또는 전자적 행위의 수단을 통한 의사소통을 포함, 그리고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것이라고 예측했거나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한 명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48900.2, 48900.3 또는 48900.4항에 규정된 학생 한 명 또는 학생 집단이 저지른 하나 이상의 행동을 포함하여, 일체의 심각하거나 만연한 신체적 또는 언어적 행동 또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A) 합리적인 학생 또는 학생들을 해당 학생 또는 해당 학생들의 신체나 재산에 해가 미칠까 봐 두려워하게 하는 행위.
        B) 합리적인 학생이 자신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에 상당히 해로운 영향을 겪도록 초래함.
        C) 합리적인 학생이 자신의 학업 수행에 상당한 방해를 겪도록 초래함.
        D) 합리적인 학생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활동 또는 특권에 참여하거나 그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능력에 상당한 방해를 겪도록 초래함.
    2) (A) “전자적 행동”이란 전화, 무선 전화 또는 기타 무선 통신 장치, 컴퓨터 또는 호출기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전자적 장치를 통해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다음 중 하나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의사소통의 생성 또는 전송을 의미합니다. (B) 위의 단락 (1) 및 하위 단락 (A)에도 불구하고, 전자적 행동은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었거나 현재 인터넷에 게시되어 있다는 근거에만 기반하여 만연한 행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i) 메시지, 텍스트, 사운드, 동영상 또는 이미지.
        ii)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소셜 네트워크 인터넷 웹사이트의 게시물:
            (I) 번 페이지에 콘텐츠 게시 또는 페이지 생성. "번 페이지(Burn Page)"는 단락 (1)에 나열된 영향 중 하나 이상을 미칠 목적으로

생성된 인터넷 웹사이트를 의미합니다.

(II) 단락 (1)에 나열된 영향 중 하나 이상을 미칠 목적으로 다른 실제 학생을 그럴 듯하게 사칭함. "그럴 듯한 사칭"은 어떤 학생을 괴롭힐 목적으로 고의로 동의 없이 학생을 사칭하여, 다른 학생이 사칭자가 사칭된 학생이었음을 또는 학생임을 합리적으로 믿거나 합리적으로 믿은 적이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III) 단락 (1)에 나열된 영향 중 하나 이상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 프로필을 생성함. "허위 프로필"은 허구적인 학생 프로필, 또는 허위 프로필을 생성한 학생이 아닌 실제 학생의 사진이나 특성을 사용하는 프로필을 의미합니다.

iii) (I) 사이버 성적 괴롭힘 행위. (II) 이 조항의 목적에서, “사이버 성적 괴롭힘”은 단락 (1)의 하위 단락 (A)부터 (D)까지에 설명된 영향 중 하나 이상을 미치거나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측될 수 있는 전자적 행동을 통해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에게 사진 또는 기타 시각적 녹화 자료를 유포하거나 유포하도록 권유 또는 선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하위 항에 설명된 사진 또는 기타 시각적 녹화 자료에는 사진, 시각적 녹화 자료 또는 기타 전자적 행동에서 해당 미성년자를 식별할 수 있는 미성년자의 나체, 반나체 또는 성적으로 노골적인 사진이나 기타 시각적 녹화 장면이 포함됩니다. (III) 이 조항의 목적상, "사이버 성적 괴롭힘"에는 일체의 진지한 문학적, 예술적, 교육적, 정치적 또는 과학적 가치가 있거나 운동경기 또는 학교에서 승인한 활동을 수반하는 서술, 묘사 또는 이미지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합리적인 학생"이란 학생의 또래, 또는 특수한 요구가 있는 또래에 대한 행위에 있어 평균적인 보살핌과 기술, 판단력을 행사하는, 특수한 요구가 있는 학생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학생입니다.

이 항에 따라 징계를 받는 학생의 경우, 교육구의 교육감이나 교장은 행동 및 학업 결과를 개선하는 전략이 포함된 연구 기반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정학 또는 퇴학에 대한, 48900.5항에 명시된 대로 연령에 적절하며 학생의 특정적인 잘못된 행동을 해결하고 수정하는 대안을 제공할 것이 권장됩니다. 무단 결석, 지각 또는 기타 학교 활동에 결석한 학생에게는 정학 또는 퇴학의 대안이 부과됩니다. (2) 회복적 사법 관행, 트라우마 정보에 입각한 관행, 사회적 및 정서적 학습,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개입 및 지원을 포함하는 다계층 지원 시스템은 학생들이 필수적인 사회적, 정서적 기술을 습득하고 지원을 받도록 돕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트라우마 관련 반응을 변화시키고, 자신의 행동의 영향을 이해하고, 학교 지역 사회에 대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의미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임의 퇴학 가능한 위반

학생은 학생이 절차에 따라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된다고 결정될 때 반드시 퇴학 권고를 받아야 합니다.

a) 해당 유형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학생이 교장 또는 피지명인의 동의하에 인증된 교직원으로부터 해당 물품을 소지할 수 있는 서면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일체의 화기, 폭발성 또는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 판매 또는 공급함.
b) 타인에게 칼을 휘두름. 이 항에서 사용된 "칼"은 단검, 단도 또는 주로 찌르기용으로 고정되고 예리한 날이 달린 기타 무기, 날이 3 ½인치(8.9cm)보다 긴 무기, 날이 있는 접는 칼(모든 크기), 또는 제자리에 고정되거나 보호되지 않은 날이 있는 면도기를 의미합니다.
c) 보건 및 안전법 11053항 및 그 이하에 나열된 규제 물질을 불법으로 판매함.
d) 교육법 48900(n)항에 정의된 성폭행을 저지르거나, 저지르려고 시도하거나, 성적 침해를 저지름.

학생이 미국법 18편의 921항에 정의된 대로, 화기 또는 파괴적인 장치를 캠퍼스로 가져왔거나,

캠퍼스에서 화기 또는 위험한 장치를 소지한 것으로 징계 패널에 의해 결정된 경우, 해당 학생은 1994년 연방 총기 없는 학교법에 따라 1년 동안 퇴학을 당합니다. 그러한 경우, 학생은 이 정책에서 요구하는 대로 통지 및 청문회에 대한 적법한 절차 권리가 제공됩니다.

"화기"라는 용어는 (A) 폭발성 물질의 작용에 의해 발사체를 방출하거나, 방출하도록 설계되었거나, 방출하도록 쉽게 변환될 수 있는 일체의 무기(스타터 건 포함), (B) 그러한 일체의 무기의 프레임 또는 리시버, (C) 일체의 화기 소음 감소 장치 또는 화기 소음기, 또는 (D) 일체의 파괴적인 장치.

"파괴적인 장치"라는 용어는 (A)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일체의 폭발성, 발화성 또는 독가스를 의미합니다. (i) 폭탄, (ii) 수류탄, (iii) 1/4온스를 초과하는 추진제 충전량을 갖는 로켓, (iv) 1/4온스를 초과하는 폭발성 또는 발화성 충전량을 갖는 미사일, (v) 지뢰, 또는 (vi) 이전 조항에서 설명된 장치와 유사한 장치.

정학 절차

정학은 다음 절차에 따라 시작됩니다.

a) 회의

가능할 경우 학생 및 학부모, 그리고 필요 시 해당 학생을 교장이나 피지명인에게 위임한 교사, 감독관 또는 Charter School 직원이 참석하는, 교장 또는 교장의 피지명인으로서의 교감 또는 교장의 피지명인에 의해 수행되는 회의가 정학에 선행되어야 합니다.

교장 또는 피지명인이 긴급 상황이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의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긴급 상황"은 학생 또는 Charter School 직원의 생명, 안전 또는 건강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포함합니다. 학생이 이 회의 없이 정학된 경우, 학부모/보호자 및 학생 양측에게 회의 목적으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학생의 권리에 대해 통지해야 합니다. 회의에서, 학생은 징계 조치의 이유와 그에 대한 증거를 확인하고, 교육법 47605항(c)(5)(J)(i)에 따라 자신의 변호를 위해 자신 입장에서의 주장 및 증거를 제시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회의는 학생이 이 권리를 포기하거나 학생이 투옥 또는 입원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어떤 이유로든 물리적으로 참석이 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업일 기준 2일 이내에 개최됩니다. 학생의 부모나 보호자가 Charter School 직원과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학생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학당한 학생의 복귀는 학생의 부모나 보호자가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b) 학부모/보호자 대상 통지

정학 기간에 교장 또는 교장의 피지명인으로서의 교감 또는 학생 학장은 학부모/보호자에게 전화로나 직접 연락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학생이 정학될 때마다 학부모/보호자에게 정학 및 정학 후 복귀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통지서는 학생이 저지른 구체적인 위반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통지서에는 학생이 학교로 복귀할 수 있는 날짜와 시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Charter School 직원이 정학과 관련된 문제에 관해 학부모/보호자에게 상의를 요청하려는 경우, 통지서는 학부모/보호자에게 이러한 요청에 지체 없이 응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c) 정학 기간의 제한/퇴학 권고

정학 기간은 증인 진술, 물리적 증거 및 기타 관련 요소(예: 그에 기여하는 삶의 사건 및 상황, 기타 교정 수단이 기간이나 정학을 적절히 줄일 수 있는지의 여부)를 포함한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에 의한 증거로 입증된 내용에 따라 해당 위반(들)의 중대성에 기반하여 교장이 결정합니다. IEP 학생의 경우, 통합교육 전문가 및/또는 통합교육 책임자는 결정을 내리는 것과 관련된 추가 요소에 대해 교장과 상담할 것입니다. 학생의 정학 기간은 행정적 권고가 내려지고 학생의 부모/보호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연속 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학생이 연속 5일을 초과하는 정학 기간 권고를 받을 경우, 추가 정학 기간이 완료되면 정학 진행 상황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학부모/보호자와 학교 간의 두 번째 회의 일정이 잡힙니다. 5일을 초과하는 정학은 해당 위반 및 학생 및 가족과의 회의에 기반하여 교장이 해당 학생이 자신이나 다른 학생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히지 않고 돌아올 의향이 있거나 돌아올 수 있다고 믿지 않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학생이 정학될 수 있는 총 일수는 학년도에 수업일 기준 2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조정 목적으로 학생이 다른 정규 학교, 기회 학교 또는 수업, 평생 교육 학교 또는 수업에 등록하거나 전학하는 경우는 예외이고, 이 경우에 학생이 정학될 수 있는 총 수업일수는 학년도에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학생이 정학되는 경우 교육구 내의 임시 교육 환경에 배치됩니다.

교장 또는 교장의 피지명인의 퇴학 권고가 있을 시, 퇴학 청문회 대기 중에 학생 및 학생의 부모/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회의에 초대되어 수업일 기준 최대 20일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학생의 정학을 연장할지 결정합니다. Charter School의 교장이 정학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연장은 학생 및 학생의 부모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와 회의를 개최한 후에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결정은 다음 중 하나에 따라 교장 또는 피지명인이 내립니다. 1) 학생의 존재가 교육 과정에 지장을 줄 것임, 또는 2) 학생이 타인에게 위협 또는 위험을 초래함. 결정 시 학생의 정학은 퇴학 청문회 결과 대기 중에 연장됩니다.

정학 학생의 고문은 정학 기간 동안 가정에서 완료할 수업 자료 및 현재 과제를 모아 학생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모든 필수 과제의 목록이 담긴 서면 통지서가 학생의 부모님에게 발송되고 필요한 모든 자료는 프론트 오피스에 맡기게 됩니다.

학생의 정학은 교장, 교감 또는 학생 학장(교장의 피지명인)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정학에 대한 항소는 정학 기간 내에 교장에게 서면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업무시간 기준 48시간 이내에, 학생 정학에 대한 항소와 관련하여 학교장이 결정을 내리고, 이 결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d) 정학 중의 숙제

정학 학생의 고문은 정학 기간 동안 가정에서 완료할 수업 자료 및 현재 과제를 모아 학생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놓친 시험은 가정에서 또는 복귀 시 완료되도록 조정됩니다. 모든 필수 과제의 목록이 담긴 서면 통지서가 학생의 부모님에게 발송되고 필요한 모든 자료는 프론트 오피스에 맡기게 됩니다.

퇴학시킬 권한

교육법 47605(c)(5)(J)(ii)항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퇴학 권고를 받은 학생은 학생을 퇴학시켜야 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징계 패널의 판결을 받는 청문회에 대한 자격이 있습니다. 본

문서의 절차는 법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그러한 청문회 및 앞서 언급한 청문회의 통지를 제공합니다.

학생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징계 패널에 의해 퇴학될 수 있습니다. 징계 패널은 Bright Star Schools 위원회의 구성원 3명으로 이루어집니다. 징계 패널은 청문회 의장으로 지정된 패널 구성원이 주재합니다. 징계 패널은 퇴학 가능한 위반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진 모든 학생을 퇴학시킬 수 있습니다.

퇴학 절차

교장이 퇴학을 권고할 경우, 학생과 학생의 부모는 퇴학 청문회 대기 중에 학생의 정학을 연장해야 할지 결정하기 위한 회의에 초대됩니다. 이 회의에서, 학생과 학부모는 잠재적인 퇴학을 초래한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정당성을 제공할 기회를 얻습니다. 이 결정은 다음 소견 중 하나에 따라 교장이 내립니다.

- 학생의 존재로 인해 교육 과정에 방해가 될 가능성이 있음
- 학생이 타인에게 위협이나 위험을 초래함.
- 이 결정 시, 학생의 정학은 퇴학 청문회 결과 대기 중에 연장되며, 정학일수는 최대 20일입니다. 교장이 다음 소견 중 하나 이상이 입증될 수 있다고 여기는 경우, 학생은 퇴학 권고를 받습니다.
- 다른 교정 수단이 실현될 수 없거나 반복적으로 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음
- 위반의 성격으로 인하여, 해당 학생의 존재가 해당 학생 또는 타인의 신체적 안전에 지속적인 위험을 초래함

퇴학 권고를 받은 학생은 학생을 퇴학시켜야 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징계 패널 앞에서 열리는 청문회에 대한 자격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연기되지 않는 한, 청문회는 교장 또는 피지명인이 학생이 퇴학 가능한 위반을 저질렀다고 결정한 후 수업일 기준 30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합니다.

퇴학 권고 및 청문회에 따라, Bright Star Schools 위원회의 공정한 구성원 3명으로 구성된 징계 패널이 퇴학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해당 학생 또는 징계 상황에 대해 독자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위원회 구성원도 징계 패널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청문회는 학생이 예정된 청문회 날짜 3일 전에 공개 청문회에 대한 서면 요청을 하지 않는 한 비공개 회의로 진행됩니다(FERPA에 따른 모든 학생 기밀 유지 규칙 준수).

청문회 요청 후 48시간 이내에 이메일 및 우편으로 발송될 청문회에 대한 서면 통지는 청문회 날짜로부터 달력일 기준 최소 10일 전에 학생 및 학생의 부모/보호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통지서의 우편 송부 시, 학생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통지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퇴학 청문회 날짜 및 장소,
b) 제안된 퇴학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 혐의 및 위반에 대한 진술,
c) 주장된 위반과 관련된 Charter School의 징계 규칙 사본,
d) 학생이 등록을 원하는 일체의 다른 교육구 또는 학교측에 Charter School에서의 학생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의 의무에 대한 통지,
e) 학생 및/또는 학생의 부모/보호자가 직접 나타나거나 변호사 또는 비변호사 고문을 고용하여 대변받을 기회,
f) 청문회에서 사용할 모든 문서의 사본을 조사하고 획득할 수 있는 권리,
g) 청문회에서 증언하는 모든 증인과 대면하고 질문할 기회,
h) 제시된 모든 증거에 의문을 제기하고 증인을 포함하여 학생을 대신해 구두 및 문서 증거를 제시할 기회.

청문회에 관련된 당사자 누구든 영어 이외의 주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요청 시 청문회에서 언어 지원이 제공됩니다.

성폭행 또는 침해 범죄와 관련된 퇴학 청문회의 특별 절차

Charter School은 정당한 이유가 발견되면, 청문회에서 증인의 신원이나 증언 중 하나 또는 모두를 공개할 경우, 증인이 심리적 또는 신체적 피해를 입을 불합리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 시, 증인의 증언은 Charter School이나 청문회 담당자만 검토할 선서된 선언문 형태로 청문회에 제시될 수 있습니다. 편집되어 증인의 이름과 신원이 삭제된 이 선서된 선언문 사본은 해당 학생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a) 일체의 성폭행 또는 침해 사건에서 고발하는 증인은 반드시 해당 징계 규칙의 사본을 제공받고, (a) 자신의 증언 예정 5일 전 통지를 받고, (b) 자신이 증언할 때 청문회에 참석할 자신이 선택한 성인 지원자(부모, 보호자 또는 법률 고문이 포함될 수 있음) 최대 2명을 동반하고, (c) 증언하는 동안 청문회를 비공개로 유지하도록 선택할 권리에 대해 조언을 듣습니다.
b) Charter School은 또한 증언 전 및 증언 도중 휴식시간에 고발하는 증인을 위한 청문회실과 분리된 공간을 피해자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c) 징계 패널의 재량으로, 고발하는 증인은 심문 및 교차심문 동안 휴식시간이 허용되며 그 동안 청문회실에서 나갈 수 있습니다.
d) 퇴학 청문회를 수행하는 주체는 고발하는 증인에게 덜 위협적인 환경을 촉진하기 위해 청문회실 내에 좌석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e) 퇴학 청문회를 수행하는 주체는 다른 시간 동안 증언을 들을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고발하는 증인의 증언을 듣는 시간을 증인이 평소 학교에 있는 시간으로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f) 고발하는 증인이 증언하기 전, 동반 참석한 지원자는 반드시 청문회가 기밀이라는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청문회 수행 주체가 청문회를 방해한다고 여기는 지원자를 제외하는 것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청문회를 수행하는 주체는 고발하는 증인의 지원자 중 한 사람이 증인석에 동행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g) 지원자 중 한 명 또는 둘 다 증인이기도 한 경우, Charter School은 반드시 증인이 증인의 출석을 원하며 Charter School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청문회를 주재하는 주체는 고발하는 증인의 증언이 지원자에 의해 영향을 받을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확인되지 않는 한 증인이 머무르는 것을 허용하며, 이 경우 징계 패널의 주재하는 담당자는 어떤 식으로든 증인을 부추기거나 동요시키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원자(들)에게 경고합니다. 그 어떤 것도 주재하는 담당자가 증인을 부추기거나 동요시키거나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믿는 자를 청문회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재량을 행사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h) 지원자의 증언은 고발하는 증인의 증언보다 먼저 제시되며, 고발하는 증인은 그 증언 동안 청문회에서 제외됩니다.
i) 특히 성폭행이나 침해를 수반하는 혐의에 대해, 퇴학 대상 학생의 요청에 따라 청문회가 공개적으로 진행될 경우, 공개 회의에서 증언하는 것이 고발하는 증인에게 심각하게 심리적으로 위협받는 피해가 될 것이고 위협받는 피해를 피할 다른 대안적 절차가 없을 시 비공개 시간에 자신의 증언을 발표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대안적 절차에는 폐쇄회로 모니터를 통해 청문회실로 전달되는, 다른 장소에서 녹화된 증언 또는 동시 심문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j) 고발하는 증인의 이전 성적 행위에 대한 특정 사례의 증거는 증거로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되며, 증거를 들을 필요가 있는 이례적인 상황이 존재한다는, 청문회를 수행하는 주체의 결정이 없이는 증언을 듣지 않습니다. 이례적인 상황에 대한 그러한 결정이 있기 전에, 증인은 통지를 받고 증거 제출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증거의 허용 가능성에 대한 청문회에서, 고발하는 증인은 학부모, 법률 고문 또는 기타 지원자에 의해 대변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k) 고발하는 증인의 성적 행동 관련 평판이나 의견의 증거는 어떤 목적으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청문회 기록

청문회 기록은 해당 절차를 합리적으로 정확하고 완전하게 서면으로 기록할 수 있는 한, 전자 녹음을 포함한 일체의 수단으로 작성되고 유지될 수 있습니다. Charter School은 퇴학 절차에 대한 서면 기록을 별도로 유지되는 파일에 작성하며, 이는 항소 과정이 진행될 경우 활용될 것입니다. 기록은 요청 시 학부모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거 제시

퇴학 청문회에는 증거의 기술적 규칙이 적용되지 않으나, 합리적인 사람이 심각한 문제를 수행하는 데 의존할 수 있는 종류의 증거인 경우에만 증거를 인정하고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징계 패널의 퇴학 결정은 해당 학생이 퇴학 가능한 위반을 저질렀다는 실질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사실의 발견은 청문회에서의 증거에만 기초해야 합니다. 전문증거가 허용되는 한편, 퇴학 결정은 전적으로 전문에 근거해서는 안 됩니다. 선서된 선언문은 징계 패널이, 청문회에서 신원 또는 증언의 공개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라는 비합리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한 증인으로부터의 증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퇴학 대상 학생의 서면 요청으로 인해 청문회가 공개 회의로 열리며, 혐의가 교육법 48900항에 정의된 바에 따른 성폭행을 저지른 것이나 저지르려 시도하거나, 성적 침해를 저지른 것일 경우, 고발하는 증인은 비공개 회의에서 자신의 증언을 전달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징계 패널의 결정은 사실에 대한 서면 평결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징계 패널의 최종 결정은 청문회 종료 후 수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내려집니다.

징계 패널이 퇴학을 권고하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 학생은 즉시 자신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복귀합니다.

퇴학 서면 통지

징계 패널의 퇴학 결정 후, 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징계 패널이 채택한 사실 평결을 포함하여 퇴학 결정에 대한 서면 통지를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이 통지서에는 또한 다음이 포함됩니다. (a) 학생이 저지른 구체적인 위반에 대한 통지, 그리고 (b) 학생이 등록하고자 하는 일체의 새로운 교육구에 Charter School에서의 학생의 상태를 알릴,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의 의무에 대한 통지.

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퇴학 결정에 대한 서면 통지 사본을 교육구에 송부해야 합니다. 이 통지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학생의 이름, 그리고 (b) 학생이 저지른 구체적인 퇴학 가능한 위반, (C) 퇴학 기간, 계획에 명시된 기준, 퇴학 기간 완료 후 복귀 및/또는 재입학 일정과 절차를 포함한 재활 계획.

징계 기록

Charter School은 Charter School에서의 모든 학생 정학 및 퇴학 기록을 보관합니다. 해당 기록은 요청 시 승인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퇴학 항소

퇴학은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퇴학 통지한 후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항소할 수 있으며 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학생은 항소를 고려하는 회의가 소집될 때까지(근무일 기준 10일 이내) 정학으로 간주됩니다. 원래 퇴학 청문회를 주재한 징계 패널 구성원을 제외한 Bright Star 위원회에서 항소를 심리해야 합니다. 항소의 경우, 학생과 보호자 및/또는 변호사는 원래 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 및 과정에 어떤 식으로든 결함이 있다고 느끼는 이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교장 또한 자신들의 평결과 원래 권고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항소 시에 퇴학이 확정된 학생의 경우, 해당 결정 후 24시간 이내에 항소가 거부된 구체적인 이유를 포함한 서면 통지를 교장이 가족에게 보내며, 가족은 재입학 자격 심사일자를 받습니다. 퇴학이 번복된 학생의 경우, 다음 수업일에 훈련된 교직원이 재입학 회의를 진행하며, 학생은 즉각 정규 수업을 재개합니다.

Bright Star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학생이 퇴학되거나 항소에서 퇴학이 확정될 경우, Charter School은 퇴학 명령, 재활 계획 및 복귀 자격을 포함하는 퇴학 패킷 제출을 포함하여, 학생 징계 및 퇴학 지원 부서(Student Discipline and Expulsion Support Unit) "SDES"에 즉각 통지합니다.

재활, 복귀 및 재입학

학생을 퇴학시키기로 결정한 경우, Charter School은 퇴학된 학생의 적절한 교육 배치를 돕기 위해 거주 지역구와 협력할 것입니다. 성폭행과 같은 폭력적 및/또는 심각한 학생 행동의 모든 사건은 학생이 입학한 교육구 또는 학교에 전달됩니다.

퇴학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거나 Bright Star Schools의 담당 위원회가 재활 계획의 성공적인 완료 후 해당 학생의 재입학을 승인할 때까지 유효합니다. 재활 계획의 기간은 학생이 퇴학되는 행동에 대한 논리적 결과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Charter School 퇴학 기간 동안 학생은 재활 계획을 준수해야 하며, 퇴학 기간 동안 만족스러운 성적 및 출석을 유지하고, 적절하고 유관한 상담 서비스를 받으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 재입학 결정은 재활 계획을 학생이 성공적으로 마쳤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학생이 타인에게 위협을 가했는지 또는 학교 환경에 지장을 초래할지의 여부를 결정할, 교장과 학생 및/또는 학부모/보호자와의 회의 후에 Bright Star Schools 위원회의 단독 재량으로 이루어집니다. 학생의 재입학은 또한 학생이 재입학을 원하는 시점의 Charter School의 등록 수용력에 달려 있습니다.

교사 대상 통지

Charter School은 교육법 49079항 및 위에 명시된 해당 위반사항 열거에 나열된 일체의 행동에 가담했거나, 가담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각 학생의 교사에게 통지합니다.

공통 고발 처리 정책

Bright Star Schools("Charter School") 위원회는 관련 연방 및 주 법률과 규정에 따라 이 공통 고발 처리 절차(Uniform Complaint Procedures, ("UCP")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Charter School은 교육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연방 및 주 법률과 규정 준수를 주로 담당하는 지역 교육 기관입니다. 이 정책에 따라, 규정 준수 및/또는 조사 수행을 담당하는 자는 조사하도록 배정받은 법률 및 프로그램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범위

이 고발 처리 절차(“UCP”)는 다음 유형의 고발에 대해 균일한 고발 처리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 채택되었습니다.

1. 연령, 혈통, 피부색, 정신적 장애, 신체적 장애, 민족군 식별, 이민 신분, 시민권, 성별 표현, 성적 정체성, 성별, 유전 정보, 국적, 출신 국가, 인종 또는 민족, 종교, 건강 상태, 결혼 여부, 생물학적 성별, 성적 취향의 실제 또는 인지된 특성에 기반하여, 또는 일체의 Charter School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서 이러한 실제 또는 인지된 특성 중 하나 이상을 가진 개인 또는 집단과 한 개인 사이의 연관성에 기반하여 일체의 보호 대상 그룹에 대한 불법적인 차별, 괴롭힘, 위협 또는 따돌림을 주장하는 고발.

2. 다음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주나 연방법 또는 규정의 위반을 주장하는 고발:
   - 임신, 육아 또는 수유 중인 학생을 위한 편의 제공
   - 통합 범주형 지원,
   - 현재 공립학교에 등록된 위탁 보호 학생, 노숙자 학생, 전 소년법정학교 학생, 그리고 이주 아동 및 군인 가정 자녀의 학생 교육,
   - 모든 학생 성공법,
   - 학교 안전 계획

3. 공립학교에 등록된 학생이 아래에 정의된 용어에 따른 교육 활동 참여에 대해 학생 부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고발.
   a. "교육 활동"은 교과 과정 및 과외 활동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초등 및 중등 교육의 필수적인 기본 부분을 구성하는, Charter School에서 제공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b. "학생 부담 비용"은 *Hartzell v. Connell* (1984) 35 Cal.3d 899에서와 같이, 교육 활동을 가족의 능력이나 요금 납부 의사나 특별 납부 면제 요청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무료로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교육법 49011항 및 캘리포니아 헌법 9조 5항을 위반하여 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나 보호자에게 부과되는 요금, 보증금 또는 기타 요금을 의미합니다. 학생 부담 비용에는 다음이 모두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i. 수업이나 활동이 선택적인지 필수인지 또는 학점을 위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학교나 수업 등록 조건으로, 또는 수업이나 과외 활동 참여 조건으로 학생에게 부과되는 요금.

      ii. 자물쇠, 사물함, 책, 수업 용구, 악기, 유니폼 또는 기타 재료나 장비를 얻기 위해 학생이 지불해야 하는 보증금 또는 기타 납부금.

      iii. 교육 활동과 관련된 재료, 용품, 장비 또는 유니폼을 얻기 위해 학생에게 요구되는 구매.

   c. 해당 고발이 지역 통제 및 책임 계획과 관련하여 교육법 52075항에 참조로 실린 바와 같이, 교육법 47606.5항 또는 47607.3항의 위반 혐의를 포함하여 교육법 52060 - 52077항의 미준수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공하거나 그러한 증거로 이끄는 정보일 경우, 학생 부담 비용 고발과 지역 통제 및 책임 계획("LCAP")에 대한 고발에 한해 익명으로(신원을 식별하는 서명 없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d. Charter School이 학생 부담 비용 고발에서 가치를 발견하거나 캘리포니아 교육부("CDE")가 항소에서 가치를 발견할 경우, Charter School은 해당되는 경우 Charter School에 의한 합리적인 노력을 포함하는 구제책을 영향을 받는 모든 학생, 학부모/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주 위원회에서 채택한 규정을 통해 구축된 절차에 따라 영향을 받는 모든 학생과 학부모/보호자에게 전액 상환을 보장합니다.

e. 이 정책의 어떤 내용도 다음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기금 또는 자산의 자발적 기부 권유, 모금 활동의 자발적인 참여, 또는 Charter School 및 기타 단체가 모금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학생에게 상이나 기타 표창을 제공.

4. 해당될 경우, 교육법 47606.5 및 47607.3항에 따라 지역 관리 기금 공식("LCFF") 또는 LCAP를 관장하는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고발. Charter School이 LCAP에 더하여 학생 성취를 위한 학교 계획을 채택하는 경우, 교육법 64000, 64001, 65000 및 65001항에 따른 학생 성취를 위한 학교 계획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고발도 이 항에 해당됩니다.
5. 교육법 49490-49590항에 따라 구축된 아동 영양 프로그램에 관한 미준수 혐의 고발은 7편, 연방 규정 코드("CFR") 210.19(a)(4), 215.1(a), 220.13(c), 225.11(b), 226.6(n), 250.15(d)항 및 5편, 캘리포니아 규정집("CCR") 15580-15584항이 관장합니다.

6. 교육법 56000-56865항 및 59000-59300항에 따라 구축된 특수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미준수 혐의 고발은 5 CCR 3200-3205항 및 34 CFR 300.151-300.153항에 명시된 절차에 따릅니다.

Charter School은 모든 개인의 개인 정보 보호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불법적인 차별, 괴롭힘, 위협 또는 따돌림에 대한 고발은 원고의 신원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당사자들의 기밀성을(최대한 합리적으로, 또한 법률상 허가된 바에 따라) 보호하고 절차의 무결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조사되어야 합니다. Charter School은 원고의 익명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원고의 신원을 기밀로 유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Charter School은 적절한 경우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Charter School은 법적으로 요구되는 범위 또는 사례별로 총괄 책임자나 피지명인이 결정한 대로 조사 또는 절차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고발/원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Charter School은 원고가 보복으로부터 보호되도록 할 것입니다.

준수 담당자

위원회는 다음 준수 담당자(들)를 고발을 접수 및 조사하고 Charter School이 법률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준수 담당자로 지정합니다.

Leeann Yu, Chief Operations Officer (최고 운영 책임자)
lyu@brightstarschools.org
Bright Star Schools
물리적 주소: 600 S. La Fayette Park Pl, Los Angeles, CA 90057
우편 주소: 5101 Santa Monica Blvd Ste 8, PMB 93, Los Angeles, CA 90029
(323) 954-9957 x1006

총괄 책임자 또는 피지명인은 고발 사항을 조사하도록 지정된 준수 담당자(들)가 자신이 담당하는 법률 및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준수 담당자는 총괄 책임자 또는 피지명인이 결정한 대로 법률 고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총괄 책임자에 대한 고발이 제기될 경우, 해당 사건의 준수 담당자는 Charter School 위원회의

회장이 됩니다.

알림

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이 정책의 사본을 무료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 정책의 연례 통지는 Charter School의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Charter School은 직원, 학생, 학부모 및/또는 보호자, 자문위원회, 사립 학교 관계자 및 적절한 기타 이해 당사자에게 Charter School의 UCP에 대한 서면 알림을 매년 제공합니다.

연간 통지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교육법 48985항에 따라 필요 시, Charter School에 등록한 학생의 15% 이상이 영어 이외의 단일 기본 언어를 사용할 경우, 이 연례 통지는 그들의 기본 언어로 해당 학생의 학부모/보호자에게도 제공됩니다.

연례 통지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UCP의 범위, 그리고 아동 영양 프로그램 및 특수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고발을 관장하는 주 및 연방 규정의 범위에 속하는 고발 유형의 목록.
2. 건강 및 안전법 1596.792(o)항 및 해당하는 5편 건강 및 안전 규정에 따라 Charter School이 면허 면제로 운영하는 일체의 캘리포니아 주립 유치원 프로그램과 Charter School이 운영하는 일체의 캘리포니아 주립 유치원 프로그램은 22편 면허 요건에 따라 운영 중임을 명백하게 밝히는 진술.
3. Charter School은 연방, 주 법률 및 규정 준수에 대한 주 책임이 있다는 진술.
4. 공립 학교에 등록된 학생은 교육 활동 참여에 대해 학생 부담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진술.
5. 준수 담당자의 직위와 현재 해당 직위를 맡고 있는 사람의 신원(알고 있는 경우)을 식별하는 진술.
6. UCP 고발이 CDE에 직접 제출되고 CDE가 직접 개입할 가치가 있다고 결정할 경우, CDE는 당사자들이 일정을 연장하기로 합의했거나 CDE가 예외적인 상황을 문서화하고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는 한, 고발 접수 후 달력일 기준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원고에게 서면 결정을 제공해야 한다는 진술.
7. UCP 요건의 대상이 아닌 고발을 다루는 데 Charter School이 UCP를 사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고는 Charter School의 결정일로부터 달력일 기준 30일 이내에 서면 항소를 제출함으로써 CDE에 Charter School의 결정에 항소할 권리를 보유한다는 진술.
8. UCP 고발에 대한 Charter School의 결정에 대해 CDE에 항소하는 원고는 원고와의 서면 합의에 의해 연장되거나 CDE가 예외적 상황을 기록하고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는 한 CDE가 이의 제기를 접수한 후 달력일 기준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항소 결정문을 받아야 한다는 진술.

Charter School이 UCP 고발에서 가치를 발견하거나 CDE가 항소에서 가치를 발견할 경우, Charter School은 해당 시 영향을 받는 학생 및/또는 학부모/보호자에게 구제책을 제공할 기존 법률의 요건에 일치하는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진술.

9. 해당될 경우, 주 또는 연방 차별, 괴롭힘, 위협 또는 따돌림 법률하에 이용할 수 있는 일체의 민법 구제책과 교육법 262.3항에 따른 항소에 대해 원고에게 조언하는 진술.
10. Charter School의 UCP 사본이 무료로 제공된다는 진술.

절차

다음 절차는 Charter School이 위의 “범위” 항에 열거된, 연방 또는 주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모든 고발을 처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준수 담당자는 각 고발 및 후속 관련

조치에 대한 기록을 최소 달력일 기준 3년 동안 유지합니다.

이름이 거론된 모든 당사자는 고발이 접수될 때, 고발 처리 회의 또는 청문회 일정이 잡힐 때, 그리고 결정이나 판결이 내려질 때 이 정책에 따라 통지를 받습니다.

1단계: 고발 접수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제삼자, 공공기관 또는 조직을 포함한 모든 개인은 이 정책에 관한 미준수 혐의 또는 불법적인 차별, 괴롭힘, 위협 또는 따돌림 혐의에 대해 서면으로 고발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차별, 괴롭힘, 위협 또는 따돌림에 대한 고발은 불법적인 차별, 괴롭힘, 위협 또는 따돌림을 개인적으로 겪었다고 주장하는 개인, 또는 일체의 특정 개인 집단이 불법적인 차별, 괴롭힘, 위협 또는 따돌림의 대상이 되어 왔다고 생각하는 개인, 또는 한 개별 학생이 차별, 괴롭힘, 위협 또는 따돌림의 대상이 되어 왔다고 주장하는 정당하게 승인된 대리인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차별, 괴롭힘, 위협 또는 따돌림 혐의에 대한 조사는 연장 사유를 설명하는 원고의 서면 요청이 있을 시 총괄 책임자 또는 피지명인에 의해 접수 시간이 연장되지 않은 한, 차별, 괴롭힘, 위협 또는 따돌림 혐의가 발생한 날짜 또는 원고가 불법적인 차별, 괴롭힘, 위협 또는 따돌림 혐의 사실에 대해 처음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발을 제기함으로써 시작되어야 합니다. 총괄 책임자 또는 피지명인에 의한 이러한 연장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접수 기간은 6개월의 기간이 만료된 후 달력일 기준으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총괄 책임자 또는 피지명인에 의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총괄 책임자는 연장 요청을 받는 즉시 응답해야 합니다.

이 정책에 따라 기타 모든 고발은 위반 혐의가 발생한 날짜로부터 1년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LCAP와 관련된 고발의 경우, 위반 혐의 날짜는 Charter School 위원회가 LCAP를 승인하거나 연례 업데이트가 Charter School에서 채택된 날짜입니다.

고발은 각각에 대한 코드 번호 및 날짜 스탬프와 더불어, 접수된 고발 기록을 유지 관리하는 준수 담당자에게 접수되어야 합니다.

이 정책에 따라 접수된 고발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 및 서명해야 합니다. 서명은 수기, 타이핑(이메일 내 포함) 또는 전자적으로 생성될 수 있습니다. 학생 부담 비용 또는 LCAP 준수에 관한 고발에 한해 익명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장애 또는 문맹과 같은 상황으로 인해 서면으로 고발을 접수할 수 없는 경우, Charter School 직원이 원고의 고발 접수를 도울 것입니다.

2단계: 중재

고발을 접수한 후 업무일 기준 3일 이내에, 준수 담당자는 원고와 중재 가능성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중재에 동의할 경우, 준수 담당자는 이 절차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차별, 괴롭힘, 위협 또는 따돌림 관련 고발의 중재를 시작하기 전, 준수 담당자는 모든 당사자가 중재자를 관련 기밀 정보의 당사자로 만드는 데 동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재 절차가 원고가 만족하는 정도까지 고발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준수 담당자는 고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중재의 활용은 원고가 그러한 시간 연장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고발 조사 및 해결을 위한 Charter School의 일정을 연장하지 않습니다.

3단계: 고발 조사

준수 담당자는 고발을 접수하거나 고발을 중재하려는 시도가 실패한 후 업무일 기준 5일 이내에

조사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 회의에서는 원고 및/또는 원고의 대리인이 고발 사항을 구두로 반복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원고 및/또는 원고의 대리인은 고발에서 증거, 또는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이어지는 정보를 제시할 기회를 보유해야 합니다.

원고가 고발 혐의와 관련된 문서 또는 기타 증거를 준수 담당자에게 제공하기를 거부하거나, 원고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거부하거나, 원고가 기타 조사 방해에 가담하는 경우,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해당 고발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Charter School이 준수 담당자에게 고발 혐의와 관련된 기록 및/또는 기타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거부하거나, 기타 조사 방해에 가담하는 경우, 수집된 증거에 기반하여, 위반이 발생하였다는 평결이 초래될 수 있으며 원고에게 유리한 구제책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단계: 최종 서면 결정

Charter School은 증거에 기반한 조사 보고서("결정")를 발행할 것입니다. Charter School의 결정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원고의 서면 동의로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한 Charter School의 접수로부터 달력일 기준 60일 이내에 원고에게 전송됩니다. Charter School의 결정은 가능할 때마다 또는 법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영어 및 원고가 주로 사용하는 언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결정문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수집된 증거에 기반한 사실의 발견,
2. Charter School이 관련 법률을 준수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각 혐의에 대한 명확한 결정을 제공하는 결론.
3. Charter School이 고발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법에 의해 정당하거나 요구되는 경우의 시정 조치.
4. UCP 요건의 대상이 아닌 고발을 다루는 데 Charter School이 UCP를 사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고는 달력일 기준 30일 이내에 CDE에 서면 항소를 제출함으로써 Charter School의 결정에 항소할 권리를 보유한다는 통지.
5. 해당 항소를 시작하기 위해 따라야 할 절차.

직원이 고발의 결과로 징계를 받을 경우, 결정문에는 효과적인 조치가 취해졌고 해당 직원에게 Charter School의 기대 사항이 고지되었다는 내용이 간략히 기재됩니다. 결정문은 관련 법률상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 징계 조치의 성격에 대한 일체의 추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CDE에 항소

결정문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원고는 결정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달력일 기준 30일 이내에 CDE에 서면으로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에는 Charter School에 접수된 서류 사본과 결정문의 사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CDE에 항소 시, 원고는 반드시 항소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을 포함해야 합니다.

1. Charter School이 고발 처리 절차를 따르지 않았음,
2. 고발에 대한 주장과 관련하여, Charter School의 결정문에는 법의 결론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사실에 대한 중요한 발견이 부족함,
3. Charter School 결정문의 중요한 사실 발견에는 실질적인 증거의 뒷받침이 없음,
4. Charter School 결정문의 법적 결론이 법률과 일치하지 않음, 및/또는

5. Charter School 결정문에서 미준수를 발견한 경우, 교정 조치는 적절한 구제책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원고가 결정에 항소했다는 CDE의 통지 시, 총괄 책임자 또는 피지명인은 통지일로부터 달력일 기준 10일 이내에 다음 문서를 CDE에 전달해야 합니다.

1. 원래의 고발장 사본,
2. 결정문 사본.
3. 당사자들이 제출하거나 조사관이 수집한 모든 메모, 질의 및 문서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조사 파일의 사본,
4. 고발을 해결하기 위해 취한 일체의 조치에 대한 보고서.
5. Charter School의 고발 처리 절차 사본.
6. CDE에서 요청한 기타 관련 정보.

CDE에서 항소가 지역 고발에 포함되지 않은 문제를 제기한다고 결정할 경우, CDE는 해결을 위해 신규 고발로서 해당 신규 사안을 Charter School에 다시 회부합니다. CDE가 Charter School에, 결정이 고발에 의해 제기된 UCP 절차 대상인 혐의를 처리하지 못했음을 통지할 경우, Charter School은 UCP 요건에 따라 그러한 혐의(들)을 조사 및 처리하고 CDE와 항소자에게 CDE 통지로부터 달력일 기준 20일 이내에 그러한 혐의(들)를 다루는 수정된 결정을 제공합니다. 수정된 결정에서는 항소인에게 원래 결정에서 다루지 않은 고발 혐의(들)와 관련하여 수정된 결정에 별도로 항소할 수 있는 권리를 고지할 것입니다.

5 CCR 4633(f)(2)항 또는 (3)항에 따라 CDE가 항소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달력일 기준 30일 이내에, 어느 한쪽 당사자가 주 공교육 교육감("SSPI") 또는 SSPI의 피지명인에게 재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고 요청은 CDE의 항소 결정에서 사실 발견, 법적 결론 또는 시정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를 구체화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SSPI는 이러한 정보가 항소 당시 당사자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마땅한 주의하에 당사자에게 알려질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항소 중 당사자가 이전에 CDE에 제출하지 않은 일체의 정보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재고 요청에 대한 SSPI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CDE 항소 결정은 법원에서 보류 중이 아닌 한 유효하고 집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CDE는 원고의 잘못이 아닌 경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은 경우, Charter School이 Charter School에 고발이 접수된 날로부터 달력일 기준 60일 이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여, 5 C.C.R. 4650항에 등재된 조건 중 하나가 존재할 시, Charter School의 조치를 기다리지 않고 고발 사항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습니다.

민법 구제책

원고는 Charter School의 고발 처리 절차 외에 이용 가능한 민법 구제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중재 센터 또는 공익/사익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부과할 수 있는 민법 구제책에는 금지 명령 및 접근 금지 명령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 법률하에 발생하는 불법적인 차별을 주장하는 고발의 경우, 원고는 민법 구제책을 추진하기 전에 CDE에 항소를 접수한 후 달력일 기준 60일이 경과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모라토리엄은 금지 명령 구제에 적용되지 않으며, Charter School이 원고에게 적절하게, 적시에 고발을 접수할 권리에 대해 통지한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공통 고발 처리 절차 양식

성: _____ 이름/중간 이름: _____

학생의 이름(해당되는 경우): _____ 학년: _____ 생년월일: _____

주소 1(도로명/아파트): #:

_____

도시: _____ 주: _____ 우편번호:

_____

집 전화: _____ 휴대전화: _____ 직장 전화: _____

위반 주장 대상 학교/사무실:

_____

비준수 혐의(들)의 경우, 해당 시 귀하의 고발에 언급된 프로그램 또는 활동을 확인하십시오.:

- 임신, 육아 또는 수유 중인 학생을 위한 편의 제공
- 통합 범주형 지원
- 위탁 청소년, 노숙 청소년, 전 소년법정학교 학생, 이주 아동 또는 군인 가정 자녀의 교육
- 모든 학생 성공법
- 학교 안전 계획
- 학생 부담 비용
- 지역 관리 기금 공식, 지역 통제 및 책임 계획 또는 학생 성취를 위한 학교 계획의 미준수
- 아동 영양 프로그램

불법적인 차별, 괴롭힘, 협박 또는 따돌림 관련 혐의(들)에 해당되는 경우, 고발 사항에 설명된 불법적인 차별, 괴롭힘, 위협 또는 따돌림의 근거를 확인하십시오.

나이

혈통

피부색

장애(정신적 또는 신체적)

민족군 정체성

성별 / 성별 표현 / 성적 정체성

유전 정보

이민 상태/시민권

결혼 여부

건강 상태

국적 / 출신국

인종 또는 민족

종교

성별(실제 또는 인식)

성적 지향(실제 또는 인식)

이러한 실제 또는 인지된 특성 중 하나 이상을 가진 개인 또는 그룹과의 연관성에 기반됨

1. 고발 사항에 대한 사실을 작성해 주십시오. 고발 조사관에게 유용할 수 있는 관련자의 이름, 날짜, 증인이 있었는지의 여부 등과 같은 세부 정보를 알려 주십시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2. 일체의 Charter School 직원에게 귀하의 불만에 대해 논의하거나 불만을 제기하였습니까? 그랬다면, 누구에게 불만을 알렸으며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3. 귀하의 고발과 관련이 있거나 뒷받침할 수 있는 일체의 서면 문서의 사본을 제공해 주십시오.

증빙서류를 첨부하였습니다. 예 아니요

서명: _____ 날짜: _____

준수 담당자에게 고발 사항 및 일체의 관련 문서를 우편으로 보내십시오.

Leeann Yu, Chief Operations Officer (최고 운영 책임자)
lyu@brightstarschools.org
Bright Star Schools
물리적 주소: 600 S. La Fayette Park Pl, Los Angeles, CA 90057
우편 주소: 5101 Santa Monica Blvd Ste 8, PMB 93, Los Angeles, CA 90029
(323) 954-9957 x1006

교육 기록 및 학생 정보 정책

Bright Star Schools("Charter School" 또는 "Charter School") 위원회는 이 교육 기록 및 학생 정보 정책을 채택하여 Charter School에서 유지 관리하는 모든 교육 기록 및 학생 정보에 적용합니다.

정의

교육 기록

교육 기록은 학생과 직접 관련되고 Charter School이나 Charter School을 위해 활동하는 당사자가 유지하는, 글씨, 지문, 컴퓨터 매체, 비디오 또는 오디오테이프, 마이크로필름, 마이크로피시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방식으로 기록된 일체의 정보입니다. 그러한 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 생년월일 및 출생지, 학부모 및/또는 보호자의 주소, 어머니의 결혼 전 이름 및 긴급 상황 시 당사자에게 연락이 닿을 수 있는 곳.
2. 성적, 시험 점수, 수강한 과목, 학업 전문 분야 및 학교 활동.
3. 특수 교육 기록.
4. 징계 기록.
5. 의료 및 건강 기록.
6. 출석 기록 및 과거 학교 출석 기록.
7. 학생의 이름, 학생의 부모 또는 다른 가족 구성원의 이름, 학생 식별 번호, 사회 보장 번호, 사진, 생체 기록 또는 학생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타 유형의 정보 등의, 그러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개인 정보.

교육 기록에는 다음이 일체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제작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록은 개인 기억 보조 수단으로만 사용되며, 기록 제작자를 임시로 대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어떤 자에게도 접근 가능하거나 공개할 수 없습니다.
2. 법 집행 목적으로 해당 법 집행 기관에서 생성한, Charter School의 법 집행 기관에서 유지 관리하는 기록.
3. Charter School에 고용되어 있지만 Charter School에 재학 중이지 않은 자의 경우, 정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작성 및 유지 관리되는 기록은 해당 개인의 직원 자격으로 독점적으로 관련되며 기타 일체의 목적으로 누구에게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4. 만 18세 이상이거나 중등 이후 교육 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의, 다음에 해당되는 기록: a) 자신의 전문적 역량으로 활동하는 또는 보조원적 역량으로 지원하는 의사, 정신과 전문의, 심리학자 또는 기타 정식 전문가 또는 그 보조원이 작성하고 유지 관리함, b) 학생의 치료와 관련해서만 작성, 유지 관리 또는 사용, c) 치료를 제공하는 개인에게만 공개됨. 이 정의의 목적상, "치료"에는 교정 교육 활동 또는 Charter School의 교육 프로그램의 일부인 활동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5. 개인이 더 이상 Charter School의 학생이 아니게 된 이후의 개인에 대한 정보만 포함하는 기록.
6. 교사가 수집하고 기록하기 전 동료 채점된 과제의 성적.

개인 식별 정보

개인 식별 정보("PII")는 2001년 가족 교육 권리 및 개인 정보 보호법("FERPA")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는 공개할 수 없는 교육 기록에 포함된 학생에 대한 정보입니다. PII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학생의 이름, 학생의 부모 또는 기타 가족 구성원의 이름, 학생 또는 학생 가족의 주소, 학생의 사회 보장 번호, 학생 번호 또는 생체 기록 등의 개인 식별 정보, 학생의 생년월일, 출생지, 어머니의 결혼 전 이름 등의 기타 간접 식별 정보, 관련 상황에 대한 개인적 지식이 없는 학교 지역 사회 내의 합리적인 사람이 합리적인 확실성을 가지고 학생을 식별할 수 있도록 단독으로 또는 결합하여 특정 학생과 연결되거나 연결 가능한 기타 정보, 또는 Charter School이 교육 기록과 관련된 학생의 신원을 알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믿는 사람이 요청한 정보.

인명록 정보

인명록 정보는 공개될 경우 일반적으로 유해하거나 개인 정보 침해로 간주되지 않는, 학생의 교육 기록에 포함된 정보입니다. Charter School은 FERPA(20 U.S.C § 1232g)에 따라 Charter School이 제공하는 연례 통지의 조건과 일치하도록 인명록 정보로 지정한 PII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Charter School은 다음 정보를 인명록 정보로 지정했습니다.

1. 학생의 이름
2. 학생의 주소
3. 학부모/보호자의 주소
4. 전화번호 목록
5. 학생의 전자 메일 주소
6. 학부모/보호자의 전자 메일 주소
7. 사진/동영상
8. 생년월일 및 출생지
9. 출석일
10. 학년 수준
11. 공식적으로 인정된 활동 및 스포츠 참여
12. 운동팀 구성원의 체중 및 신장
13. 받은 학위, 영예 및 상

14. 가장 최근에 다녔던 교육 기관 또는 학회
15. PIN, 비밀번호 등이 없이는 교육 기록에 액세스할 수 없는 전자 시스템상에서 통신에 사용되는 학생 ID 번호, 사용자 ID 또는 기타 고유한 개인 식별 정보(학생의 SSN의 전체 또는 일부는 이 목적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학부모
학부모는 학생의 부모를 의미하며 친부모, 보호자 또는 부모나 보호자가 없을 때 부모 역할을 하는 개인을 포함합니다.

적격한 학생
적격한 학생은 만 18세에 도달한 학생을 의미합니다.

학교 직원
학교 직원이란 행정관, 관리자, 강사 또는 지원 담당 직원(보건 또는 의료 직원 및 법률 집행부 직원 포함) 또는 Charter School 위원회에 근무하는 자로서 Charter School에 의해 고용된 자입니다. 학교 직원에는 또한 Charter School이 자체 직원을 사용할 수 있을 제도적 서비스나 직무를 수행하는, 그리고 교육 기록의 PII 사용 및 유지 관리에 관해 Charter School의 직접적인 관리하에 있는 Charter School의 자원봉사자나 독립적 계약업자, 컨설턴트, 제공업체, 또는 기타 당사자가 포함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변호사, 감사관, 의료 컨설턴트 또는 치료사, 징계 또는 고충 처리 위원회 등의 공식 위원회에서 자원봉사하는 학부모나 학생, 또는 다른 학교 직원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돕는 기타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정당한 교육적 이해
학교 직원은 직업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교육 기록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 합법적인 교육적 이해 관계를 보유합니다.

인명록 정보 공개
매 학년 초에, Charter School은 학부모 및 적격한 학생에게 다음 정보가 포함된 통지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1) 인명록 정보로 지정하는 PII의 유형, 2) 학부모 또는 적격한 학생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Charter School이 "인명록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는 학부모 또는 적격한 학생의 권리, 그리고 3) 학부모 또는 적격한 학생이 학부모 또는 적격한 학생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는 "인명록 정보"의 범주를 Charter School에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기간. Charter School은 학생이 제외 요청을 철회하지 않는 한 전 학생이 출석하는 동안 작성된 전 학생의 주소록 정보 공개를 제외하는 유효한 요청을 계속해서 존중할 것입니다.

학부모 및 적격한 학생 대상 연례 통지
매 학년 초에, 인명록 정보에 필요한 통지 외에 Charter School은 현재 재학 중인 적격한 학생과 현재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에게 FERPA에 따른 권리에 대한 통지를 제공합니다. 통지서는 학부모와 적격한 학생에게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1. 학생의 교육 기록을 조사하고 검토할 수 있는 권리,
2. 학부모 또는 적격한 학생이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학생의 개인 정보 보호권을 위반한다고 여기는 학생의 교육 기록 수정할 권리,
3. FERPA에 따른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공개가 허용되는 정도를 제외하고, 학생의 교육 기록에 포함된 PII 공개에 동의할 권리,
4. Charter School이 FERPA 및 그 공표된 규정 요건의 미준수 혐의에 대한 고발을 미국 교육부에 제출할 권리, 그리고
5. Charter School이 학부모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학생의 이름, 주소 및 전화 목록을 군대 모집자 또는 고등 교육 기관에 공개하지 않도록 요청하십시오.

통지서에는 반드시 다음 내용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교육 기록 조사 및 검토권 행사 절차,
2. 기록 수정 요청 절차,
3. 공개가 학생의 등록 또는 전학과 관련된 목적을 위한 것인 한, 기록을 요청했고 학생이 등록을 원하거나 등록하려고 하거나 이미 등록된 다른 기관 또는 시설에 Charter School이 교육 기록을 전달한다는 진술, 그리고
4. 누가 학교 직원을 구성하고 무엇이 정당한 교육적 이익을 구성하는지 결정하기 위한 기준.

교육 기록과 관련된 학부모 및 적격한 학생의 권리

학부모와 적격한 학생은 학생의 교육 기록을 검토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학부모와 적격한 학생은 교육 기록 검토 요청을 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업무일 기준 5일 이내에 Charter School은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1. 교육 기록 사본

Charter School은 서면 사본 요청 후 업무일 기준 5일 이내에 요청한 문서의 사본을 제공합니다. Charter School은 학부모 또는 적격한 학생에게 제공하는 사본에 대해 합당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 전 학생의 성적표 최대 2부 또는 (2) 전 학생의 각종 기록 확인서 최대 2부까지 제공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비용에는 교육 기록을 찾거나 검색하는 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교육 기록 수정 요청

학생의 교육 기록을 조사 및 검토한 후, 학부모 또는 적격한 학생은 학생의 교육 기록에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정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교장에게 서면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a. 부정확함.
b. 오해의 소지가 있음.
c. 학생의 개인 정보 보호 권리를 침해함.

Charter School은 수정 요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응답할 것입니다. Charter School의 응답은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수정 요청이 거부될 경우 Charter School은 거부 이유를 설명하고 교육 기록의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는 청문회를 열 권리에 대해 학부모 또는 적격한 학생에게 알립니다.

교장이 주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지할 경우, 교장은 반드시 정보의 수정 또는 제거 및 파기를 명령해야 합니다. 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반드시 학부모 또는 적격한 학생에게 서면으로 수정 사항을 고지해야 합니다.

교장이 학생의 이름 및/또는 성별 변경에 대한 학부모 또는 적격한 학생의 요청을 지지할 경우, Charter School은 다음 정보가 모두 포함된 새 문서를 학생 기록에 추가합니다.

a. 요청 날짜.
b. 요청된 기록이 수정된 날짜.
c. 수정 요청된 기록의 목록.
d. 학생의 이름 및/또는 성별에 대한 법적 변경을 입증하기 위해 제공되는 문서 유형(있을 경우). 학생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이름 및/또는 성별에 대한 법적 변경 문서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e. 요청을 완료한 직원의 이름.
f. 학생의 수정된 이전 이름 및/또는 성별.

Charter School은 Charter School이 이전 학생의 법적 이름 또는 성별이 변경되었음을 보여주는 정부 발행 문서를 수령할 경우 업데이트된 법적 이름 또는 성별을 포함하는 **전** 학생의 기록을 즉시 업데이트합니다. 허용되는 정부 발급 신분증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a. 국가에서 발행한 운전 면허증.
b. 출생증명서.
c. 여권.
d. 사회 보장 카드.
e. 이름 변경이나 성별 변경 또는 둘 다를 나타내는 법원 명령.

전 학생이 요청할 경우, Charter School은 전 학생의 법적 이름 또는 성별이 업데이트된, 전 학생에게 수여된 모든 문서를 재발급합니다. Charter School에서 재발급할 수 있는 문서에는 성적표, 고등학교 졸업장, 고등학교 동등 증명서 또는 전 학생에게 수여된 기타 유사한 문서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전 학생이 이름이나 성별을 변경하고 요청된 기록을 재발급하도록 요청할 경우, Charter School은 다음을 모두 포함하는 새 문서를 전 학생의 파일에 추가해야 합니다.

a. 요청 날짜.
b. 요청된 기록이 전 학생에게 재발행된 날짜.
c. 전 학생이 요청하여 재발급된 기록의 목록.
d. 법적 이름 또는 성별 변경을 입증하기 위해 이전 학생이 제공한 문서의 유형.
e. 요청을 완수한 교육구, Charter School 또는 카운티 교육청 직원의 이름.
f. 전 학생의 현재 및 이전 이름 또는 성별.

3. 교육 기록 이의 제기 청문회

Charter School이 학부모 또는 적격한 학생의 교육 기록 수정 요청을 거부할 경우, 학부모 또는 적격한 학생은 거부 후 30일 이내에 해당 학부모 또는 적격한 학생에게 교육 기록에 포함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학생의 개인 정보 보호 권리를 침해한다는 근거로 학생의 교육 기록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는 청문회 기회를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의장은 학부모가 소집된 패널 구성원에게 학생 기록의 정보를 공개하는 데 서면 동의를 제공한 경우 교육 기록 이의 제기에 대한 결정을 돕기 위해 청문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는 다음 인물로 구성됩니다.

a. 기록이 보관된 공립학교가 아닌 공립학교의 교장 또는 피지명인,
b. 공식 Charter School 직원, 그리고
c. 패널을 소집하는 인물에 따라, 교장 또는 위원회 의장이 임명한 학부모.

교육 기록에 대한 이의 제기 청문회는 청문회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합니다.
청문회 날짜, 시간 및 장소에 대한 통지는 청문회 20일 전까지 Charter School에서 학부모 또는 적격한 학생에게 발송됩니다.
공립학교의 교장 또는 피지명인이 의장이 되며 공식적인 증거 또는 절차 규칙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학부모 또는 적격한 학생에게는 교육 기록 이의 제기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완전하고 공정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학부모 또는 적격한 학생은 또한 자신의 비용으로 변호사를 포함하여 자신이 선택한 한 명 이상의 개인이 보조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의장 또는 피지명인의 결정은 청문회에서 제시된 증거에만 기반하며, 최종적입니다.
청문회 종료 후 30일 이내에, Charter School의 이의 제기에 대한 결정이 서면으로 작성되며 증거 요약 및 결정 이유가 포함됩니다.

청문회 결과로 Charter School이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학생의 개인 정보 보호 권리를 침해한다고 결정할 경우, 그에 따라 기록을 수정하고 학부모 또는 적격한 학생에게

서면으로 수정 내역을 고지합니다.

청문회 결과 Charter School이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학생의 개인 정보 보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할 경우, 학부모 또는 적격한 학생에게 기록 내 논쟁의 여지가 있는 정보에 대해 의견을 달거나 Charter School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권리에 대해 고지합니다. Charter School이 학생의 교육 기록에 학부모 또는 적격한 학생의 진술을 포함할 경우, 기록이 유지 관리되는 동안 기록의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과 더불어 진술을 유지하고 진술과 관련된 교육 기록의 일부를 공개할 때마다 진술을 공개합니다.

교육 기록 및 인명록 정보의 공개

Charter School은 아래에 제공된 경우를 제외하고 학생의 교육 기록에서 인명록 정보가 아닌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반드시 학부모 또는 적격한 학생의 서명과 날짜가 기재된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서면 동의는 반드시 공개될 수 있는 기록, 공개 목적, 공개 대상 당사자 또는 종류를 명시해야 합니다. 서면 허가에 따라 공개가 이루어지면, 학부모 또는 적격한 학생은 공개된 기록의 사본을 요청할 수 있으며 Charter School은 요청 시 공개된 기록의 사본을 요청자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서명 및 날짜가 기재된 서면 동의는 전자 동의서의 출처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 및 인증하고 전자 동의서에 포함된 정보에 대한 해당 개인의 승인을 나타내는 경우 전자 양식의 기록 및 서명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Charter School은 수령 당사자가 학부모 또는 적격한 학생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정보를 어떤 당사자에게도 공개하지 않고 수령하는 당사자가 공개가 이루어지는 목적을 위해 정보를 사용한다는 조건하에 PII를 공개할 것입니다. 이 제한은 아래 나열된 공개 예외에 해당하는 공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Charter School은 반드시 아래에 설명된 대로 이러한 공개 예외와 관련된 적절한 기록을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영장, 사법 명령 또는 합법적으로 발행된 소환장, 또는 인명록 정보에 따른 공개를 제외하고, 또는 학부모 또는 적격한 학생에 대한 공개를 제외하고, Charter School은 학부모 또는 적격한 학생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정보를 일체의 다른 당사자에게 공개하지 않으며, 수령하는 당사자는 공개가 이루어지는 목적에 정보를 사용한다는 요건을 수령하는 당사자에게 알립니다. Charter School은 법이나 법원 명령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민 집행 목적으로 제삼자에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것임을 특히 유념해 주십시오.

Charter School은 학부모 또는 적격한 학생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교육 기록을 다음 당사자에게 공개할 수 있습니다.

1. 34 연방 규정 코드(“C.F.R”) 99부에 정의된 적법한 교육적 이해관계가 있는 학교 직원,
2. 학생의 등록 또는 전학과 관련된 목적의 공개인 경우 학생이 등록을 원하거나 등록 의도가 있는 다른 학교. 학생의 전학 시, Charter School은 학생이 등록할 의도를 가진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에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수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학생의 누적 파일 원본 또는 사본을 수령 교육구나 사립학교로 우송합니다. Charter School은 학부모나 적격한 학생이 공개를 시작하지 않는 한, 학부모 또는 적격한 학생에게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기록 요청을 알리기 위해 합리적인 시도를 할 것입니다. 또한, Charter School은 요청 시 공개된 기록의 사본을 학부모 또는 적격한 학생에게 제공하고 요청 시 학부모 또는 적격한 학생에게 위의 (IV)(3)항에 따라 청문회 기회를 제공합니다.
3. 적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20 U.S.C. § 1232g(b)(1)에 등재된 특정 공무원,
4. 적격성, 지원 금액, 지원 조건을 결정하거나 지원 조건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학생의 재정 지원 신청 또는 수령과 관련된 적절한 당사자,
5. 20 U.S.C. § 1232g(b)(1)(F)에 따라 Charter School을 위해 특정 연구를 수행하는 조직,
6. 인증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인증 기관,
7. 1986년 연방세법 152항에 규정된 부양 학생의 부모,
8. 사법 명령 또는 합법적으로 발부된 소환장을 준수하는 개인 또는 단체. 34 C.F.R. §

99.31(a)(9)(i)에서 발견된 예외 사항에 따라, 준수하기 전에 부모 또는 적격한 학생이 보호 명령을 구할 수 있도록 부모 또는 적격한 학생에게 명령 또는 소환장에 대해 알리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9. 건강 및 안전상의 비상 시에 알 필요가 있는 자들,
10. 특정 주 법률에 따라, 청소년 사법 제도 내 주 및 지방 당국,
11. 현재 등록된 또는 이전 학생에 대한 관할권을 보유한 위탁 가정, 학생의 교육이나 사례 관리를 담당하는 단기 복합 정신건강 프로그램(Residential Treatment Program) 직원, 인증된 또는 면허가 있는 위탁 부모, 승인된 친척 또는 혈연이 아닌 대가족 일원, 및/또는 자원 가족을 비롯하여 해당 학생의 관리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돌봄 제공자(해당 돌봄 제공자가 학생의 교육적 권리 보유자로 임명되었는지의 여부와 무관)는, 학생 및 학부모를 위해 Charter School에서 설립한 플랫폼상에서 성적, 필기록, 출석, 징계, 온라인 의사소통, 그리고 Charter School이 개발하거나 유지 관리하고 있을 수 있는 일체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IEP") 또는 504항 계획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및/또는,
12. 폭력 범죄 또는 비강제 성범죄의 가해자라고 주장되는 자의 피해자. 공개에는 주장된 해당 범죄 또는 위법 행위와 관련하여 Charter School이 수행한 징계 절차의 최종 결과만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Charter School이 결론지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Charter School은 징계 절차의 최종 결과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민 목적을 위한 학생 정보의 요청 및 공개

Charter School은 다음을 준수합니다.

1. 주 또는 연방법에서 요구하거나 주 또는 연방에서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위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Charter School 직원과 교직원은 학생이나 그 가족 구성원의 시민권이나 이민 상태에 관한 정보 또는 문서를 수집하지 않을 것입니다.
2. Charter School이 이민 상태, 시민권 상태 또는 출신국 정보를 나타낼 수 있는 정보를 보유한 경우, Charter School은 획득한 정보를 사용하여 어떤 학생이나 가족도 차별하거나 아동의 학교 등록 또는 출석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3.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자녀의 이민 상태, 시민권 상태 또는 출신국을 나타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로 선택할 경우, Charter School은 그러한 행동을 어떤 학생이나 가족을 차별하거나 아동이 학교에 등록하거나 출석하는 것을 금지하는 근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4. Charter School은 학교 자원이나 데이터를 사용하여 인종, 성별, 성적 취향, 종교, 민족 또는 출신국을 기반으로 한 기록부를 만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등록 과정 중:
    a. 법이 허용할 경우, Charter School은 등록 또는 프로그램에 대한 거주지, 연령 또는 기타 자격 기준을 구축하기 위한 대체 수단을 수락하며, 이러한 대체 수단에는 이민 상태, 시민권 상태, 또는 출신국에 관계없이 사람들에게 이용 가능한, 그러면서도 시민권이나 이민 상태와 관련된 정보를 드러내지 않는 문서 또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b. Charter School은 학생의 시민권이나 이민 상태 또는 학생의 학부모나 보호자의 시민권이나 이민 상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지 않습니다. 또한 직원은 기타 허용되는 문서나 정보를 제외하고 영주권, 유권자 등록, 여권 또는 시민권 서류 등 학생의 이민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문서 또는 정보를 구하거나 요구하지 않습니다.
    c. Charter School은 전체 사회 보장 번호나 카드, 또는 학부모나 보호자가 등록 목적의 사회 보장 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진술을 수집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학생이 Charter School에 등록하거나 출석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인 가구 구성원의 사회 보장 번호의 마지막 4자리는 무료 또는 할인 가격 급식 등의 연방 혜택 프로그램 자격을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요청 및/또는 수집될 수 있습니다. 이 사회 보장 정보는 연방 혜택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 확립의 제한된 목적으로만 수집되며, 학생 등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Charter School은 법이나 법원 명령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민 집행 목적으로 제삼자에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아동 학대, 아동 방치 또는 아동 의존에 대한 조사를 제외하고, Charter School에 송달된 소환장이 공개를 금지할 경우, Charter School은 그러한 요청에 응답하기 전에 일체의 법원 명령, 영장 또는 소환장에 대해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학부모, 보호자 또는 적격한 학생은 동의서에 서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부모, 보호자 또는 적격한 학생이 다른 경우라면 공개 대상이 아닐 학생 정보 공개에 대한 서면 동의 제공을 거부할 경우, Charter School은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Charter School은 동의 통지를 기록 파일과 함께 영구적으로 보관할 것입니다.

Charter School 직원은 학생이나 가족의 이민 또는 시민권 상태와 관련된 정보 요청을 받으면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정보 요청에 대해 지정된 Charter School 직원에게 통지합니다.
2. 학생과 가족에게 적절한 통지와 이민국 직원의 요청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3. 이민 당국의 모든 구두 또는 서면 정보 요청을 문서화합니다.
4. 금지되지 않는 한, 학생과 학부모/보호자에게 이민 집행관이 발행한 모든 문서를 제공합니다.

학생 기록의 디지털 저장, 관리 및 검색에 대한 계약

Charter School은 교육법 49073.1항 및 기타 해당 주와 연방법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학생 기록의 디지털 저장, 관리 및 검색을 위해 제삼자와 계약을 체결하고/하거나 디지털 소프트웨어의 제삼자 제공자가 학생 기록에 접근, 저장 및 사용하도록 승인할 수 있습니다.

기록 보관 요건

Charter School은 기록이 유지 관리되는 동안 각 학생의 교육 기록에 대한 접근 요청 및 PII 공개에 대한 기록을 유지 관리합니다. 각 요청별로, 기록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보를 요청하거나 받은 당사자, 그리고 정보를 요청하거나 받는 데 있어 당사자가 보유한 정당한 이해관계.

34 C.F.R § 99.33(b)에 따라 Charter School을 대신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기관에 PII를 공개함에 있어, 기록에는 반드시 받는 당사자가 Charter School을 대신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추가 당사자의 이름 및 각 추가 당사자가 정보를 요청하거나 획득할 때 갖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 보관 요건은 학부모 또는 적격한 학생, 기록을 조사할 정당한 목적을 가진 Charter School 직원, 학부모 또는 적격한 학생의 서면 동의를 받은 당사자, 인명록 정보를 찾는 당사자 또는 법원 명령이나 소환장의 지시에 따라 기록을 찾거나 받는 당사자의 요청 또는 공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PII 공개와 관련된 기록은 학부모 및 적격한 학생, 기록 보관을 담당하는 Charter School 직원(또는 그 보조), Charter School의 기록 보관 절차를 감사할 목적으로 규정에 의해 승인된 당사자가 검사할 수 있습니다.

기록을 제거하는 개인이 정당한 교육적 이해관계가 있고 교장 또는 정당하게 의결된 회의에서 위원회 정족수의 과반수가 승인하지 않는 한 학생 누적 기록은 Charter School 부지에서 제거될

수 없습니다. 합법적인 교육적 이해관계와 승인 없이 Charter School 부지에서 누적 학생 기록 또는 기타 학생 기록을 제거하는 직원은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원은 합법적인 학업상의 목적(예: 작업 산출물 채점, 성적 할당, 교실 토론용 자료 검토 등)을 위해 승인 없이 학생 작업 결과물 또는 기타 적절한 학생 기록을 부지 외부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고발

학부모 및 적격한 학생에게는 Charter School이 FERPA의 요건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하여 미국 교육부에 고발을 접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FERPA를 관리하는 사무실명과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Student Privacy Policy Office(학생 개인정보 보호정책실)
U.S. Department of Education(미국 교육부)
400 Maryland Avenue. S.W.
Washington, D.C. 20202-8520

기록 보유

Charter School은 다음에 따라, 캘리포니아 규정집("CCR") 431에서 438항까지의 5편에 확립된 학생 기록의 정의 및 보존을 준수합니다.

"필수 영구 학생 기록"

Charter School에 등록된 모든 학생을 위해 반드시 무기한 또는 정확한 사본을 유지해야 함. 이러한 기록의 정의:

1. 학생의 법적 이름
2. 생년월일
3. 생년월일 인증 방법
4. 학생의 성별
5. 출생지
6. 미성년 학생의 학부모 이름 및 주소
7. 상기와 다를 경우, 미성년 학생의 주소
8. 학부모의 이름과 주소, 학생의 거주지 연간 인증
9. 각 학년도 및 모든 여름 학기의 시작과 종료일자, 또는 각 연도, 학기, 여름 학기 또는 분기 동안 이수한 기타 추가 학기 과목
10. 점수나 학점이 주어지면 졸업을 위한 점수 또는 학점 수는 이수한 작업을 허용합니다.
11. 필수 예방 접종 확인 또는 면제
12.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에 준하는 날짜

필수 영구 학생 기록 또는 그 사본은 학생이 등록했거나 등록하려는 공립 또는 사립학교의 요청 시 Charter School에서 전달해야 합니다. Charter School이 원본의 필수 영구 학생 기록을 전달할 경우, Charter School은 반드시 사본을 유지해야 합니다. Charter School이 사본을 전달할 경우, Charter School은 반드시 원본을 유지해야 합니다.

"필수 임시 학생 기록"

"학생이 Charter School을 떠날 때 또는 그 유용성이 사라질 때"로 규정된 폐기 가능으로 판단될 때까지 반드시 유지 관리해야 함. 이러한 기록은 기록이 폐기 가능하다고 결정된 후 3학년도 동안 파기될 수 있습니다(즉, 2019-2020 기록은 2023년 7월 1일 이후에 파기될 수 있음). 이러한 기록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1. 기록에서 정보를 요청하거나 받는 자(승인된 학교 직원 제외) 또는 조직의 신원을 식별하는 일지나 기록. 일지나 기록은 법적인 부모 또는 보호자, 적격한 학생, 피부양 성인 학생, 성인 학생 또는 기록 관리인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2. 아동 건강 발달 장애 예방 프로그램 확인 또는 면제를 포함한 건강 정보
3. 필수 검사, 사례 연구, 승인 및 입원이나 퇴원 자격을 확립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포함한 특수 교육 프로그램 참여
4. 어학연수 기록
5. 진행 메모 및/또는 통지
6. 인명록 정보 또는 관련 규정에의 접근에 대한 학부모의 제한.
7. 이의 제기된 기록 및 징계 조치에 대한 학부모 또는 성인 학생의 반론
8.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 참여에의 학부모의 승인이나 금지
9. 최근 3년 이내 시행한 표준화 시험 결과

필수 임시 학생 기록 또는 그 사본은 학생이 등록했거나 등록하려는 캘리포니아의 공립학교의 요청 시 Charter School에서 전달해야 합니다. 다른 주 또는 사립학교로 전학할 경우, 필수 임시 학생 기록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Charter School이 필수 임시 학생 기록 원본을 전달할 경우, 이 정책에 따라 파기될 때까지 Charter School에서 반드시 사본을 유지해야 합니다. Charter School이 사본을 전달할 경우, 원본은 이 정책에 따라 폐기될 때까지 Charter School에서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허용된 학생 기록"

이는 유지 관리될 수 있으며, 유용성이 중단되거나 학생이 학교를 졸업 또는 자퇴하고 6개월 후에 파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1. 객관적인 상담사 및/또는 교사 평가
2. 3년이 초과된 표준화된 테스트 결과
3. 일상 규율 자료
4. 관련 행동 패턴에 대한 인증된 보고서
5. 모든 징계 통지
6. 5 CCR § 400에서 다루지 않는 출석 기록

허용된 학생 기록은 학생이 등록하는 공립 또는 사립 학교의 요청에 따라 전달될 수 있습니다. Charter School이 허가된 원본 학생 기록을 전달할 경우, 이 정책에 따라 폐기될 때까지 Charter School에서 반드시 사본을 유지해야 합니다. Charter School이 사본을 전달할 경우, 원본은 이 정책에 따라 폐기될 때까지 Charter School에서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표현 정책

Bright Star Public Schools("Bright Star" 또는 "Charter School") 위원회는 학생들이 공식 출판물에서의 표현의 권리 및/또는 단추, 배지 및 기타 휘장의 착용을 포함해 연설, 글, 인쇄된 자료를 통해 논쟁의 여지가 있든 없든 아이디어와 의견을 표현하고 입장을 취하며 대의를 지지할 권리를 존중합니다.

정의

외설

(1) 현재의 지역 사회 표준을 적용하는 평범한 사람이 작품이 전체적으로 호색적인 관심에 호소한다고 여기고, (2) 작품이 명백하게 공격적이며, (3) 작품에 진지한 문학적, 예술적, 정치적 또는 과학적 가치가 부족할 시. 그 예시로는 음란물이나 성적으로 노골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비방
공직자(Charter School 직원 포함)에 대해 고의로 또는 민간 직원에 대해 실수로, 타인에게 부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진술을 잘못되게 특징짓는 명예훼손(서면 명예훼손) 및 중상(구두 명예훼손).

차별적 자료
인물/집단의 정신적이거나 신체적 장애에 기반된 특성, 성(임신 및 관련 상태, 부모님의 상태 포함), 성적 지향, 성별, 성적 정체성, 성별 표현, 이민 상태, 국적(국가적 출신, 출신국 및 시민권 포함), 인종 또는 민족성(혈통, 피부색, 민족 집단 동일시, 민족적 배경, 땋은 머리, 곱슬머리, 꼬임머리 등의 머리카락 구조와 보호적인 헤어스타일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역사적인 인종 관련 특성, 종교(불신론 및 무신론 포함), 종교 소속, 건강 상태, 유전적 정보, 결혼 상태, 연령, 또는 어떤 인물/집단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기분이 나쁘게 하거나 도발할 목적이 있는, 이러한 사실적 또는 인지된 특정을 하나 이상 지니고 있는 사람이나 집단과의 연관성 또는 관련 주나 연방법, 현지 법령하에 보호되는 일체의 기타 이유로 인해 어떤 사람이나 집단을 폄훼하는 자료.

희롱(성희롱 포함), 협박 및/또는 따돌림
이는 서면 또는 전자적 행위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을 포함하여, 심각하거나 만연한 물리적 또는 언어적 행동이나 행위로 정의됩니다. 따돌림에는 성희롱, 혐오 폭력을 구성하거나 위협적인 및/또는 적대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학생 한 명 또는 학생 집단이 한 명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음과 같은 하나 이상의 영향을 실제로 미치거나 미친다고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행동이 포함됩니다. (1) 합리적인 학생 또는 학생들을 해당 학생 또는 해당 학생들의 신체나 재산에 해가 미칠까봐 두려워하게 하는 행위, (2) 합리적인 학생이 자신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실질적인 해로운 영향을 겪도록 초래함, (3) 합리적인 학생이 자신의 학업적 성과에 실질적인 방해를 겪도록 초래함, (4) 합리적인 학생이 Charter School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활동 또는 특권에 참여하거나 혜택을 받는 능력에 실질적인 방해를 겪도록 초래함.

"전투적 단어"
(1) 평범한 사람이 싸우거나 (2) 명백하고 현존하는 폭력의 위험, 적법한 학교 규정을 위반하는 불법 행동 또는 학교의 실질적인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단어들.

“상스러움 및/또는 모독적 발언”
경고 후에도 학생이 계속해서 욕설을 사용.

“개인 정보 침해”
허가 없이 기밀 또는 사적인 자료를 공개 또는 배포.

캠퍼스 내 표현

게시판의 사용, 인쇄물 또는 청원서 배포, 단추, 배지 및 기타 휘장의 착용, 출판물 또는 기타 표현 수단을 불문하고 공식 출판물에서의 표현권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학생의 표현의 자유는 학교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거나 학교 시설 사용을 통해 지원을 받습니다. Charter School 웹사이트 및 온라인 미디어상에서의 학생 표현은 일반적으로 정책 내에서의 인쇄 미디어와 동일한 보호를 받습니다.

학생의 표현의 자유는 질서 있는 학교 환경을 유지하고 학교 지역 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권리, 건강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주 및 연방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으로 제한됩니다.

보호되지 않는 표현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외설, 비방, 차별적 소재, 괴롭힘(성희롱 포함), 위협 및/또는 따돌림, 전투적 단어, 상스러움 및/또는 모독적 발언, 또는 위에 정의된 사생활 침해. 또한 학교 부지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르거나 Charter School의 질서 있는 운영을 상당히 교란할 수 있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유발하는 자료도 금지됩니다.

회람, 비공식 신문 및 기타 인쇄물의 배포

자유로운 연구와 아이디어 교환은 민주주의 교육의 필수적인 일부입니다.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특정 제한의 대상이 되는 회람, 전단지, 신문, 그림 또는 기타 인쇄물을 배포하고 청원서를 돌릴 수 있습니다.

1. 배포될 전단지, 그림 및 기타 인쇄물은 배포 전 최소 1수업일 전에 Charter School 교장 또는 피지명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Charter School 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제출된 자료를 합리적인 시간 내에 검토하고, 승인된 자료가 이 정책에 의해 설정된 시간과 방식에 따라 배포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Charter School 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배포가 승인되거나 거부될 경우(그리고 거부될 경우, 배포가 이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이유) 학생(들)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2. 무료 또는 유료 배포는 학교 프로그램에 실질적인 지장이 없다면(Charter School 교장의 결정에 따라) 방과 전, 방과 후 및/또는 점심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배포는 수업 시간 동안 발생해서는 안 되며 학교 내 또는 학교 입구의 정상적인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장소에서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3. 배포 방식은 학생들이 인쇄물을 받거나 청원서에 서명하도록 유도하는 데 강압이 사용되지 않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4. 서명 권유는 절대로 수업이나 학교 사무실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며, 학교 프로그램에 실질적으로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Charter School 교장 또는 피지명인이 결정).

Charter School 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이러한 절차의 개발에 있어 학생회 대표와 협력해야 합니다. 학생의 책임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공식 학교 출판물

공식 학교 출판물의 학생 편집자는 이 정책의 제한 대상이 되는 출판물의 뉴스, 사설 및 특집 내용을 배정하고 편집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 출판물의 저널리즘 직원 고문(들)은 학생 직원의 생산을 감독하고, 영어 및 저널리즘의 전문적인 기준을 유지하며, 이 정책의 조항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1] 저널리즘 직원 고문(들)은 출판을 위해 제출된 자료의 문학적 가치, 뉴스적 가치 및 적절함을 학생 편집자들이 판단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 정책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식 학교 출판물을 위해 준비된 자료를 사전에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Bright Star 교직원은 이 정책에 따라 학생의 표현이 제한되기 전에 부당한 지연 없이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널리즘 직원 고문(들)이 출판을 위해 제출된 자료가 이 정책을 위반한다고 간주하는 경우, 고문(들)은 지체하지 않고 학생에게 통지하여 제출된 자료가 출판되지 않을 수 있는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할 것입니다. 학생은 자료를 수정하거나 저널리즘 직원 고문의 결정에 대해 Charter School 교장에게 항소할 기회를 받아야 합니다.

단추, 배지 및 기타 상징적 표현의 휘장

[1] "학교 공식 출판물"이란 언론, 신문, 연감 또는 작문 수업에서 학생들이 제작하여 학생 단체에 무료 또는 유료로 배포하는 자료를 말합니다.

학생은 단추, 배지, 완장 및 기타 휘장을 표현의 한 형태로 착용할 수 있으며 해당 물품들은 이 정책에 열거된 금지사항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게시판 사용

요청 시와 이용 가능 시, 학생이 사용하기 편리한 캠퍼스 위치에 학생 자료를 게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이 학생들에게 제공됩니다. 가능한 경우, 그러한 게시판의 위치와 수량은 학생회 대표와 Charter School 행정실의 상호 합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게시된 자료는 특히 자료 배포 및 금지된 연설과 관련하여 반드시 이 정책의 다른 항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학생은 비교과 과정 학생 주도 단체의 회의에 관한 자료를 게시하거나 배포할 수 없습니다.

조직된 시위

학생들은 이 정책 및 관련 법률의 조항에 따라 합법적으로 조직된 캠퍼스 내 시위를 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학생들이 학교 구내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르거나 적법한 학교 규정을 위반할 수 있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조성하도록 선동하는 시위 또는 학교의 질서 있는 운영을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시위는 금지됩니다.

개별 학생은 Charter School의 활동 참여 승인이 없는 한, 언제든 Charter School의 이름으로 또는 공식 학교 집단으로 시위할 수 없습니다.

Charter School이 인정하고 지정된 Charter School 직원이 감독하지 않는 한, 학생은 의무적인 학교 출석 시간 동안 발생하는 조직적인 시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조직적인 시위에 참석하기 위해 학교에 결석하는 것은 결석 허가되지 않습니다. Charter School은 학생에 대한 결과를 결정할 때 학교의 출석 정책을 따를 것이며, 여기에는 방과후 지도, 시험을 놓침으로 인한 낮은 점수 또는 무단결석 편지를 받는 것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Charter School은 Charter School 정책이 위반될 경우 학생에 대한 처벌을 결정할 때 정학 및 퇴학 정책을 따릅니다.

학생 연설

학생이 졸업이나 학교 집회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Charter School 후원 행사에서 연설하라는 선택을 받을 경우, Charter School은 사전에 준비된 연설을 검토하여 보호되지 않는 연설이 포함되지 않도록 할 권리가 있습니다. 보호되지 않는 연설이 포함된 경우, 학생은 연설을 수정하거나 수정된 연설을 할 기회를 얻습니다. 수정 또는 삭제하지 않는다면, 학생은 Charter School 후원 행사에서 연설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캠퍼스 외 표현

캠퍼스 외 인터넷 웹사이트에서의 학생 표현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캠퍼스 외 학생 표현은, 일반적으로 헌법에 의해 보호되지만 연설과 학교 사이에 상당한 연결성이 존재할 시 징계 대상이 됩니다.

관련 고려 사항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해당 표현으로 인해 Charter School(교직원, 학생, 자원봉사자 및/또는 자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 및 가능성,
2. 해당 표현이 Charter School에 도달하고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지의 여부,
3. 해당 표현의 내용 및/또는 맥락과 Charter School 간의 관계. Charter School이 학교 폭력의 신뢰할 수 있고 식별 가능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합리적으로 결론을 내릴 시, 표현과 Charter School 사이에는 항상 충분한 연결성이 존재합니다.

Charter School 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해당 표현이 교육 프로그램에 미쳤거나 또는 미칠 수 있다고 예상되는 영향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수업에 실질적인 지장을 주거나 타인의 권리를 상당히 혼란케 하거나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캠퍼스 외 표현은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표현의 경우, 캠퍼스 외 표현은 징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a. 특정 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지하거나 심각한 따돌림 또는 괴롭힘,
b. 교사 또는 다른 학생을 겨냥한 위협,
c. 수업, 과제 작성, 컴퓨터 사용 또는 기타 온라인 학교 활동 참여에 관한 규칙을 따르지 않음, 또는
d. 학교 보안 장치의 위반.

집행

1. 학생들이 이 정책이 적용되는 영역에서 행동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시, 학생들은 각 특정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고지를 받습니다. Charter School 교장은 학생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분쟁을 해결할 때 적법한 절차를 따르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2. 이 정책은 Charter School 담당 위원회가 Charter School 캠퍼스에서 학생들의 구두 의사소통과 관련된 유효한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막지 않습니다.
3. Charter School 교직원은 이 정책하에 승인된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오직 보호하기 위해 행동하거나, 이 정책, 미국 수정 헌법 제1조 또는 캘리포니아 헌법 제1조 2항하에 승인된 행위를 침해하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 정직, 징계, 재배치, 전근 또는 기타 보복을 당하지 않습니다.
4. Charter School은 캠퍼스 외부에서 참여할 때 미국 수정 헌법 제1조 또는 캘리포니아 헌법 제1조의 2항에 의해 정부의 제한으로부터 보호되는 연설 또는 기타 의사소통을 근거로 한 행위만을 근거로 학생에게 징계 제재를 가하는 규칙을 만들거나 집행하지 않습니다.

고발 및 항소

다음 절차는 학생의 연설 및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일반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데 사용됩니다.

1. 학생과 교직원은 먼저 내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 학생과 교직원이 분쟁을 해결할 수 없을 경우, 학생 및/또는 교직원은 해당 문제를 Charter School 교장 또는 피지명인에게 제출할 수 있고, 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양측의 의견을 듣고 가능한 한 빨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3. 모든 학생 및 교직원은 Charter School 교장 또는 피지명인의 결정에 대해 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항소 접수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결정을 내립니다. 학생의 항소는 불만족스러운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반드시 수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가 위헌적으로 제한 및/또는 차별에 기반하여 제한되었다고 느끼는 학생은 Charter School의 공통 고발 처리 정책 및 절차에 따라 Charter School에 고발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직원/학생 상호작용 정책

Bright Star Schools("Bright Star" 또는 "Charter School")는 가능한 가장 안전하고 학습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생 및 직원 행동에 적용되는 모든 규칙과 규정을 만들고 집행할 책임이 있음을 인지합니다.

체벌

체벌은 어느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체벌에는 고의로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고의로 신체적 고통을 유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 정책의 목적에서, 체벌에는 직원, 학생, 교직원 또는 기타 인물을 보호하거나 학교 자산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하고 합리적인 직원의 무력 사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설명의 목적에서, 다음 예시는 학교 직원의 지시 및 안내를 위해 제공됩니다.

허용된 행위의 예시(체벌 아님)

1. 운동팀이 팀원을 강화하거나 컨디션을 조절하거나 조정, 민첩성 또는 신체적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안된 격렬한 신체 훈련 활동에 참여하도록 요구함,
2. 단체 체조, 팀 훈련 또는 기타 체육 교육이나 자발적인 레크리에이션 활동 참여.

금지된 행위의 예시(체벌)

1. 통제 수단으로 학생을 때리거나, 밀치거나, 밀거나 또는 물리적으로 제지함,
2. 제어하기 어려운 학생에게 팔굽혀펴기, 달리기를 시키거나, 처벌의 한 형태로 고통이나 불편함을 유발하는 기타 신체적 행동을 시킴,
3. 막대기로 때리기, 찰싹 때리기, 움켜잡기, 꼬집기, 발로 차기 또는 기타 신체적 고통을 유발함.

경계선의 정의

이 정책의 목적에서, "경계선"이라는 용어는 학생과 상호 작용하는 동안 허용될 수 있는 교직원의 직업적 행동으로 정의됩니다. 학생/교사 또는 학생/교육자 관계의 경계를 넘는 무단침입은 권력 남용 및 공공 신뢰의 배신으로 간주됩니다.

허용 불가한 행동 및 허용 가능한 행동

이 정책은 모든 학교 교직원이 교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기준의 행동과 전문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행동할 것을 안내하고 학생과 교직원 간의 경계선을 구체화하기 위한 의도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정책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시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학부모, 학생, 동료 또는 학교 리더가 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을 피하는 것이 각 교직원의 의무입니다.

어떤 활동은 교직원의 관점에서는 순수해 보일 수 있지만 학생이나 학부모의 관점에서는 희롱이나 성적인 암시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허용 불가한 행동 및 허용 가능한 행동 목록의 목적은 교직원과 학생 간의 순수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억제하기 위함이 아닌, 부적절하거나 성적 비행이나 "그루밍"으로 이어질 수 있거나 그렇게 인식될 수 있는 관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루밍이란 성범죄자가 (직원 및/또는 가족과 미성년자의) 신뢰를 얻고 다양한 형태의 접촉 및 기타 친밀한 상호작용에 둔감해지게 만들어, 신체적 및/또는 정서적 통제권을 얻기 위한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로 정의됩니다.

직원은 이 정책에 설명된 경계선을 넘지 않도록 반드시 자신의 책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학생이 자신을 만지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요청을 존중해야 합니다. 위반 시 교사나 교직원은 해고를 포함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정된 경계선의 언어적 표현이나 의도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일체의 필요한 징계적 목적과 무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모든 직원이 이 정책을 철저히 연구하고 그 정신과 의도를 자신의 일상 활동에 적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허용 불가한 행동

이 목록(및 모든 후속 목록)은 모든 행동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며, 이 정책에서 다루려는 행동 유형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a. 개인적이고 친밀한 성격의, 학생 개인에 대한 선물 제공
b. 모든 종류의 입맞춤
c. 마사지[공개된 공공 장소에서 마사지 치료사 또는 기타 공인 전문가가 제공하지 않는 한, 운동 경기에서 금지됩니다. 코치는 마사지 또는 문지름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IEP 또는 504 플랜하에 지시된 경우에만 특수 교육에서 허용됩니다.]
d. 사적인 상황에서 학생과 모든 유형의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
e. 학교 밖에서 학생과 의도적으로 단둘이 있는 경우
f. 성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하거나 발언하는 데 참여
g. 성적인 농담 또는 성적인 이중 의미를 포함하는 농담/발언
h. 교육자에게 요구되는 표준적인 보살핌과 관심을 넘어 학생과의 정서적 관계(친밀한 애착 관계가 포함될 수 있음) 추구
i. 성적 지향적인 이야기를 듣거나 말함
j. 학생의 지원과 이해를 얻기 위해 부적절한 개인적 문제 또는 사적인 사안에 대해 학생과 논의
k. 합리적인 사람이 부적절한 행동을 의심할 수 있도록 학생과의 관계가 생김
l. 학부모의 허가 없이 학생들에게 학교 또는 학교 활동에서 오가는 차량을 제공
m. 문이 닫힌 학교에서 학생과 함께 한 공간에 단둘이 있는 것
n. 다른 교육자, 학부모 또는 기타 책임 있는 성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전 계획되고 사전에 전달된 교육 활동에 대해 부모의 허가 서명 없이 학생들이 교직원의 집에 있는 것을 허용
o. 누군가의 신체적 특성이나 생리적 발달에 대한 말. 여기에는 "좋아 보인다!" 또는 “저 [신체 부위] 좀 봐.”와 같은 언급이 포함됩니다.
p. 특정 학생에 대한 과도한 관심
q. 콘텐츠가 학교 활동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에서 이메일, 문자 메시지, 인스턴트 메시지, 페이스북(Facebook) 메시지, 마이스페이스(MySpace) 응답, 트윗 또는 편지를 학생에게 전송하거나 학생들과 전자상에서 채팅
r. 페이스북(Facebook), 트위터(Twitter), 마이스페이스(MySpace) 또는 기타 일체의 소셜 미디어 사이트에서 학생과 "친구" 되기
s. 공식적인 레슬링 프로그램의 맥락을 제외하고 학생 또는 다른 직원과 레슬링.
t. 간지럽히기 또는 목말 태우기/업기
u. 학생과 함께 또는 학생에게 모독적 발언 사용
v. 교직원의 고용 문제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비교육적 또는 학교와 무관한 문제에 학생 참여시키기

허용 가능한 행동

a. 어깨나 등을 두드리기
b. 악수
c. "하이파이브” 및 손바닥 마주치기
d. 적절한 연령일 때, 체온 확인, 눈물 닦아주기, 얼굴에서 머리카락 제거, 또는 기타 유사한 유형의 접촉을 위해 얼굴 만지기
e. 짧은 시간 동안만 아동을 위로할 목적으로 과도기 유치원(TK)부터 2학년까지의 학생들을 무릎 위에 올려놓는 것
f. 어린아이 또는 상당한 장애가 있는 어린이와 함께 걸을 때 손 잡기
g. 다른 직원이 보고 있을 때 어리거나 장애가 있는 어린이의 배변 활동 돕기

h. IEP 또는 504 계획하에 필요한 접촉
i. 자신, 타인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폭력적인 자를 합리적으로 속박
j. 캠퍼스 안팎에서 후원하는 일체의 방과후 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서면 허가 및 포기 양식을 포함하여, 현장학습이나 대회 등의 활동 목적으로 학교 부지에서 학생을 학교 밖으로 데려가기 위해 교장으로부터 공식적인 사전 서면 승인 획득
k. 이메일, 문자 메시지, 전화 통화 및 학생과의 기타 통신은 허용될 경우 반드시 직업적이어야 하며 학교 활동 또는 수업과 관련되어야 합니다(통신은 투명한 [사적이지 않은] 학교 기반 기술 및 장비를 통해 시작되어야 합니다)
l. 학생과 단둘이 있을 때 문을 활짝 열어두기
m. 귀하와 학생 사이에 합리적이고 적절한 공간 유지
n. 다리나 엉덩이 만지기, 정면 포옹, 입맞춤 또는 어루만지기를 포함하여, 학생이 귀하의 개인적인 경계선을 넘을 경우, 학생을 멈추게 하고 교정시킴
o. 품행 변화 또는 비특징적 행동과 같이 학생에 대해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때 그에 대해 행정실에 계속해서 고지
p. 학생과의 방과후 토론을 직업적이고 간략하게 유지
q. 경계선과 관련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경우, 즉시 고위 직원이나 행정실에 조언 구하기
r.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는 경계선 상황에 대해 귀하의 상사를 토론에 참여시킴(동료에게서 관찰되는 그루밍 또는 기타 위험 신호, 혼란을 초래하는 서면 자료, 또는 성인에 대한 학생의 집착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s. 최선의 판단으로, 추후 더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을 사건에 대해 자세히 기록
t. 학생 및/또는 동료의 허용 불가한 행동을 멈추게 할 책임을 인식
u. 정규 수업 시간 이후에 학생과 반드시 단둘이 있어야 하는 경우, 다른 교직원이 참석하거나 가까운 감독 거리 내에 있도록 요청
v. 학생과 접촉하는 모든 순간 동안 직업적인 행동을 우선시함
w. 이러한 조항에 위배되는 귀하의 일체의 행동이, 귀하의 직업과 경력을 희생할 가치가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이 정책은 다음을 막지 않습니다. 1) 물리적 경로를 따라 학생을 안내할 목적으로 학생에게 접촉, 2) 넘어진 후 학생을 도움, 또는 3) 구조 작업에 참여하거나 심폐소생술(CPR) 또는 기타 응급 처치의 적용. 또한 정당방위나 타인의 방어 시 합리적인 무력을 사용하는 것과 접촉을 금지하지도 않습니다. 폭력적이거나 부적절한 행동에 가담하려는 아동을 제지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자신, 타인 또는 해당 아동을 보호하거나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무력만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과도한 무력은 금지됩니다.

위반 보고

일체의 교직원, 학부모 또는 학생이 교직원(또는 자원봉사자, 손님, 공급업자)이 이 정책에 지정된 경계선을 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위반 행위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그 의심을 즉시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의심이란 결정적이지 않거나 미미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인식되는 무언가를 의미합니다. 합리적인 사람이 해당 행위가 발생했다고 믿게 하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즉각적인 보고는 학생, 의심되는 교직원, 일체의 증인 및 학교 전체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직원은 또한 경계선을 넘는 학생 행동, 또는 학생이 성적 학대의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일체의 상황에 대한 일체의 인식 또는 우려사항을 행정실에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조사

인사부는 상황에 따라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지원 직원 또는 외부 지원을 활용하여, 직원의 성적 비행 또는 부적절한 일체의 행동 혐의에 대해 즉시 조사하고 조사 내용을 문서화할 것입니다. 이 사실 조사 과정 전반에 걸쳐, 조사 관리자 및 조사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자는,

잠재적인 증인을 포함하여 영향을 받는 일체의 학생(들) 및/또는 교직원(들)의 개인 정보를 최대한 보호해야 합니다. 조사 관리자는 일체의 조사의 존재 및 상태를 경영진 리더십 팀(Executive Leadership Team)에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해당 조사가 완료되면, 인사부는 내린 결론을 경영진 리더십 팀에 보고해야 합니다. 조사 관리자는 일체의 조사를 수행하기 전, 조사하는 동안, 조사한 후에 적절한 경우 법률 고문과 상의해야 합니다.

결과

이 정책을 위반한 직원은 적절한 징계 조치 대상이 되며, 적절한 경우 잠재적인 법적 조치를 위해 당국에 보고됩니다.

차별 금지 성명

Bright Star Schools(“Bright Star” 또는 “Charter School”)는 캘리포니아 형법의 증오 범죄 정의에 포함되어 있는 실제 또는 인지된 장애, 성별, 성 정체성, 성별 표현, 국적, 인종 또는 민족성, 시민권, 이민 상태, 종교, 종교적 소속, 성적 지향, 임신 상태 또는 기타 특징을 근거로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Bright Star는 1973년 재활법 504항, 1990년 미국 장애인법("ADA") II편, 2004년 장애인 교육 개선법(“IDEA”)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장애 학생과 관련된 연방법의 모든 조항을 준수합니다.

Bright Star는 학업 성적, 장애, 방치 또는 비행, 영어 능력, 노숙 또는 위탁/이동 청소년, 경제적 불이익, 국적, 인종, 민족 또는 성적 취향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이유로 학생들이 Charter School에 등록하거나 등록하려 시도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Charter School은 현재 Charter School에 재학중인 학생의 Bright Star의 헌장 및 관련 정책에 따른 퇴학 및 정학 또는 비자발적 퇴학의 경우를 제외하고 앞서 언급한 이유에 근거하여 제적 또는 다른 학교로 전학하도록 권장하지 않습니다.

Bright Star는 학생 등록 전에 학생 기록을 요청하거나 요구하지 않습니다.

Bright Star는 1972년 교육 수정안 IX편(성별), 1964 년 민권법 IV, VI 및 VII편(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 국가), 1975년 연령 차별법, IDEA, 그리고 ADA의 504항 및 II편(정신 또는 신체 장애)에 따라 불법적인 괴롭힘이 없는 교육 분위기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Bright Star는 또한 사이버 성적 괴롭힘을 포함한 성희롱, 그리고 임신, 출산 또는 관련 건강 상태, 인종이나 민족성, 종교, 종교적 소속, 신조, 피부색, 시민권, 이민 상태, 성별, 성 정체성, 성별 표현, 출신 국가 또는 혈통,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의학적 상태, 결혼 여부, 연령, 성적 취향 또는 기타 연방, 주, 지역 법률,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해 보호되는 근거에 따른 괴롭힘을 금지합니다.

Bright Star는 직원, 독립 계약자 또는 Charter School과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기타 인원, 학생, 자원봉사자, 또는 직위나 성별에 관계없는 지역 사회 구성원에 의한 차별, 위협이나 괴롭힘(사이버 성적 괴롭힘 포함)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유형의 괴롭힘을 묵인하거나 용납하지 않습니다. Bright Star는 괴롭힘에 대한 고발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며 정당한 경우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영어 능력 부족이 Bright Star의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입학 또는 참여하는 데 장벽이 되지는 않습니다. Bright Star는 고발을 제기하거나, 고발 조사에 참여 또는 참여를 거부하는 모든 자에 대한 보복을 금지합니다.

직원과 관련된 Charter School의 차별 금지 선언문은 Bright Star의 직원 핸드북에 있습니다.

노숙 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 정책

Bright Star Schools("Charter School" 또는 "Charter School") 운영 위원회는 노숙 아동과 청소년이 교육 프로그램에 동등하게 접근하고, 동일한 도전적 주 정부 학업 기준을 충족할 기회를 보유하며, 무료로 적절한 공교육을 제공받고, 노숙자로서의 상태를 근거로 낙인찍히거나 분리되지 않도록, 그리고 노숙 상태에 근거한 차별로부터 노숙 학생을 보호하는 보호 장치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노숙 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에 대한 정의

"*노숙 아동 및 청소년*"이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고정적이고 규칙적이며 적절한 야간 거주지가 부족한 개인을 의미하고, 다음과 같은 아동 및 청소년을 포함합니다(42 U.S.C. § 11434a).

1. 주택의 상실, 경제적 어려움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타인의 주택을 공동으로 사용 중, 적절한 대체 숙박시설이 부족하여 모텔, 호텔, 트레일러 파크 또는 캠핑장에 거주 중, 비상 또는 임시 보호소에 거주 중, 또는 병원에 버려진 상태임,
2. 인간을 위한 정규 수면용 시설로 설계되지 않았거나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공공 또는 사적 장소인 주요 야간 거주지에 있음,
3. 자동차, 공원, 공공장소, 버려진 건물, 표준 이하의 주택, 버스 또는 기차역, 또는 이와 유사한 환경에서 거주 중, 및/또는
4. 이주 아동 및 동반자가 없는 청소년(부모 또는 보호자의 물리적 보호를 받지 않는 청소년)은 상기 "노숙"의 정의를 충족할 경우 노숙 청소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노숙 상태는 학부모 또는 보호자와 협력하여 결정됩니다. 동반자가 없는 청소년의 경우, 상태는 Charter School 연락 담당자가 결정합니다.

Charter School 연락 담당자

교장은 노숙 학생을 위한 Charter School 연락 담당자(42 U.S.C. § 11432(g)(1)(J)(ii))로 다음 직원을 지정합니다.

Marni Parsons, VP of Student and Family Services(학생 및 가족 서비스 교감)
물리적 주소: 600 S. La Fayette Park Pl, Los Angeles, CA 90057
우편 주소: 5101 Santa Monica Blvd Ste 8, PMB 93, Los Angeles, CA 90029
mparsons@brightstarschools.org
323-954-9957 내선번호 1004

Charter School 연락 담당자는 Charter School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42 U.S.C. § 11432(g)(6)).

1. 노숙 학생은 Charter School 직원, 다른 기관 및 대리자의 봉사 및 조정 활동, 그리고 Charter School에서 관리하는 연간 거주지 설문지를 통해 식별됩니다.
2. 노숙 학생은 Charter School에 등록하고 Charter School에서 성공할 수 있는 완전하고 평등한 기회를 갖습니다.

3. 노숙 학생 및 가족은 헤드스타트법 하의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얼리 헤드스타트 프로그램 포함), 장애인 교육법(“IDEA”) C부 하의 조기 개입 서비스, 존재할 경우, Charter School에서 관리하는 기타 모든 유아원 프로그램, 의료 서비스, 치과 서비스, 정신 건강 서비스 및 약물 남용 서비스, 주택 서비스 및 기타 적절한 서비스로의 위탁을 비롯하여 당사자에게 적격한 교육 서비스를 받습니다.
4. 학부모/보호자에게는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교육 및 관련 기회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 자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5. 노숙 아동의 교육적 권리에 대한 공공 통지는 학교, 보호시설, 공공 도서관, 급식소 등 노숙 청소년 및 동반자가 없는 청소년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자주 모이는 장소에, 노숙 청소년 및 동반자가 없는 청소년의 부모 및 보호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과 형태로 전파됩니다.
6. 등록/입학 관련 분쟁은 법률, Charter School 헌장 및 위원회 정책에 따라 조정됩니다.
7. 학부모/보호자 및 동반자가 없는 청소년은 해당될 경우 모든 교통 서비스에 대해 완전히 정보를 제공받습니다.
8. 서비스를 제공하는 Charter School 직원은 전문성 개발 및 기타 지원을 받습니다.
9. Charter School 연락 담당자는 노숙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주 코디네이터, 지역 사회 및 학교 직원과 협업합니다.
10. 동반자가 없는 청소년은 학교에 등록되며, 주 정부가 다른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해 구축한 것과 동일한 난이도의 주 정부 학업 기준을 충족할 기회를 보유하며, 독립적인 학생으로서의 지위에 대한 정보를 들으며, 청소년들은 연방 학자금 지원을 위한 무료 신청서(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의 목적으로 그러한 지위의 확인을 받기 위해 Charter School 연락 담당자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알립니다.

캘리포니아 교육부(“CDE”)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 내 노숙자 교육 연락 담당자의 연락처 정보 목록을 게시합니다. https://www.cde.ca.gov/sp/hs/

등록

Charter School은 Charter School이 출신 학교인 학생을 즉시 입학/등록시켜야 합니다. "출신 학교"는 해당 아동이나 청소년이 영구적으로 거주할 때 다녔던 학교 또는 해당 아동이나 청소년이 마지막으로 등록한 학교를 의미합니다.

또한 Charter School은 해당 청소년이 다른 상황이었더라면 Charter School에 다닐 자격이 있고 Charter School의 역량하에 있으며 Charter School 차터 및 위원회 정책에 명시된 절차에 응할 경우, Charter School에 등록하고자 하는 노숙 청소년을 즉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된 노숙 청소년은 수업에 참석하고 과외 활동을 포함한 학교 활동에 완전히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학생이 일반적으로 등록에 필요한 기록(예: 이전 학업 기록, 예방 접종 기록, 기타 필수 건강 기록, 거주 증명서)이 없거나 일체의 노숙 기간 동안 지원 또는 등록 마감일을 놓친 경우에도 청소년은 즉시 등록되어야 합니다. 이전 학교에 즉시 기록을 요청할 것입니다. (42 U.S.C § 11432(g)(3)(C), 교육법 48850(a)(3)(A)항.)

학생이 예방 접종을 받아야 하거나 예방 접종 또는 기타 의료 기록이 없을 경우, 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학부모/보호자를 Charter School 연락 담당자에게 소개해야 합니다. Charter School 연락 담당자는 학부모/보호자가 학생에게 필요한 예방 접종 또는 기록을 받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42 U.S.C. § 11432(g)(3)(C).)

노숙 청소년은 해당 청소년이 노숙 상태인 전체 기간 동안 학생의 출신 학교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학년도 중에 영구 거주지를 얻을 경우, 해당 청소년은 해당 학년도가 끝날 때까지 출신 학교에 남아있는 것이 허용됩니다.

등록 분쟁

입학/등록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학생은 모든 가능한 항소를 포함하여 분쟁의 최종 해결이 있을 때까지 즉시 입학됩니다(Charter School의 역량하에, 그리고 Charter School 헌장 및 위원회 정책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학부모/보호자는 결정에 항소할 수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입학/등록 결정에 대한 서면 설명을 제공받습니다. 학부모/보호자는 Charter School 연락 담당자에게도 소개됩니다. Charter School 연락 담당자는 분쟁 통지를 받은 후 위원회가 채택한 분쟁 해결 및 고발 처리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42 U.S.C. § 11432(g)(3)(E).)

거주지 설문지

Charter School은 노숙 아동 및 청소년을 식별할 목적으로 거주지 설문지를 관리합니다. Charter School은 거주지 설문지가 CDE에서 개발한 모범 사례를 기반으로 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Charter School은 학생의 모든 학부모/보호자와 Charter School의 모든 비동반 청소년에게 매년 거주지 설문지를 제공합니다. 거주지 설문지에는 학생이 노숙 아동이나 청소년 또는 비동반 청소년으로서 보유하는 권리와 보호에 대한 설명이 포함됩니다. 거주지 설문지는 종이 형식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거주지 설문지는 Charter School에 등록한 학생의 15% 이상이 사용하는, 영어 이외의 기본 언어로 제공되어야 하며 학생의 학부모/보호자 또는 비동반 청소년의 요청에 따라 다른 언어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Charter School은 작성 완료된 거주지 설문지를 수집하고 매년 CDE에 등록된 노숙 아동, 청소년 및 비동반 청소년의 수를 보고해야 합니다. (교육법 48851항.)

동등한 서비스

각 노숙 아동이나 청소년은 (42 U.S.C § 11432(g)(4))와 같이 Charter School의 다른 학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동등한 서비스를 즉시 제공받아야 합니다.

- 교통 서비스
- 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영어 능력이 제한된 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 해당 아동이나 청소년이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교육 서비스
- Charter School 영양 프로그램

교통편

Charter School이 모든 Charter School 학생들에게 교통편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Charter School은 위에 언급된 바와 같이 Charter School에 다니는 각 노숙 아동 또는 청소년에게 동등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42 U.S.C. § 11432(g)(4).)

Charter School이 모든 Charter School 학생들에게 달리 교통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Charter School은 Charter School이 학생의 출신 학교일 경우 학부모나 보호자(또는 Charter School 연락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Charter School에 등교하는 노숙 학생에게 교통편이 제공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42 U.S.C. § 11432(g)(1)(J).) Charter School에서 제공하는 교통편은 학생의 상황에 적당하고 적절할 것이나, Charter School은 모든 청소년을 위한 한 가지 교통 수단만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과외 활동 자격

노숙 아동 또는 청소년은 학교 대항 스포츠 또는 기타 과외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모든 거주 요건을 즉시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방과후 프로그램 비용의 면제

Charter School은 Charter School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교육 및 안전("ASES") 프로그램과 관련된 일체의 가족 부담 비용을 노숙 청소년인 모든 학생에게 부과하지 않습니다.

전문성 개발

Charter School 연락 담당자를 포함하여, Charter School의 모든 행정관, 교사 및 직원은 노숙 아동 및 청소년을 다룰 때 필요한 식별, 서비스 및 감수성에 대한 전문성 개발을 제공받을 것입니다. Charter School 연락 담당자는 Charter School이 최소 매년 노숙을 경험하는 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직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는 인증서를 보낼 것입니다. (교육법 48852.5(c)(2)항.)

고등학교 졸업 요건

고등학교 2학년을 마친 후 언제든 Charter School로 편입하는 노숙 학생은, Charter School에서 해당 학생이 고등학교 4학년 말까지 Charter School의 졸업 요건을 합리적으로 완료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교육법 51225.3항("추가 졸업 요건")에 명시된 캘리포니아 최소 졸업 요건을 초과하는 Charter School의 일체의 졸업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노숙 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 또는 4학년에 재학 중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학생이 전학 날짜까지 취득한 학점 수 또는 학생의 학교 등록 기간 중 어느 것이든 면제에 대해 학생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기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기 요건에 따라 면제 자격이 있을 수 있는 학생이 Charter School로 전학한 날로부터 달력일 기준 30일 이내에 Charter School은 학생, 학생의 교육적 권리 보유자, Charter School 연락 담당자에게 면제 가능 여부 및 학생이 면제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Charter School은 Charter School의 추가 졸업 요건이 면제된 학생과 학생의 교육적 권리 보유자에게, 면제된 일체의 요건이 중등 이후 교육 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의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리고,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컬리지를 통해 이용 가능한 편입 기회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Charter School은 Charter School에 계속 재학할 적격한 학생에게 Charter School의 추가 졸업 요건 면제를 수락하거나 학생이 수강할 자격이 있는 수업의 등록 또는 수업의 완료 능력을 거부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Charter School은 면제를 취소하지 않으며 학생이 이전에 면제를 거부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학생이 자격이 있는 경우 언제든, 면제에 대한 적격한 학생의 요청을 승인해야 합니다. Charter School의 추가 졸업 요건에 대한 적격한 학생의 면제는 해당 학생이 Charter School에 등록되어 있는 동안 또는 학생이 더 이상 노숙 아동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게 된 후에 다른 학교로 전학할 경우 계속 적용됩니다.

Charter School은 면제 대상 학생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학생에게 전학을 요구하거나 요청하지 않습니다. 또한 학생, 학생의 부모/보호자 또는 교육적 권리 보유자, 혹은 학생의 사회복지사나 보호감찰관은 Charter School의 추가 졸업 요건 면제를 받기 위해 전학을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Charter School의 추가 졸업 요건이 면제된 학생이 고등학교 4학년이 끝나기 전에 교육법 51225.3항에 명시된 캘리포니아 최소 교과 과정 요건을 완료하고 Charter School에 계속 다닐 자격이 있는 경우, Charter School은 학생이 고등학교 4학년이 끝나기 전에 졸업하도록 요구하거나 요청하지 않습니다.

학생이 고등학교 5학년 말까지 Charter School의 졸업 요건을 합리적으로 완료할 수 있다고

Charter School에서 판단하는 경우, Charter School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1. Charter School의 졸업 요건을 완료하기 위해 5학년 동안 Charter School에 남을 수 있는 학생의 선택권을 학생에게 알립니다.
2. 학생과 학생의 교육 권리 보유자에게, Charter School의 졸업 요건을 완료하기 위해 5학년 동안 학교에 남는 것이 중등 이후 교육 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의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립니다.
3.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컬리지를 통해 이용 가능한 편입 기회에 대한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합니다.
4. 학생이 만 18세 이상인 경우 학생과 합의하여, 또는 학생이 만 18세 미만인 경우 학생에 대한 교육 권리 보유자와 합의하여, Charter School의 졸업 요건을 완료하기 위해 5학년 동안 Charter School에 머물도록 허용합니다.

교과 과정 수용

Charter School은 일체의 공립 학교, 소년법정학교, 미국 이외의 국가에 있는 학교 및/또는 비공립, 비종파 학교 또는 기관에서 노숙 청소년이 만족스럽게 완료한 일체의 교과 과정을 수용합니다.

Charter School은 공립 학교, 소년법정학교, 미국 이외의 국가에 있는 학교 및/또는 비공립, 비종파 학교 또는 기관에 다니는 동안 수강한 과정을 부분적으로 완료한 경우 노숙 학생에게 학점을 제공합니다. 학생이 전체 과정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Charter School은 학생의 교육 권리 보유자와 협의하여 학생이 고등학교 졸업까지의 시간 내에 요건을 합리적으로 완료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학생이 완료한 과정의 일부를 재수강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특정 과정에서 부분 학점이 부여될 때, 노숙 학생은 해당되는 경우 학생이 전체 과정을 계속하고 완료할 수 있도록 동일하거나 동등한 과정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러한 학생들은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교 또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입학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과정을 수강하거나 재수강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통지

Charter School에 등록하고자 하는 모든 노숙 학생의 경우, 등록 시점에 학부모/보호자에게 서면 통지가 제공되며 Charter School에 등록하는 동안 매년 최소 2회 제공됩니다. 통지서에는 반드시 학부모/보호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통지서는 반드시 Charter School 연락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를 포함하여 일반적인 권리를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1) 노숙 아동 및 청소년이 다닐 자격이 있는 학교들의 선택 범위, (2) 노숙자 학생은 노숙자 아동을 위한 별도의 학교에 다닐 필요가 없음, (3) 노숙 아동 및 청소년에게 동등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4) 노숙 아동은 Charter School 직원에 의해 낙인이 찍혀서는 안 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42 U.S.C. § 11432(e)(3)(C).)

연간 정책 검토

Charter School은 노숙 아동 및 청소년 식별 또는 Charter School의 노숙 아동 및 청소년 등록에 장애물이 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매년 검토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해당 정책을 검토하고 수정할 때 교통, 예방 접종, 거주, 출생 증명서, 학교 기록 및 기타 문서, 후견인에 관한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학교에 다니지 않는 노숙 아동 및 청소년의 식별, 등록 및 출석을 확인하는 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학교 웹사이트 게시

Charter School은 다음 정보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필요에 따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 노숙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Charter School 연락 담당자(들)의 이름 및 연락처 정보.
- Charter School 연락 담당자가 연락 담당자의 임무를 완료하는 데 도움을 주는 모든 직원 또는 계약직 직원의 연락처 정보.
- 노숙을 경험하는 자가 이용할 수 있는 교육적 권리 및 자원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위탁 및 이동 청소년 교육 정책

Bright Star Schools("Charter School" 또는 "Charter School") 위원회는 위탁 및 이동 청소년이 가족 상황, 교육 프로그램 중단, 정서적, 사회적 문제 및 기타 건강상의 필요로 인해 학업상의 성공을 달성하는 데 상당한 장벽에 직면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학생들이 주립 및 Charter School의 학업 표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Charter School은 Charter School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접근을 제공하고, 법률에서 요구하고 Charter School의 지역 통제 및 책임 계획("LCAP")에서 위탁 청소년의 학업 성취도 향상에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전략을 시행해야 합니다.

정의

위탁 청소년

이는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1. 캘리포니아 복지 및 기관법("WIC") 309항에 따라 제출된 청원의 대상인 아동(아동이 소년 법원에 의해 아동의 집에서 퇴출되었는지의 여부).
2. WIC 602항에 따라 제출된 청원의 대상인 아동이 소년 법원에 의해 아동의 집에서 퇴출되어 위탁 보호 중임.
3.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WIC 450항에 설명된 대로 소년 법원의 과도기 관할하에 있는 비미성년자:
    a. 해당 비미성년자는 소년 법원의 위탁 양육 배치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만 18세가 됨.
    b. 해당 비미성년자는 카운티 복지 부서, 카운티 보호 관찰 부서, 인디언 부족, 부족 공동체 또는 부족 조직의 배치 및 보호 책임하에 위탁 양육 중임.
    c. 해당 비미성년자는 과도기적 독립 생활 사례 계획에 참여 중임.
4. 부족 법원에 제출된 청원의 대상인 인디언 부족, 부족 공동체 또는 부족 조직 법원의 부양 아동.[2]
5. WIC 11400항에 정의된 바에 따른, 자발적 배치 협약의 대상인 아동.

전 소년법정학교 학생

이는 고등학교 2학년을 마친 후, 소년법정학교에서 Charter School로 편입한 학생을 의미합니다.

군인 가정 자녀

이는 현역 군인의 세대에 거주하는 학생을 의미합니다.

현재 이주 아동

이는 지난 12개월 이내에 해당 아동 또는 아동의 직계 가족 구성원이 농업이나 어업 활동에서 임시 또는 계절 고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학부모, 보호자 또는 양육권을 가진 다른 사람과 함께

[2] Charter School에서는 어떤 학생이 인디언 부족, 부족 공동체 또는 부족 조직의 부양 아동임을 증명하기 위해 인디언 부족 또는 부족 법원 대표자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캘리포니아 내에서 또는 그 외 다른 주의 지역 교육 기관("LEA")에서 Charter School로 이동한 아동을 말합니다. 해당 아동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는 아동의 이주 교육 서비스 적격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상태입니다. 여기에는 학부모/보호자 없이 농업이나 어업 활동에서 임시 또는 계절 고용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계속 이주해 온 아동이 포함됩니다.

신규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이는 영어 능력 개발을 주요 목표로 하는 새로이 도착한 이민자 학생들의 학업 및 과도기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을 의미합니다.

교육 권리 보유자(ERH)

이는 WIC 319, 361 또는 726항에 따라 미성년자의 교육적 결정을 내리기 위해 법원에서 임명한 부모, 보호자, 책임 있는 성인 또는 교육법 56055항에 따라 해당 학생을 위한 교육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출신 학교

이는 위탁 청소년이 영구적으로 거주할 때 다녔던 학교 또는 위탁 청소년이 마지막으로 등록한 학교를 의미합니다. 영구적으로 거주할 때 위탁 청소년이 다녔던 학교가 학생이 마지막으로 등록한 학교와 다르거나, 위탁 청소년이 직전의 15개월 이내에 다녔던 다른 학교가 있을 경우, 위탁 청소년을 위한 Charter School 연락 담당자, 위탁 청소년 및 해당 청소년을 위한 ERH와의 협의 및 동의하에 해당 위탁 청소년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출신 학교로 간주될 학교를 결정해야 합니다.

최선의 이익

이는 위탁 청소년을 위한 교육 및 학교 배치 결정을 내릴 때 다른 요소들 중에서도 가장 제한이 적은 교육 프로그램에서 교육받을 기회와 위탁 청소년이 모든 Charter School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학업 자원, 서비스, 과외 및 심화 과정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고려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정책에서 위탁 청소년/소년법정학교 학생, 전 소년법정학교 학생, 군인 가정 자녀, 현재 이주 아동 및 신규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은 "위탁 및 이동 청소년"으로 통칭합니다.

위탁 및 이동 청소년 연락 담당자

위탁 및 이동 청소년의 등록, 배치 및 Charter School로의 전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위탁 및 이동 청소년 연락 담당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다음 직책을 위탁 및 이동 청소년에 대한 Charter School의 연락 담당자로 지정합니다.

Marni Parsons, VP of Student and Family Services(학생 및 가족 서비스 교감)
물리적 주소: 600 S. La Fayette Park Pl, Los Angeles, CA 90057
우편 주소: 5101 Santa Monica Blvd Ste 8, PMB 93, Los Angeles, CA 90029
mparsons@brightstarschools.org
323-954-9957 x1004

위탁 및 이동 청소년 연락 담당자는 다음을 담당합니다.

1. 적절한 교육 배치, Charter School 등록 및 위탁 청소년의 Charter School 체크아웃을 보장하고 용이하도록 지원함.
2. 위탁 청소년이 Charter School로 또는 Charter School에서 전학할 때 학점, 기록 및 성적의 적절한 양도를 보장함.

3. 위탁 청소년이 Charter School에 등록할 시, 위탁 및 이동 청소년 연락 담당자는 모든 학업 및 기타 기록을 얻기 위해 업무일 기준 2일 이내에 학생이 마지막으로 다녔던 학교에 연락해야 합니다. 위탁 청소년이 마지막으로 다녔던 학교는 마지막으로 다녔던 학교에 미납된 비용, 벌금, 교과서 또는 기타 물품이나 돈에 관계없이 필요한 모든 기록을 새 학교에 제공해야 합니다. 위탁 청소년이 새 학교로 전학할 시, 위탁 및 이동 청소년 연락 담당자는 Charter School에 미납된 일체의 미해결 비용, 벌금, 교과서, 또는 기타 물품이나 돈에 관계없이 새 학교의 요청을 수신한 후 업무일 기준 2일 이내에 새 학교로 해당 학생의 기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4. 법에서 요구할 경우, 다음 날짜로부터 달력일 기준 최소 10일 이전에 위탁 청소년의 변호사와 카운티 아동 복지 기관의 해당 담당자에게 통지합니다.
    a. Charter School 헌장에 따른 재량적 행위에 대한 퇴학 청문회.
    b. 퇴학을 권고하는 결정이 Charter School 헌장에 따른 재량적인 행위일 경우, 퇴학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정학을 연장하는 일체의 회의. 위탁 청소년의 변호사와 대리인이 참여하게 됩니다.
    c. 배치 변경이, 퇴학 권고가 재량적인 행위로 인한 것이며 해당 학생이 주 및 연방 특수 교육법에 따라 장애가 있는 학생일 경우 위탁 청소년의 배치 변경 이전의 표명 결정 회의. 위탁 청소년의 변호사와 대리인이 참여하게 됩니다.
5. 필요 시, 위탁 보호 중인 학생이 필요한 특수 교육 서비스 및 1973년 연방 재활법 504항에 따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위탁을 합니다.
6. 필요 시, 위탁 보호 중인 학생이 상담 및 건강 서비스, 보충 교육, 방과후 서비스 등의 적절한 학교 기반 서비스를 받도록 합니다.
7. 교장, 학장 및 출석 사무원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Charter School 교직원이 위탁 청소년의 적절한 등록, 배치 및 전학을 위한 요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프로토콜 및 절차를 개발합니다.
8. 카운티 배치 기관, 사회 복지 서비스, 보호 관찰관, 소년 법정 직원 및 기타 적절한 기관과 협력하여 Charter School의 위탁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를 조정합니다.
9. 위탁 청소년의 교육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보고서를 교장 또는 Charter School의 지역 통제 및 책임 계획에서 식별된 지표에 기반한 피지명인 및 위원회에 제공합니다.

이 정책은 WIC 319, 361 또는 726항, 대리 부모 또는 교육법 56055항하에 권한을 행사하는 위탁 부모에 따라 아동을 대표하도록 법원이 임명한 책임자인 교육적 권리를 보유한 부모나 법적 보호자에게 주 및 연방법에 따라 부여된 권한에 우선하는 위탁 및 이동 청소년 연락 담당자 권한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위탁 및 이동 청소년 연락 담당자의 역할은 배정 옵션 및 출신 학교 결정에 관한 자문입니다.

학교 안정성 및 등록

Charter School은 위탁 청소년 및 그 ERH와 협력하여 각 위탁 청소년이 가장 제한이 적은 교육 프로그램에 배정되고, 모든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학업 자원, 서비스, 과외 활동 및 심화 활동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 대항 스포츠를 포함하나 여기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위탁 청소년의 교육 및 배치에 관한 모든 결정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기반으로 하며, 특히 다른 무엇보다도 학업 성취 과정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교육 안정성 및 가장 제한이 적은 교육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고려합니다.

위탁 청소년, 현재 이주 자녀 및 군인 가정 자녀는 그것이 최선의 이익이라면 출신 학교에 남을 권리가 있습니다. Charter School은 출신 학교로서 Charter School에 재등록을 하고자 하는 위탁 청소년, 현재 이주 아동 또는 군인 가정 자녀를 즉시 등록시킬 것입니다.

Charter School로 전학하려는 위탁 청소년, 현재 이주 아동 또는 군인 가정 자녀는 학생이 마지막으로 다녔던 학교로 인해 미해결 비용, 벌금, 교과서, 기타 물품이나 돈, 또는 학교 공통 요건(예: 이전 학교에서 의료 기록 또는 학업 기록 제출)이 있다고 할지라도 즉시

등록됩니다(Charter School이 학생의 출신 학교가 아닐 경우 Charter School의 역량에 따라, 그리고 Charter School 헌장 및 위원회 정책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초기 지연이나 배치 또는 배치의 후속 변경 시, 위탁 청소년은 법원의 관할권 기간 동안 자신의 출신 학교에 계속 다닐 수 있습니다. 현재 이주 자녀 또는 군인 가정 자녀는 위에 설명된 현재 이주 자녀 또는 군인 가정 자녀의 정의를 충족하는 한 자신의 출신 학교에 계속 다닐 수 있습니다. 위탁 청소년, 현재 이주 자녀 및 군인 가정 자녀는 법원의 관할 종료 후 또는 다음과 같이 현재 이주 자녀 또는 군인 가정 자녀로서의 아동의 상태가 만료된 후 자신의 출신 학교에 남아 있을 권리가 있습니다.

1. 유치원부터 8학년까지의 학생의 경우, 학생의 신분이 변경된 학년도 동안 출신 학교에 계속 다닐 수 있습니다.
2. 고등학교에 등록된 학생의 경우, 졸업 시까지 출신 학교에 계속 다닐 수 있습니다.

위탁 청소년, 현재 이주 자녀 또는 군인 가정 자녀가 학교 학년 사이를 이동할 경우, 해당 청소년은 같은 출석 지역의 출신 교육구에 계속 남아 교육구의 구축된 피더 패턴에 따라 동료들과 함께 입학을 허가받는 혜택을 제공받도록 허가되어야 합니다.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로 이동하는 학생은 다른 교육구에서 입학을 허가받도록 지정된 학교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위탁 및 이동 청소년 연락 담당자는 위탁 청소년 및 위탁 청소년을 위한 ERH와의 협의 및 동의하에 위탁 청소년의 출신 학교에 다닐 권리를 포기하고 학생을 학생이 현재 등록 절차에 따라 해당 교육구의 거주자로서 다닐 자격이 있을 모든 교육구 학교 또는 Charter School에 등록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결정은 위탁 청소년의 최선의 이익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탁 청소년을 출신 학교에서 옮기도록 권고하기 전에, 위탁 및 이동 청소년 연락 담당자는 위탁 청소년 및 위탁 청소년의 ERH에 권고의 근거와 추천이 위탁 청소년의 최선의 이익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서면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위탁 청소년의 출신 학교로 Charter School에 남아 있기를 요청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체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위탁 청소년은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Charter School에 남을 권리가 있습니다. 분쟁은 기존 Charter School 분쟁 해결 과정에 따라 해결됩니다.

교통편

Charter School은 지역 아동 복지 기관과 Charter School이 미합중국 법전 20편의 6312(c)(5)항에 따라 교통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는 합의가 없는 한, 또는 미연방 법에서 요구하지 않는 한, 위탁 청소년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교통편을 제공할 책임이 없습니다. Charter School은 재량하에 위탁 청소년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교통편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았습니다.

미합중국 법전 20편의 6312(c)(5)항에 따라, Charter School은 그것이 해당 청소년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때, 지역 아동 복지 기관과 협력하여 위탁 청소년이 자신의 출신 학교에 계속 다닐 교통편 필요를 해결할 명확한 서면 절차를 개발 및 시행합니다.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이 있는 학생의 경우, 학생의 IEP 팀은 학생의 상태에 관계없이 관련 서비스로 특수 교육 교통편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결석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

위탁 청소년의 성적은 다음 상황 중 하나로 인해 Charter School에 결석하더라도 낮아질 수

없습니다.

a. 학생의 배치를 변경하기로 한 법원 또는 배치 기관의 결정. 이 경우 학생의 성적은 학생이 학교를 그만둔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b. 확인된 법원 출두 또는 관련 법원 명령 활동.

교과 과정 및 학점 양도

Charter School은 학생이 전체 과정을 완료하지 않았고 학생에게 완료한 교과 과정에 대해 전체 또는 부분 학점을 발행해야 할지라도, 다른 공립학교[3], 소년 법정 학교, Charter School, 미국 외 국가의 학교, 또는 비공립, 무종파 학교나 기관에 다니는 동안 위탁 및 이동 청소년이 만족스럽게 완료한 교과 과정을 수락해야 합니다.

위탁 및 이동 청소년이 전체 과정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해당 학생은 완료된 교과 과정에 대해 부분 학점을 받게 되며, Charter School이 학생의 ERH와 협의하여 학생이 고등학교 졸업에 필요한 시간 내에 요건을 합리적으로 완료할 수 있다고 여기지 않는 한, 다른 학교에서 완료한 과정의 일부를 재수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체의 특정 과정에서 위탁 및 이동 청소년에게 부분 학점이 부여될 때 언제든, 학생은 해당되는 경우 학생이 전체 과정을 계속하고 완료할 수 있도록 동일하거나 동등한 과정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Charter School은 어떠한 경우에도 위탁 및 이동 청소년이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교 또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입학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과정을 수강하거나 재수강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졸업 요건의 적용 가능성

Charter School에서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기 위해, 학생은 반드시 Charter School에서 요구하는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위원회에서 규정한 일체의 추가 졸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2학년을 마친 후 언제든 Charter School로 편입하는 위탁 및 이동 청소년과 고등학교 3 또는 4학년에 재학 중인 신규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은, Charter School에서 해당 학생이 고등학교 4학년 말까지 Charter School의 졸업 요건을 합리적으로 완료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교육법 51225.3항("추가 졸업 요건")에 명시된 캘리포니아 최소 졸업 요건을 초과하는 Charter School의 일체의 졸업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위탁 및 이동 청소년이 고등학교 3학년 또는 4학년에 재학 중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학생이 전학 날짜까지 취득한 학점 수 또는 학생의 학교 등록 기간 중 어느 것이든 면제에 대해 학생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기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규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은, 11학년 또는 12학년 등록을 통해 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인지 또는 4학년인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기 요건에 따라 면제 자격이 있을 수 있는 학생이 Charter School로 전학한 날로부터 30 달력일 이내에 Charter School은 학생, ERH, 해당되는 경우 학생의 사회복지사 또는 보호감찰관에게 면제 가능 여부 및 학생이 면제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Charter School이 면제 이용 가능성에 대해 적시에 통지하지 않는다면, 위탁 및 이동 청소년은 해당 위탁 청소년이 면제에 적격할 경우 통지가 학생에 대한 법원의 관할권 종료 후에 발생하더라도, 일단 통지를 받고 나면 추가 졸업 요건 면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학생이 이 정책에 따라 Charter School의 추가 졸업 요건이 면제되고 고등학교 4학년이 끝나기 전에 교육법 51225.3항에 명시된 주 전체의 교과 과정 요건을 완료하였으며 다른 상황에서는 Charter School에 계속 다닐 자격이 될 경우, Charter School은 학생이 고등학교 4학년이 끝나기

[3] 군인 가정 자녀가 이수한 교과 과정상, "공립학교"에는 미국 국방부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포함됩니다.

전에 졸업하도록 요구하거나 요청하지 않습니다.

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Charter School이 추가 졸업 요건에 대한 면제를 승인할 경우, 위탁 및 이동 청소년과 그 ERH에 면제되는 일체의 요건이 중등 이후 교육 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의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통지해야 하며,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컬리지를 통해 전학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른 상황에서라면 Charter School에 계속 다닐 자격이 있는 위탁 및 이동 청소년은 추가 졸업 요건 면제를 수락하거나 학생이 다른 상황에서라면 자격이 있을, 해당 과정이 주 전체 졸업 요건에 필요한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고등 교육 기관에 다니는 데 필요한 과정을 포함하여, 과정에 대한 등록 또는 완료 능력이 거부될 필요가 없습니다.

위탁 및 이동 청소년이 추가 졸업 요건에서 면제되지 않거나 이 정책에 따라 이전에 면제를 거부한 경우, Charter School은 해당 청소년이 면제를 요청하고 해당 청소년이 면제 자격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학생을 면제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청소년이 면제되는 경우, Charter School은 면제를 철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탁 및 이동 청소년이 이 항에 따라 추가 졸업 요건에서 면제되는 경우, 면제는 학생에 대한 법원의 관할권이 종료된 후 또는 학생이 학교에 등록하는 동안 자격이 되는 상황이 종료된 후, 또는 학생이 Charter School이나 학교 교육구를 포함한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에도 계속 적용됩니다.

Charter School은 추가 졸업 요건 면제 자격을 얻기 위해 위탁 및 이동 청소년에게 전학을 요구하거나 요청할 수 없으며, 위탁 및 이동 청소년 또는 위탁 및 이동 청소년을 대리하는 모든 자는 Charter School의 추가 졸업 요건에서 면제를 받기 위해서라는 한 가지 목적으로 전학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위탁 및 이동 청소년이 해당 학생의 고등학교 5학년도 이내에 Charter School의 졸업 요건을 합리적으로 완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시, 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다음에 따릅니다.

1. 만 19세 이상의 Charter School 학생의 지속적인 등록 및 흡족한 과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Charter School의 졸업 요건을 완료하기 위해 5학년도 동안 학교에 남을 수 있는 학생의 옵션을 학생 및 학생의 ERH에 고지함.
2. 학생 및 학생의 ERH에게, 5학년 동안 학교에 남는 것이 중등 이후 교육 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의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지함.
3.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컬리지를 통해 이용 가능한 편입 기회에 대한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합니다.
4. 학생의 동의가 있거나 학생이 만 18세 미만일 경우, ERH는 학생이 Charter School의 졸업 요건을 완료하기 위해 5학년 동안 학교에 머무를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소년 법정 청소년이 소년 법정 학교에 등록된 기간 동안 고등학교 졸업 요건을 충족하였지만 추가 교과 과정을 이수할 목적으로 졸업장 발급을 거부한 경우, Charter School은,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ERH가 요청할 경우 소년 법정 청소년의 Charter School 등록 및 추가 교과 과정 추구를 막지 않습니다.

과외 활동 자격

법원 명령 또는 아동 복지 직원의 결정에 따라 거주지가 변경된 위탁 양육 중인 학생은 학교 대항 스포츠 또는 기타 과외 활동 참여를 위한 모든 거주 요건을 즉시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방과후 프로그램 비용의 면제

Charter School은 Charter School이 운영하는 방과 후 교육 및 안전("ASES") 프로그램과 관련된 일체의 가족 부담 비용을 위탁 양육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 모든 학생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학생 기록

Charter School이 새로운 LEA에서 위탁 청소년의 교육 정보 및 기록에 대한 이동 요청 및/또는 학생 기록 요청을 받을 시, Charter School은 근무일 기준 2일 이내에 이러한 학생 기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Charter School은 학생의 완전한 교육 기록을 수집해야 하며, 여기에는 총 출석 시간, 취득한 전체 또는 부분 학점, 현재 수업 및 성적, 예방접종 및 기타 기록,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학생의 평가, IEP 및/또는 504 플랜을 비롯한 특수 교육 기록의 사본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학생 기록에 대한 모든 요청은 위탁 및 이동 청소년 연락 담당자와 공유되며, 연락 담당자는 위탁 및 이동 청소년(Foster and Mobile Youth)의 특수 교육 기록 작성의 필요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Charter School의 교육 기록 및 학생 정보 정책에 따라, 제한된 상황 하에서 Charter School은 학생 기록 또는 해당 기록에 포함된 개인 식별 정보를 학부모의 동의 없이 청소년 사법 시스템 내에서 위탁 가정 기관과 주 및 지방 당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특정 요청 당사자에게 공개할 수 있습니다.

비준수에 대한 고발

이 정책을 준수하지 않음에 대한 고발은 Charter School의 공통 고발 처리 절차의 적용을 받습니다. 공통 고발 처리 정책 및 절차의 사본은 본교 웹사이트에서 제공됩니다. https://www.brightstarschools.org.

504항 정책, 절차 및 부모의 권리

A. 504항(Section 504) 정책

Bright Star Schools("Charter School") 위원회는 장애 학생에게 적절한 무료 공교육("FAPE")을 제공하기 위해 장애 학생을 식별하고 평가할 필요성과 “자격을 갖춘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장애라는 한 가지 요소를 이유로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참여에서 제외되거나 혜택이 거부되거나 차별을 받지 않는다”를 보장할 법적 책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 및 관련 행정 규정은 1973년 재활법 504항("504항")의 시행 및 그 공립학교와 관련된 개정된 시행 규정을 보장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그 의도는 504항에 따라 자격이 있는 모든 장애 학생이 식별 및 평가되고 FAPE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504항에 따라, 학습을 포함하여 하나 이상의 주요 생활 활동을 상당히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개인은, 정규 교육이나 특수 교육 및/또는 비장애 학생의 필요가 충족되는 만큼 장애 학생의 필요를 적절히 충족시키기 위해 고안된 관련 지원 및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주요 생활 활동에는 스스로를 돌보기, 신체를 사용하는 일의 수행, 보기, 듣기, 먹기, 잠자기, 걷기, 서 있기, 들기, 구부리기, 말하기, 호흡하기, 배우기, 읽기, 집중하기, 생각하기, 의사소통하기, 작업하기 등의 기능을 비롯해, 면역계, 정상적인 세포 성장, 소화, 장, 방광, 신경, 뇌, 호흡기, 순환기, 내분비 및 생식 기능의 기능을 포함한 주요 신체 기능의 작동이 포함됩니다. 2004년 장애인 교육법 개선법("IDEA")에 따라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없더라도, 학생은 장애가 있어 504항에 따라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Charter School의 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이 정책과 일련의 절차가 시행되고 준수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장애로 인해, 학생이 정규나 특수 교육 및/또는 관련 보조와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을 때마다(그리고 학생이 IDEA에 따라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이 정책의 해당 절차에 따라 평가됩니다.

504항 팀은 정규나 특수 교육 및/또는 관련 보조와 서비스에 대한 학생의 필요를 결정하기 위해 소집됩니다. 504 팀에는 504항 기준, 학생의 개별 요구 사항 및 학교 역사, 평가 데이터의 수단 및 배치 옵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학생의 학부모/보호자는 이 504 팀에 참여하도록 초대되어야 하며 법이 보장하는 절차적 보호 조치에 대한 통지를 받습니다.

학부모가 평가를 요청한 후에 Charter School이 학생을 평가하지 않을 경우, Charter School은 학부모/보호자의 절차적 보호 조치에 대한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Charter School은 절차적 보호 및/또는 504항에 따라 일체의 권리를 행사하는 학부모/보호자 또는 학생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도 보복하지 않습니다.

장애로 인해, 학생이 504항에 따라 정규나 특수 교육 및/또는 관련 보조와 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504항 팀은 학생에게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504 계획을 개발해야 합니다. 학생은 학생의 개별적 필요에 적합한 최대 범위까지 비장애 학생과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학생의 학부모/보호자는 504 계획의 사본을 제공받고, 법이 보장하는 절차적 보호 조치에 대한 통지를 받게 됩니다. Charter School은 정기적으로 학생의 진도와 배치를 검토합니다.

Charter School은 장애 또는 법에 따라 보호되는 기타 일체의 특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Charter School은 해당 절차를 통해 이 정책을 시행할 것입니다.

B. 정의

1. 학업 환경
Charter School에서 운영하는 정규 교육 환경입니다.

2. 504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개인
다음과 같은 개인:

a. 하나 이상의 주요 생활 활동을 상당히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을 보유함,
b. 그러한 손상의 기록이 있음, 또는
c. 장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됨.

3. 평가
학생이 이 절차에 정의된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학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성격과 범위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절차. 해당 용어는 개별 학생에게 선택적으로 사용되는 절차를 의미하며, 학교, 학년 또는 수업의 모든 학생에게 시행되는 기본 테스트 또는 사용되는 절차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4. 504 계획
정규나 특수 교육에 대한 학생의 필요,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과 활동, 학교 후원 행사 참여를 위한 관련 지원 및 서비스에 대한 학생의 필요를 식별하고 문서화하기 위해 개발된 계획.

5. FAPE
비장애인의 필요가 충족되는 만큼 적절하게 장애인의 개별 필요를 충족하도록 설계된 정규나 특수 교육 및 관련 보조와 서비스의 제공.

6. 주요 생활 활동

스스로를 돌보기, 신체를 사용하는 일, 보기, 듣기, 먹기, 자고, 걷기, 서 있기, 앉기, 손 뻗기, 들기, 구부리기, 말하기, 호흡하기, 배우기, 읽기, 집중하기, 생각하기, 의사소통하기, 타인과 상호작용하기 및 작업하기 등의 기능. 주요 생활 활동에는 면역 체계, 특수 감각 기관 및 피부, 정상적인 세포 성장, 소화기, 비뇨생식기, 장, 방광, 신경계, 뇌, 호흡기, 순환기, 내분비, 혈액, 림프, 근골격 및 생식 기능의 기능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주요 신체 기능의 작동도 포함됩니다.

7.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a. 음성 기관, 심혈관, 생식기, 소화기, 비뇨생식기, 혈액 및 림프, 피부, 내분비를 포함하는 신경계, 근골격, 특수 감각 기관, 호흡기 중 하나 이상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장애나 질환, 미용적 결함 또는 해부학적 손실.
b. 지적 장애, 조직적 뇌 증후군, 정서적 또는 정신적 질환, 특정 학습 장애 등의 일체의 정신적이거나 심리적 장애.

8. 504 조정관

학교 관계자 한 명이 Charter School의 504항 조정관으로서 활동합니다. 학부모 또는 보호자는 각 Bright Star School별로 아래에 등재된 번호로 504항 조정관에게 연락하여 504항 적법 절차 청문회를 요청하거나, 일체의 질문 또는 우려사항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Rise Kohyang Elementary School
Maiah Brim, School Counselor (학교 상담사)
600 S. La Fayette Park Pl, Los Angeles, CA 90057
mbrim@brightstarschools.org
(213) 224-8900

Rise Kohyang Middle School
Albert Beltran, Assistant Principal of Culture (문화 교감)
3020 Wilshire Blvd Suite #250, Los Angeles, CA 90010
abeltran@brightstarschools.org
(424) 789-8338

Rise Kohyang High School
Allen Andrews, Assistant Principal of Instruction (교육 교감)
600 S. La Fayette Park Pl, Los Angeles, CA 90057
(323) 284-2553
aandrews@brightstarschools.org

Stella Elementary Charter Academy
MiguelAngel Espinoza, Assistant Principal of Culture (문화 교감)
4196 Marlton Ave, Los Angeles, CA 90016
(213) 340-6700
mespinoza@brightstarschools.org

Stella Middle Charter Academy

Joseph González, Counselor (상담사)
4301 W Martin Luther King Jr Blvd, Los Angeles, CA 90008
(323) 406-7155
jlgonzalez@brightstarschools.org

Stella High Charter Academy
Jesus Ramirez, Assistant Principal of Culture (문화 교감)
1600 W Imperial Hwy, Los Angeles, CA 90047
(424) 789-8337
jrramirez@brightstarschools.org

Valor Academy Elementary School
Lourena Uribe 및 Melissa Ignacio, Counselors (상담사)
8755 Woodman Ave, Arleta, CA 91331
(818) 217-2733
luribe@brightstarschools.org
mignacio@brightstarschools.org

Valor Academy Middle School
Asma Ali, Assistant Principal of Culture (문화 교감)
9034 Burnet Ave, North Hills, CA 91343
(818) 830-1700 ext. 8003
aali@brightstarschools.org

Valor Academy High School
Tisha Bernard, Dean of Student and Family Services(학생 및 가족 서비스 학장)
9356 Lemona Ave, North Hills, CA 91343
(818) 934-8910
tbernard@brightstarschools.org

9. 그러한 손상의 기록이 있음

이는 하나 이상의 주요 생활 활동을 상당히 제한하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손상의 이력이 있거나 보유 중인 것으로 잘못 분류되었음을 의미함

.

10. 장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됨

이는

a. 개인이 해당 손상이 주요 생활 활동을 제한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인지됨의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또는 인지된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손상으로 인해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조치의 대상이 되었음을 입증할 경우, 해당 개인은 '그러한 손상이 있는 것으로 간주됨' 요건을 충족한다는 의미임.
b. 손상이 있다고 간주되는 것은 일시적이고 경미한 손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시적 손상은 실제 또는 예상 지속 기간이 6개월 이하인 손상입니다.

C. 회부, 평가 및 평가 절차

1. Charter School은 장애로 인해 정규나 특수 교육 및/또는 관련 보조와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학생을 평가할 것입니다.
2. 학생이 504항에 따라 장애 학생으로서 자격이 되는지의 여부를 고려하기 위해, 학부모/보호자, 교사, 기타 교직원 또는 지역 사회 기관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학생을 회부할 수 있습니다. 평가 요청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요청의 사본은 최종 결정에 관계없이 학생의 파일에 남습니다. 이 회부는 504 팀을 소집할 504항 조정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른 Charter School 직원을 대상으로 한 모든 요청은 504항 조정관에게 전달됩니다.
3. Charter School은 장애 학생을 평가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평가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을 수 있는 학생을 504항 조정관에게 꼭 회부해야 합니다.
4. 504항 조정관이 소집한 504 팀은 학생의 학부모/보호자 및 학생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기타 인물(예: 학생의 정규 교육 교사), 학생의 학교 이력, 학생의 개별 필요(예: 학생에게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에 대해 지식이 풍부한 자), 평가 데이터의 수단, 배치 및 서비스 옵션, 최소한으로 제한적인 환경과 동등한 시설에 대한 법적 요건으로 구성됩니다.
5. 504 팀은 즉각 회부를 고려하고 학생이 504항에 따라 장애가 있는 학생인지의 여부와 학생에게 있을 수 있는 특별한 필요를 평가하기 위해 장애가 의심되는 모든 영역에서 어떤 평가가 필요한지 결정해야 합니다. 수행할 평가에 대한 결정은 학생의 학교 기록(학업, 사회 및 행동 기록 포함), 일체의 관련 의료 기록 및 학생의 필요를 검토한 결과에 기반합니다. 평가를 요하는 학생에게는 자격을 갖춘 평가 전문가가 실시하는 적절한 평가가 제공됩니다.
6. 504 팀은 학생을 평가할 때 다음 정보를 고려합니다.
    a. 테스트와 평가 자료가 사용되는 이유인 특정 목적에 대해 검증되었으며 훈련받은 직원이 실시하는 테스트와 기타 평가 자료,
    b. 단순히 단일 일반 지능지수만 제공하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라 교육적 필요의 구체적인 영역을 평가하기 위해 맞춤화된 것을 포함한 테스트 및 기타 평가 자료, 그리고
    c. 감각, 신체 또는 말하기 능력이 손상된 학생에게 테스트를 시행할 시, 학생의 손상된 감각, 신체 또는 말하기 능력을 반영하기보다는, 테스트 결과가 학생의 적성, 성취 수준 또는 테스트에서 측정하려는 모든 요소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테스트를 선택하고 실시합니다(해당 능력이 테스트에서 측정하려는 요소인 경우 제외).
7. 학생에 대한 평가는 504 팀이 다음을 정확하고 완전하게 설명하기에 반드시 충분해야 합니다. (a) 장애의 성격과 정도, (b) 학생의 특수한 필요, (c) 학생의 교육에 대한 영향, 그리고 (d) 학생이 FAPE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떤 정규나 특수 교육 및/또는 관련 보조와 서비스가 적절한지. 적응 행동, 문화 및 언어적 배경을 포함하여, 해당 학생의 학습 과정과 관련된 모든 중요한 요소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평가에는 교실 및 운동장 관찰, 수행 기반 테스트, 학업 평가 정보 및 학생의 교사와 학부모/보호자가 제공하는 데이터가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8. 학생의 능력을 상당히 제한하는 장애가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할 시, 완화 조치는 고려할 수 없습니다. 완화 조치에는 약물, 보철 장치, 보조 장치 또는 학생이 장애의 영향을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학습된 행동적 또는 적응 신경학적 조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9. 학부모/보호자는 504 팀 회의에 앞서 평가 결과 및 기타 모든 관련 기록을 검토할 기회를 받아야 합니다.
10. 평가 요청이 거부될 경우, 504 팀은 이 결정과 아래에 설명된 절차상의 권리를 학부모/보호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D. 504 계획

1. 학생이 504항의 의미 내에서 장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시, 504 팀은 해당 학생이 FAPE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있을 경우)를 결정합니다.
2. 배치 결정을 담당하는 504 팀에는 학부모/보호자, 그리고 아동에 대해, 또한 평가 데이터의 의미 및 배치 옵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기타 인물이 포함됩니다.
3. 식별된 각 적격한 학생에 대해, 504 팀은 학생의 장애와 정규나 특수 교육 및/또는 관련 보조 및 필요한 서비스를 설명하는 504 계획을 개발할 것입니다. 계획은 특수 교육 및/또는 관련 보조와 서비스가 적격한 학생에게 어떻게 제공될지, 그리고 누구에 의해 제공될 것인지를 명시할 것입니다. 504 계획은 또한 계획의 모든 구성 요소가 시행되었는지 확인하는 책임자를 식별합니다.
4. 학생의 교사, 그리고 학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학생을 위해 교실에서 조절을 해야 하는 기타 모든 직원은 학생에게 필요한 서비스나 조절 사항에 대해 고지를 받고 적절한 경우 504 계획의 사본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이 계획의 사본은 504 과정 및/또는 서비스와 조절 제공에 관련된 사람들의 접근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학생의 누적 파일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5. 추가 보조 및 서비스가 있는 정규 교육 환경에서 학생의 필요가 충족될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적격한 학생은 정규 교육 환경에 배치됩니다. 학생은 학생의 개별적 필요에 적합한 최대 범위까지 장애가 없는 학생과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6. 회부, 평가, 검토 및 배치 프로세스는 합리적인 시간 내에 완료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과정을 완료하는 데 수업일 기준 50일을 초과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7. 학부모/보호자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의 학생의 식별, 제공할 교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있을 경우), 그리고 아래에 설명된 대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공정한 청문회를 받을 권리를 포함한 504항 절차적 보호 조치에 관한 최종 결정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를 받습니다.
8. 504 팀이 학생에게 장애가 있다고 결정했지만 학생에게 특별한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504 계획은 504항에 따라 학생을 장애가 있는 자로 식별하는 것을 반영하고 현재 특별한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다는 결정의 근거를 명시해야 합니다.
9. 504 계획에는 학생의 필요에 대한 연례 검토 일정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러한 검토가 학부모/보호자 또는 교직원의 요청에 따라 더 자주 발생할 수 있음을 표시해야 합니다.
10. Charter School은 학생이 Charter School에 등록할 시, 학생의 이전 504 계획을 즉시 시행해야 합니다. 등교 시작 후 달력일 기준 30일 이내에, Charter School은 기존 504 계획을 검토하기 위한 504 팀 회의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Charter School은 이전 학교와 학부모/보호자 모두에게 이전 504 계획의 사본을 요청해야 합니다.

E. 학생의 진도 검토

1. 504 팀은 적격한 학생의 진행 상황과 학생의 504 계획의 효율성을 모니터링합니다. 학생의 504 계획에 명시된 검토 일정에 따라, 504 팀은 서비스 및 수정이 적절한지의 여부를 매년 결정합니다.
2. 학생의 필요에 대한 재평가는 배치에 중대한 후속 변경이 있기 전에 수행됩니다.

F. 절차상 보호

1. 장애 또는 장애가 의심되는 학생의 식별, 평가 또는 교육 배치에 관한 모든 결정은 학부모/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통지서에는 다음의 권리에 대한 설명이 포함됩니다.
    - 관련 기록 조사
    - 학부모/보호자 및 그들의 변호인이 참여할 기회가 있는 공정한 청문회를 마련할 권리
    - Charter School 정책에 따라 공통 고발을 제기할 권리
    - 학부모/보호자가 청문회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연방 법원에서 검토를 요청할 권리

2. 통지서에는 공정한 청문회를 요청하는 절차도 명시되어야 합니다. 요청은 다음 담당자에게 합니다.

Rise Kohyang Elementary School
Maiah Brim, School Counselor (학교 상담사)
600 S. La Fayette Park Pl, Los Angeles, CA 90057
mbrim@brightstarschools.org
(213) 224-8900

Rise Kohyang Middle School
Albert Beltran, Assistant Principal of Culture (문화 교감)
3020 Wilshire Blvd Suite #250, Los Angeles, CA 90010
abeltran@brightstarschools.org
(424) 789-8338

Rise Kohyang High School
Allen Andrews, Assistant Principal of Instruction (교육 교감)
600 S. La Fayette Park Pl, Los Angeles, CA 90057
(323) 284-2553
aandrews@brightstarschools.org

Stella Elementary Charter Academy
MiguelAngel Espinoza, Assistant Principal of Culture (문화 교감)
4196 Marlton Ave, Los Angeles, CA 90016
(213) 340-6700
mespinoza@brightstarschools.org

Stella Middle Charter Academy
Joseph González, Counselor (상담사)
4301 W Martin Luther King Jr Blvd, Los Angeles, CA 90008
(323) 406-7155
jlgonzalez@brightstarschools.org

Stella High Charter Academy
Jesus Ramirez, Assistant Principal of Culture (문화 교감)
1600 W Imperial Hwy, Los Angeles, CA 90047
(424) 789-8337
jrramirez@brightstarschools.org

Valor Academy Elementary School
Lourena Uribe 및 Melissa Ignacio, Counselors (상담사)
8755 Woodman Ave, Arleta, CA 91331
(818) 217-2733
luribe@brightstarschools.org

mignacio@brightstarschools.org

Valor Academy Middle School
Asma Ali, Assistant Principal of Culture (문화 교감)
9034 Burnet Ave, North Hills, CA 91343
(818) 830-1700 ext. 8003
aali@brightstarschools.org

Valor Academy High School
Tisha Bernard, Dean of Student and Family Services(학생 및 가족 서비스 학장)
9356 Lemona Ave, North Hills, CA 91343
(818) 934-8910
tbernard@brightstarschools.org

통지에서는 또한 변호사 비용에 대한 상환이 법에 의해 승인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3. 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504항 청문회를 진행할 자격이 있고 기꺼이 실시할 공정한 청문회 담당자의 목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공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그러한 담당자는 Charter School, 로스앤젤레스 통합 교육구 또는 로스앤젤레스 교육 카운티 내의 어떤 교육구에 의해 청문회 담당자 외의 어떤 지위로도 고용되거나 그 계약에 따라 고용되어서는 안 되며, 해당 사안에 대한 공정성 또는 객관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문적 또는 개인적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4. 학부모/보호자가 504항에 따른 장애 학생의 식별, 평가 또는 교육 배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학부모/보호자는 정당한 과정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보호자는 청문회 요청을 서면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청문회 요청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학부모/보호자가 동의하지 않는 특정 결정 또는 조치.
    - 학부모/보호자가 원하는 504 계획에 대한 변경 사항.
    - 학부모/보호자가 타당하다고 믿는 기타 모든 정보.
5. 학부모/보호자의 청문회 요청을 받은 후 달력일 기준 5일 이내에 Charter School은 학부모/보호자에게 선택적 대안 분쟁 해결 절차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문회 일정은 학부모/보호자와 Charter School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대안 분쟁 해결의 선택지에는 다음이 있습니다.
    - 중립적인 제삼자의 중재.
    - 교장 또는 피지명자의 504 계획 검토.
6. 학부모/보호자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달력일 기준 10일 이내에, 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공정한 청문회 담당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이 10일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학부모/보호자 및 교장과의 상호 합의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7. 청문회 담당관이 선출된 후 달력일 기준 35일 이내에 적법 절차 청문회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이 달력일 기준 35일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또는 학부모/보호자 및 교장과의 상호 합의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8. 학부모/보호자 및 학교에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부여됩니다.
    - 504항에 따라 장애가 있다는 조건을 충족한 학생의 개별 필요와 관련하여 특별한 지식이 있거나 훈련을 받은 변호사 및 개인과 동행하고 조언을 받음.
    - 서면 및 구두 증거를 제시함.
    - 증인에게 질문하고 반대 심문함.
    - 청문회 담당관의 서면 결과를 수령함.
9. 청문회 담당관은 청문회 후 달력일 기준 10일 이내에 서면 결정을 발표해야 합니다.

10. 원할 경우, 양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은 연방 법원에서 청문회 담당관의 결정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결정을 보류, 수정 또는 번복하지 않는 한 결정은 시행되어야 합니다.
11. Charter School은 절차상 보호 및/또는 504항에 따라 일체의 권리를 행사하는 학부모/보호자 또는 학생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도 보복하지 않습니다.

F. 정학 및 퇴학, 장애가 있는 학생의 특별 절차

Charter School은 헌장에 명시된 정학 및 퇴학 정책과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1973년 재활법 504항에 따라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되는 학생은 정학 및 퇴학을 포함한 징계 조치에 대한 동일한 근거의 대상이 되며, 연방법 및 주법이 추가 또는 다른 절차를 요구할 시를 제외하고 일반 교육 학생에게 적용되는 동일한 적법 과정 절차가 허용됩니다. Charter School은 장애가 있는 개인으로 확인되거나 Charter School이 의심되는 장애에 대한 지식의 근거를 갖고 있거나, 해당되는 학생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당 서비스 또는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 학생에게 모든 형태의 징계를 부과할 시, 504항 및 모든 해당 연방 및 주법에 따릅니다. 장애가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정학 또는 퇴학을 고려할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이 절차는 법이 변경되면 업데이트됩니다.

1. 정학 중 서비스

한 학년도에 등교일 기준으로 10일을 초과하여 정학을 받은 학생은 다른 환경에 있더라도 일반 교육 커리큘럼에 계속 참여하고 해당 아동의 504 계획에서 정해진 목표 달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시, 행동 위반이 재발하지 않게끔 해결하도록 고안된 기능적 행동 평가("FBA") 및 행동 개입 서비스와 조절을 받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임시 대안 교육 환경에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2. 절차상 보호/징후 관련 결정

퇴학 권고 또는 학생 행동 강령 위반으로 인한 장애 아동의 모든 배치 변경 결정 후 등교일 기준 10일 이내에, Charter School, 학부모 및 504 팀의 관련 구성원은 아동의 504 계획, 일체의 교사 관찰 및 학부모가 제공한 모든 관련 정보를 포함하여 학생 파일의 모든 관련 정보를 검토하여 다음을 결정합니다.

a. 문제의 행동이 아동의 장애로 인해 발생했거나,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관계가 있는지, 또는
b. 문제의 행위가 지역 교육 기관이 504 계획을 시행하지 않은 직접적인 결과인지.

Charter School, 학부모 및 504 팀의 관련 구성원이 위의 사항 중 한 가지가 해당 아동에게 적용된다고 결정할 경우, 해당 행위는 아동의 장애를 나타내는 징후로 결정됩니다.

Charter School, 학부모, 504 팀의 관련 구성원이 해당 행동이 아동의 장애를 나타내는 징후라고 결정할 경우, 504 팀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a. FBA를 수행하고 해당 아동에 대한 행동 중재 계획("BIP")을 시행함. 단, Charter School이 배치 변경을 초래한 행동 이전에 그러한 평가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b. 아동에게 BIP가 있다면 BIP를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조절하여 행동을 해결함, 그리고 그리고
c. 학부모와 Charter School이 BIP 조절의 일부로서의 배치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한, 아동을 분리했던 배치로 아동을 복귀시킴.

Charter School, 학부모 및 504 팀의 관련 구성원이, 해당 행동이 학생의 장애의 징후가 아니며 문제의 행동이 504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결과가 아니라고 결정할 경우, Charter School은 절차가 장애가 없는 학생에게 적용되는 절차와 동일한 방식 및 동일한 기간 동안 장애가 있는 학생에게 관련 징계 절차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항소

배치에 관한 결정이나 징후 관련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504 계획에 따른 장애 아동의 학부모/보호자, 또는 Charter School이 아동의 현재 배치를 유지하는 것이 아동 또는 타인에게 상당한 부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을 경우,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은 이 절차의 절차상 보호항에 설명된 항소 절차를 활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 또는 Charter School 중 한쪽에서 학생 배치 또는 징후 관련 결정에 대한 항소를 요청할 시, 학생은 20 U.S.C. 1415(k)항을 포함한 주 및 연방법에 따라 청문회 담당관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학부모와 Charter School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임시 대안 교육 환경을 위해 제공된 45일의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임시 대안 교육 환경에 남아야 합니다.

4. 특수 상황

Charter School 직원은 학생 행동 강령을 위반한 장애 아동의 배치 변경을 명령할지의 여부를 결정할 시, 사례별로 일체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학생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 행동이 학생의 장애의 징후로 결정되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45일 이하의 임시 대안 교육 환경으로 학생을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a. 18 U.S.C § 930에 정의된 대로 학교로, 또는 학교에서, 학교 부지에서, 또는 학교 행사에서나 학교 축전에서 무기를 휴대하거나 소지함,
b. 학교, 학교 부지 또는 학교 축전에서 고의로 불법 약물을 소지 또는 사용하거나 규제 약물을 판매 또는 구하는 행위, 또는
c. 20 U.S.C § 1415(k)(7)(D)에 정의된 대로, 학교, 학교 구내 또는 학교 축전에서 사람에게 심각한 신체 상해를 입힘.

5. 임시 대안 교육 환경

학생의 임시 대안 교육 환경은 학생의 504 팀에 의해 결정됩니다.

6. 아직 특수 교육 서비스 자격 대상이 아닌 학생을 위한 절차

IDEA 2004에 따라 장애인으로 식별되지 않고 Charter School의 징계 절차를 위반한 학생은, 행동이 발생하기 전에 해당 학생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Charter School이 알고 있었던 경우에 한해 이 절차에 따라 부여된 절차적 보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Charter School은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이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a. 학부모/보호자가 서면으로, 또는 학부모/보호자가 서면 진술을 할 수 없거나 서면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가 있는 경우 Charter School 감독관 또는 행정실 직원, 또는 아동의 교사 중 한 명에게 구두로 학생에게 특수 교육이나 관련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b. 학부모가 자녀의 평가를 요청했습니다.
c. 아동의 교사 또는 기타 Charter School 직원이, 아동이 보여주는 행동 패턴에 대해 통합교육 관리자 또는 다른 Charter School 감독관인 직원에게 구체적인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Charter School이 위에 설명된 3가지 상황 중 하나에서 학생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을 경우, 학생은 가만히 있을 권리를 포함하여 IDEA 2004 자격 대상 장애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일체의 보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Charter School에게 학생의 장애에 대한 지식에 대한 근거가 없을 경우, 제안된 징계를 진행합니다. Charter School은 학부모/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신속 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러나 학생은 평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 Charter School이 결정한 교육 배치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Charter School은 학부모가 평가를 허용하지 않았거나, 서비스를 거부했거나, 학생이 평가를 받았고 자격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되었을 경우, 학생에게 장애가 있다고 알고 있었다고 간주되지 않습니다.

G. 식별, 평가, 조정 및 배치에 대한 학부모/학생의 권리

다음은 연방법에 의해 장애 학생에게 부여된 권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법의 목적은 자녀에 대한 결정에 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러한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권리를 고지하는 것입니다. 추후에 참조할 수 있도록 이 설명을 보관하십시오. 귀하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1. 자녀가 장애를 유발하는 질환을 이유로 한 차별 없이 공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혜택을 받게 함.
2. Charter School이 연방법에 따른 귀하의 권리에 대해 조언하게 함.
3. 504항의 자녀의 식별, 평가 및/또는 배치에 관한 통지를 받음.
4. 자녀가 FAPE를 받도록 함. 여기에는 적절한 최대 범위까지 비장애 학생과 함께 교육을 받을 권리가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또한 자녀가 학교 및 학교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허용하기 위해 Charter School이 합리적인 조정을 하게 할 권리가 포함됩니다.
5. 자녀가 시설에서 교육을 받고 비장애 학생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등한 서비스를 받게 함.
6. 자녀가 장애인 교육 개선법(IDEA 2004)에 따라 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자녀가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게 함.
7. 학생, 평가 데이터 및 일체의 배치 옵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팀이 평가, 교육적 추천 및 배치 결정을 개발하게 함. 여기에는 학생의 최초 배치 전과 배치의 후속적인 중대한 모든 변경 전의 평가에 대한 권리가 포함됩니다.
8. 자녀가 Charter School에서 제공하는 비학업 및 과외 활동에 참여할 동일한 기회를 갖게 함.
9. 자녀의 504항 식별, 평가, 교육 프로그램 및 배치에 관한 결정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상세 확인함.
10. 비용으로 인해 기록에 대한 접근이 곤란하지 않은 한 합리적인 비용으로 교육 기록의 사본을 얻음.
11. 자녀의 기록 관련 설명 및 해석에 대한 합당한 요청에 대해 Charter School의 응답을 받음.
12. 자녀의 교육 기록이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자녀의 개인 정보 보호 권리를 침해한다고 믿을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자녀의 교육 기록 수정을 요청함. Charter School이 이 수정 요청을 거부할 경우, Charter School은 합리적인 시간 내에 귀하에게 통지하고 공정한 청문회에 대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조언을 제공합니다.
13. 위에 개략적으로 설명된 Charter School의 504항 조정 고충 및 청문회 절차에 따라 조정을 요청하거나 고충을 제기함.
14. 504항 식별, 평가 또는 자녀 배치와 관련하여 공정한 청문회를 요청함. 귀하와 학생은 청문회에 참여하고 귀하를 대리하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15. Charter School의 공통 고발 처리 정책 및 절차에 따라 공식 고발을 접수함. Charter School의 공통 고발 처리 정책 및 절차 사본이 필요할 경우, 교장에게 요청하십시오.
16. 미국 교육부에 공식 고발을 접수함.

Office for Civil Rights, U.S. Department of Education(미국 교육부 민권담당부서)
San Francisco Office

50 United Nations Plaza
San Francisco, CA 94102
(415) 486-5555 전화
(415) 486-5570 FAX
이메일: OCR.SanFrancisco@ed.gov

17. 이러한 일체의 권리를 행사한 것에 대해 Charter School로부터 어떠한 보복도 받지 않습니다.

이 문서에 포함된 정보에 대한 모든 질문이 있을 시, 아래에 등재된 504 조정관에게 연락하십시오.

Rise Kohyang Elementary School
Maiah Brim, School Counselor (학교 상담사)
600 S. La Fayette Park Pl, Los Angeles, CA 90057
mbrim@brightstarschools.org
(213) 224-8900

Rise Kohyang Middle School
Albert Beltran, Assistant Principal of Culture (문화 교감)
3020 Wilshire Blvd Suite #250, Los Angeles, CA 90010
abeltran@brightstarschools.org
(424) 789-8338

Rise Kohyang High School
Allen Andrews, Assistant Principal of Instruction (교육 교감)
600 S. La Fayette Park Pl, Los Angeles, CA 90057
(323) 284-2553
aandrews@brightstarschools.org

Stella Elementary Charter Academy
MiguelAngel Espinoza, Assistant Principal of Culture (문화 교감)
4196 Marlton Ave, Los Angeles, CA 90016
(213) 340-6700
mespinoza@brightstarschools.org

Stella Middle Charter Academy
Joseph González, Counselor (상담사)
4301 W Martin Luther King Jr Blvd, Los Angeles, CA 90008
(323) 406-7155
jlgonzalez@brightstarschools.org

Stella High Charter Academy
Jesus Ramirez, Assistant Principal of Culture (문화 교감)
1600 W Imperial Hwy, Los Angeles, CA 90047
(424) 789-8337

jrramirez@brightstarschools.org

Valor Academy Elementary School
Lourena Uribe 및 Melissa Ignacio, Counselors (상담사)
8755 Woodman Ave, Arleta, CA 91331
(818) 217-2733
luribe@brightstarschools.org
mignacio@brightstarschools.org

Valor Academy Middle School
Asma Ali, Assistant Principal of Culture (문화 교감)
9034 Burnet Ave, North Hills, CA 91343
(818) 830-1700 ext. 8003
aali@brightstarschools.org

Valor Academy High School
Tisha Bernard, Dean of Student and Family Services(학생 및 가족 서비스 학장)
9356 Lemona Ave, North Hills, CA 91343
(818) 934-8910
tbernard@brightstarschools.org

청소년 자살 예방 정책

Bright Star Schools("Charter School") 위원회는 자살이 청소년의 주요 사망 원인이며 훨씬 더 많은 청소년이 자살을 고려하고(고등학생의 17% 이상) 자살을 시도한다는(고등학생의 8% 이상)(질병통제예방센터, 2015)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자살 및 자살 충동의 가능성은 본교 교직원의 경계를 기울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결과로, 본교는 자살 충동, 시도 및 사망을 방지하기 위해 알맞고 시기적절한 대응을 제공할 윤리적 및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학생들의 자살 충동을 최소화하는 안전하고 양육적인 캠퍼스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노력해야 합니다.

학생의 건강과 안전, 복지를 보호하는 것이 Charter School의 의무임을 인지하고 있기에, 이 정책은 자살 시도, 사망, 그리고 자살 시도 및 상실의 영향을 받는 학생, 교직원 및 가족을 위한 적절한 지원을 비롯하여 자살과 관련된 기타 외상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학생의 정서적 건강은 학교 출석과 교육적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 정책은 학생의 정서적 및 행동적 건강을 지원하는 다른 정책과 결합되어야 합니다.

교육법 215항을 준수하여, 이 정책은 자살 예방에 대한 연구 및 모범 사례를 기반으로 하며, 자살 예방 활동이 자살 위험을 감소시키고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을 늘리며 자살 위험이 있는 자를 식별하고 자살 행동을 감소시킨다는 이해 하에 채택되었습니다. 경험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자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누군가의 마음에 생각을 심어줄" 수 있다는 일반적인 믿음에 반대됩니다. 자살 행동 및 학교와 가족에게 끼치는 그 영향을 줄이기 위한 시도 차원에서, 학생 및 가족 서비스 담당 교감과 각 학교 현장 교장은 자살 예방, 개입 및 사후 개입, 그리고 자살 충동과 행동에 종종 관련된 정신 건강 문제의 식별을 위한 전략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략에는 대체 교사, 자원봉사자, 확장 학습 직원(방과후) 및 건널목 안내자, 교사 및 코치와 같이 학생들과 정기적인 접촉을 하는 기타 개인을 포함하여, 학생과 정기적으로 상호작용하거나 자살의 위험 요소 및 경고 징후를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모든 직업 범주의 모든 학교 직원을 위한 전문성 개발이 포함됩니다. 학생 및 가족 서비스 담당 교감과 감독관의 자살 예방 연락 창구를 통해, Medi-Cal 수혜자인 학생을 대신하여 정신 건강 또는 관련 서비스를 위한 전문가 소개가 이루어진 경우 카운티 정신 건강 플랜과 적절한 조정 및 상담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학생 및 가족 서비스 담당 교감은 다음을 포함하는 예방 전략 및 개입 절차를 개발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자살 예방을 위한 종합 전략 계획

학생 및 가족 서비스 담당 교감은 학교에서 고용한 정신 건강 전문가(예: 학교 상담사,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간호사), 행정관, 기타 학교 교직원, 학부모/보호자/돌봄 제공자, 학생, 지역 보건 기관 및 전문가, 카운티 정신 건강 계획, 법 집행 기관, 그리고 자살 예방 및 개입을 위한 Charter School의 전략을 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하는 지역 사회 조직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Charter School은 추가 자원을 식별하기 위하여 지역 정부 기관, 지역 사회 기반 조직 및 기타 지역 사회 지원과 반드시 협력해야 합니다.

Bright Star Schools는 다음과 같은 지역 사회 지원을 식별한 바 있으며 계속해서 협력할 것입니다.

Lenore Pallares, LCSW PPSC Mental Health Lead, CARE Team
Los Angeles Unified School District
Charter Operated Programs & School Mental Health
333 S. Beaudry Avenue, 17th Floor, Cubicle: 17-130-16 Los Angeles, CA 90017
lpallare@lausd.net

Didi Hirsch Mental Health Services(디디 허쉬 정신 건강 서비스)
Rick Mogil, Program Director(프로그램 감독관), Suicide Bereavement Services Didi Hirsch Mental Health Services(자살로 인한 상실 서비스 디디 허쉬 정신 건강 서비스)
10277 West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67
rmogil@didihirsch.org

Phoenix House
11600 Eldridge Avenue
Lake View Terrace, CA 91342
(818) 686-3011

Matthew Silverman Memorial Foundation(매튜 실버맨 기념 재단)
Candace Yoder, Principal(교장)
324 S. Beverly Dr. #411 Beverly Hills, CA 90212
사무실 (424) 293-8000
candace@mattsfoundation.org

자살 예방에 관한 정책이 적절하게 채택, 시행 및 업데이트되도록 하기 위하여, Charter School은 Charter School의 자살 예방 연락 창구 역할을 할 개인(또는 팀)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에 더하여, 각 학교는 자살 예방 연락 창구 역할을 할 최소 한 명의 교직원을 지정하고 특정 캠퍼스에서 자살 예방 활동을 조정 및 시행해야 합니다. 교장 및 자살 예방 연락 담당자는 Medi-Cal 수혜자인

학생을 대신하여 정신 건강 또는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전문가 소개가 이루어진 경우 카운티 정신 건강 플랜과 적절한 조정 및 협의를 보장해야 합니다. 정책은 학교 및 지역 사회 이해 관계자, 학교에서 고용한 정신 건강 전문가, 카운티 정신 건강 계획 및 자살 예방 전문가와 협의하여 개발되어야 하며, 최소한 자살 예방, 개입 및 사후 개입과 관련된 절차를 다루어야 합니다. 이 정책은 최소 매년, 앞서 언급한 지역 사회 이해 관계자와 함께 검토 및 수정해야 합니다.

예방책

자살 예방에 대한 메시지

자살에 대한 메시지는 자살 충동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결과적으로 Bright Star Schools는 제휴자와 함께 자살에 대한 안전한 메시지 전달을 위한 모범 사례에 일치하도록 인식 관련 노력에 활용된 모든 자료와 자원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왔으며 계속 검토할 것입니다. 또한 Bright Star Schools는 자살에 대한 모든 자료와 메시지가 연령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살 예방 훈련 및 교육

Bright Star Schools는 제휴자와 더불어, 사용 가능한 교직원 교육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교직원 교육을 통해 자살 예방의 정신 건강 모델을 촉진하도록 보장하며, 자살을 설명하기 위해 스트레스 모델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교육은 교내의 모든 교직원 및 기타 성인(대리 및 임시 교직원, 자원봉사자, 인턴, 교사, 코치 및 확장 학습 교직원 포함)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교육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최소한 매년, 모든 직원은 자살, 자살 예방, 개입, 전문가 소개 및 사후 개입의 위험 요소 및 경고 신호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모든 자살 예방 교육은 학생 및 가족 서비스 담당 교감 및/또는 자살에 대한 고급 교육을 받은 학교 고용 정신 건강 전문가(예: 학교 상담사, 심리학자 또는 사회복지사)의 지시에 따라 제공되어야 하며, 하나 이상의 카운티 및/또는 지역 사회 정신 건강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직원 교육은 이전의 전문성 개발 활동과 새로운 모범 사례를 기반으로 매년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최소한 모든 교직원은 각자의 고용 초기에 자살 예방의 핵심 구성 요소(자살 위험 요인 및 경고 신호 식별, 예방, 개입, 전문가에의 소개 및 사후 개입)에 대한 교육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전에 고용된 직원은 안전한 학교(Safe Schools) 온라인 교육 과정을 통해 최소 1시간의 일반 자살 예방 교육에 참석해야 합니다. 일반 자살 예방 교육의 핵심 구성 요소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자살 위험 요인, 경고 신호 및 보호 요인
    - 자살 생각에 대해 학생과 대화하는 방법
    - 자살충동이 있는 청소년에게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법. 그러한 대응에는 자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과 자살 위험 평가를 위한 즉각적인 의뢰가 포함됩니다.
    - 교직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받는 동안, 평가를 위해 자살 위험이 있는 것으로 식별된 모든 학생을 즉시 전문가에게 소개(당일) 강조
    - 정신 질환과 관련된 낙인을 줄이고 조기 예방 및 개입이 자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음을 강조
    - 자살 생각, 시도 또는 사망의 횡행 또는 발생의 모든 패턴이나 경향을 찾기 위하여 매년 데이터를 검토합니다. Bright Star Schools 학생 및 학부모 설문 조사의 데이터도 분석하여 학교 분위기에서 부족한 부분을 식별하고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학교 분위기, 건강 및 학습 설문 조사(Cal-SCHLS)의 데이터도 분석하여 학교 분위기에서 부족한 부분을 식별하고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해야 합니다. Cal-SCHLS 웹사이트인 http://cal-schls.wested.org/를 참조하십시오.

- 학교에서 자살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학생 집단 및 이용 가능한 연구에 관한 정보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그룹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i. 자살의 영향을 받은 청소년.
  ii. 자살을 생각하거나 시도한 이력이 있는 청소년.
  iii. 장애, 정신 질환 또는 약물 남용 장애가 있는 청소년.
  iv.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또는 혼란을 겪는 청소년.
  v. 노숙을 겪고 있거나 위탁 보호 등의 집 밖 환경에 있는 청소년.
  vi. 트라우마적 경험으로 고통받는 청소년.

자살 예방의 핵심 구성 요소에 대한 초기 오리엔테이션에 더하여, 모든 교직원을 위한 지속적인 연례 교직원 전문성 개발에는 다음의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정서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외상 스트레스의 영향
- 자살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
- Charter School 및 지역 사회 자살 예방 자원
- 자살에 대한 적절한 메시지(정확한 용어, 안전한 메시지 지침)
- 자살과 관련된 요인(위험 요인, 경고 신호, 보호 요인)
- 자살 위험이 있는 청소년을 식별하는 방법
- 정서적 고통을 보이거나 자살하려는 청소년과 상호작용하는 적절한 방법. 특히, 자살에 대한 자신의 생각에 대해 학생과 대화하는 방법 및 (Charter School 지침에 따라) 그러한 생각에 대응하는 방법, Charter School 지침에 따라 학생과 자살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하고 적절하게 대응 및 지원하는 방법
- 자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Charter School에서 승인한 절차(다단계 지원 및 전문가에게의 소개 시스템 포함). 해당 절차는 자살 위험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자살 충동을 느끼는 학생을 지속적으로 감독해야 함을 강조해야 합니다
- 자살 행동의 여파에 대응하기 위하여 Charter School에서 승인한 절차(자살 행동 사후 개입)
- 자살 발생 후 대응(자살 사후 개입)
- 청소년 자살 예방 관련 자원
- 낙인 감소, 조기 예방 및 개입이 자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사실 강조
- 자살 위험이 있는 것으로 식별된 모든 학생은 교직원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동안 즉시(당일) 평가를 받아야 함을 강조
- 전문성 개발에는 Charter School에서 자살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학생 집단 및 이용 가능한 연구에 관한 추가 정보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그룹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 자살의 영향을 받은 청소년
  - 자살을 생각하거나 시도한 이력이 있는 청소년
  - 장애, 정신 질환 또는 약물 남용 장애가 있는 청소년
  -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또는 혼란을 겪는 청소년
  - 노숙을 겪고 있거나 위탁 보호 등의 집 밖 환경에 있는 청소년
  - 트라우마적 경험으로 고통받는 청소년

직원 자격 및 서비스 범위

Bright Star School의 직원은 반드시 자격 증명서나 면허의 승인 및 범위 내에서만 행동해야 합니다. 학교 전문가는 자살 위험 요소와 경고 신호를 식별하고 자살 행동의 즉각적인 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자살 생각에 대한 치료는 일반적으로 학교 환경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또한, 자살 충동과 관련된 정신 건강 문제를 치료하려면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정신 건강 자원이 필요합니다.

전문 교직원 교육(평가)

Bright Star Schools에 고용된 정신 건강 전문가(학교 상담사,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및 간호사)에게는 자살 위험 평가 및 위기 개입에 대한 추가 전문성 개발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학부모, 보호자, 돌봄 제공자의 참여 및 교육

- 가능한 한 학부모/보호자/돌봄 제공자가 모든 자살 예방 노력에 참여해야 합니다. Charter School은 최소한 Bright Star School의 청소년 자살 예방 정책을 학부모/보호자/돌봄 제공자와 공유해야 합니다.
- 이 청소년 자살 예방 정책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각 Bright Star Schools의 웹페이지에 눈에 띄게 표시되어야 하며 학생 및 가족 핸드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학부모/보호자/돌봄 제공자는 이 정책의 개발 및 시행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도록 초대되어야 합니다.
- 모든 학부모/보호자/돌봄 제공자는 다음을 다루는 자살 예방 교육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자살 위험 요인, 경고 신호 및 보호 요인
    - 자살 생각에 대해 학생과 대화하는 방법
    - 자살충동이 있는 학생에게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법. 그러한 응답에는 자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과 즉각적인 자살 위험 평가를 위한 전문가 소개가 포함됩니다

학생 참여 및 교육

자살에 대한 메시지는 자살 충동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제휴자와 더불어 Bright Star Schools는 자살 관련 대응 메시지의 모범 사례에 맞는 인식 노력에 활용되는, 이용 가능한 학생 커리큘럼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자살 예방의 정신 건강 모델을 촉진하도록 보장하며, 자살을 설명하기 위해 스트레스 모델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자살 예방 전략에는 Charter School에 대한 학생들의 유대감을 높이고, 배려심 깊은 교직원과 학생들 간의 조화로운 상호 관계를 특징으로 하는 긍정적인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Bright Star School의 교육 및 학생 지원 프로그램은 문제 해결 기술, 대처 기술 및 회복탄력성의 발달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학생의 건강한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을 촉진합니다.

Bright Star School의 교육 커리큘럼에는 적절하거나 필요한 경우 자살 예방에 대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Charter School의 교육 커리큘럼에 자살 예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학생의 학년과 연령을 고려하여 어린 학생들의 필요에 민감한 방식으로 전달 및 논의해야 합니다. 교육은 자살을 설명하기 위해 스트레스 모델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자격 증명서나 면허의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적절하게 훈련된 개인의 감독하에, 그리고 카운티 및 지역 사회 정신 건강 기관과 상담한 후, 학생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정신 건강 문제 및 정서적 고통의 경고 신호에 대해 발달적으로 적절한 학생 중심 교육을 받음. 교육 내용은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다루는 대처 전략
    - 자신과 타인의 자살 및 정신 건강 문제와 관련된 행동(경고 신호) 및 삶의 문제(위험 요소)를 인식하는 방법
    - 학교 기반 및 지역 사회 자원에 참여하고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포함한, 자신과 타인을 위한 도움 요청 전략

    - 정신 질환과 관련된 낙인을 줄이는 것과 조기 예방 및 개입이 자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사실 강조
- Charter School의 자살 예방, 개입 및 전문가 소개 절차에 관해 발달적으로 적절한 지침을 받음.

학생 중심의 자살 예방 교육은 교실 커리큘럼(예: 보건 수업, 오리엔테이션 수업, 과학 및 체육)에 통합될 수 있습니다.

Bright Star Schools는 정신 건강 및 자살 예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프로그램 및/또는 활동(예: 정신 건강 인식 주간, 동료 상담 프로그램, 캠퍼스 고등학교 클럽의 마음의 변화 가져오기)의 마련과 시행을 지원할 것입니다.

학생증

Charter School은 모든 학생증에 전국 자살 예방 라이프라인(1-800-273-8255) 및 전국 가정 폭력 핫라인(1-800-799-7233)의 전화번호를 포함할 것입니다. Charter School은 HOME에 741741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접근할 수 있는 위기 문자메시지 연락처, 그리고 모든 학생증에 있는 지역 자살 예방 핫라인 번호도 포함할 것입니다.

개입 및 비상 절차

다음 세 명의 Bright Star Schools 직원이 1차 및 2차 자살 예방 연락 담당자로 지정됩니다.

1. 1차: Marni Parsons, Vice President of Student and Family Services(학생 및 가족 서비스 교감)
2. 2차: Stephanie Adams Mendez, School Psychologist(학교 심리학자)
3. 2차: Mina Hyman, School Psychologist(학교 심리학자)

교직원이 학생의 자살 의도를 의심하거나 알 때마다, 즉시 지정 자살 예방 담당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1차 자살 예방 연락 담당자를 활용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은 즉시 2차 자살 예방 연락 담당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자살 예방 연락 담당자는 교장 또는 다른 학교 행정관, 학교 심리학자 또는 학교 상담사에게 즉시 통지해야 하며, 학교 상담사는 적절할 시, 그리고 학생의 최선의 이익에 도움이 될 시, 가능한 한 빨리 학생의 학부모/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학부모/보호자/돌봄 제공자에 대한 통지 결정은 공식 초기 평가를 따라 학생이 학부모 통지로 인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살 예방 연락 담당자는 또한 학생에게 Charter School이나 지역 사회의 정신 건강 자원을 소개해야 합니다.

학생이 급박한 위험에 처한 경우(총에 접근할 수 있거나 옥상에 있거나 기타 위험한 상황에 있는 경우) 911에 전화해야 합니다.

교내 자살 시도 행동 계획

캠퍼스 또는 학교 관련 활동에서 자살 시도나 위협이 보고될 시, 자살 예방 연락 담당자는 최소한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1.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적절하게 수행하여 학생의 신체적 안전을 보장함.
    a. 자살 시도가 발생한 경우 즉각적인 치료를 확보함.
    b. 자살 행위가 적극적으로 위협받고 있을 경우 법 집행 기관 및/또는 기타 긴급 지원을 확보함.
    c. 학부모/보호자 및/또는 적절한 지원 대리인 또는 기관에 연락하여 개입할

기회가 있을 때까지 학생을 지속적으로 성인의 감독하에 유지함.
   d. 침착함을 유지하고, 학생이 압도되고 혼란스럽고 감정적으로 괴로워한다는 것을 염두에 둠.
   e. 다른 모든 학생들을 인근 지역 밖으로 이동시킴.
   f. 학생을 멀리 보내거나 혼자 두지 않으며, 심지어 화장실에도 보내지 않음.
   g. 학생에게 편안함을 제공하고, 학생의 말을 경청하고, 침묵의 순간에 편안하게 있게끔 합니다.
   h. 개인 정보 보호와 도움을 약속하지만 기밀을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2. 가능한 한 빨리 사건을 서면으로 문서화하십시오.
3. 필요한 대로 적절한 서비스를 위한 전문가 소개를 제공하기 위해 시기적절한 방식으로 학부모/보호자 및 학생과 후속 연락을 취하십시오. 만약 전문가 소개가 Medi-Cal 수혜자인 학생을 대신하여 정신 건강 또는 관련 서비스를 위해 이루어졌다면, 카운티 정신 건강 계획과 상담합니다.
4. 소개가 이루어진 후, Bright Star Schools는 후속 치료를 받았는지 학부모/보호자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학부모/보호자는 학생을 돌보고 있다는 문서를 제공하도록 요청받게 됩니다. 학부모/보호자가 자살 위험이 있거나 정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식별된 학생의 치료를 거부하거나 방치하는 경우, 자살 예방 연락 담당자는 학부모와 만나 치료의 장벽(예: 문화적 낙인, 재정적 문제)을 식별하고, 상황을 바로잡고 돌봄에 대한 이해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후속 치료가 여전히 제공되지 않을 경우, Bright Star Schools는 아동 보호 서비스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5. Bright Star Schools의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학생과 교직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지원하기 위해, 상담사 또는 기타 적절한 직원에 대한 연락을 제공함.
6. 사건에 대응하는 모든 사람에게 보고할 기회를 제공하고, 사용된 전략의 효율성을 평가하며, 향후 조치에 대한 권장 사항을 제시함.

Bright Star Schools 캠퍼스에서 자살이 발생하거나 시도될 경우, 자살 예방 연락 담당자는 Bright Star School의 안전 계획에 포함된 위기 개입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학생 기록 정보의 기밀성을 관장하는 법률에 따라 밝혀질 수 있는 사실들에 대해 교장 또는 피지명인 및 학생의 학부모/보호자와의 상담 후, 감독관 또는 피지명인은 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직원에게 필요한 대로 지역 사회 기관에 대한 정보와 상담 및/또는 전문가 소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Bright Star 학교 직원은 학생들과 자살 또는 자살 시도에 대해 가장 잘 논의할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하는 데 있어 Bright Star 학교 상담사 또는 기타 정신 건강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외 자살 시도 행동 계획

학생의 자살 시도가 Bright Star Schools 부지의 외부에서 발생한 경우, Charter School은 학생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학생에게 개입, 지원 및 보호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한 기밀 기록을 꼭 유지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를 시행해야 합니다.

- 학부모/보호자/돌봄 제공자에게 연락하여 가족 지원을 제공합니다
- 교사, 교직원 및 학생 사이에 널리 퍼진 소문을 최소화하면서 Charter School이 이러한 시도에 어떻게 대응하기를 원하는지 가족과 논의합니다
- 위기에 관한 사실이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해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부모/보호자/돌봄 제공자로부터 허가를 얻습니다
- 자살 예방 연락 담당자는 매체로부터의 요청을 처리합니다
- 영향을 받는 학생들에게 돌봄을 제공하고 적절한 지원을 결정합니다
- 학생과 학부모/보호자/돌봄 제공자에게 학교로의 재통합 단계를 제공합니다. 재통합에는 일체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대화하기 위해 학부모/보호자로부터 서면 동의서를 받는 것, 상황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일체의 특정 요청에 대해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와 상의하는 것, 학생의 교사들에게 가능한 결석일에 대해 고지하는 것, 보충 작업을 위한 편의 제공 허용(과제를 놓친 것이 학생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음을 이해함), 학생의

행동과 기분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학생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유지하는 적절한 교직원, 그리고 학부모/보호자와 협력하여 학생을 사후 관리 계획에 참여시키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신 건강 위기 동안 또는 이후의 학생 지원

학생들은 교육 프로그램 및 Bright Star Schools 활동을 통해, 정서적 고통이나 자살 충동을 겪고 있을 때 또는 다른 학생의 정서적 고통, 자살 충동 또는 시도를 의심하거나 알고 있을 때, 교사, 관리자, 다른 Bright Star Schools 행정관, 심리학자, Bright Star Schools 상담사, 자살 예방 연락 담당자 또는 기타 성인에게 알리도록 권장되어야 합니다. Bright Star School 교직원은 각 보고서를 진지하고 침착하며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교직원은 학생에 대해 잣대를 재지 말아야 하며,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자원에 대해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와 논의해야 합니다.

자살 후 대처(사후 중재)

학교 지역 사회 내 자살로 인한 사망(학생이든 교직원이든)은 학생과 교직원에게 충격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극이 발생할 시에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Bright Star Schools의 자살 예방 연락 담당자는 각 학교 현장에서 일반 위기 대응 계획의 일환으로 자살 사망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 계획을 채택하도록 확실히 처리해야 합니다. 자살로 인한 사망 응답 대처 계획(자살 사후 중재 응답 계획)은 즉각적 및 장기적 단계와 목표를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 자살로 인한 사망 응답 대처 계획:
  - 학교 현장 행정관이 사망 및 원인 확인
  - 학교 현장 행정관이 24시간 이내에 고인의 가족에게 연락할 것입니다.
  - 자살로 인한 사망 응답 대처 계획의 제정
  - 모든 직원에게 통지합니다(이상적으로는 이메일 또는 단체 통지가 아닌 직접 대면이나 전화를 통해)
- 다음을 포함하도록 전 직원 회의를 마련합니다.
  - 직원에게 자살에 대한 통지(아직 수행하지 않은 경우)
  - 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정서적 지원 및 자원
  - 자살로 인한 사망 및 지원 서비스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학생에게 통지(이것이 행정실에서 결정한 프로토콜일 경우)
  - 관련성이 있고 공개할 권한이 있는 정보를 공유합니다
- 다음과 관련하여 학생의 필요에 응답할 교직원을 준비합니다.
  - 지원/평가를 위해 학생을 위탁하기 위한 프로토콜 검토
  - 교직원이 학생들에게 알릴 요점
  -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캠퍼스 안팎)
- 자살로 인해 상당한 영향을 받는 학생과 모방 행동의 위험이 있는 다른 학생 식별
- 자살의 영향을 받았지만 모방 행동의 위험이 없는 학생 식별
- 자살로 인한 사망에 대해 더 큰 학교 지역 사회와 소통
- 가족 및 학교 지역 사회를 위한 장례 준비 고려
- 정중하고 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추모 요청에 응답. 응답은 사려 깊은 방식으로 전달되어야 하며 다른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함
- 필요할 경우 매체 대변인 식별
- 소셜 미디어 매체 활용 및 대응:
  - 학생들이 자살로 인한 사망에 대응하는 데 어떤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지 식별
  - 소셜 미디어 매체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교직원 및 학생 식별/교육
- 장기적인 자살 사후 중재 대응을 포함:
  - 중요한 날짜(즉, 기일, 고인의 생일, 졸업 또는 기타 중요한 행사) 및 이러한 날짜를 다룰 방법을 고려
  - 고인의 형제자매, 가까운 친구, 교사 및/또는 학생 지원

- 장기적인 추모식 및 그것이 정서적으로 연약하고 자살 위험이 있는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고려

자원

자살 예방 계획

정신 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을 위한 K-12 툴킷은 학교가 AB 2246, 학생 자살 예방 정책을 준수하고 시행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툴킷에는 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증진하고, 정신 건강 위기에 개입하고, 자살로 누군가를 잃은 후 학교 지역 사회 구성원을 지원하는 학교를 위한 자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학교용 툴킷에 대한 추가 정보는 Heard Alliance 웹사이트인 http://www.heardalliance.org/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공개 메시지, 매체 및 예방

- 자살 예방에 대한 공개 메시지에 대한 정보는 National Action Alliance for Suicide Prevention 웹사이트인 http://suicidepreventionmessaging.actionallianceforsuicideprevention.org/를 참조하십시오.
- 자살 예방에 관한 미디어 참여에 대한 정보는 Your Voice Counts 웹페이지인 http://resource-center.yourvoicecounts.org/content/making-headlines-guide-engaging-media-suicide-prevention-california-0을 참조하십시오.
- 자살 예방을 위해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는 Your Voice Counts 웹페이지인 http://resource-center.yourvoicecounts.org/content/how-use-social-media를 참조하십시오.

자살 예방 교육 및 훈련

- 청소년 정신 건강 응급처치(YMHFA)는 정신 질환의 징후를 보이거나 위기에 처한 젊은이에게 초기 도움을 제공하고 적절한 전문가, 동료, 사회적 또는 자가 도움 치료와 연결하는 5단계 행동 계획을 가르칩니다. YMHFA는 정신 건강 관련 이력이 없는 청소년을 다루는 성인을 위한 8시간 대화식 교육입니다. 정신 건강 응급처치 웹페이지인 https://www.mentalhealthfirstaid.org/cs/take-a-course/course-types/youth/를 참조하십시오.
- 무료 YMHFA 교육은 CDE 정신 건강 웹페이지인 http://www.cde.ca.gov/ls/cg/mh/projectcalwell.asp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질문, 설득, 전문가에게 소개(QPR)는 온라인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게이트키퍼 교육입니다. 심폐소생술(CPR) 및 하임리히법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매년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듯이, QPR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자살 위기의 경고 신호를 인식하고 질문, 설득, 누군가를 돕도록 전문가에게 소개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QPR 웹사이트인 http://www.qprinstitute.com/을 참조하십시오.
- SafeTALK는 경험이나 훈련에 관계없이, 만 15세 이상의 모든 사람이 자살 경고 도우미가 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반나절 경보 훈련입니다. LivingWorks 웹페이지인 https://www.livingworks.net/programs/safetalk/를 참조하십시오.
- 응용 자살 중재 기술 훈련(ASIST)은 자살 응급 처치에 관한 2일 간의 대화형 워크숍입니다. ASIST는 참가자들에게 누군가가 자살에 대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때를 인식하고 그들의 즉각적인 안전을 지원할 계획을 세우기 위해 그들과 협력하도록 가르칩니다. LivingWorks 웹페이지인 https://www.livingworks.net/programs/assist/를 참조하십시오.
- Kognito At-Risk는 개인, 학교, 교육구 및 주 전체 기관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된 3가지 온라인 상호작용형 전문성 개발 모듈의 증거 기반 시리즈입니다. 여기에는 프로그램을 쉽게 배포하고 초, 중, 고등학교 수준의 성공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와 템플릿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Kognito 웹페이지인 https://www.kognito.com/products/pk12/를 참조하십시오.

전문 인력 교육

자살 위험 평가 및 관리(AMSR)는 최신 연구를 기반으로 하고 참가자가 보다 안전한 자살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안된 행동 건강 전문가를 위한 1일 교육 워크숍입니다. 자살 예방 자원 센터 웹페이지인 http://www.sprc.org/training-events/amsr을 참조하십시오.

학부모, 보호자, 돌봄 제공자 참여 및 교육

파트너로서의 학부모: 학부모를 위한 자살 예방 가이드는 자녀가 자살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우려하는 학부모/보호자/돌봄 제공자를 위한 유용한 정보가 포함된 소책자입니다. 자살 인식 교육의 소리(SAVE)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SAVE 웹페이지인 https://www.save.org/product/parents-as-partners/를 참조하십시오.

학생 참여 및 교육

- 슬픔 그 이상(More Than Sad)는 청소년 수준의 자살 예방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전국 자살 예방 자원 센터의 모범 사례 목록에 등재된 학교용 증거 기반 교육 자료입니다. 미국 자살 예방 재단 웹페이지인 https://afsp.org/our-work/education/more-than-sad/를 참조하십시오.
- 우울증에서 벗어나기(BFFD)는 청소년 우울증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고등학교 교실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된 4모듈 커리큘럼입니다. 보스턴 아동 병원 웹페이지인 http://www.childrenshospital.org/breakfree를 참조하십시오.
- 대처 및 지원 교육(CAST)은 위험에 처한 청소년을 돕기 위한 증거 기반 생활 기술 교육 및 사회적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Reconnecting Youth Inc. 웹페이지인 http://www.reconnectingyouth.com/programs/cast/를 참조하십시오.
- 학생 동원 인식 및 비극 감소(SMART)는 고등학교의 학생 주도 그룹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에게 학교의 필요에 가장 잘 맞는 캠퍼스에서 자살 예방을 시행할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합니다. SAVE 웹페이지인 https://www.save.org/what-we-do/education/smart-schools-program-2/를 참조하십시오.
- 청소년을 위한 우울증 및 자살에 대한 교육과 인식 연결하기(LEADS for Youth)는 우울증에 대한 인식과 이차 자살 예방을 연결하는, 고등학교와 교육자를 위해 고안된 학교 기반 자살 예방 커리큘럼입니다. LEADS for Youth는 학생과 교사가 우울증과 자살에 대한 지식 및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유익한 대화형 기회입니다. SAVE 웹페이지인 https://www.save.org/what-we-do/education/leads-for-youth-program/을 참조하십시오.

자살 시도 후 재입학

자살을 시도했거나 심각한 자살 위협을 한 학생을 위한 학교 재입학은 자살 시도 후 학생이 학교에 재입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내입니다. 정신 건강 회복 서비스 자원 웹페이지인 http://www.mhrsonline.org/resources/suicide%5Cattempted_suicide_resources_for_schools-9/를 참조하십시오.

사후 개입

- 자살 후: 학교용 툴킷(Toolkit for School)은 학교 지역 사회에서 자살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해 학교를 지원하는 종합적인 안내입니다. 자살 예방 리소스 센터 웹페이지인 http://www.sprc.org/comprehensive-approach/postvention을 참조하십시오.
- 자살로 인한 상실을 겪은 생존자들의 도움과 희망(Help & Hope for Survivors of Suicide Loss)은 사별 과정에서 자살로 인해 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돕기 위한 안내입니다.
- 자살 예방 리소스 센터 웹페이지인 http://www.sprc.org/resources-programs/help-hope-survivors-suicide-loss을

참조하십시오.

- 자살 예방, 개입 및 사후 개입에 대한 추가 정보는 정신 건강 회복 서비스 모델 프로토콜 웹페이지인 http://www.mhrsonline.org/resources/suicide%5Cattempted_suicide_resources_for_schools-9/를 참조하십시오.
- 학교 분위기 및 학교 안전에 대한 정보는 CDE 안전한 학교 계획 수립(CDE Safe Schools Planning) 웹페이지인 http://www.cde.ca.gov/ls/ss/vp/safeschlplanning.asp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학생 정신 건강 필요에 관한 추가 자원은 학교 안전 계획에서 학생 정신 건강 필요에 응답하는 SSPI 서신인 http://www.cde.ca.gov/nr/el/le/yr14ltr0212.asp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캠퍼스 수색 및 압수 정책

발견에 대한 성명

Bright Star Schools(“Charter School”)은 총기, 무기, 알코올, 규제 약물 또는 법률이나 Charter School 규칙 및 규정에서 금지하는 기타 밀수품의 소지를 포함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이 학생 및 Charter School 직원의 건강, 안전 및 복지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헌법은 공립학교의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고 보안이 확보된 평화로운 캠퍼스에 다닐,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질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Charter School은 합리적인 의심에 기반한 수색을 통해 학생과 학생의 재산, 학생 사용 구역 및/또는 학생 사물함의 합당한 수색과 불법, 안전하지 않거나 승인되지 않은 또는 밀수품 및 자료의 압수에 대해 요약한 정책을 채택합니다.

정의

합리적인 의심

이는 수색을 통해 학생이 법이나 Charter School 규칙 및 규정을 위반했거나 위반하고 있다는 증거가 드러날 충분한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확실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명확한 사실은 수색이 정당하다는 학교 직원의 합리적인 의심을 반드시 뒷받침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단순한 호기심, 소문 또는 직감에 근거한 수색은 수행되지 않습니다.

법률 또는 Charter School 규칙 및 규정의 위반

여기에는 불법, 미승인 또는 밀수품의 소유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불법, 미승인 또는 밀수품에는 학생이나 학교 직원의 건강이나 안전에 위험하거나 방해가 되거나 잠재적으로 방해가 되거나, Charter School 규칙 또는 규정에서 미승인된 것으로 인용된 물질이 포함됩니다.

개인 전자 기기

이는 전자 형식으로 정보를 저장, 생성 또는 전송하는 장치를 의미하며, Charter School에서 소유하거나 학생에게 대여하지 않습니다.

전자 통신

이는 유선, 무선, 전자기, 광전 또는 광학 시스템을 통한 전체 또는 부분적인 기호, 신호, 글, 이미지, 소리, 데이터 또는 지능의 전송을 의미합니다.

전자 통신 정보

이는 내용, 발신자, 수신자, 형식 또는 통신 중 임의 지점에서의 발신자나 수신자의 위치, 통신이 생성된 시간이나 날짜, IP 주소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통신에 참여하는 모든 개인 또는 개인 기기에서 오고간 또는 기기에 부속된 일체의 정보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전자 통신이나 전자 통신 서비스의 사용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통지

이 정책에 대한 서면 통지는 매 학년 초 및/또는 학년도 등록 시 학생과 학부모 및/또는 보호자에게 제공됩니다. 이 정책의 요약은 또한 학생 핸드북 및 기타 자료에 포함되어 Charter School이 학생, 학부모 및/또는 보호자, 그리고 Charter School 직원에게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Charter School은 해당될 시 이 정책과 관련하여 캠퍼스에 표지판 및/또는 기타 통지문을 게시해야 합니다.

학생에 대한 수색

Charter School 직원(예: 행정관, 직원, 교사, 학교 경찰관 및/또는 직원)은 학교 직원에게 학생이 불법 활동 또는 Charter School 규칙 및 규정 위반에 가담했거나 가담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학생의 개인 및/또는 개인 소유물(예: 가방, 지갑 등)을 합리적으로 수색할 수 있습니다. 수색이 합리적인지의 여부는 수색이 발생하는 맥락에 달려 있습니다. Charter School 직원은 정보를 제공하는 학생이나 인물의 신뢰성, 타인에 대한 위험 정도, 수색에 대한 필요성의 긴급성을 반드시 평가해야 합니다. 학생 및/또는 개인 소유물 수색은 반드시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1. **시작 당시 정당화됨**: 수색을 통해 학생이 법률 또는 Charter School 규칙을 위반했거나 위반했다는 증거가 나타날 것이라고 의심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명확한 사실은 수색이 정당하다는 Charter School 직원의 합리적인 의심을 반드시 뒷받침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단순한 호기심, 소문 또는 직감에 근거한 수색은 수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 **합리적인 범위:** 채택된 조치는 수색의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학생의 연령과 성별 및 위반의 성격에 비추어 과도하게 침해적이지 않습니다.

개인 전자 기기 조사

학생의 개인 휴대전화, 스마트폰 또는 기타 개인 전자 기기는 장치가 분실되거나 버려진 경우를 제외하고 영장, 학생의 동의 또는 정당한 긴급 상황 없이 Charter School 관계자가 수색할 수 없습니다. 비상 상황이란 누구든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상황으로, 전자 기기에 있거나 있다고 합리적으로 생각되는 정보에 접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Charter School이 기기가 분실, 도난 또는 버려졌다는 선의의 믿음이 있을 경우, Charter School은 기기 소유자를 식별, 확인 또는 연락을 시도하기 위해 전자 기기 정보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의 어떤 내용도 학생이 개인 전자기기를 사용하거나 소지하는 것이 Charter School 규칙 또는 규정을 위반할 경우, 그 내용을 조사하지 않은 채, 학생의 개인 전자기기를 압수/몰수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필수 조사 수행

이에 더하여, 학생 및/또는 개인 소지품에 대한 일체의 수색은 다음에 따라야 합니다.

1. 가능하다면 최소 1명의 다른 성인 증인이 있는 곳에서 실시함,
2. 학생의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학생이 있는 곳에서 실시함,
3. 다음을 포함하지 않는 방식으로 실시함:
    a. 수동으로 또는 도구로 학생의 인체 내 공간 수색 실시, 또는

b. 학생의 속옷, 가슴, 엉덩이 또는 생식기를 육안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학생의 의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거하거나 배열하는 행위.

4. 수색 결과로 궁극적으로 압수된 일체의 금지 품목 또는 불법 품목에 대한 서면 설명 및/또는 사진과 더불어 수색 방법을 기록하여 문서화함.

학생 사용 영역

교육 및 레크리에이션 공간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학생 사용 구역은 Charter School 자산으로 간주되며 항상 Charter School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교육 공간 및 학교의 기타 영역에 대한 주기적인 일반 검사는 Charter School 직원이 통지 없이 언제든 어떤 이유로든 실시할 수 있습니다.

탐지견 조사

캠퍼스 보안 또는 학교 경찰/자원 담당관을 포함한 Charter School 직원은 학교 시설 및 학교 부지 주변에서 동반자가 없는 소지품에 대한 불법, 미승인 또는 밀수품 검사에 훈련된 탐지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개는 해당 개의 행동을 책임지고 밀수품의 냄새를 맡을 때 신뢰성과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공식 훈련사와 반드시 동행해야 합니다. 훈련된 탐지견은 사물함, 학생 사용 구역, 차량, 몸에 소지 중이지 않은 배낭 및 기타 학생의 소지품, 그리고 학교 자산 전체에 걸친 무생물인 물건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동행자가 없는 장소의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수색을 시작하기 전에 Charter School 직원은 반드시 학교 전체적인 우려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가져야 합니다.

개가 학교 부지에 불법, 미승인 또는 밀수품이 있다고 암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의 구성 요소가 되어, 학교 직원이 학생의 동의를 확보하지 않고 해당 지역 또는 기타 무생물인 물건, 밀폐된 용기와 그 안의 물체를 수색할 수 있도록 승인합니다.

Charter School은 불법, 미승인 또는 밀수품에 대한 개별적인 합리적 의심 없이 학생의 신상을 수색하기 위해 개를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개가 학생의 신체에 대해 경고할 경우, 해당 경고는 합법적인 수색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의 구성 요소가 되며, 이어지는 수색에서는 이 문서에서 논의된 모든 관련 법률 및 정책을 따라야 합니다.

사물함

PE를 포함한 학생 사물함은 학교 자산을 소유하고 항상 Charter School의 통제 하에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사물함의 보안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학생 사물함은 불법, 미승인 물품 또는 밀수품을 보관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학생에 의한 학교 사물함 시설의 수용 및 사용은 승인된 Charter School 직원 및/또는 법 집행 기관이 그러한 사물함 시설을 수색하는 것에 학생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사물함 검사는 위에서 설명한 대로 훈련된 개를 통해 Charter School 직원 및/또는 법 집행 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불법, 미승인 물품 또는 밀수품 압수

적법하게 수행된 수색에서 불법, 미승인 물품 또는 밀수품이 발견되면 해당 물건은 최종 처분을 위해 적절한 법적 당국에 넘겨져야 합니다.

징계

Charter School 직원이나 훈련된 탐지견이 수행한 수색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수색 중 불법적이거나 미승인 물품 또는 밀수품이 발견될 경우, Charter School은 Charter School의 징계 정책 및 절차에 따라 학생(들)에게 징계(정학 및/또는 퇴학 포함)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Charter

School은 일체의 수색 및/또는 압수 결과로 불법 밀수품이 발견될 경우 법 집행 기관에 통지합니다.

비디오 감시 및 기타 녹화 장치

Charter School은 야외 공간, 출입구, 주차장, 계단, 복도, 교실, 본관, 스쿨 버스 및 기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학교 캠퍼스의 모든 공용 영역에서 비디오 감시 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Charter School은 화장실, 탈의실 등 사적인 공간에서 비디오 감시 장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비디오 감시 장치를 사용하는 Charter School의 의도와 목적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복지 및 안전을 보장하여 등교일 내내 안전하고 질서 있는 행동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Charter School은 녹음 대상인 모든 당사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사생활 관련 내용이 예상될 경우 오디오 녹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학생, 교직원, 학부모 및 기타 일반 대중도 사전 동의 없이 Charter School 캠퍼스에서 오디오 녹음을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 정책은 Charter School이 학생 성취에 필요한 수업을 녹음하거나 법률하에 달리 규정된 Charter School에서 허용하는 기타 일체의 오디오 녹음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비디오 감시 녹화는 녹화가 유지되지 않는 한, 그리고 (1) 징계 조치 또는 절차에 사용할 의도인 것, (2) 학생의 법률 위반을 보여주는 활동을 묘사하는 것, (3) 학생이 부상을 입거나, 공격을 받거나, 괴롭힘을 당하거나, 아프거나, 건강 응급 상황을 겪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 (4) 학생의 교육 기록에서 개인 식별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 아닌 한 학생 교육 기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비디오 감시 녹화는 학생의 영상이 녹화에 표시된 활동에 부수적이거나 학생이 공공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학생의 교육 기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Charter School은 가족 교육 권리 및 개인 정보 보호법("FERPA")을 포함하여 학생 기록에 대한 접근, 검토 및 공개에 관한 모든 주 및 연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법 집행 기관 및 기타 적절한 기관으로부터의, 캘리포니아 공공 기록법하의 합법적인 요청 준수가 포함됩니다. Charter School은 공개에 앞서 모든 요청의 합법성을 평가하고 FERPA하의 모든 통지 요건을 준수합니다.

체온 검사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건강 비상 사태를 고려하여, Charter School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관련 법률과 주 및 지역 보건 명령에 따라 필요 시 개인의 체온을 측정할 것입니다. Charter School은 코로나19 예방 정책 및/또는 체온 검사 요건을 설명하는 종합 학교 안전 계획을 따를 것입니다.

학생 건강 정책

Bright Star Schools("Charter School" 또는 "Charter School") 위원회는 모든 학생의 최적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Charter School은 학생들이 개인적, 학업적, 발달적 및 사회적 성공을 달성할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학년도 내내 모든 수준, 모든 환경에서 긍정적이고 안전하며 건강을 증진하는 학습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두 가지 요소인 좋은 영양 섭취와 수업 전, 수업 중, 수업 후의 신체 활동은 긍정적인 학생 결과와 강한 상관 관계가 있습니다. 반대로 과일, 채소, 유제품을 포함한 특정

식품의 섭취가 부족할 경우 학생들의 성적이 낮아집니다. 또한, 등하교, 쉬는 시간, 신체 활동 휴식, 수준 높은 체육 교육 및 과외 활동을 통해 신체 활동이 활발한 학생은 학업 성취도가 더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절한 수분 공급이 인지 능력 향상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 정책은 상업적인 방해를 최소화하면서 모든 학생들이 등교일 내내 건강한 식생활과 신체 활동 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Charter School의 접근 방식의 개요를 설명합니다. 특히, 이 정책은 다음을 보장하기 위한 목표와 절차를 구축합니다.

- Charter School의 학생들은 연방 및 주 영양 기준에 따라 학교 급식 및 Charter School 캠퍼스 전역에서 제공되는 기타 음식을 통해 등교일 내내 건강에 좋은 음식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 학생들은 평생 건강한 식습관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양질의 영양 교육을 받습니다.
- 학생들은 수업 전, 중, 후에 신체 활동을 할 기회가 있습니다.
- Charter School은 영양, 신체 활동 촉진 및 학생의 건강을 증진하는 기타 활동에 참여합니다.
- Charter School 교직원은 학교 안팎에서 건강한 영양 섭취와 신체 활동 행동을 실천하도록 권장되고 지원을 받습니다.
- 지역 사회는 학생과 교직원이 평생 건강한 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Charter School과 기타 환경 간의 연속성을 만드는 Charter School의 작업을 지원하는 데 참여합니다.
- Charter School은 이 정책, 정책에서 구축된 목표 및 목적에 대한 관리, 감독, 시행, 소통 및 모니터링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지합니다.

이 정책은 Charter School의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적용됩니다. 건강 정책을 감독하는 지정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Sebastian Valdes, Vice President of Operations (운영 교감)
물리적 주소: 600 S. La Fayette Park Pl, Los Angeles, CA 90057
우편 주소: 5101 Santa Monica Blvd Ste 8, PMB 93, Los Angeles, CA 90029
svaldes@brightstarschools.org
323-954-9957

시행, 모니터링, 책임 및 지역 사회 참여

시행 계획

Charter School은 아래에 설명된 단계를 통해 Charter School이 이 정책의 구현과 관련된 법적 의무를 충족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 정책 및 진행 보고서는 본교 웹사이트인 www.brightstarschools.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록 보관

Charter School은 이 정책의 요건 준수를 문서화하기 위해 메인 사무실에 기록을 보관합니다. 이 위치에서 유지 관리되는 문서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서면 정책.
- 정책이 대중에게 공개되었음을 입증하는 문서.
- 연간 공시 요건 및 지역 사회 참여 요건 준수를 입증하는 문서.
- 3년 단위 정책 평가 문서.
- 정책 실행에 대한 가장 최근의 평가를 입증하는 문서를 대중이 확인 가능함을 입증하는 문서.

정책에 대한 연례 통지

Charter School은 매년 가족과 대중에게 내용, 정책 업데이트 및 시행 상태를 포함한 이 정책 관련 기본 정보를 적극적으로 고지할 것입니다. Charter School은 Charter School 웹사이트 및/또는 Charter School 전체 의사소통을 통해 이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Charter School은 Charter School 영양 환경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정책 시행과 관련된 Charter School의 행사 또는 활동에 대한 요약이 포함됩니다.

3년 단위 진행 상황 평가

최소 3년에 한 번, Charter School은 건강 정책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여 정책의 시행을 평가하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Charter School이 이 정책을 준수하는 정도,
- Charter School의 정책이 모범적인 건강 정책과 비교되는 정도, 그리고
- Charter School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

3년 단위 평가 및 연락처 정보를 관리하는 직책/교직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Sebastian Valdes, Vice President of Operations(운영 교감)
물리적 주소: 600 S. La Fayette Park Pl, Los Angeles, CA 90057
우편 주소: 5101 Santa Monica Blvd Ste 8, PMB 93, Los Angeles, CA 90029
svaldes@brightstarschools.org
323-954-9957

Charter School은 3년 단위 진행 보고서의 활용 가능성을 가정/가족에게 적극적으로 고지할 것입니다.

정책 수정 및 업데이트

Charter School은 연례 Charter School 건강 지수 및 3년 단위 평가 결과 및/또는 Charter School의 우선순위가 변경됨에 따라, 지역 사회에 변화가 필요할 경우, 건강 목표가 달성되었을 경우, 신규 건강 과학, 정보, 기술이 등장할 경우, 신규 연방, 주 지침 또는 표준이 발행될 경우 이 정책을 적절하게 업데이트하거나 수정할 것입니다. 이 정책은 3년마다 평가된 후, 최소한 3년마다 설명된 대로 평가 및 업데이트됩니다.

지역 사회 참여, 봉사 및 소통

Charter School은 지역 사회 의견에 응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으며, 이는 정책에 대한 인지에서 시작됩니다. Charter School은 Charter School을 대표하는 방식으로 활발하게 소통할 것이며 여러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 정책의 개발, 시행 및 주기적 검토와 업데이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Charter School은 또한 학부모들에게 학교 급식 및 학교 급식 표준 준수, 아동 영양 프로그램의 활용 가능성 및 적용 방법, Charter School 영양 표준의 스마트 스낵스(Smart Snacks)에 대한 설명 및 준수에 대해 개선된 사항을 고지할 것입니다.

Charter School은 이메일이나 Charter School 웹사이트에 공지사항을 표시하는 등의 전자적 방식, 그리고 뉴스레터, 학부모 대상 발표, 학부모 대상 가정통신문 송부와 같은 비전자적 방식을 사용하여 이 정책의 내용, 시행 및 업데이트, 그리고 정책에 참여하고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모든 가족에게 적극적으로 통지합니다. Charter School은 의사소통이 문화적으로나 언어적으로 지역 사회에 적절하고 다른 지역의 학교가 학부모와 중요한 학교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유사한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Charter School은 최소한 매년 정책의 내용, 시행 및 업데이트에 대해 대중에게 적극적으로 통지할 것입니다. Charter School은 또한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 지역 사회에 연간 및 3년 단위

보고서의 활용 가능 여부에 대해 알릴 것입니다.

영양

Charter School 급식

Charter School은 국립 학교 급식 프로그램("NSLP"), 학교 아침식사 프로그램("SBP"), 여름 급식 서비스 프로그램(SFSP), 저녁식사 프로그램을 포함한 USDA 아동 영양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Charter School은 NSLP 및 SBP 프로그램과 기타 적용 가능한 연방 아동 영양 프로그램을 통해 다음과 같은 학교 급식을 제공하는 데 헌신하고 있습니다.

- 모든 학생이 이용할 수 있음.
- 아이들에게 먹음직스럽고 매력적임.
-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제공됨.
- 지역, 주, 연방 법령 및 규정에 의해 설정된 현행 영양 요건을 충족하거나 초과함(Charter School은 USDA 영양 기준을 충족하는 상환 가능한 학교 급식을 제공합니다).
- 다음 Smarter Lunchroom 기술 중 최소 10가지를 사용하여 건강한 음식 및 음료 선택을 홍보함.
    - 전체 과일 옵션은 매력적인 그릇이나 바구니에 전시됩니다(뷔페용 그릇이나 호텔 프라이팬 대신).
    - 얇게 썰거나 자른 과일은 매일 제공됩니다.
    - 매일 제공되는 과일 옵션이 학생들의 시야와 손이 닿는 곳에 전시됩니다.
    - 사용 가능한 모든 야채 옵션에는 창의적이거나 설명적인 이름이 붙습니다.
    - 매일 제공되는 야채 옵션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테이크아웃 식사에 포함됩니다.
    - 모든 직원, 특히 서빙하는 직원은 학생들이 식사와 함께 매일 제공되는 야채 옵션을 선택하고 섭취할 것을 예의 있게 안내하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 모든 쿨러의 다른 음료들 앞에는 흰 우유가 놓여 있습니다.
    - 대체 앙트레 옵션(예: 샐러드 바, 요구르트 파르페 등)은 모든 서비스 및 식사 공간의 포스터나 표지판에 강조 표시되어 있습니다.
    - 상환 가능한 식사는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 공간(예: 샐러드 바, 스낵룸 등)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 메뉴 개발, 식사 공간 장식 및 판촉 아이디어를 알리기 위해 학생 설문 조사 및 맛 테스트 기회를 활용합니다.
    - 학생 예술 작품은 서비스 및/또는 식사 공간에 전시됩니다.
    - 일일 공지사항은 메뉴 옵션을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데 사용됩니다.

물

수분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등교일 내내 모든 학생들에게 무료로 안전하고 맛이 나지 않는 식수를 제공할 것입니다. Charter School은 급식 시간에 학교 급식이 제공되는 장소에 식수를 제공할 것입니다.

경쟁 식품 및 음료

Charter School은 등교일 동안 Charter School 캠퍼스에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음식과 음료가 건강한 식생활을 뒷받침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등교일 중 캠퍼스에서 학생들에게 판매되는 음식과 음료(공식 등교일 전 자정부터 공식 수업 종료 후 30분까지 포함) 및 Charter School 급식 프로그램 외부에서 제공되는 음식과 음료(예: "경쟁" 식품 및 음료)는 최소한 학교 영양 기준에서 USDA Smart Snacks를 충족합니다. Smart Snacks는 학생의 건강과 웰빙을 개선하고 등교일 중에 건강에 좋은 음식의 소비를 늘리며 건강한 식습관의 발달을 강화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건강한 음식 선택을 뒷받침하고 학생의 건강과 웰빙을 개선하기 위하여, 등교일에 학교

캠퍼스에서 학생들에게 판매되는 상환 가능한 학교 급식 프로그램 외부의 모든 음식과 음료는 USDA Smart Snacks 영양 표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할 것입니다. 이 표준은 식당, 자동판매기, 학교 매점, 스낵 또는 식품 카트의 일품 요리 옵션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음식과 음료가 판매되는 모든 장소와 모든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축하 및 보상

다음을 통해 Charter School 캠퍼스에서 제공되는 모든 음식은 Charter School 영양 표준의 USDA Smart Snacks를 충족하거나 초과합니다.

1. 축하 및 파티. Charter School은 음식을 곁들이지 않는 축하 아이디어를 포함하여 학부모와 교사에게 건강한 파티 아이디어 목록을 제공할 것입니다.
2. 부모님이 가져다 주신 학급 간식. Charter School은 Smart Snacks 영양 기준을 충족하는 음식 및 음료 목록을 학부모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3. 보상 및 인센티브. Charter School은 교사 및 기타 관련 교직원에게 아동에게 보상할 수 있는 대안적 방법의 목록을 제공할 것입니다. 공연이나 행위 등 어떠한 이유에서도 음식 및 음료를 보상으로 또는 처벌을 보류하는 용도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모금 활동

Charter School의 USDA Smart Snacks 영양 표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음식과 음료는 등교일 동안 Charter School 캠퍼스에서 모금 행사를 통해 판매될 수 있습니다. Charter School은 학부모와 교사에게 건전한 모금 아이디어 목록을 제공할 것입니다.

영양 판촉

Charter School은 학교 캠퍼스 전체에 걸쳐 모든 학생들을 위한 건강한 음식 및 음료 선택을 장려할 뿐만 아니라, 학교 급식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권장합니다. 이 판촉은 최소한 다음을 통해 진행됩니다.

- 위에서 설명한 Smarter Lunchroom 기술을 사용하여 학교 급식 프로그램을 통해 최소 10가지 증거 기반 건강 식품 홍보 기술을 시행함, 그리고
- 학생들에게 판촉되는 음식 및 음료의 100%가 Charter School 영양 표준의 USDA Smart Snacks를 충족하도록 보장함.

학교에서의 음식 및 음료 판매

등교일 동안 학교 캠퍼스에서 학생들에게 판매되거나 판촉되는 모든 음식과 음료는 학교 내에서의 USDA Smart Snacks 영양 표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하여, 그러한 영양 표준을 준수하거나 초과하는 음식만 학생들에게 판매 또는 판촉됩니다.

교장은 기존 계약을 검토하며, 새로운 계약, 장비 및 제품 구매(및 교체)를 고려합니다. 결정은 이 정책에 의해 구축된 해당 판매 지침을 반영해야 합니다.

신체 활동

질병 통제 센터("CDC")는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매일 최소 60분의 신체 활동에 참여할 것을 권장합니다. CDC는 유산소 활동이 이러한 신체 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을 권장하며, 격렬한 유산소 활동은 주당 최소 3일 권장됩니다. CDC는 또한 신체 활동에 체조 또는 팔굽혀펴기와 같은 근력 강화 활동을 주당 최소 3일, 줄넘기 또는 달리기와 같은 뼈 강화 활동을 주당 최소 3일 포함할 것을 권장합니다. Charter School은 학생의 건강을 증진합니다.

학생의 건강을 증진하는 기타 활동

Charter School은 카페테리아, 기타 음식 및 음료 섭취 장소, 신체 활동 시설뿐만이 아니라 전체 Charter School 환경에 걸쳐 건강 활동을 통합할 것입니다. Charter School은 신체 활동, 체육 교육, 영양 및 기타 건강 구성 요소와 관련된 기타 기획을 조정 및 통합하여 모든 노력이 중복되지 않고 상호 보완적이며 학생의 웰빙, 최적의 발달 및 강건한 교육적 결과를 증진하는 동일한 목표 및 목적을 향해 나아가도록 합니다.

연방이나 주, 협회의 승인 또는 건강한 학교 환경을 위한 보조금/기금 마련을 획득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노력은 지역 사회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이 정책과 협력 및 상호 보완됩니다.

Charter School이 후원하는 모든 행사는 이 정책의 건강 지침을 준수합니다. Charter School이 후원하는 모든 건강 행사에는 적절한 경우 신체 활동과 건강한 식사 기회가 포함됩니다.

지역 사회 제휴

Charter School은 이 정책의 시행을 뒷받침하는 지역 사회 제휴자(예: 병원, 대학, 현지 사업체, SNAP-Ed 제공자 및 조정자 등)와의 관계를 개발, 향상 및 계속할 것입니다. 기존 및 신규 지역 사회 제휴와 후원은 이 정책 및 목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됩니다.

학부모 및 가족 참여 정책

Bright Star Schools("Charter School")는 I편 학부모 및 가족의 의견을 바탕으로 서면 학부모 및 가족 참여 정책("정책")을 개발했습니다. Charter School은 [Charter School이 정책을 배포하는 방법을 설명 - 예를 들어 사무실에서 구할 수 있는 사본, 웹사이트에 게시, 핸드북에 포함 등](을)를 통해 I편 학생의 학부모에게 정책을 배포하였습니다. 이 정책은 다음 I편 학부모 및 가족의 참여 요건을 수행하는 수단을 설명합니다.

Charter School의 기대와 목표

연구에 따르면, 학부모나 다른 보호자가 자녀 교육에 참여할 시 아동의 태도, 행동 및 성취도가 향상됩니다. 이를 위해 Bright Star Schools("학교")는 학습을 촉진하고 학교의 학생들에게 보다 긍정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이 학부모 및 가족 참여 정책을 채택했습니다.[4]

연례 회의

학교 첫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학교는 I편, A부(Title I, Part A)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아동의 학부모를 초대하고 참석하도록 권장하는 연례 회의인 Back to School Night를 소집합니다. 학교는 오전이나 저녁과 같은 유연한 시간에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고 최대의 학부모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추가 회의를 개최할 것입니다. 1편, A부의 정보는 학교의 학교 위원회 회의에서 공유됩니다.
회의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학교의 I편, A부 자금의 학교의 수령 및 I편, A부의 특정 요건에 대해 학부모에게 알릴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학부모는 I편, A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고지를 받아야 합니다.

---

[4] 이 정책 내에서는 "학부모"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단어는 학부모, 보호자, 조부모, 이모/고모, 삼촌, 양부모, 의붓부모 등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학교에 등록한 학생을 돌보는 일체의 보육인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통지

개학 **첫달까지** 학교는 다음 정보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학부모 대상 통지를 등록 자료에 포함할 것입니다.

- I편, A부(Title I, Part A)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 I편, A부 프로그램의 요건에 대한 설명,
- I편, A부 프로그램 참여 관련 학부모 권리에 대한 설명,
- 학부모 참여 정책의 계획, 검토 및/또는 개선에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회의 시간, 장소 등 포함)과 학교 차원에서의 프로그램.
- 학교에서 사용하는 커리큘럼에 대한 서술 및 설명, 학생 진척도 측정에 사용되는 학업 평가 형식 및 도전적 학업 성취 기준,
- 연례 회의 및 추가 회의에 참석하라는 초대와 더불어, 회의 목적과 날짜 및 시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
- 가장 최근의 학부모 및 가족 참여 정책(Parent and Family Engagement Policy)의 사본과 피드백은 학교의 학교 위원회 회의에서 수집될 것입니다.

우리의 의사소통 플랫폼인 학부모 광장(Parent Square)에서 이 공지를 공유하는 것에 더해, 학교는 학교 웹사이트에 정보를 게시할 것입니다.

I편 프로그램에 대한 학부모 참여

I편, A부 프로그램 및 학부모 참여 정책의 계획, 검토 및 개선에 조직적이고 지속적이며 시기적절한 방식으로 학부모를 참여시키기 위하여, 학교는 다음과 같이 참여 학생의 학부모를 참여시킬 것입니다.

- 학교는 매년 월례 가족 참여 회의(Family Engagement Meeting)를 수행하여, 참여 아동의 모든 학부모가 학교에 초대되어 각기 다른 I편, A부 프로그램, 이 정책의 세부사항 및 학교 차원에서의 프로그램 계획에 대해 익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회의는 유연한 시간에 개최됩니다.
- 가족 참여 회의(Family Engagement Meeting)에 참석하지 않는 학부모는 의사소통 플랫폼인 학부모 광장(Parent Square)을 통해 정보를 수신합니다.
- 가족 참여 조정담당자(Family Engagement Coordinator)는 다가오는 참여 기회에 대한 통지와 함께 월간 달력을 발행합니다.
- 학교는 학부모가 I편, A부 프로그램 및 학부모 참여 정책을 계획, 검토 및 개선하는 데 참여할 학교 위원회를 만들 것입니다. 학교 위원회는 학교에서 **최소 5회** 소집되며, 교직원 50%와 학부모 50%로 구성되고, 중등 학교에서는 학생으로 구성됩니다.
- 학교는 학부모가 제안을 공식화하고 적절한 경우 자녀 교육과 관련된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교장과의 커피(Coffee with the Principal) 회의 일정을 잡을 것입니다. 학교는 이러한 제안에 대해 **해당 학년도** 이내에 답변할 것입니다. **[이 항은 20 U.S.C. § 6318(c)(4)(C)에 의해 요구됩니다.]**

정책은 학부모와 Charter School의 변화하는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반드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Charter School이 Charter School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데 학부모를 참여시키는 과정이 있는 경우, 학교는 해당 과정이 I편 아동의 학부모를 적절히 대표한다면 해당 과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학부모 협약

Charter School은 I편 학생의 학부모에게 학교-학부모 협약(이하 "협약")을 배포합니다. 학부모와 공동으로 개발한 이 협약은 학부모, 전체 Charter School 교직원 및 학생들이 학생의 학업 성취도 향상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합니다. 이것은 Charter School과 가족들이 자녀가 주의 높은 학업 기준을 달성하도록 돕기 위해 협력할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법적으로 요구되는 항목을 비롯하여 I편 학생의 학부모가 제안한

기타 항목을 다룹니다.

1. Charter School은 높은 수준의 커리큘럼과 까다로운 주 정부 학업 기준을 충족하는 교육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2. 학부모가 자녀의 학습을 지원하고, 교실에서 자원봉사하며, 자녀 교육 및 과외 시간의 긍정적인 활용과 관련된 결정에 적절하게 참여하는 데 책임을 질 방법.
3. 최소한 연례 학부모-교사 회의, 학생 진도에 대한 빈번한 보고서, 교직원에 대한 접근, 학부모가 자원봉사하고 자녀의 수업에 참여할 기회, 학급 활동을 관찰할 기회와 실천 가능한 정도까지 가족 구성원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의 가족 및 학교 교직원 간의 주기적인 소통을 보장하기를 통한 학부모와 교사 간의 지속적인 소통의 중요성.

매 학년도 초에, 학교는 참여 아동의 학부모와 학교-학부모 협약(School-Parent Compact)을 체결할 것입니다. 학교-학부모 협약은 학부모, 전체 교직원 및 학생이 학생의 학업 성취도 향상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는 방법과 학교와 학부모가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하고 발전시켜 아동이 주 당국의 높은 기준을 달성하도록 돕는 수단에 대해 설명합니다.
학교 위원회는 매년 학교-학부모 협약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개정을 위한 피드백과 제안을 제공할 것입니다.

참여 역량 구축

표준, 평가, I편 요건, 진도 모니터링 및 학생 성취도 향상

효과적인 학부모 참여를 보장하고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학교, 학부모 및 지역 사회 간의 파트너십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는 학부모가 도전적 학업 성취 기준, 주 및 지역 학업 평가, I편 요건 및 자녀의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자녀의 진도를 모니터링하고 교육자와 협력하는 방법(총칭하여 "표준 및 요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음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학교의 가족 참여 계획(Family Engagement Plan)에 설명된 가족 참여 회의(Family Engagement Meeting)는 학부모가 자녀의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자와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될 것입니다.
- 학부모는 교육 세미나(Educational Seminar)에 참석하여 주 및 지역 학업 평가 및 학생들이 시험을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법을 배우도록 초대됩니다.
-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행한 성적표는 주 정부의 학업 표준 및 평가상 학생의 성적을 반영하는 표준에 기반될 것입니다.
- 학교는 학부모 교사 회의(Parent Teacher Conference) 동안 각 학생의 개별 학습 계획을 학부모와 함께 검토하여 목표 달성의 진도와 성공을 측정할 것입니다.
- 학교 웹사이트에서 캘리포니아 교육부 웹사이트의 학교 성적책임 성적표(School Accountability Report Card)에 대한 링크를 제공할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와 협업하도록 돕기

학부모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학교는 다음 프로그램을 통해 학부모가 자녀와 협력하여 자녀의 성취도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와 교육을 제공할 것입니다.

- 학교는 학교의 인터넷 사용 정책에 따라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법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것입니다. 또한, 학교는 학교가 학생 및 가족을 위해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사용법을 익힐 수 있도록 가족을 위한 교육 세미나(Educational Seminar)를 제공할 것입니다.
- 학교는 로스앤젤레스 커뮤니티 컬리지(Los Angeles Community College)와의 제휴를 통해, 자녀의 숙제를 도울 목적으로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영어 구사 능력이

제한된 학부모에게 ESL(English as the Second Language, 외국어로서의 영어) 수업을 제공할 것입니다.
- 학교는 로스앤젤레스 공공 도서관(Los Angeles Public Library)과의 제휴를 통해, 학부모들이 공공 도서관에서 독서하고 공공 도서관을 사용하며 가족들을 결속시키는 읽고 쓰기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제공할 것입니다.
- 학교는 학부모-자녀 의사소통에 관한 교육 세미나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사회-정서적 발달을 지원합니다.
- 학교 상담사는 학부모와 협력하여 아동 및 아동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더 잘 이해할 것입니다.

학부모 참여 교육

학교는 학부모의 공헌의 가치와 유용성, 학부모의 도움과 더불어 동등한 파트너로서 학부모에게 연락하고 소통하며 협업하는 법, 학부모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조정하는 법, 학부모와 학교 간의 유대를 구축하는 법에 대해 매년 교사, 전문 교육 지원 직원, 교장, 기타 학교 지도자 및 기타 직원을 교육할 것입니다. 교육은 매년 직원 오리엔테이션, 연간 직원 계발 자료 및 학년도 전반에 걸쳐 개최되는 기타 현직 교육에서 실시합니다. 학교에 다니고 있는 참여 아동의 현재 학부모에게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하여, 학교 문화, 안전 및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학부모의 견해 관련 정보를 요청하는 모든 학생들의 학부모에게 가정으로 송부될 연례 가족 설문 조사를 통해 교육이 진행될 것입니다.

다른 프로그램과의 조정

학교는 실행 가능하고 적절한 범위 내에서, 학부모 참여 프로그램 및 활동을 공립 유치원 프로그램을 포함한 다른 연방, 주 및 지역 프로그램과 조정 및 통합하고, 학부모 자원 센터와 같은 기타 활동을 수행하여 자녀의 교육에 더 완전히 참여하도록 학부모를 격려하고 지원합니다. 학교는 학부모 참여 프로그램 및 활동을 로스앤젤레스 공공 도서관 및 디디 허쉬(Didi Hirsch)와 조정 및 통합합니다.

접근성

Charter School은 영어 능력이 제한된 학부모/가족, 장애가 있는 학부모/가족, 이주 학생의 학부모/가족을 포함한 모든 I편 학부모와 가족 구성원이 참여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정보 및 학교 보고서는 다음 수단을 포함하여 학부모/가족이 이해할 수 있는 형식과 언어로 제공됩니다.

- 학교는 실행 가능한 정도 내에서 학부모 회의에서 언어 번역가를 제공할 것입니다.
- 학교는 학교 및 학부모 프로그램, 회의 및 기타 활동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학부모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실행 가능한 정도 내에서)와 형식으로 참여 아동의 학부모에게 송부되도록 해야 합니다.
- 학교는 학부모의 요청에 따라 학부모 참여 활동에 대한 기타 합리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 학교는 가족들이 문화, 배경, 아동의 재능 및 학교에 대한 특정 요구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회의 일정을 잡을 것입니다.
- 학교는 학부모 광장에서 자원을 공유하고, 읽기/쓰기를 하지 않는 가족에게 후속 전화 및 직접 지원을 제공하며, 편의가 필요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직원을 훈련할 것입니다.

선물 정책

모든 Bright Star 직원은 한 학년도에 단일 출처로부터 $50 이하의 선물이나 사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0 한도를 초과하는 모든 것은 개인적으로 수락할 수 없으며 거부될 것입니다. 더 큰 선물의 경우 Bright Star Schools에 직접적으로 기부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이 금액은 특정 학교에 배당될 수 있습니다.

학생 비용 정책

이 학생 비용 정책은 공립 학교에서의 교육 활동 참여에 대한 일체의 학생 비용 청구를 금지하는 캘리포니아 헌법 IX조 5항 및 의회 법안 1575("AB 1575")(2013년 1월 1일 발효)의 조항에 따라 Bright Star Schools 위원회에서 채택하였습니다.

Bright Star Schools는 무료 공립 Charter School을 운영하며, Bright Star Schools에 등록한 학생은 법에 의해 특별히 승인되지 않는 한 Bright Star Schools 교육 활동 참여에 대해 학생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정책 및 AB 1575의 목적에서, "교육 활동"은 교과 과정 및 과외 활동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학생 교육의 필수적인 기본 부분을 구성하는, Bright Star Schools에서 제공하는 일체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교육 활동”에는 다음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a) 등하교 교통편(버스), (b) 방과후 즉시 아동을 데리러 올 수 없는 학부모의 학생을 위한 보육 서비스.

이 정책 및 AB 1575의 목적에서, "학생 비용"은 교육 활동을 가족의 능력이나 요금 납부 의사나 특별 납부 면제 요청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무료로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캘리포니아 헌법 49011항 및 9조 5항을 위반하여 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나 보호자에게 부과되는 요금, 보증금 또는 기타 요금을 의미합니다. 교육법 49010항에 따라 금지된 학생 비용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수업이나 활동이 선택적인지 필수인지 또는 학점을 위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학교나 수업 등록 조건으로, 또는 수업이나 과외 활동 참여 조건으로 학생에게 부과되는 요금, (b) 자물쇠, 사물함, 책, 수업 용구, 악기, 유니폼 또는 기타 재료나 장비를 얻기 위해 학생이 지불해야 하는 보증금 또는 기타 납부금, (c) 교육 활동과 관련된 재료, 용품, 장비 또는 유니폼을 얻기 위해 학생에게 요구되는 구매.

특정 학생 비용 조항

1. 학생들이 Bright Star Schools의 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용품, 재료 및 장비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합니다.
2. Bright Star Schools는 일체의 학생 비용을 허용하기 위해 수수료 면제 정책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3. Bright Star Schools에는 "2단계제(Two-tier)" 교육 시스템이 없습니다. Bright Star Schools에서 무료로 제공하지 않는 추가 물품을 구매하는 학생, 또는 Bright Star Schools의 프로그램 및 활동에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학생이 그렇게 하지 않은 학생보다 더 높은 교육 수준을 제공받지 않습니다.
4. Bright Star Schools는 학생으로부터 금전이나 물품 또는 서비스 기부의 대가로 학점 또는 교육 활동과 관련된 특권을 제공하지 않으며, Bright Star Schools는 교육 활동과 관련된 학점 또는 특권을 삭제하거나 기타 다른 방식으로, 학교에 돈이나 물품 또는 서비스 기부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하지 않을 학생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5. Bright Star Schools는 이따금 학생 및 학부모에게 자발적인 기금이나 재산 기부 또는 기금 마련 활동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러한 기금 마련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학생 및 학생의 부모에게 상이나 기타 표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6. Bright Star Schools는 Bright Star Schools의 실제 교통비와 거의 동일한 요금으로 등하교 교통편(버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등하교 교통편(버스)은 "교육 활동"이 아닙니다.
7. Bright Star Schools는 학부모가 방과후 즉시 자녀를 데리러 올 수 없는 학생을 위해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러한 서비스에 대해 합리적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육 서비스는 "교육 활동"이 아닙니다.

8. Bright Star Schools의 모든 학생들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교육 과정의 일부인 BOTY LEL(Beginning of the Year Life Experience Lesson, 연초 삶의 경험 레슨) 현장학습에 참여합니다. Bright Star Schools는 BOTY LEL 현장학습 및 교과 과정의 일부인 기타 현장학습 자금을 돕기 위해 학생 및 학생의 부모로부터 기금 또는 서비스의 자발적 기부를 요청할 수 있으나, 모든 학생은 학생 또는 학부모 기부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9. Bright Star Schools의 학생들은 EOTY LEL(End of the Year Life Experience Lesson, 연말 삶의 경험 레슨) 현장학습을 포함하여 교과 과정의 일부가 *아닌*, 학교에서 제공하는 선택적 추가 현장학습(“비프로그램 현장학습”)에 참여할 기회를 얻습니다. 비프로그램 현장학습은 의무가 아니며, 학교의 교과 과정의 일부가 아니며, 수업 학접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Bright Star Schools는 비프로그램 현장학습 참석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합리적인 비용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출석은 전적으로 레크리에이션이며 "교육 활동"이 아닙니다.
10. Bright Star Schools는 학생에게 학교 ID 카드나 도서관 반납 지연 요금과 같은 분실, 손상 또는 반환되지 않은 학용품 교체에 대해 합리적인 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11. Bright Star Schools는 학생에게 심화 과정을 위한 악기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과정이 끝나면 학생들은 가정에서 악기를 계속 연습하기 위해 할인된 가격으로 악기를 구입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과정이 끝난 후에도 계속되는 그러한 연습은 "교육 활동"이 아닙니다.
12. 학생이 학교 스포츠에 참여하기 전, Bright Star Schools는 학생이 정규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이 안전한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학부모에게 스포츠 신체 검사(참여 전 신체 검사) 증빙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13. Bright Star Schools는 모든 학생들에게 스포츠 프로그램과 과외 활동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Bright Star Schools는 스포츠 프로그램 및 과외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 및 학생의 부모로부터 기금 또는 서비스의 자발적 기부를 요청할 수 있으나, 학생 또는 학부모 기부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참여 가능하며 필요한 용품을 제공받습니다.
14. Bright Star Schools는 학교 후원 댄스, "졸업의 밤", 축제, 운동 경기, 연극 또는 뮤지컬, 또는 기타 공연에 관중으로서 선택적으로 참석하는 경우 학생과 학부모에게 합리적인 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출석은 전적으로 레크리에이션이며 "교육 활동"이 아닙니다.
15. Bright Star Schools는 학생들이 학교 인장이나 패치, 연감, 학교 사진, 로고 의류, 또는 학생의 교육에 필요하지 않은 기타 물품을 포함한 선택 물품을 구매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16. 학생과 학생의 부모는 학교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Bright Star Schools의 학생 및 가족 핸드북의 일부로 매 학년도 시작 시 이 정책의 사본을 제공받을 것입니다.
17. AB 1575하에 허용되지 않는 요금이 부과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 학부모 또는 보호자는 학교 교장에게 연락해야 하며, 모든 고발은 학생 및 가족 핸드북에 명시된 Bright Star Schools의 공통 고발 처리 정책에 따라 처리됩니다. 일체의 고발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명될 경우, Bright Star Schools는 영향을 받는 모든 학생, 학부모 및 보호자에게 비용을 상환할 것입니다.

담배 없는 학교 정책

충분한 연구를 통해 흡연 및 간접 흡연의 호흡을 포함하여 담배 제품 사용과 관련된 건강 위험이 입증된 바 있습니다. Bright Star Schools("Charter School" 또는 "Charter School")은 학생들이 담배 제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계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Charter School 운영 위원회("위원회")는 흡연 및 기타 담배 및 니코틴 제품 사용이 심각한 공중 보건 위험을 구성하고 학생과 교직원에게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려는 Charter School의 목표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Charter School 교직원은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과 일치하는 좋은 건강 관련 실천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학생, 직원 및 일반 대중의 최대 이익을 위해, Charter School 위원회는 Charter School 부지와 Charter School 차량에서 담배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상시 금지합니다. 이 금지 사항은 Charter School이나 Charter School이 후원하는 활동 또는 운동 행사에 있는 모든 직원, 학생, 방문자 및 기타 인물들에게 적용됩니다. 이는 Charter School이 소유, 임대 또는 빌린 일체의 자산에서의 모든 회의에 적용됩니다. Charter School 직원의 감독과 관리하에 있는 모든 학생에게도 적용됩니다.

금지된 제품에는 니코틴 유무에 관계없이 담배 제품의 사용을 모방하는 담배, 시가, 작은 시가, 씹는 담배잎, 파이프 담배잎, 코담배, 씹는 담배, 정향 담배, 빈랑, 전자 담배, 전자 물담배 및 기타 증기를 방출하는 장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담배 또는 니코틴 함유 제품이 포함됩니다.

이 정책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승인한 처방 제품, 니코틴 패치, 니코틴 껌이나 니코틴 대체 제품 또는 금연 보조제의 사용이나 소지를 금하지 않습니다.
놀이터에서 25피트(7.6미터) 이내에 위치한 공공 인도를 제외하고, 모든 놀이터에서 25피트(7.6미터) 내에서 일체의 흡연 또는 담배 관련 제품의 사용이나 담배 관련 쓰레기의 처리가 금지됩니다. 청소년 스포츠 행사가 개최되는 동일한 공원 또는 시설에서 청소년 스포츠 행사로부터 250피트(76미터) 이내의 흡연 또는 담배 관련 제품의 사용도 금지됩니다. 이에 더하여, 이 정책을 시행하려는 자에 대한 모든 형태의 협박, 위협 또는 보복은 금지됩니다.

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학생, 학부모/보호자, 직원 및 대중에게 이 정책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Charter School 부지에 있는 모든 개인은 이 정책을 준수할 책임을 공유합니다. 또한, Charter School은 Charter School 자산의 모든 입구에 "담배 사용 금지"라는 표지판을 눈에 띄게 게시할 것입니다.

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담배 제품 사용을 중단하려는 직원을 지원할 수 있는 클리닉 및 지역 사회 자원 목록을 유지 보관해야 합니다.

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연례 서면 통지, 교육구 및 학교 웹사이트, 학생 및 학부모 핸드북 및/또는 기타 적절한 의사소통 방법을 통해 이 정보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Charter School 직원은 Charter School 자산과 시설이 이 위원회 정책을 준수하는지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교장은 미준수 혐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고충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개발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이 정책을 위반하는 모든 Charter School 직원 또는 학생은 금연을 요청받고 적절한 징계 조치를 받게 됩니다. 이 담배 없는 학교 정책을 위반하는 기타 모든 사람은 이 정책에 대해 고지받고 흡연을 삼가도록 요청받습니다. 해당 인물이 이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인물에게 학교 건물을 떠날 것을 지시함.
2. Charter School 부지에서 해당 인물을 내보내는 데 지역 법 집행 기관의 지원을 요청함.
3. 해당 인물이 담배 없는 학교 정책을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지정된 기간 동안 Charter School 부지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합니다.

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Charter School 또는 모든 직원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흡연 중인, 직원이나 학생이 아닌 자를 물리적으로 퇴출시키거나 직원이나 학생이 아닌

자에게 흡연을 삼가도록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무 허가

근무 허가는 학교 행정실에 반드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학생이 적절한 학업 상태에 있는 경우 요청이 승인됩니다.

수학 배치 정책

이 정책은 고등학교에만 적용됩니다. Bright Star Schools("Bright Star" 또는 "Charter School") 위원회("위원회")의 이 정책은 모든 학생의 성공을 보장하고 2015년 캘리포니아 수학 배치법(California Mathematics Placement Act)의 입법 의도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9학년에 입학하는 학생의 수학 과정 배치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투명한 프로토콜을 수립하기 위해 채택되었습니다.

1. 9학년 시작을 위한 수학 수업 배치를 결정함에 있어, Bright Star는 다음을 포함하여 학생 성과에 대한 여러 객관적인 학업 측정을 체계적으로 고려합니다.
    a. 캘리포니아 학생 성적 및 진척도 평가(California Assessment of Student Performance and Progress, "CAASPP")를 통한 중간 및 종합 평가를 포함한 주 전체 수학 평가.
    b. 수학에 대해 주에서 채택한 내용 표준에 부합하는 배치고사.
    c. 교실 배정 및 성적.
    d. 학생 공식의 수학 최종 성적, 8학년 말 성적표.
    e. 아래 2항에 설명된 대로 학년도 첫 달 내에 최소 하나의 배치 체크포인트를 포함한 모든 배치 체크포인트의 결과.
2. Charter School은 정확한 배치를 보장하고 개별 학생의 진척도를 재평가할 수 있도록 학년도 첫 달에 적어도 하나의 배치 체크포인트를 제공할 것입니다. 9학년 학생을 가르치는 모든 수학 교사는 교사의 수학 수업에 배정된 각 9학년 학생의 수학 배치를 평가할 것입니다. 교사의 평가는 학생의 교실 과제, 퀴즈, 시험, 시험, 성적, 교실 참여 및 학생, 학생의 부모/법적 보호자 또는 학생의 수학 배치에 관해 학생의 다른 교사가 제공한 일체의 의견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요소를 고려합니다. 평가에 기반하여, 교사는 학생에게 현재 수학 배치를 유지하거나 다른 수학 배치로 이동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 경우 교사는 학생에게 권장되는 수학 수업 또는 수준을 지정해야 합니다.
3. Charter School 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이 정책의 1항에 포함된 객관적인 학업 측정에 대한 성과를 기반으로 수학 과정을 진행할 적격한 학생이 인종, 민족, 성별 또는 사회경제적 배경을 근거로 불균형한 방식으로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매년 집계된 학생 배치 자료를 조사해야 합니다. Bright Star는 매년 이 시험의 종합 결과를 Bright Star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4. Charter School은 다음과 같이 각 학생, 그리고 학생의 배치에 의문을 제기하는 학생의 부모나 법적 보호자를 위해 명확하고 시기적절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a. 9학년 학생의 부모/법적 보호자는 Charter School 교장 또는 피지명인에게 다음과 같은 서면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i. 학생의 수학 배치가 어떻게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요청합니다. 서면 요청을 받은 후 5일 이내에, Charter School 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Charter School이 학생의 수학 배치를 결정하는 데 활용한 객관적인 학업 측정을 포함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부모/법정 보호자의 요청에 서면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ii. 학생이 배치고사에 재응시하겠다는 요청이 있을 경우, 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2주 이내에 재시험을 진행하도록 시도합니다.
iii. 학생이 8학년 말 기말 수학 평가에 재응시하겠다는 요청이 있을 경우, 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2주 이내에 재시험을 진행하도록 시도합니다.
iv. 객관적인 학업 측정 기준에 따라 학생의 수학 배치에 대한 재고 요청. 서면 요청을 받은 후 수업일 기준 5일 이내에, Charter School의 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학부모/후견인의 요청에 대해 서면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교장 또는 피지명인 및 학생의 수학 교사는 반드시 본 정책의 1항 및 2항에 식별된 객관적인 학업 측정에 따라 학부모가 제공한 객관적인 학업 측정을 평가해야 합니다. 이 평가에 기반하여, 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반드시 학생에게 가장 적절한 수학 배치가 학생의 현재 배치인지 아니면 다른 배치인지를 결정해야 하며, 이 경우 교장은 학생에게 권장되는 수학 수업 또는 수준을 구체적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교장 또는 피지명인의 응답에서는 결정뿐만 아니라 해당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교장 또는 피지명인이 의존한 객관적인 학업 측정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b. 전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교장 또는 피지명인이 학부모/법정 보호자의 요청에 응답하기 위해 추가 시간이 필요할 경우, 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서면 응답을 제공할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교장 또는 피지명인의 응답 시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c. 교장 또는 피지명인이 학생의 수학 배치를 재고한 후 학부모/법적 보호자가 학생의 수학 배치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부모/법적 보호자는 교장 또는 피지명인의 전문적인 추천에 반하여 학생을 다른 수학 수업에 배정하도록 요청하고 이 배치에 대한 책임을 인정 및 수락하는 자발적 포기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5. Charter School은 이 수학 배치 정책이 웹사이트에 게시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6. 이 정책은 교육법 51224.7항으로 제정된 2015년 수학 배치법에 따라 채택되었습니다.

연례 통지

504항

Charter School은 장애를 이유로 자격을 갖춘 장애인이 일체의 Charter School 프로그램 하에서 참여 제외되거나 혜택 거부되거나 기타 그렇지 않을 경우 차별 대상이 되지 않게 보장할 법적 책임을 인정합니다. 학습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주요 생활 활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객관적으로 식별된 장애가 있는 모든 학생은 Charter School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504항에 따라 조정이 필요하거나 자격이 있다고 의심되는 모든 학생의 부모는 평가를 위해 교장에게 위임될 수 있습니다. Charter School의 504항 정책 및 절차의 사본은 메인 사무실에서 요청 시 제공됩니다.

영어 학습자

Charter School은 교내 영어 학습자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영어 학습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학업 수업과 보충적 환경 모두에서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Charter School은 학부모에 대한 연례 통지, 학생 식별, 배치, 프로그램 옵션, 영어 학습자 및 핵심 내용 교육, 교사 자격 및 교육, 유창한 영어 능숙자 상태로의 재분류, 프로그램 효율성 모니터링 및 평가, 표준화된 테스트 요건과 관련하여 영어 학습자에게 적용되는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합니다. Charter School은 영어 학습자 및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에 관한 적절한 배치, 평가 및 소통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할 것입니다.

영양학적으로 적절한 무료 또는 할인 가격 급식

Bright Star Schools("BSS" 또는 "Charter School") 운영 위원회("위원회")는 적절한 영양이 모든 학생의 발달, 건강 및 학습에 필수적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Charter School의 급식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저소득 가정 학생의 참여를 용이케 하고 장려해야 합니다.

2022-23학년도를 시작으로, 각 Bright Star School 현장에서는 연방 기금 지원을 받는 무료 또는 할인 가격 급식에 대한 학생의 자격을 고려하지 않고, 급식을 요청하는 각 학생에게 영양학적으로 적절한 급식을 매 등교일의 급식 서비스당(아침 및 점심) 최대 1끼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것은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의 모든 학생에게 적용됩니다.

일반 무료 급식 신청 및 알림

Charter School이 전국 학교 급식 프로그램(NSLP) 및/또는 연방 학교 아침식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Charter School은 계속해서 연방 규정에 부합하는 급식 신청서를 수집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료 또는 할인 가격 급식 자격에 관계없이 급식을 요청하는 모든 학생은 이 정책 및 교육법 49501.5항에 따라 급식을 무료로 수령합니다. 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일반 무료 급식 프로그램 신청서 및 관련 자료에 다음 내용이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

1. 학교 급식 신청서는 등교일 중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NSLP 및/또는 SBP에 따른 무료나 할인가 급식에 대한 연방 자격에 관계없이, 급식을 요청하는 모든 학생은 급식을 무료로 수령하게 됩니다.

연방 NSLP 및/또는 SBP에 참여하는 아동은 특별 토큰, 특별 티켓, 특별 서빙 라인, 별도의 입구, 별도의 식사 공간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 공공연하게 신원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신청서 패킷에는 간단하고 문화적으로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여 다음의 알림 및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해당 아동이 무료 또는 할인된 비용으로 건강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알림.
2. 적격한 경우, 자녀가 Medi-Cal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신속한 결정을 내리도록 학교 급식 신청서에 대한 정보를 주 보건부에서 지정한 기관과 공유, 그리고 Medi-Cal 프로그램에 따라 적격성을 결정하는 지역 기관과 공유하도록 하는 신청자의 동의 요청.
3. Charter School은 아동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학교 급식 신청서를 신속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주 보건부에서 지정한 기관과 Medi-Cal 프로그램에 따라 적격성을 결정하는 지역 기관에 전달하지 않을 것이라는 알림.
4. 학교 급식 신청서는 기밀이며, 아동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에 따라 건강 프로그램 등록에 사용하기 위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제외하고, Charter School은 정보를 연방 국토안보부 및 사회보장국을 포함한 기타 일체의 정부 기관과 공유하지 않을 것이라는 알림.
5. 학교 급식 신청서 정보는 신속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주 보건부에서 지정한 기관 및 Medi-Cal 프로그램의 관리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목적으로 Medi-Cal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주 및 지역 기관에 의해서만 사용되며, Medi-Cal 프로그램 관리 이외의 목적으로 연방 국토안보부 및 사회보장국을 포함한 기타 정부 기관과 공유되지 않습니다.
6. 사용 가능한 서비스, 프로그램 요건, 권리와 책임, 개인 정보 보호 및 기밀 유지 요건을 포함한 Medi-Cal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

BSS가 학교 급식 신청서를 온라인에 게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1. 신청자에게 신청서 제출 방법을 알려주는 해당 언어로 된 지침과 더불어, 미 농무부에서 번역된 신청서를 게시한 인터넷 웹사이트 링크를 포함합니다.

2. 적격성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질문만 완료하도록 요구합니다.
3. NSLP 및/또는 SBP에 따라, 무료 또는 할인 가격 급식에 대한 연방 자격과 관계없이, 급식을 요청하는 모든 학생은 급식을 무료로 수령한다는 명확한 진술을 포함합니다.
4. 노숙자 또는 이민자 가족을 위한 명확한 지침을 포함합니다.
5. 공공법 113-79 및 105-277에 의해 설정된 개인 정보 보호권 및 공개 보호를 준수합니다.
6. 다음 모든 항목에 대한 링크를 포함합니다.
    i. CalFresh에 대한 온라인 신청서.
    ii. 건강 관리를 위한 온라인 단일 주 신청서.
    iii. "WIC 정보 및 신청 방법"이라는 제목의 주 보건부가 관리하는 인터넷 웹페이지 또는 여성, 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특별 영양 보충 프로그램(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에 가족을 연결하는 주 보건부가 식별한 다른 인터넷 웹페이지.
    iv. 시 또는 교육구 내에서 참여가 승인된 여름 점심 프로그램의 인터넷 웹사이트.

직접 인증

모든 가정에서 급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 특정 상황에서 BSS는 추가 신청 없이 학생의 적격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BSS는 다음과 같은 학생을 적격자로 직접 인증합니다.

1. 1966년 아동 영양법 하에서 무료 점심 및/또는 무료 아침식사 자격이 되는,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 하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 구성원인 모든 아동.
2. CalWORKs(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위한 임시 지원 또는 "TANF"라고도 함) 또는 CalFresh 지원을 받는 가구 구성원인 모든 아동.
3. 인디언 보호구역에 대한 식품 배급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는 가구 구성원인 모든 아동.
4. 캘리포니아 교육법에 정의된 위탁, 이민자, 노숙 또는 가출 청소년으로 식별된 모든 아동.

이 정책은 Charter School이 학생을 징계하여 해당 학생에게 영양학적으로 적절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을 금지합니다.

기밀 유지/기록 공개

일반 급식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신청서 및 기록은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법률에 의해 제공되고 위원회가 승인하거나 법원 명령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될 수 없습니다.

위원회는 지정된 직원이 다음 목적을 위해 일반 급식 프로그램에 대한 관련된 개별 기록을 사용하도록 승인합니다.

1. 학업 성취도 데이터 세분화
2. 타이틀 1 프로그램 향상 학교로 확인된 일체의 학교에서 대안 지원에 적격한 학생의 식별

학생이 Charter School에서 다른 Charter School, 교육구, 카운티 교육청 프로그램 또는 사립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 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해당 학생의 급식 혜택이 계속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학생의 급식 자격 정보를 다른 교육 기관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프로그램 적격성 및 지역 관리 기금 공식 계산에 사용되는 데이터와 관련된 목적으로 급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의 이름과 자격 상태를 등록된 학생과 같은 가구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Charter School, 교육구 또는 카운티 교육청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지역 관리 기금 공식에 따라 기금 할당을 결정하고 해당 기금의 회계 책임을 평가하기 위해 급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의 이름과 자격 상태를 교육감에게 공개할 수 있습니다.

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학생이 무료 급식에 대해 승인을 받고 신청자가 이 정보의 공유에 동의하는 경우 Medi-Cal 프로그램 참여 적격성을 결정하는 지역 기관에 학교 급식 프로그램 신청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또한 학생이 무료 또는 할인가 급식에 대한 승인을 받았고 신청자가 이 정보의 공유에 동의할 경우, CalFresh에 대한 적격성을 결정하는 지역 기관 또는 영양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적격성을 결정하는 기관에 학교 급식 프로그램 신청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이 정보는 다음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1. 급식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개별 지표는 법률에 의해 달리 승인되지 않는 한, 학생의 영구 기록에 유지되지 않습니다.
2. 급식 프로그램에 개별 학생 참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해 부과된 기타 모든 기밀 유지 요건이 충족됩니다.

차별 금지 성명

Charter School은 캘리포니아 형법의 증오 범죄 정의에 포함되어 있는 실제 또는 인지된 장애, 성별, 성 정체성, 성별 표현, 국적, 인종 또는 민족성, 이민 상태, 종교, 종교적 소속, 성적 지향, 임신 또는 기타 특징을 근거로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Charter School은 1973년 재활법 504항, 1990년 미국 장애인법("ADA") I편I, 2004년 장애인 교육 개선법(“IDEA”)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장애 학생과 관련된 연방법의 모든 조항을 준수합니다.

Charter School은 학업 성적, 장애, 방치 또는 비행, 영어 능력, 노숙 또는 위탁/이동 청소년, 경제적 불이익, 국적, 인종, 민족 또는 성적 취향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이유로 학생들이 Charter School에 등록하거나 등록하려 시도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Charter School은 현재 Charter School에 재학중인 학생의 Charter School의 헌장 및 관련 정책에 따른 퇴학 및 정학 또는 비자발적 퇴학의 경우를 제외하고 앞서 언급한 이유에 근거하여 제적 또는 다른 학교로 전학하도록 권장하지 않습니다.

Charter School은 학생 등록 전에 학생 기록을 요청하거나 요구하지 않습니다.

Charter School은 다음과 같은 시기에 학부모, 보호자 또는 만 18세 이상의 학생에게 캘리포니아 교육부 고발 통지 및 양식의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1) 학부모, 보호자 또는 만 18세 이상의 학생이 등록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 (2) 등록 추첨 실시 전, 그리고 (3) 학생의 제적 전.

Charter School은 1972년 교육 수정안 IX편(성별), 1964 년 민권법 IV, VI 및 VII편(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 국가), 1975년 연령 차별법, IDEIA, 그리고 ADA의 504항 및 II편(정신 또는 신체 장애)에 따라 불법적인 괴롭힘이 없는 교육 분위기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harter School은 또한 사이버 성적 괴롭힘을 포함한 성희롱, 그리고 임신, 출산 또는 관련 건강 상태, 인종, 종교, 종교적 소속, 신조, 피부색, 이민 상태, 성별, 성 정체성, 성별 표현, 출신 국가 또는 혈통,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의학적 상태, 결혼 여부, 연령, 성적 취향 또는 기타 연방, 주, 지역 법률,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해 보호되는 근거에 따른 괴롭힘을 금지합니다. Charter School은 직원, 독립 계약자 또는 Charter School과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기타 인원 또는 일체의 기타 개인, 학생 또는 자원봉사자에 의한 차별, 위협이나 괴롭힘(사이버 성적 괴롭힘 포함)을 비롯한 모든 유형의 괴롭힘을 묵인하거나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는 직위나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직원, 학생 또는 자원봉사자 및 관계에 적용됩니다. Charter School은 괴롭힘에 대한 고발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며 정당한 경우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상기 본 항에 설명된 괴롭힘과 관련된 문의와 불평불만은 Charter School 공통 고발 처리 절차("UCP") 준수 담당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Leeann Yu, Chief Operations Officer (최고 운영 책임자)
lyu@brightstarschools.org
Bright Star Schools
물리적 주소: 600 S. La Fayette Park Pl, Los Angeles, CA 90057
우편 주소: 5101 Santa Monica Blvd Ste 8, PMB 93, Los Angeles, CA 90029
(323) 954-9957 x1006

영어 능력 부족이 Charter School의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입학 또는 참여하는 데 장벽이 되지는 않습니다. Charter School은 고발을 제기하거나, 고발 조사에 참여 또는 참여를 거부하는 모든 자에 대한 보복을 금지합니다.

스쿨버스 및 승객 안전

스쿨버스 또는 학교 학생 활동 버스로 이동하는 모든 학생은 스쿨버스 비상 절차 및 승객 안전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전체 정책의 사본은 메인 사무실에서 요청 시 제공됩니다.

동물 해부

Charter School의 학생들은 과학 커리큘럼의 일부로 동물 해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보호자가 서명한 서면 진술서를 교사에게 제공하고, 동물 또는 동물의 모든 일부를 해부하거나 기타 다른 방식으로 해를 가하거나 파괴하는 것에 대한 학생의 도덕적 반대를 명시한 모든 학생은 교사가 적절한 대안 교육 프로젝트가 가능하다고 여기는 경우 그러한 활동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안 교육 프로젝트는 학생이 그에 상응하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합니다. 학생을 처벌하는 수단으로서 원래의 교육 프로젝트보다 더 힘들지 않아야 합니다. 학생은 동물 또는 동물의 모든 일부를 해부하거나 기타 다른 방식으로 해를 가하거나 파괴하는 것에 대한 도덕적 반대를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학교 안내서의 이용 가능 여부

요청 시, Charter School은 제공되는 모든 코스의 제목, 설명 및 교육 목표 등의 커리큘럼을 포함한 학교 안내서를 모든 학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법률에 따라 Charter School은 복사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안내서에 대해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Cal Grant 프로그램 공지

Charter School은 주 법률에 따라 만 18세 이상의 학생 또는 만 18세 미만 학생의 부모/보호자가 탈퇴하지 않는 한, 매년 10월 1일까지 모든 고등학생의 평균 학점("GPA")을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1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은 학생(또는 학생이 만 18세 미만인 경우 학부모/보호자)이 2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탈퇴하지 않는 한 Cal Grant 신청자로 간주됩니다.

뇌진탕/두부 부상

뇌진탕은 머리에 부딪힘, 타격 또는 충격을 받거나 머리에 전달된 힘으로 신체의 다른 부분에 타격을 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뇌 손상입니다. 대부분의 뇌진탕은 경미하나, 모든 뇌진탕은 잠재적으로 심각하며 제대로 인지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장기간의 뇌 손상 및 사망을 포함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Charter School은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결정했기에, 해당 활동 중에 뇌진탕이나 두부 부상을 입은 것으로 의심되는 운동선수는 하루의 남은 시간 동안

학교가 후원하는 운동 활동에서 즉시 제외해야 합니다. 선수는 면허가 있는 의료 제공자가 평가하고 이상이 없다는 서면 진단서를 받을 때까지 해당 활동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면허를 소지한 의료 제공자가 선수에게 뇌진탕 또는 두부 부상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선수는 면허가 있는 의료 제공자의 감독 하에 최소 7일 동안 점진적인 경기 복귀 프로토콜을 완료해야 합니다. 매년, 선수가 연습이나 경기를 시작하기 전, 뇌진탕 및 두부 부상 정보지에 선수 및 선수의 학부모나 보호자가 서명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정규 수업일에 또는 체육 교육 과정의 일부로 운동 활동에 참여하는 선수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신매매 방지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인신매매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며, 모든 학생이 취약할 수 있습니다. Charter School은 (1) 인신매매의 횡행, 특성 및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전략, 건강한 경계를 정하는 기술, 안전하게 도움을 구하는 방법, (2) 소셜 미디어 및 모바일 장치 애플리케이션이 인신매매에 사용되는 방식에 대해 본교의 학생들에게 알리는 것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캘리포니아 건강한 청소년법에 따라 Charter School은 성적 학대, 폭행 및 괴롭힘을 포함한 인신매매 예방에 대해 연령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할 것입니다. 귀하는 인신매매 방지에 관한 지침의 전체 또는 일부에서 자녀를 제외시킬 권리가 있습니다. 제외 양식은 학교 웹사이트, 학교 사무실 관리자, 학교 프론트 오피스에서 편의에 맞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지침에 대한 귀하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자녀를 제외해 달라는 서면 요청을 받지 못한 경우, 귀하의 자녀는 교육 내용에 포함될 것입니다.

성적 학대, 폭행 및 희롱을 포함한 인신매매 및 학대 예방 관련 커리큘럼 및 리소스에 대한 학부모/보호자용 정보 및 자료는 Charter School 웹사이트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강 건강 평가

공립학교 유치원에 등록한 학생 또는 이전에 공립학교 유치원에 등록한 적이 없는 경우, 1학년에 등록한 학생은 치과 전문가가 구강 건강 평가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요건에 대해 질문이 있는 경우 메인 사무실로 문의하십시오.

성 건강 교육

Charter School은 7-12학년 학생에게 종합적인 성 건강 교육을 제공합니다.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는 포괄적인 성 건강 교육, HIV 예방 교육 및 해당 교육과 관련된 평가의 전체 또는 일부에서 수동적 동의("옵트아웃") 절차를 통해 자녀를 제외할 권리가 있습니다. Charter School은 포괄적인 성 건강 교육 및 HIV 예방 교육에 적극적인 학부모 동의("옵트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학부모와 보호자는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 종합 성 건강 교육 및 HIV 예방 교육에 사용되는 서면 및 시청각 교육 자료를 검사합니다.
- Charter School에 서면 요청을 보내, 자녀가 포괄적인 성 건강 교육 및 HIV 예방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외합니다.
- 종합적인 성 건강 또는 HIV/AIDS 예방 교육이 Charter School 직원 또는 외부 컨설턴트에 의해 진행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정보를 듣습니다. Charter School이 종합적인 성 건강 또는 HIV/AIDS 예방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외부 컨설턴트를 사용하거나 초청 연사와 함께 회의를 개최하기로 선택한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한 정보를 듣습니다.
    - 강의 날짜
    - 각 초청 연사의 조직명 또는 소속

- 교육법 51930에서 51939항까지의 사본을 요청합니다.

학생의 건강 행동과 위험을 측정하기 위한 익명인, 자발적이고 기밀성인 연구 및 평가 도구(성에 관한 학생의 태도나 관행에 대한, 연령에 적합한 질문이 포함된 검사, 설문지 및 설문 조사)가 7-12학년 학생들에게 실시될 수 있습니다. 학부모 또는 보호자는 수동적 동의("옵트아웃") 절차를 통해 자녀를 검사, 설문지 또는 설문 조사에서 제외할 권리가 있습니다. 학부모 또는 보호자는 이러한 검사, 설문지 또는 설문 조사가 실시될 것임을 서면으로 통지받아야 하며, 원하는 경우 검사, 설문지 또는 설문 조사를 검토할 기회가 주어지고, 자녀를 시험, 설문지, 설문 조사에서 제외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제외하려면 반드시 Charter School에 서면으로 요청을 명시해야 한다는 정보를 들어야 합니다.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학생의 참여를 제외한다는 서면 요청을 Charter School이 받은 경우, 학생은 종합 성 건강 교육 또는 HIV 예방 교육의 어떤 수업에도 참석할 수 없거나, 또는 학생의 건강 행동 및 위험에 대한 익명인, 자발적이고 기밀인 검사, 설문지 또는 설문 조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학생이 강의를 듣지 않거나 시험, 설문지 또는 설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요청한 학생에게는 대안 교육 활동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교사 자격 정보

Charter School은 모든 학생 성공법("ESSA")에 의해 재승인 및 수정된 초중등 교육법("ESEA")을 통해 I편(Title I) 연방 기금을 받기에, Charter School에 다니는 학생의 모든 학부모/보호자는 최소한 다음을 포함하여 담임교사 및/또는 보조교사의 전문적 자격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학생의 교사가 다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a. 교사가 수업을 제공하는 학년 수준 및 과목 영역에 대한 주 자격 및 면허 기준을 충족함,
    b. 주 자격 또는 면허 기준이 면제된 긴급 상황 또는 기타 임시 상태에서 가르치고 있음, 그리고
    c. 교사 자격증에 해당되는 교과 분야에서 가르치고 있음, 그리고
2. 보조교사들이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의 여부 및 제공되는 경우, 해당 보조교사들의 자격.

요청 시, Charter School은 학부모/보호자에게 적시에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학부모/보호자는 이 정보를 받기 위해 hrdepartment@brightstarschools.org 또는 (323) 954-9957로 인사부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특수 교육/장애 학생

우리는 모든 학생들이 배울 수 있으며 학업 환경과 사회에 기여하는 구성원이 될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신념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Charter School은 장애인 교육 개선법("IDEA"), 교육법 요건, LAUSD Charter School 디비전의 관련 정책 및 절차에 따라 특수 교육 강의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Charter School에 등록한 특수 교육 학생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 학생의 평가된 필요에 따라 모든 학생들에게 고품질 교육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harter School은 각 학생의 교육적 필요를 적절하게 충족시키기 위해 학부모, 학생, 교사 및 기타 기관과 협력합니다.

IDEA 및 관련 주 법률에 따라, Charter School은 장애로 알려지거나 의심되는 Charter School 등록 아동을 식별, 위치 탐색 및 평가하여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지의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노숙 또는 위탁 청소년인 장애 아동이 포함됩니다. Charter School은 장애를 이유로 학생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자녀가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될 경우, 학생의 학교 상담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록 이의 신청 및 인명록 정보를 포함한 학생 기록

가족 교육 권리 및 개인 정보 보호법("FERPA")은 학부모 및 만 18세 이상의 학생("적격한 학생")에게 학생의 교육 기록과 관련된 특정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러한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Charter School이 액세스 요청을 수신한 날 이후 업무일 기준 5일 이내에 학생의 교육 기록을 조사하고 검토할 권리. 학부모 또는 적격한 학생은 Charter School 교장 또는 피지명인에게 조사하고자 하는 기록을 밝히는 서면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Charter School 직원은 액세스 준비를 하고 기록을 조사할 수 있는 시간 및 장소를 학부모 또는 적격한 학생에게 통지합니다.

2. 학부모 또는 적격한 학생이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FERPA에 따른 학생의 개인 정보 보호권을 위반한다고 여기는 학생의 교육 기록 수정을 요청할 권리.

Charter School에 기록 수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학부모 또는 적격한 학생은 변경을 원하는 기록 부분을 명확하게 밝히고 변경해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Charter School의 교장 또는 피지명인에게 서신을 작성해야 합니다. Charter School이 학부모 또는 적격한 학생이 요청한 대로 기록을 수정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Charter School은 학부모 또는 적격한 학생에게 해당 결정 및 수정 요청에 관한 청문회 권리를 통지합니다. 청문회 절차에 관한 추가 정보는 청문회 권리 통지 시 학부모 또는 적격한 학생에게 제공될 것입니다. Charter School이 학부모 또는 적격한 학생의 요청에 따라 기록을 수정하기로 결정한 경우, 교장은 반드시 해당 정보의 수정 또는 제거 및 파기를 명령하고 학부모 또는 적격한 학생에게 서면으로 수정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3. FERPA가 동의 없이 공개를 승인하는 범위를 제외하고, Charter School이 학생의 교육 기록에서 개인 식별 정보("PII")를 공개하기 전에 서면 동의서를 제공할 권리.

동의 없이 공개를 허용하는 한 가지 예외는, 정당한 교육적 이해 관계가 있는 Charter School 직원에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Charter School 직원이란 행정관, 관리자, 강사 또는 지원 담당 직원(보건 또는 의료 직원 및 법률 집행부 직원 포함) 또는 Charter School 위원회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Charter School에 의해 고용된 자입니다. Charter School 직원에는 또한 Charter School이 자체 직원을 사용할 수 있을 기관 서비스나 직무를 수행하는, 그리고 교육 기록의 PII 사용 및 유지관리에 관해 학교의 직접적인 관리 하에 있는 Charter School 외부의 자원봉사자, 컨설턴트, 제공업자 또는 하청업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변호사, 감사관, 의료 컨설턴트, 치료사 또는 디지털 교육 플랫폼 및/또는 서비스의 계약된 제공업체, 징계 또는 고충 처리 위원회 등의 공식 위원회에서 자원봉사하는 학부모나 학생, 또는 다른 Charter School 직원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돕는 기타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Charter School 직원은 직업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교육 기록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 합법적인 교육적 이해 관계를 보유합니다.

요청이 있을 시, Charter School은 공개가 학생의 등록 또는 전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학생이 등록을 원하거나 등록할 의도가 있거나 이미 등록되어 있는 다른 교육구의 공무원에게 동의 없이 교육 기록을 공개합니다.

Charter School은 법이나 법원 명령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민 집행 목적으로 제삼자에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것임을 유념해 주십시오.

4. Charter School이 FERPA의 요건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하여 미국 교육부에 고발을 제기할 권리. FERPA를 관리하는 사무실명과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Student Privacy Policy Office(학생 개인정보 보호정책실)
U.S. Department of Education 400 Maryland Avenue, SW Washington, DC 20202

5. Charter School이 학부모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학생의 이름, 주소 및 전화 목록을 군대 모집자 또는 고등 교육 기관에 공개하지 않도록 요청할 권리.

FERPA는 공개가 FERPA 규정의 §99.31에 있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학부모 또는 적격한 학생의 동의 없이 학생의 교육 기록에서 PII 공개를 허용합니다. Charter School 직원을 대상으로 한 공개, 일부 사법 명령 또는 합법적으로 발행된 소환장과 관련된 공개, 인명록 정보 공개, 학부모 또는 적격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개를 제외하고, FERPA 규정의 §99.32에 따라 Charter School은 공개를 기록해야 합니다. 학부모 및 적격한 학생은 공개 기록을 조사하고 검토할 권리가 있습니다. Charter School은 학부모 또는 적격한 학생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학생의 교육 기록에서 PII를 다음 당사자에게 공개할 수 있습니다.

1. 34 C.F.R 99부에 정의된 적법한 교육적 이해관계가 있는 Charter School 직원,
2. 학생의 등록 또는 전학과 관련된 목적의 공개인 경우 학생이 등록을 원하거나 등록 의도가 있는 다른 학교. 학생의 전학 시, Charter School은 학생이 등록할 의도를 가진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에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수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학생의 누적 파일 원본 또는 사본을 수령 교육구이나 사립학교로 우송합니다. Charter School은 학부모나 적격한 학생이 공개를 시작하지 않는 한, 학부모 또는 적격한 학생에게 학부모 또는 적격한 학생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기록 요청을 알리기 위해 합리적인 시도를 할 것입니다. 또한, Charter School은 요청 시 공개된 기록의 사본을 학부모 또는 적격한 학생에게 제공하고 요청 시 학부모 또는 적격한 학생에게 청문회 기회를 제공합니다.
3. 적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20 U.S.C. § 1232g(b)(1)에 등재된 특정 공무원,
4. 적격성, 지원 금액, 지원 조건을 결정하거나 지원 조건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학생의 재정 지원 신청 또는 수령과 관련된 적절한 당사자,
5. 20 U.S.C. § 1232g(b)(1)(F)에 따라 Charter School을 위해 특정 연구를 수행하는 조직,
6. 인증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인증 기관,
7. 1986년 연방세법 152항에 규정된 부양 학생의 부모,
8. 사법 명령 또는 합법적으로 발부된 소환장을 준수하는 개인 또는 단체. 34 C.F.R. § 99.31(a)(9)(i)에서 발견된 예외 사항에 따라, 준수하기 전에 부모 또는 적격한 학생이 보호 명령을 구할 수 있도록 부모 또는 적격한 학생에게 명령 또는 소환장에 대해 알리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9. 건강 및 안전상의 비상 시에 알 필요가 있는 자들,
10. 특정 주 법률에 따라, 청소년 사법 제도 내 주 및 지방 당국,
11. 현재 등록된 또는 이전 학생에 대한 관할권을 보유한 위탁 가정, 학생의 교육이나 사례 관리를 담당하는 단기 복합 정신건강 프로그램(Residential Treatment Program) 직원, 인증된 또는 면허가 있는 위탁 부모, 승인된 친척 또는 혈연이 아닌 대가족 일원, 그리고 자원 가족을 비롯하여 해당 학생의 관리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돌봄 제공자(해당 돌봄 제공자가 학생의 교육적 권리 보유자로 임명되었는지의 여부와 무관)는, 학생 및 학부모를 위해 Charter School에서 설립한 플랫폼상에서 성적, 필기록, 출석, 징계, 온라인 의사소통, 그리고 Charter School이 개발하거나 유지 관리하고 있을 수 있는 일체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IEP") 또는 504항 계획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및/또는,
12. 폭력 범죄 또는 비강제 성범죄의 가해자라고 주장되는 자의 피해자. 공개에는 주장된 해당 범죄 또는 위법 행위와 관련하여 Charter School이 수행한 징계 절차의 최종 결과만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Charter School이 결론지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Charter School은 징계 절차의 최종 결과를 공개합니다. "인명록 정보"는 공개되는 경우 유해하거나 사생활 침해라고 일반적으로 간주되지 않는 정보입니다. Charter School은 학부모 또는 적격한 학생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인명록 정보로 지정한

개인 식별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Charter School은 다음 정보를 인명록 정보로 지정했습니다.

- 학생의 이름
- 학생의 주소
- 학부모/보호자의 주소
- 전화번호 목록
- 학생의 전자 메일 주소
- 학부모/보호자의 전자 메일 주소
- 생년월일 및 출생지
- 출석일
- 학년 수준
- 공식적으로 인정된 활동 및 스포츠 참여
- 운동팀 구성원의 체중 및 신장
- 받은 학위, 영예 및 상
- 가장 최근에 다녔던 교육 기관 또는 학회
- PIN, 비밀번호 등이 없이는 교육 기록에 액세스할 수 없는 전자 시스템상에서 통신에 사용되는 학생 ID 번호, 사용자 ID 또는 기타 고유한 개인 식별 정보(학생의 사회보장번호의 전체 또는 일부는 이 목적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Charter School이 귀하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자녀의 교육 기록에 있는 인명록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등록 또는 재등록 시에 Charter School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본 핸드북의 연락처 정보에 등재된 연락처 정보를 사용하여 교장에게 알려 주십시오. 전체 정책의 사본은 메인 사무실에서 요청 시 제공됩니다.

급성 심정지 예방 및 자동제세동기

Charter School은 운동 선수의 건강, 특히 심장 건강에 투자합니다. 급성 심정지("SCA")는 심장이 갑자기, 그리고 예기치 않게 박동을 멈추는 것입니다. Charter School에서 육상 경기에 참가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아래 링크를 통해 급성 심정지에 대한 정보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https://www.cdc.gov/dhdsp/docs/cardiac-arrest-infographic.pdf.

주 시험

Charter School은 해당 학년에 요구되는 주정부 시험을 매년 시행해야 합니다(예: 캘리포니아 학생 수행 능력 및 향상 평가["CAASPP"]). 일체의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CAASPP의 일부 또는 전체에서 자녀를 제외해 달라는 학부모 또는 보호자의 Charter School 당국 대상 서면 요청이 승인됩니다. 요청 시, 학부모는 학생에게 실시되는 모든 주 학업 평가에 대해 학생의 성취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약품 투여

정규 수업일 동안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품 또는 승인된 의료 제공자가 학생을 위해 처방하거나 주문한 처방약을 복용해야 하거나 복용해야 하는 학생은 지정된 Charter School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이 약품 투여에 있어 지정된 Charter School 직원의 도움을 받기 위해, Charter School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획득해야 합니다.

1. 약품명, 복용법, 양/복용량, 약을 복용해야 하는 시간 일정을 상세 기록한, 학생의 공인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서면 진술서, 그리고
2. 승인된 의료 제공자의 진술서에 명시된 문제에서 Bright Star가 학생을 지원하기를 원하는 학생의 부모, 위탁부모 또는 보호자의 서면 진술서.

모든 약품은 안전하고 적절한 보관 장소에 보관되며 승인된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하게 지정된 직원이 관리합니다. 아동은 도시락 가방, 배낭 등에 일체의 약품을 소지할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의 시간 중 학생에게 배분해야 하는 모든 약품은 프론트 오피스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아동은 자신의 신체나 소지품에 등에 일체의 약품을 소지할 수 없습니다. 처방약은 의사의 처방전 사본 및 학교가 따라야 하는 일정과 함께 원래 용기에 들어있어야 합니다. 일체의 약품 투여에 대한 서면 동의는 학생의 부모/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심각한 부상을 입은 학생(예: 깁스, 부목 또는 목발이 필요한 학생)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 수준 및/또는 일체의 제한 사항에 대한 의사의 의견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학부모의 서면 동의 없이는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약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위탁 및 이동 청소년 교육

정의

본 연례 통지의 목적에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위탁 청소년

이는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1. 캘리포니아 복지 및 기관법("WIC") 309항에 따라 제출된 청원의 대상인 아동(아동이 소년 법원에 의해 아동의 집에서 퇴출되었는지의 여부).
2. WIC 602항에 따라 제출된 청원의 대상인 아동은 소년 법원에 의해 아동의 집에서 퇴출되어 위탁 보호 중입니다.
3.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WIC 450항에 설명된 대로 소년 법원의 과도기 관할하에 있는 비미성년자:
    a. 해당 비미성년자는 소년 법원의 위탁 양육 배치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만 18세가 됨.
    b. 해당 비미성년자는 카운티 복지 부서, 카운티 보호 관찰 부서, 인디언 부족, 부족 공동체 또는 부족 조직의 배치 및 보호 책임하에 위탁 양육 중임.
    c. 해당 비미성년자는 과도기적 독립 생활 사례 계획에 참여 중임.
4. 부족 법원에 제출된 청원의 대상인 인디언 부족, 부족 공동체 또는 부족 조직 법원의 부양 아동.[5]
5. WIC 11400항에 정의된 바에 따른, 자발적 배치 협약의 대상인 아동.

전 소년법정학교 학생

이는 고등학교 2학년을 마친 후, 소년법정학교에서 Charter School로 편입한 학생을 의미합니다.

군인 가정 자녀

이는 현역 군인의 세대에 거주하는 학생을 의미합니다.

현재 이주 아동

이는 지난 12개월 이내에 해당 아동 또는 아동의 직계 가족 구성원이 농업이나 어업 활동에서 임시 또는 계절 고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학부모, 보호자 또는 양육권을 가진 다른 사람과 함께 캘리포니아 내에서 또는 그 외 다른 주의 지역 교육 기관("LEA")에서 Charter School로 이동한 아동을 말합니다. 해당 아동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는 아동의 이주 교육 서비스 적격성에 대한

[5] Charter School에서는 어떤 학생이 인디언 부족, 부족 공동체 또는 부족 조직의 부양 아동임을 증명하기 위해 인디언 부족 또는 부족 법원 대표자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정보를 제공받은 상태입니다. 여기에는 학부모/보호자 없이 농업이나 어업 활동에서 임시 또는 계절 고용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계속 이주해 온 아동이 포함됩니다.

신규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이는 영어 능력 개발을 주요 목표로 하는 새로이 도착한 이민자 학생들의 학업 및 과도기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을 의미합니다.

이 통지에서 위탁 청소년, 전 소년법정학교 학생, 군인 가정 자녀, 현재 이주 아동 및 신규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은 "위탁 및 이동 청소년"으로 통칭합니다. 이 통지에서 학부모, 보호자 또는 위탁 및 이동 청소년에 대한 교육적 권리를 보유한 기타 인물을 "학부모/보호자"로 칭합니다.

위탁 및 이동 청소년 연락 담당자

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다음 직원을 위탁 및 이동 청소년 연락 담당자로 지정합니다.

Marni Parsons
학생 및 가족 서비스 담당 교감(Vice President of Student and Family Services)
물리적 주소: 600 S. La Fayette Park Pl, Los Angeles, CA 90057
우편 주소: 5101 Santa Monica Blvd Ste 8, PMB 93, Los Angeles, CA 90029
323-954-9957 x1004
mparsons@brightstarschools.org

위탁 및 이동 청소년 연락 담당자의 책임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1. 적절한 교육 배치, 학교 등록 및 위탁 아동의 학교 체크아웃을 보장하고 용이하게 지원합니다.
2. 한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할 때 위탁 아동을 지원하여 학점, 기록 및 성적의 적절한 이전을 보장합니다.

학교 안정성

Charter School은 위탁 청소년 및 그 학부모와 협력하여 각 학생이 가장 제한이 적은 교육 프로그램에 배정되고, 모든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학업 자원, 서비스, 과외 활동 및 심화 활동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 대항 스포츠를 포함하나 여기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위탁 청소년의 교육 및 배치에 관한 모든 결정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기반으로 하며, 특히 다른 무엇보다도 학업 성취 과정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교육 안정성 및 가장 제한이 적은 교육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고려합니다.

위탁 청소년, 현재 이주 자녀 및 군인 가정 자녀는 그것이 최선의 이익이라면 출신 학교에 남을 권리가 있습니다. Charter School은 Charter School에 재등록을 원하는 위탁 청소년, 현재 이주 자녀 또는 군인 가정 자녀를 학생의 출신 학교로 즉시 등록합니다(Charter School의 수용력에 따라, 그리고 Charter School의 헌장 및 위원회 정책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위탁 청소년의 출신 학교로 Charter School에 남아 있기를 요청하는 것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위탁 청소년은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Charter School에 남을 권리가 있습니다. Charter School은 또한 일반적인 등록 문서 또는 일정한 요건(예: 이전 학교의 의료 기록 또는 학업 기록 생성)을 충족할 수 있는 학생의 능력에 관계없이, Charter School로 편입하고자 하는 위탁 청소년, 현재 이주 자녀 또는 군인 가정 자녀를 즉시 등록합니다(Charter School의 수용력에 따라, 그리고 Charter School의 헌장 및 위원회 정책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위탁 청소년, 현재 이주 자녀 및 군인 가정 자녀는 다음과 같이 위탁 청소년, 현재 이주 자녀 또는 군인 가정 자녀로서의 신분이 만료된 후 출신 학교에 남아 있을 권리가 있습니다.

1. 유치원부터 8학년까지의 학생의 경우, 학생의 신분이 변경된 학년도 동안 출신 학교에

계속 다닐 수 있습니다.
2. 고등학교에 등록된 학생의 경우, 졸업 시까지 출신 학교에 계속 다닐 수 있습니다.

졸업 요건

고등학교 2학년을 마친 후 언제든 Charter School로 편입하는 위탁 및 이동 청소년과 고등학교 3 또는 4학년에 재학 중인 신규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은, Charter School에서 해당 학생이 고등학교 4학년 말까지 Charter School의 졸업 요건을 합리적으로 완료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교육법 51225.3항("추가 졸업 요건")에 명시된 캘리포니아 최소 졸업 요건을 초과하는 Charter School의 일체의 졸업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위탁 및 이동 청소년이 고등학교 3학년 또는 4학년에 재학 중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학생이 전학 날짜까지 취득한 학점 수 또는 학생의 학교 등록 기간 중 어느 것이든 면제에 대해 학생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기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규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의 경우, 11학년 또는 12학년 등록을 통해 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인지 또는 4학년인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기 요건에 따라 면제 자격이 있을 수 있는 학생이 Charter School로 전학한 날로부터 30 달력일 이내에 Charter School은 학생, 학부모/보호자, 해당되는 경우 학생의 사회복지사 또는 보호감찰관에게 면제 가능 여부 및 학생이 면제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Charter School은 Charter School의 추가 졸업 요건이 면제된 학생과 학생의 학부모/보호자에게, 면제된 일체의 요건이 중등 이후 교육 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의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리고,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컬리지를 통해 이용 가능한 편입 기회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Charter School은 Charter School에 계속 재학할 적격한 학생에게 Charter School의 추가 졸업 요건 면제를 수락하거나 학생이 수강할 자격이 있는 수업의 등록 또는 수업의 완료 능력을 거부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Charter School은 면제를 취소하지 않으며 학생이 이전에 면제를 거부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학생이 자격이 있는 경우 언제든, 면제에 대한 적격한 학생의 요청을 승인해야 합니다. Charter School의 추가 졸업 요건에 대한 적격한 학생의 면제는 해당 학생이 Charter School에 등록되어 있는 동안 또는 법원의 관할 구역에서 종료시킨 후에나 학생이 더 이상 군인 가정 자녀, 현재 이주 아동 또는 신규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게 된 후에 다른 학교로 전학할 경우 계속 적용됩니다.

Charter School은 면제 대상 학생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학생에게 전학을 요구하거나 요청하지 않습니다. 또한 학생, 학생의 부모/보호자 또는 교육적 권리 보유자, 혹은 학생의 사회복지사나 보호감찰관은 Charter School의 추가 졸업 요건 면제를 받기 위해 전학을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Charter School의 추가 졸업 요건이 면제된 학생이 고등학교 4학년이 끝나기 전에 교육법 51225.3항에 명시된 캘리포니아 최소 교과 과정 요건을 완료하고 Charter School에 계속 다닐 자격이 있는 경우, Charter School은 학생이 고등학교 4학년이 끝나기 전에 졸업하도록 요구하거나 요청하지 않습니다.

학생이 고등학교 5학년 말까지 Charter School의 졸업 요건을 합리적으로 완료할 수 있다고 Charter School에서 판단하는 경우, Charter School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1. Charter School의 졸업 요건을 완료하기 위해 5학년 동안 Charter School에 남을 수 있는 학생의 선택권을 학생에게 알립니다.
2. 학생과 학생의 교육 권리 보유자에게, Charter School의 졸업 요건을 완료하기 위해 5학년 동안 학교에 남는 것이
3. 중등 이후 교육 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의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립니다.

4.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컬리지를 통해 이용 가능한 편입 기회에 대한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합니다.
5. 학생이 만 18세 이상인 경우 학생과 합의하여, 또는 학생이 만 18세 미만인 경우 학생에 대한 교육 권리 보유자와 합의하여, Charter School의 졸업 요건을 완료하기 위해 5학년 동안 Charter School에 머물도록 허용합니다.

교과 과정 수용

Charter School은 일체의 공립 학교, 소년법정학교, 미국 이외의 국가에 있는 학교 및/또는 비공립, 비종파 학교 또는 기관에서 위탁 및 이동 청소년이 만족스럽게 완료한 일체의 교과 과정을 수용합니다.

Charter School은 공립 학교, 소년법정학교, 미국 이외의 국가에 있는 학교 및/또는 비공립, 비종파 학교 또는 기관에 다니는 동안 수강한 과정을 부분적으로 완료한 경우 위탁 및 이동 청소년에게 학점을 제공합니다. 학생이 전체 과정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Charter School은 학생의 교육 권리 보유자와 협의하여 학생이 고등학교 졸업까지의 시간 내에 요건을 합리적으로 완료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학생이 완료한 과정의 일부를 재수강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특정 과정에서 부분 학점이 부여될 때, 위탁 및 이동 청소년은 해당되는 경우 학생이 전체 과정을 계속하고 완료할 수 있도록 동일하거나 동등한 과정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러한 학생들은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교 또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입학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과정을 수강하거나 재수강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학생 기록

Charter School이 새로운 지역 교육 기관(이하 "LEA")에서 위탁 청소년의 교육 정보 및 기록에 대한 이동 요청 및/또는 학생 기록 요청을 받을 시, Charter School은 근무일 기준 2일 이내에 이러한 학생 기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Charter School은 학생의 완전한 교육 기록을 수집해야 하며, 여기에는 총 출석 시간, 취득한 전체 또는 부분 학점, 현재 수업 및 성적, 예방접종 및 기타 기록,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학생의 평가, IEP 및/또는 504 플랜을 비롯한 특수 교육 기록의 사본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학생 기록에 대한 모든 요청은 위탁 및 이동 청소년 연락 담당자와 공유되며, 연락 담당자는 위탁 및 이동 청소년(Foster and Mobile Youth)의 특수 교육 기록 작성의 필요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Charter School은 인증된 법원 출두, 관련 법원 명령 활동 또는 카운티나 배정 기관의 학생 배정 변경으로 인한 학생 결석의 결과로 위탁 청소년의 성적을 낮추지 않습니다. 카운티 또는 배정 기관에서 학생의 배정을 변경하기로 결정하여 위탁 청소년이 결석하는 경우, 해당 학생의 성적과 학점은 학생이 Charter School을 떠난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Charter School의 교육 기록 및 학생 정보 정책에 따라, 제한된 상황 하에서 Charter School은 학생 기록 또는 해당 기록에 포함된 개인 식별 정보를 학부모의 동의 없이 청소년 사법 시스템 내에서 위탁 가정 기관과 주 및 지방 당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특정 요청 당사자에게 공개할 수 있습니다. 만 16세 이상이거나 10학년을 마친 학생은 자신의 학교 기록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징계 결정

Charter School이 퇴학 권고 미결정 상태인 일체의 위탁/청소년의 정학을 연장하려는 경우, Charter School은 해당 학생의 변호사 및 관련 카운티 기관의 적절한 대리인을 정학 연장이 논의되는 회의에 초대할 것입니다.

Charter School이 위탁 청소년이기도 한 장애 학생에게 퇴학 권고가 임의적인 원인이 된 행위로 인해 등교일 기준 연속 10일을 초과하는 정학 처분을 내리려 하거나 퇴학시키려는 경우, Charter

School은 해당 학생의 변호사 및 관련 카운티 기관의 적절한 대리인을 징후 결정 심사 회의에 참여하도록 초대할 것입니다.

비준수에 대한 고발

상기 요약된 일체의 요건 비준수에 대한 고발은 Charter School의 공통 고발 처리 절차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공통 고발 처리 정책 및 절차의 사본은 본교 웹사이트인 https://www.brightstarschools.org에서 제공됩니다.

전체 정책의 이용 가능 여부

Charter School에 등록하는 일체의 위탁 및 이동 청소년에게는, Charter School의 전체 위탁 청소년 정책의 사본이 등록 시점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전체 정책의 사본은 메인 사무실에서 요청 시 제공됩니다.

노숙 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

"노숙 아동 및 청소년"이란 고정적이고 규칙적이며 적절한 야간 거주지가 부족한 개인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아동 및 청소년이 포함됩니다(42 U.S.C. § 11434a).

1. 주택의 상실, 경제적 어려움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타인의 주택을 공동으로 사용 중, 적절한 대체 숙박시설이 부족하여 모텔, 호텔, 트레일러 파크 또는 캠핑장에 거주 중, 비상 또는 임시 보호소에 거주 중, 또는 병원에 버려진 상태임,
2. 인간을 위한 정규 수면용 시설로 설계되지 않았거나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공공 또는 사적 장소인 주요 야간 거주지에 있음,
3. 자동차, 공원, 공공장소, 버려진 건물, 표준 이하의 주택, 버스 또는 기차역, 또는 이와 유사한 환경에서 거주 중, 및/또는
4. 이주 아동 및 동반자가 없는 청소년(부모 또는 보호자의 물리적 보호를 받지 않는 청소년)은 상기 "노숙"의 정의를 충족할 경우 노숙 청소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노숙 상태는 학부모 또는 보호자와 협력하여 결정됩니다. 동반자가 없는 청소년의 경우, 상태는 Charter School 연락 담당자가 결정합니다.

학교 연락 담당자

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노숙 학생을 위한 학교 연락 담당자(42 U.S.C. § 11432(g)(1)(J)(ii))로 다음 직원을 지정합니다.

Marni Parsons
학생 및 가족 서비스 담당 교감(Vice President of Student and Family Services)
물리적 주소: 600 S. La Fayette Park Pl, Los Angeles, CA 90057
우편 주소: 5101 Santa Monica Blvd Ste 8, PMB 93, Los Angeles, CA 90029
323-954-9957 ext 1004
mparsons@brightstarschools.org

Charter School 연락 담당자는 다음을 보장합니다(42 U.S.C. § 11432(g)(6)).

1. 노숙자 학생은 학교 교직원, 다른 기관 및 대리자의 봉사 및 조정 활동, 그리고 Charter School에서 관리하는 연간 거주지 설문지를 통해 식별됩니다.
2. 노숙 학생은 Charter School에 등록하고 Charter School에서 성공할 수 있는 완전하고 평등한 기회를 갖습니다.
3. 노숙 학생 및 가족은 헤드스타트법 하의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얼리 헤드스타트 프로그램

포함), 장애인 교육법 C부 하의 조기 개입 서비스, 존재할 경우, Charter School에서 관리하는 기타 모든 유아원 프로그램, 의료 서비스, 치과 서비스, 정신 건강 서비스 및 약물 남용 서비스, 주택 서비스 및 기타 적절한 서비스로의 위탁을 비롯하여 당사자에게 적격한 교육 서비스를 받습니다.

4. 학부모/보호자에게는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교육 및 관련 기회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 자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5. 노숙 아동의 교육적 권리에 대한 공공 통지는 학교, 보호시설, 공공 도서관, 급식소 등 노숙 청소년 및 동반자가 없는 청소년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자주 모이는 장소에, 노숙 청소년 및 동반자가 없는 청소년의 부모 및 보호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과 형태로 전파됩니다.
6. 등록/입학 관련 분쟁은 법률, Charter School 헌장 및 위원회 정책에 따라 조정됩니다.
7. 학부모/보호자 및 동반자가 없는 청소년은 해당될 경우 모든 교통 서비스에 대해 완전히 정보를 제공받습니다.
8. 서비스를 제공하는 Charter School 직원은 전문성 개발 및 기타 지원을 받습니다.
9. Charter School 연락 담당자는 노숙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주 코디네이터, 지역 사회 및 학교 직원과 협업합니다.
10. 동반자가 없는 청소년은 학교에 등록되며, 주 정부가 다른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해 구축한 것과 동일한 난이도의 주 정부 학업 기준을 충족할 기회를 보유하며, 1965년 고등교육법 480항 하에서 독립적인 학생으로서의 지위에 대한 정보를 들으며, 청소년들은 해당 법의 483항에 설명된 연방 학자금 지원을 위한 무료 신청서(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의 목적으로 그러한 지위의 확인을 받기 위해 Charter School 연락 담당자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알립니다.

캘리포니아 교육부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 내 노숙자 교육 연락 담당자의 연락처 정보 목록을 게시합니다. https://www.cde.ca.gov/sp/hs/

거주지 설문지

Charter School은 노숙 아동 및 청소년을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주지 설문지를 관리합니다. Charter School은 거주지 설문지가 CDE에서 개발한 모범 사례를 기반으로 하도록 해야 합니다. Charter School은 매년 학생의 모든 부모/보호자와 Charter School의 모든 비동반 청소년에게 거주지 설문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거주지 설문지에는 학생이 노숙 아동이나 청소년 또는 비동반 청소년으로서 갖는 권리와 보호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거주지 설문지는 종이 형식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거주지 설문지는 Charter School에 등록한 학생의 15% 이상이 사용하는, 영어 이외의 기본 언어로 제공되어야 하며 학생의 학부모/보호자 또는 비동반 청소년의 요청에 따라 다른 언어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Charter School은 작성 완료된 거주지 설문지를 수집하고 매년 CDE에 등록된 노숙 아동, 청소년 및 비동반 청소년의 수를 보고해야 합니다. (교육법 48851항.)

고등학교 졸업 요건

고등학교 2학년을 마친 후 언제든 Charter School로 편입하는 노숙 학생은, Charter School에서 해당 학생이 고등학교 4학년 말까지 Charter School의 졸업 요건을 합리적으로 완료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교육법 51225.3항("추가 졸업 요건")에 명시된 캘리포니아 최소 졸업 요건을 초과하는 Charter School의 일체의 졸업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노숙 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 또는 4학년에 재학 중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학생이 전학 날짜까지 취득한 학점 수 또는 학생의 학교 등록 기간 중 어느 것이든 면제에 대해 학생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기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기 요건에 따라 면제 자격이 있을 수 있는 학생이 Charter School로 전학한 날로부터 달력일 기준 30일 이내에 Charter School은 학생, 학생의 교육적 권리 보유자, 학교 연락 담당자에게 면제 가능 여부 및 학생이 면제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Charter School은 Charter School의 추가 졸업 요건이 면제된 학생과 학생의 교육적 권리 보유자에게, 면제된 일체의 요건이 중등 이후 교육 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의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리고,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컬리지를 통해 이용 가능한 편입 기회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Charter School은 Charter School에 계속 재학할 적격한 학생에게 Charter School의 추가 졸업 요건 면제를 수락하거나 학생이 수강할 자격이 있는 수업의 등록 또는 수업의 완료 능력을 거부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Charter School은 면제를 취소하지 않으며 학생이 이전에 면제를 거부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학생이 자격이 있는 경우 언제든, 면제에 대한 적격한 학생의 요청을 승인해야 합니다. Charter School의 추가 졸업 요건에 대한 적격한 학생의 면제는 해당 학생이 Charter School에 등록되어 있는 동안 또는 학생이 더 이상 노숙 아동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게 된 후에 다른 학교로 전학할 경우 계속 적용됩니다.

Charter School은 면제 대상 학생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학생에게 전학을 요구하거나 요청하지 않습니다. 또한 학생, 학생의 부모/보호자 또는 교육적 권리 보유자, 혹은 학생의 사회복지사나 보호감찰관은 Charter School의 추가 졸업 요건 면제를 받기 위해 전학을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Charter School의 추가 졸업 요건이 면제된 학생이 고등학교 4학년이 끝나기 전에 교육법 51225.3항에 명시된 캘리포니아 최소 교과 과정 요건을 완료하고 Charter School에 계속 다닐 자격이 있는 경우, Charter School은 학생이 고등학교 4학년이 끝나기 전에 졸업하도록 요구하거나 요청하지 않습니다.

학생이 고등학교 5학년 말까지 Charter School의 졸업 요건을 합리적으로 완료할 수 있다고 Charter School에서 판단하는 경우, Charter School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1. Charter School의 졸업 요건을 완료하기 위해 5학년 동안 Charter School에 남을 수 있는 학생의 선택권을 학생에게 알립니다.
2. 학생과 학생의 교육 권리 보유자에게, Charter School의 졸업 요건을 완료하기 위해 5학년 동안 학교에 남는 것이 중등 이후 교육 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의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립니다.
3.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컬리지를 통해 이용 가능한 편입 기회에 대한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합니다.
4. 학생이 만 18세 이상인 경우 학생과 합의하여, 또는 학생이 만 18세 미만인 경우 학생에 대한 교육 권리 보유자와 합의하여, Charter School의 졸업 요건을 완료하기 위해 5학년 동안 Charter School에 머물도록 허용합니다.

교과 과정 수용

Charter School은 일체의 공립 학교, 소년법정학교, 미국 이외의 국가에 있는 학교 및/또는 비공립, 비종파 학교 또는 기관에서 노숙 청소년이 만족스럽게 완료한 일체의 교과 과정을 수용합니다.

Charter School은 공립 학교, 소년법정학교, 미국 이외의 국가에 있는 학교 및/또는 비공립, 비종파 학교 또는 기관에 다니는 동안 수강한 과정을 부분적으로 완료한 경우 노숙 학생에게 학점을 제공합니다. 학생이 전체 과정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Charter School은 학생의 교육 권리 보유자와 협의하여 학생이 고등학교 졸업까지의 시간 내에 요건을 합리적으로 완료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학생이 완료한 과정의 일부를 재수강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특정

과정에서 부분 학점이 부여될 때, 노숙 학생은 해당되는 경우 학생이 전체 과정을 계속하고 완료할 수 있도록 동일하거나 동등한 과정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러한 학생들은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교 또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입학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과정을 수강하거나 재수강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Charter School에 등록하는 일체의 노숙 학생에게는, Charter School의 전체 정책의 사본이 등록 시점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전체 정책의 사본은 메인 사무실에서 요청 시 제공됩니다.

예방접종

캘리포니아 보건 및 안전법과 캘리포니아 규정법에 따라, 어린이는 면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한 학교에 다닐 수 있기 전에 필수 예방접종(접종)을 받았다는 증거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모든 입학 학생에게는 예방접종 기록이 필요합니다. 예방접종 확인은 아동의 의사 또는 예방접종 클리닉의 서면 의료 기록으로 완료됩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안전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Charter School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정한 건강 기준을 따르고 준수합니다. 모든 학생의 예방접종 상태는 주기적으로 검토됩니다. 주 정부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학생은 해당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반드시 출석에서 제외되어야만 합니다. 예방접종을 받지 않아서 전염병에 노출된 학생은 Charter School의 재량으로 학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필수 예방접종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학년	학교 출석에 필요한 주사
TK/K-12 입학	디프테리아, 파상풍 및 백일해(DTaP) - 5회 접종 소아마비 - 4회 접종 홍역, 볼거리, 풍진(MMR) - 2회 접종 B형 간염(B형 간염) - 3회 접종 수두 – 2회 투여 4번째 생일 당일이나 그 이후에 1회 접종한 경우 4회 DTaP 접종이 허용됩니다. 7번째 생일 당일이나 그 이후에 Tdap, DTaP 또는 DTP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한 경우(7-12학년 Tdap 요건도 충족) DTaP 3회 투여가 요건을 충족합니다. 7번째 생일 당일이나 그 이후에 1회 또는 2회의 Td 백신을 접종하면 DTaP 요건에 포함됩니다. 4번째 생일 당일이나 그 이후에 1회 접종한 경우 3회 소아마비 접종이 허용됩니다. MMR 투여는 첫 번째 생일 당일이나 그 이후에 반드시 맞추어야 합니다. 홍역 2회 투여, 볼거리(유행성이하선염) 2회 투여, 풍진 백신 1회 투여는 별도로 또는 조합하여 요건을 충족합니다. 혼합 백신(예: MMRV)은 개별 구성요소 백신에 대한 요건을 충족합니다.
7학년 시작 시기	파상풍, 디프테리아(Reduced Diphtheria) 및 정제 백일해(Tdap) - 1회 투여 수두 – 2회 투여 7학년을 시작하려면,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캘리포니아의 공립 또는 사립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등록된 유효한 개인 신념 면제가 기록되어 있는 학생은 반드시 K-12학년에 대해 목록 등재된 요건과 7학년에 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즉, 소아마비, MMR, 수두 및 디프테리아, 파상풍 및 백일해에 대한 기본적인 일련의 접종). 7번째 생일이나 그 이후에 백일해 함유 백신을 최소 1회 접종해야 합니다.

정신 건강 서비스

Charter School은 정신 건강 문제가 확인 및 해결되지 않은 경우, 학업 성취도 저하, 정학 및 퇴학 가능성 증가, 만성 무단결석, 학생 감소, 노숙, 투옥 및/또는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Charter School과 우리의 지역 사회에서 정신 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학생들의 신체적, 정서적 안전을 개선하는 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학습 장벽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인생에서 문제 해결 기술을 배우고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합니다. 귀하의 자녀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캠퍼스에서 활용 가능

- 학교 기반 상담 서비스 – 귀하의 자녀는 학교 시간 중에 상담실에 방문하여 상담사와 대화를 나눌 일정을 잡음으로써 Charter School 상담사에게 직접 연락을 할 것이 권장됩니다. 상담실에는 학교 대표 전화번호로도 연락할 수 있습니다. Charter School 상담사는 학업 스트레스, 환경 변화에의 전환 또는 고립을 포함한 사회적 문제로 인해 학생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개별 세션, 단체 또는 학부모 상담을 제공하여 학생들을 지원합니다. 우리 Charter School이 제공하든 본 서신에 기재된 외부 제공자가 제공하든, 상담 서비스는 자발적입니다. 우리 Charter School에는 학교 시간 동안 학교 기반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제휴자가 있습니다.
- 특수 교육 서비스 – 자녀에게 장애가 있다고 생각될 경우, 학교 주 전화선으로 학교 교장에게 직접 연락하여 평가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캠퍼스 내 처방약 – 자녀가 학교 시간에 처방약을 필요로 하고 이 약을 자녀에게 제공하는 데 학교 교직원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학교 상담사나 사무실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지역 사회에서 활용 가능

- 디디 허쉬(Didi Hirsch) 정신 건강 서비스 - 오명이나 빈곤으로 인해 접근이 제한되는 지역 사회 내에서 양질의 정신 건강 관리 및 약물 남용 치료를 제공하여 삶을 변화시킵니다. 전화: 888-807-7250 웹사이트: http://didihirsch.org/
- 피닉스 하우스(Phoenix House) - 비영리 마약 및 알코올 재활 기관입니다. 프로그램은 약물 남용 및 의존의 영향을 받는 개인, 가족 및 지역 사회를 대상으로 합니다. 전화: 888-671-9392 웹사이트: https://www.phoenixhouse.org/
- 코리아타운 유스 앤 커뮤니티 센터(KoreaTown Youth and Community Center) - KYCC는 교육, 건강, 주택 및 금융 분야에서 어린이와 그 가족을 지원하는 복합 서비스 기관입니다.
  전화: 213-365-7400 웹사이트: https://www.kyccla.org/

국내에서 활용 가능

- 전국 자살 예방 핫라인 - 이 기관에서는 예방 및 위기 자원을 포함하여 곤경에 처한 성인과 청소년을 위한 기밀 지원을 제공합니다. 1-800-273-8255로 24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 트레버 프로젝트(The Trevor Project) - 이 조직은 만 13세에서 24세 사이의 LGBTQ 청소년을 위한 자살 예방 및 위기 개입을 제공합니다. **1-866-488-7386 또는** https://www.thetrevorproject.org/**에 방문**해 보십시오.
- 빅 브라더즈/빅 시스터즈 오브 아메리카(Big Brothers/Big Sisters of America) – 이 조직은 지역 사회 기반 멘토링 프로그램입니다. 지역 사회 특정 프로그램 정보는 온라인 https://www.bbbs.org 또는 (813) 720-8778로 전화하여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임신 및 육아 중인 학생

Charter School은 임신한 학생과 육아 중인 학생이 자신의 건강과 자녀의 건강을 보호하면서 학업적으로 성공할 기회라는 편의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육아 중인 학생은 의학적 필요가 있을 경우 학생의 영아 출산 전, 일체의 필수 여름 교육을 포함하여, 출산이 발생한 학년 동안 출산 후에 떠날 수 있는 8주의 육아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학생의 의사가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경우에는 그 이상의 육아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출산하는 또는 출산 예정인 학생과 영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임신 또는 육아 중인 학생이 영아를 돌보고 유대감을 굳힐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Charter School은 학생이 정규 학교 프로그램으로 돌아올 수 있을 때까지 학생의 정규 학교 프로그램 결석이 허가되도록 할 것입니다.

육아 휴가 후 학교에 복귀하면 임신 중이거나 육아 중인 학생은 보충 학업 계획 및 강의 재등록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임신 또는 육아 휴직 기간 동안 놓친 학업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학생이 고등학교 4학년 말까지 고등학교 졸업을 위해 기간 내에 졸업 요건을 합리적으로 완료할 수 있다고 Charter School에서 결정하지 않는 한, 학생이 일체의 졸업 요건을 완료할 수 있게 되는 데 필요한 경우, 임신 또는 육아 중인 학생은 Charter School의 5년째 강의에 등록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신 또는 육아 중인 학생과 관련된 법률 미준수에 대한 고발은 Charter School의 공통 고발 처리 절차(Uniform Complaint Procedures, "UCP")에 따라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고발 사항은 규정 준수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Leeann Yu, Chief Operations Officer (최고 운영 책임자)
lyu@brightstarschools.org
Bright Star Schools
물리적 주소: 600 S. La Fayette Park Pl, Los Angeles, CA 90057
우편 주소: 5101 Santa Monica Blvd Ste 8, PMB 93, Los Angeles, CA 90029
(323) 954-9957 x1006

UCP의 사본은 메인 사무실에서 요청 시 제공됩니다. 고발 또는 고발 절차 사본 요청을 포함하여, 고발 절차의 모든 부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장에게 문의하십시오.

학부모 및 가족 참여 정책

Charter School은 우리 학교의 모든 학생들에게 공정하고 공평하며 양질의 교육을 받을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고, 초중등 교육법(“ESEA”) 내의 지침을 준수하면서 교육 성취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Charter School 직원들은 이 목표의 달성에 가족과의 제휴가 필수적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학부모 및 가족 참여 정책은 학생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의 파트너로서 모든 가족의 적극적인 참여를 활용하고 조성합니다. Charter School의 전체 정책의 사본은 메인 사무실에서 요청 시 제공됩니다.

Cal Grant 프로그램 공지

Charter School은 주 법률에 따라 학생(학생이 만 18세 이상일 경우) 또는 학부모/보호자(학생이 만 18세 미만일 경우)가 탈퇴하지 않는 한, 매년 10월 1일까지 모든 고등학생의 평균 학점("GPA")을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1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은 학생(또는 학생이 만 18세 미만인 경우 학부모/보호자)이 2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탈퇴하지 않는 한 Cal Grant 신청자로 간주됩니다.

캠퍼스 수색 및 압수

Charter School은 총기, 무기, 알코올, 규제 약물 또는 법률이나 Charter School 규칙 및 규정에서 금지하는 기타 밀수품의 소지를 포함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이 학생 및 Charter School 직원의 건강, 안전 및 복지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헌법은 공립학교의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고 보안이 확보된 평화로운 캠퍼스에 다닐,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질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Charter School은 합리적인 의심에 기반한 수색을 통해 학생과 학생의 재산, 학생 사용 구역 및/또는 학생 사물함의 합당한 수색과 불법, 안전하지 않거나 승인되지 않은 또는 밀수품 및 자료의 압수에 대해 요약한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학생의 개인 휴대전화, 스마트폰 또는 기타 개인 전자 기기는 장치가 분실되거나 버려진 경우를 제외하고 영장, 학생의 동의 또는 정당한 긴급 상황 없이 학교 관계자가 수색할 수 없습니다. 비상 상황이란 누구든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상황으로, 전자 기기에 있거나 있다고 합리적으로 생각되는 정보에 접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Charter School이

기기가 분실, 도난 또는 버려졌다는 선의의 믿음이 있을 경우, Charter School은 기기 소유자를 식별, 확인 또는 연락을 시도하기 위해 전자 기기 정보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Charter School은 학생이 개인 전자 기기를 사용하거나 소지하는 것이 Charter School 규칙 또는 규정을 위반할 경우, 그 내용을 조사하지 않은 채, 학생의 개인 전자 기기를 압수/몰수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당뇨병

Charter School은 교육법 49452.6항에 따라, 학생이 초등학교에 처음 등록할 때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제1형 당뇨병에 관한 정보지를 제공합니다. 이 정보지에는 다음 모두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1. 제1형 당뇨병에 대한 설명.
2. 제1형 당뇨병과 관련된 위험 요인 및 경고 징후에 대한 설명.
3. 제1형 당뇨병과 관련된 경고 징후를 보이는 학생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는 제1형 당뇨병에 대한 즉각적인 검진이 적절한지 결정하기 위해 즉시 학생의 주치의와 상의해야 한다는 권장사항.
4. 제1형 당뇨병의 검진 과정과 검사 결과의 의미에 대한 설명.
5. 제1형 진단 후 학부모 또는 보호자는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해 학생의 주치의와 상의해야 하며, 여기에는 자격을 갖춘 내분비학자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전문 진료 제공자와의 상담 및 검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1형 당뇨병에 관한 정보지 사본은 https://www.cde.ca.gov/ls/he/hn/diabetesmgmt.asp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지의 사본이 필요하거나 이 정보지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경우 사무실에 문의하십시오.

재정 지원에 관한 정보

Charter School은 각 학생이 1) FAFSA(연방 학자금 지원 무료 신청서), 2) 캘리포니아 드림 액트 신청서 또는 3) 옵트아웃 양식을 다음과 같이 적절하게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Charter School은 요청 시 FAFSA 또는 캘리포니아 드림 액트 신청서의 종이로 된 사본을 제공합니다.

- 양식을 포함한 FAFSA 관련 정보는 https://studentaid.gov/h/apply-for-aid/fafsa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 캘리포니아 드림 액트 신청서 및 정보는 https://www.csac.ca.gov/post/resources-california-dream-act-application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학 절차

학생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조치 발효일로부터 수업일 기준 최소 5일 전에 학생을 퇴학시키겠다는 서면 통지(“비자발적 퇴학 통지”)를 받지 않는 한, 어떤 사유로도 Charter School은 학생을 비자발적으로 퇴학시킬 수 없습니다. 서면 통지는 학생이나 학생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의 모국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학생이 위탁 아동이나 청소년 또는 노숙 아동이나 청소년인 경우 학생의 교육적 권리 보유자의 모국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비자발적 퇴학 통지에는 학생에 대한 혐의와 조치 발효일 이전에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 학생의 기본 권리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청문회는 Charter School의 퇴학 절차와 일치해야 합니다. 학생의 학부모, 보호자 또는 교육적 권리 보유자가 청문회를 요청할 경우, 학생은 등록 상태를 유지하며 Charter School이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퇴학되지 않습니다. 이 문서에서 사용된 "비자발적 퇴학"에는 등록 취소, 제적, 전학 또는 관계의 종료가 포함되나, Charter School의 정학 및 퇴학 정책에 따른 정학이나 퇴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학부모/보호자가 청문회를 요청할 시, Charter School은 퇴학 청문회 절차에 따라 청문회 통지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은 증언, 증거 및 증인을 제시하고 반대편 증인과 대면 및 교차 심문할 공정한 기회를 갖게 되며, 학생은 법률 고문이나 변호인을 동석시킬 권리가 있습니다. 청문회에 대한 통지는 학생이나 학생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의 모국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학생이 위탁 아동이나 청소년 또는 노숙 아동이나 청소년인 경우 학생의 교육적 권리 보유자의 모국어로 작성되어야 하고, Charter School의 퇴학 청문회 과정 사본을 포함해야 합니다.

학부모/보호자가 비자발적 퇴학 통지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학생은 비자발적 퇴학 통지에 명시된 발효일을 기준으로 퇴학됩니다. 학부모/보호자가 청문회를 요청하고 예정된 청문회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청문회 날짜를 유효일로 학생의 등록이 취소됩니다.

청문회 결과로 학생이 등록 취소될 경우, 30일 이내에 학생이 마지막으로 거주한 것으로 알려진 교육구로 통지가 발송됩니다.

학생을 등록 취소하지 않기로 한 청문회 결정으로 인해, Charter School이 학생의 무단 결석이 계속되거나 재발할 시 유사한 권고를 못 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학교 자산의 분실 또는 파손

학생이 Charter School의 자산이나 Charter School 직원의 개인적 자산을 고의로 손상시키거나 학생에게 대여한 교과서, 도서관 책, 컴퓨터/태블릿 또는 기타 Charter School의 자산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학생의 학부모/보호자가 1만 달러($10,000, 매년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됨)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학생의 비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학생의 학부모나 보호자에게 학생의 비행 혐의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하고 학생에게 적법 절차를 제공한 후, Charter School은 손해가 배상될 때까지 학생의 성적, 성적표 및 졸업장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학생과 학생의 학부모/보호자가 손해를 배상하거나 재산을 반환할 수 없을 경우, Charter School은 금전적 손해배상 대신 미성년자를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입니다. 봉사활동이 완료되면 학생의 성적과 졸업장이 제공됩니다.

학교 안전 계획

Charter School은 종합 학교 안전 계획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계획서는 메인 사무실에서 요청 시 제공됩니다.

개인 신념에 대한 설문 조사

학생의 학부모/보호자가 서면 허가를 제공하지 않는 한, 학생은 학생이나 학생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의 개인적 신념이나 성, 가족 생활, 도덕성 또는 종교에 대한 일체의 질문이 포함된 모든 시험, 설문지, 설문 조사 또는 검사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담배 없는 학교

충분한 연구를 통해 흡연 및 간접 흡연의 호흡을 포함하여 담배 제품 사용과 관련된 건강 위험이 입증된 바 있습니다. Charter School은 학생들이 담배 제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계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Charter School 운영 위원회는 흡연 및 기타 담배 및 니코틴 제품 사용이 심각한 공중 보건 위험을 구성하고 학생과 교직원에게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려는 Charter School의 목표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따라서 학생, 직원 및 일반 대중의 최대 이익을 위해, 위원회는 Charter School 부지와 Charter

School 차량에서 담배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상시 금지합니다. 이 금지 사항은 학교나 학교에서 후원하는 활동 또는 운동 행사에 있는 모든 직원, 학생, 방문자 및 기타 인물들에게 적용됩니다. 이는 Charter School이 소유, 임대 또는 빌린 일체의 자산에서의 모든 회의에 적용됩니다.

놀이터에서 25피트(7.6미터) 이내에 위치한 공공 인도를 제외하고, 모든 놀이터에서 25피트(7.6미터) 내에서 일체의 흡연 또는 담배 관련 제품의 사용이나 담배 관련 쓰레기의 처리가 금지됩니다. 청소년 스포츠 행사가 개최되는 동일한 공원 또는 시설에서 청소년 스포츠 행사로부터 250피트(76미터) 이내의 흡연 또는 담배 관련 제품의 사용도 금지됩니다. 이에 더하여, 이 정책을 시행하려는 자에 대한 모든 형태의 협박, 위협 또는 보복은 금지됩니다.

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학생, 학부모/보호자, 직원 및 대중에게 이 정책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Charter School 부지에 있는 모든 개인은 이 정책을 준수할 책임을 공유합니다. 또한, Charter School은 학교 자산의 모든 입구에 "담배 사용 금지"라는 표지판을 눈에 띄게 게시할 것입니다.

공통 고발 처리 절차(“UCP”)

Charter School은 교육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연방 및 주 법률과 규정 준수를 주로 담당하는 지역 기관입니다. Charter School은 다음 유형의 고발에 대해 운영 위원회에서 채택한 공통 고발 처리 절차(Uniform Complaint Procedure, "UCP")로 알려진 정책 및 절차를 통해 고발 사항을 조사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1. 연령, 혈통, 피부색, 정신 장애, 신체 장애, 민족 그룹 식별, 이민 상태, 시민권, 성 표현, 성별의 실제 또는 인지된 특성을 근거로 보호 대상 그룹에 대한 불법적인 차별, 괴롭힘, 위협 또는 따돌림을 주장하는 고발 신원, 성별, 유전 정보, 국적, 출신 국가, 인종 또는 민족, 종교, 의학적 상태, 결혼 여부, 성별 또는 성적 취향, 또는 이러한 실제 중 하나 이상을 가진 개인 또는 그룹과의 연관성에 근거 또는 Charter School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서 인지된 특성.

2. 다음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주나 연방법 또는 규정의 위반을 주장하는 고발:

    - 임신, 육아 또는 수유 중인 학생을 위한 편의 제공
    - 통합 범주형 지원,
    - 현재 공립학교에 등록된 위탁 보호 학생, 노숙자 학생, 전 소년법정학교 학생, 그리고 이주 아동 및 군인 가정 자녀의 학생 교육,
    - 모든 학생 성공법,
    - 학교 안전 계획

3. 학생 부담 비용과 관련된 법률을 미준수 혐의에 대한 고발. 공립 학교에 등록된 학생은 교육 활동 참여에 대해 학생 부담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야 합니다. 학생 부담 비용에는 다음이 모두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수업이나 활동이 선택적인지 필수인지 또는 학점을 위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학교나 수업 등록 조건으로, 또는 수업이나 과외 활동 참여 조건으로 학생에게 부과되는 요금.
    - 자물쇠, 사물함, 책, 수업 용구, 악기, 의류 또는 기타 재료나 장비를 얻기 위해 학생이 지불해야 하는 보증금 또는 기타 납부금.
    - 교육 활동과 관련된 재료, 용품, 장비 또는 의류를 얻기 위해 학생에게 요구되는 구매.

학생 부담 비용과 관련된 법률 미준수에 대한 고발은 아래에 명시된 교장 또는 준수 담당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해당되는 경우 교육법 섹션 47606.5 및 47607.3에 따라 지역 관리 기금 공식("LCFF") 또는

지역 통제 및 책임 계획("LCAP")을 규율하는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고발. Charter School이 LCAP에 더하여 학생 성취를 위한 학교 계획(“SPSA”)을 채택하는 경우, 교육법 64000, 64001, 65000 및 65001항에 따른 SPSA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고발도 UCP에 해당됩니다.

교육법 49490-49590항에 따라 구축된 아동 영양 프로그램에 관한 비준수를 주장하는 고발은 7편, 연방 규정 코드("CFR") 210.19(a)(4), 215.1(a), 220.13(c), 225.11(b), 226.6(n), 250.15(d)항 및 5편, 캘리포니아 규정집("CCR") 15580-15584항이 관장합니다.

교육법 56000-56865항 및 59000-59300항에 따라 구축된 특수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비준수를 주장하는 고발은 5 CCR 3200-3205항 및 34 CFR 300.151-300.153항에 명시된 절차에 따릅니다.

학생 부담 비용과 관련된 고발 이외의 고발 사항은 반드시 다음 준수 책임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Leeann Yu, Chief Operations Officer (최고 운영 책임자)
lyu@brightstarschools.org
Bright Star Schools
물리적 주소: 600 S. La Fayette Park Pl, Los Angeles, CA 90057
우편 주소: 5101 Santa Monica Blvd Ste 8, PMB 93, Los Angeles, CA 90029
(323) 954-9957 x1006

학생 부담 비용 또는 LCAP 준수에 관한 고발만 익명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익명의 원고가 증거 또는 학생 부담 비용 또는 LCAP와 관련된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이끄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불법적인 차별, 괴롭힘, 위협 또는 따돌림 혐의가 발생한 날짜로부터, 또는 불법적인 차별, 괴롭힘, 위협 또는 따돌림 혐의 사실에 대해 원고가 처음 알게 된 날짜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법적인 차별, 괴롭힘, 위협 또는 따돌림 혐의에 대한 고발이 반드시 접수되어야 합니다. UCP에 따라 기타 모든 고발은 위반 혐의가 발생한 날짜로부터 1년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LCAP와 관련된 고발의 경우, 위반 혐의 날짜는 Charter School 위원회가 LCAP를 승인하거나 연례 업데이트가 Charter School에서 채택된 날짜입니다.

고발을 조사할 책임이 있는 준수 담당자는 캘리포니아 규정 및 Charter School의 UCP 정책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고 완료해야 합니다. 준수 담당자는 Charter School이 고발을 접수한 날로부터 달력일 기준 60일 이내에 최종 서면 조사 보고서("결정")를 원고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원고의 서면 동의에 의해 달력일 기준 60일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원고는 UCP 요건의 대상이 아닌 고발을 다루는 데 Charter School이 UCP를 사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고는 Charter School의 서면 결정일로부터 달력일 기준 30일 이내에 서면 항소를 제출함으로써 캘리포니아 교육부(“CDE”)에 Charter School의 결정에 항소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항소에는 반드시 Charter School에 제출된 고발의 사본, Charter School의 결정문 사본이 포함되어야 하며, 원고는 반드시 다음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여 결정에 대한 항소의 근거를 명시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1. Charter School이 고발 처리 절차를 따르지 않았음,
2. 고발에 대한 주장과 관련하여, Charter School의 결정문에는 법의 결론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사실에 대한 중요한 발견이 부족함,
3. Charter School 결정문의 중요한 사실 발견에는 실질적인 증거의 뒷받침이 없음,
4. Charter School 결정문의 법적 결론이 법률과 일치하지 않음, 및/또는

5. Charter School 결정문에서 비준수를 발견한 경우, 교정 조치는 적절한 구제책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UCP 고발에 대한 Charter School의 결정에 대해 CDE에 항소하는 원고는 원고와의 서면 합의에 의해 연장되거나 CDE가 예외적 상황을 기록하고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는 한 CDE가 이의 제기를 접수한 후 달력일 기준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항소 결정문을 받아야 합니다.

5 CCR 4633(f)(2)항 또는 (3)항에 따라 CDE가 항소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달력일 기준 30일 이내에, 어느 한쪽 당사자가 주 공교육 교육감("SSPI") 또는 SSPI의 피지명인에게 재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고 요청은 CDE의 항소 결정에서 사실 발견, 법적 결론 또는 시정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를 구체화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UCP 고발이 CDE에 직접 제출되고 CDE가 직접 개입할 가치가 있다고 결정할 경우, CDE는 당사자들이 일정을 연장하기로 합의했거나 CDE가 예외적인 상황을 문서화하고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는 한, 고발 접수 후 달력일 기준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원고에게 서면 결정을 제공해야 합니다.

Charter School이 UCP 고발에서 가치를 발견하거나 CDE가 항소에서 가치를 발견할 경우, Charter School은 해당 시 영향을 받는 학생 및/또는 학부모/보호자에게 구제책을 제공할 기존 법률의 요건에 일치하는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원고는 Charter School의 고발 처리 절차 외에 이용 가능한 민법 구제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중재 센터 또는 공익/사익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부과할 수 있는 민법 구제책에는 금지 명령 및 접근 금지 명령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 법률하에 발생하는 불법적인 차별, 괴롭힘, 위협 또는 따돌림 관련 고발의 경우, 원고는 민법 구제책을 추진하기 전에 CDE에 항소를 접수한 후 반드시 달력일 기준 60일이 경과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모라토리엄은 금지 명령 구제에 적용되지 않으며, Charter School이 원고에게 5 C.C.R § 4622에 따라 적절하게, 적시에 고발을 접수할 원고의 권리에 대해 통지한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UCP의 사본은 메인 사무실에서 요청 시 무료로 제공됩니다. 고발 또는 UCP 사본 요청을 포함하여, 고발 절차의 모든 부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장에게 문의하십시오.

소셜 미디어에서 학습한 학생 정보의 사용

Charter School은 학생의 교육 기록에서 소셜 미디어에서 얻은 모든 등록 학생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또는 유지 관리에 관한 모든 연방, 주 및 지역 지침을 준수합니다. Charter School은 소셜 미디어에서 학생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러한 정보는 학생에 관한 Charter School의 기록에 유지되어야 하며 학생이 만 18세가 된 후 1년 이내에 또는 학생이 Charter School에 더 이상 등록하지 않은 후 1년 이내 중 먼저 도달하는 시점에 파기되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아닌 학생이나 학생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는 정보를 조사하기 위해 학생의 기록에 접근할 수 있으며, 교장에게 연락하여 Charter School이 수집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정보의 삭제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고

학교는 학교 부지에서 입은 부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행위는 항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1. 감독되지 않는 지역이나 계단 주변에서 노는 행위 및/또는 행위.
2. 캠퍼스에서 자전거, 스케이트보드, 롤러블레이드, 바퀴가 달린 신발 또는 바퀴 달린 이동 수단을 타는 행위.
3. 학교에서 허가하지 않은 일체의 물건을 가지고 노는 행위.

4. 도우미견이나 특정 학급의 교사가 요청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물은 일체의 학교 부지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5. 부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기타 일체의 행위.

캠퍼스에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본교의 직원은 기본적인 응급 처치를 관리하고 사고의 세부사항을 부상 보고서에 기록하도록 교육을 받습니다.

부상이 심각하고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학부모에게 즉시 통지됩니다. 사무실에서 최신 연락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경미한 부상의 경우, 학생의 동의를 받고 학부모/보호자에게 전화로 통지됩니다. 교직원이 전화를 걸고 부상을 설명한 후, 학생을 전화로 연결할 것입니다. 본교에서는 학부모께서 전화로 자녀를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며, 교직원의 요청이 없는 한 학교 방문은 삼가해 주십시오. 학생이 전화하기를 거부할 경우, 부상 보고서를 학생과 함께 보내게 됩니다.

보험 청구

일체의 학교 관련 학생 부상에 대해 접수된 보험 청구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빠르게 학교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체육 수업

체육 수업, 피트니스 수업 및/또는 활동 참여 능력에 영향을 미칠 의학적 환경이 있는 기타 활동에 등록한 학생은 의료 전문가의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교직원은 학생, 가족 및 의료 전문가와 적절하게 협력하여 조정 및/또는 대안 활동을 만들 것입니다.

Bright Star Schools에서는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를 매우 진지하게 여깁니다. 계획을 실행할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학생과 교직원이 캠퍼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비상사태에 잘 대비되어 있게 하고자 합니다.

학교 안전 계획

학교 안전 계획은 다양한 학교 안전 주제와 비상 절차의 개요가 실린 문서입니다. 이러한 문서들은 매년 업데이트됩니다.

모의훈련

학교 안전 계획에 명시된 절차를 실행하기 위해 각 학교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모의훈련을 완료해야 합니다. 학년도 과정에 걸쳐, 우리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비상 모의훈련 15회(화재훈련 9회, 봉쇄훈련 3회, 지진훈련 3회)를, 우리 고등학교는 비상 모의훈련 9회(화재훈련 3회, 봉쇄훈련 3회, 지진훈련 3회)를 완료할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기에, 캘리포니아 주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모의훈련을 자발적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상용품

진정한 비상사태 또는 자연 재해가 발생한 경우,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최소 3일 동안 생활할 수 있는 충분한 음식과 물이 캠퍼스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각 학교에는 대형 수색 및 구조 키트, 구급상자 및 AED(자동제세동기)가 메인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모든 교실에는 비상 절차 및 학생 명단이 포함된 빨간색 바인더와 폐쇄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품들이 들어 있는 비상용 양동이가 있습니다.

긴급 상황 시 학부모 연락

학부모님께서는 재해 발생 시 학교에 전화**하셔서는 안 됩니다**. 전화를 걸 경우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학교가 비상 정보 및 대응팀과 관련된 중요한 전화를 걸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라디오를 듣거나 TV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각 학교에서는 또한 업데이트가 포함된 학부모 광장(ParentSquare) 메시지를 보낼 것입니다. 학생들을 데리러 와도 안전할 때, 학부모님들은 적절한 픽업 장소로 안내될 것입니다. 모든 교직원이 참석하여 도움과 안내, 지시를 할 것입니다.
매년 모든 학교 비상 연락처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십시오. 전화번호, 자택, 휴대폰, 직장에 일체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학교에 알리고, 비상 시 자녀를 데리러 갈 수 있는 사람을 알려 주십시오.

학교 외 시간

학교 외 시간에 지역적이거나 국가적인 비상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Bright Star Schools는 비상사태 후 학교를 열고 폐쇄하는 것과 관련하여 로스앤젤레스 통합 교육구 정책에 따를 것입니다. 각 가정에는 학부모 광장(Parentsquare)을 통해 최신 정보를 받게 됩니다.

학교 시간

우리는 학교 현장 폐쇄가 필요한 비상사태를 포함하여 학교 시간 중 비상사태(즉, 지진)가 발생할 경우에 잘 대비되어 있습니다. 교사진은 현직 교육을 받았으며 비상 시 학생을 위한 활동 및 지침을 매우 명확하게 다루는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각 교사는 교실에 다양한 유형의 비상사태용 절차의 사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본은 학교 사무실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Bright Star의 전직원은 캘리포니아 형법 11166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법률은 교직원이 아동학대 또는 방치에 대한 일체의 합리적인 의심을 지역 경찰서, 보안관 부서 또는 카운티 복지 사무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Bright Star 직원은 아동과 함께 일할 때 잠재적으로 학대로 해석될 수 있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특별한 예방조치를 취합니다.

직원들은 학생과 함께 방 안이나 차 안에 절대 둘이서만 있지 않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어떤 직원이든 이러한 절차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현장 행정관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자살 예방 정책

AB 2246에 따라, Bright Star School은 학생의 건강과 안전, 복지를 보호하는 것이 교육구와 학교의 의무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Bright Star Schools는 자살 시도, 사망, 그리고 자살 시도 및 상실의 영향을 받는 학생, 교직원 및 가족을 위한 적절한 지원을 비롯하여 자살과 관련된 기타 외상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Bright Star School의 자살 예방 정책은 자살 예방에 대한 연구 및 모범 사례를 기반으로 하며, 자살 예방 활동이 자살 위험을 감소시키고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을 늘리며 자살 위험이 있는 자를 식별하고 자살 행동을 감소시킨다는 이해 하에 채택되었습니다.

자살 행동, 그리고 그것이 학생과 가족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시도로, 우리는 자살 예방, 개입 및 사후 예방을 위한 전략, 자살 생각 및 행동과 종종 관련된 정신 건강 문제를 식별하는 법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략에는 대체 교사, 자원봉사자, 확장 학습 직원(방과후) 및 건널목 안내자, 교사 및 코치와 같이 학생들과 정기적인 접촉을 하는 기타 개인을 포함하여, 학생과 정기적으로 상호작용하거나 자살의 위험 요소 및 경고 징후를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모든 직업 범주의 모든 학교 직원을 위한 전문성 개발이 포함됩니다.

자살 예방 정책 전체를 검토하려면, https://www.brightstarschools.org을 방문하십시오.

발열/질병

체온이 화씨 100도(섭씨 37.7도) 이상인 학생은 즉시 픽업해야 합니다. 체온이 화씨 99-99.9도(섭씨 37.2-37.6도)인 학생은 면밀히 모니터링됩니다. 학생이 다른 증상을 보이거나 무기력증이 있는 경우, 가족에게 학생을 데리러 오라는 통지가 전송됩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복귀하기 전에 일체의 약물 없이도 24시간 동안 열(화씨 100도, 섭씨 37.7도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발열로 귀가한 후 캠퍼스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체온 상승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될 것입니다.